KOREAN ARCHITECT

月刊 建築士 1994년 9월호
통권 305호(매월 15일 발행)
발행 · 대한건축사협회
137-0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등록 · 1967년 3월 23일
등록번호 · (서)라-26
1986년12월31일 제3종우편물
(나)급인가

建築士

Th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September 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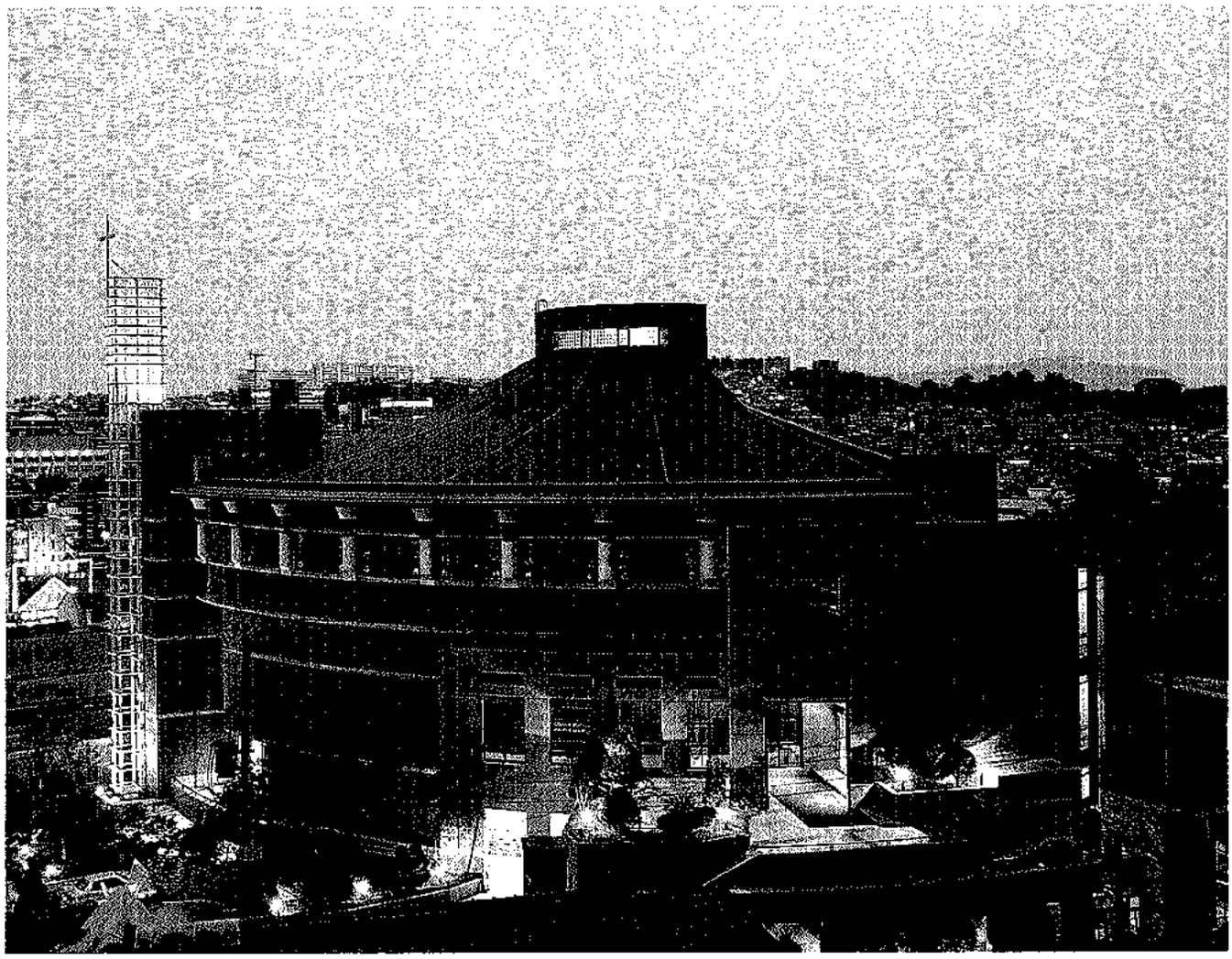

논단
건설업체의 설계업 허용요구의 부당성/이종관

칼럼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과 의무/김 린

회원작품
예닮교회/(주)정림건축
서울증권사옥/김 호
민정학원/문정일
SBS등촌동 공개홀/최관영+정동명
베리아국제진흥원/함인선

좌담회
건축정보체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기고
건축법 개정 방향에 관하여/원종일

기획연재
건축실무의 역사(2)/송 률

연구
「영조법식」〈대목작제도〉번역/김도경+주남철
한국의 전통건축(2)/장순용

건축기행
고딕성당건축(5)/박호순

현상설계경기
충주청소년수련원 · 택견전수관 · 우륵당

9
SEPTEMBER

공 고

94년도 건축사자격(면허) 2차시험 및 특별전형시험시행공고

건축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94년도 건축사자격(면허) 2차시험 및 특별전형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4. 8. 3
대한건축사협회장

1. 합격자발표	○최종 : '94.12.28 최종합격자 발표 예정 ※ 확정발표는 '94.9.10 시·도 건축사회 게시판에 공고	○'94.12.28 최종합격자 발표 예정 ※ 확정발표는 '94.9.10 시·도건축사회 게시판에 공고
2. 응시자격	○'94건축사자격(면허) 1차시험 합격자	○건축사법 부칙 제2항(법 제3242호)에 의한 2급건축사로서 동법 제1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시험일자	○'94.11.6 예정 ※ 확정발표는 '94.9.10 시·도 건축사회 게시판에 공고	○'94.11.6 예정 ※ 확정발표는 '94.9.10 시·도건축사회 게시판에 공고
4. 시험장소	○'94.9.10 시·도 건축사회 게시판에 공고	○'94.9.10 시·도 건축사회 게시판에 공고
5. 과목별시험시간 및 방법	○건축계획 : 10 : 00-11 : 30(90분) -객관식 및 주관식 혼용, 연속시행 ○건축설계 : 13 : 00-18 : 00(300분) -실기, 연속시행	○건축계획 및 건축구조 : 10 : 00-12 : 00(120분) -객관식, 연속시행
6. 건축설계과제명	○'94.9.10 시·도 건축사회 게시판에 공고	○해당없음
7. 서류 제출 및 특별전형 시험 응시원서 교부	○기 간 : '94.8.29-9.7(단, 토요일은 13 : 00까지 일요일은 접수불가) ○제출처 : 대한건축사협회 각 시·도 건축사회 ○방 법 :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제출 ※ 제출서류의 검토 및 보완 등을 하기 위함	○교부(접수)기간 : '94.8.29-9.7(단, 토요일은 13 : 00까지 일요일은 접수불가) ○교부 및 접수처 : 대한건축사협회 각 시·도 건축사회 ○방 법 : 좌동 ○응 시 수 수 료 : 17,000원
8. 제출서류(공통)	〈2차시험 응시자〉 ※ 제출서류는 1차시험 합격자 발표일('94.8.3) 기준으로 3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함. (1) 주민등록초본 1통 : 병역사항(병과, 복무기간등)이 명시된 것 (2) 사 진 2매 : 탈모 상반신 컬러 반명함판(최근 3개월 이내) (3) 졸업(학교)증명서 1통 : 소정의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전공학과가 명시된 것 (4) 경력(설무)증명서 1통 : 소정의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근무부서, 기간 및 담당업무가 명시된 것(증명발급처 주소, 전화번호 명시된 것) ※ 경력인정 기준일은 제1차 시험 시행일의 전일('94.7.16)까지로 하며 경력(학력)은 중복되지 아니하여야 함. ○건축사사무소 경력 : 대한건축사협회장(시·도건축사회장)이 확인한 것 ○건설업체 및 용역업체 경력 : 대표명의의 발행번호를 부여한 경력증명서와 해당업체 주소·전화번호가 기재된 면허(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세무용)은 인정하지 않음. ○기타 소정의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 해당 경력증빙서(해당업체의 주소·전화번호 기재) ○경찰·체신등 현업 관서 및 기타공무원(고용직 포함) 또는 건축직공무원(상용잡급 직원 및 1차시험시 과목면제를 위하여 "제직증명"을 제출한 자)등은 부서·작종·직급·근무기간 및 담당업무가 표시되고 기관장이 발행한 경력증명을 제출 ○대학원 학위과정 : 전공(수료)학과 및 학위가 명시된 총(학)장이 발행한 것 ○시간강사 : 강의기간 및 과목별로 주당 시간이 명시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총(학)장이 발행한 것. (5) 반신용봉투 1매 : 반신용 등기우표를 부착한 수취인 주소·전화번호·성명 및 우편번호를 기재한 것 (6) 수험표사본 1매 〈특별전형시험 응시자〉 ※ 제출서류는 시험시행 공고일('94.8.3) 기준으로 3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함 ○위의 2차시험 응시자가 제출할(1)-(5)서류이외에 2급건축사 자격수첩 및 면허증사본 각 1매 추가 제출 (경력인정 기준일은 특별전형시험 시행일의 전일까지로 함)	
9. 응시자준수사항	○응시자는 수험표와 주민등록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시험개시 30분전까지 해당 시험장에 입실하여 자정좌석에 착석하여야 하며, 시험개시후에는 일체 시험장에 입실할 수 없음. ○건축계획 및 건축구조 과목의 객관식 선택형 시험답안지는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싸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함(객관식 선택형 답안은 컴퓨터로 채점) ○건축사자격 2차시험의 건축계획 과목중 주관식 논문형시험 답안지는 흑색 또는 청색 볼펜이나 만년필 등의 필기구를 사용하되 동일색 필기구만을 사용하여야 하고, 건축설계(실기)시험답안은 흑색연필로 사용하되 성명·수험번호등 기재란은 연필이외의 필기구로 기재하여야 함. ○건축설계용지(깔판용지포함)는 본협회에서 배부하며, T형자·3각자·스케일자 및 소형전자계산기 이외의 기계식 제도용품과 책상·깔판용지등은 일체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음. ○수험표를 지참하지 못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단, 수험표 분실자는 사진2매, 주민등록증 및 도장을 지참하고 2차시험일 시험시행 1시간전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수험표를 재교부 받아야 함.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와 시험답안지의 기재착오·누락 또는 제출서류의 오기·미비 등 공고사항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서류심사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고 각종 제출서류를 지정된 기일내에 제출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시험문제지를 시험장 밖으로 반출하거나 제출된 시험답안지를 열람·확인할 수 없음. ○응시자격 미달자가 응시한 경우에는 합격을 무효로 하며, 허위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10. 기타사항	○시험시행에 관한 문의는 대한건축사협회(자격관리과) 또는 건설부(건축행정과)로 연락하기 바람. ☎대한건축사협회(02)581-5711~4, 건설부(02)500-2861~2, 503-7357	

차례/1994년 9월호 통권 305호

논단
건설업체의 설계업 허용요구의 부당성／李鍾寬 18

칼럼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과 의무／金 麟 20

회원작품
예닮교회／(주)정림건축 22
서울증권사옥／金 浩 28
민정학원／文政一 36
SBS등촌동 공개홀／崔寬泳＋鄭東明 42
베리아국제진흥원／咸仁善 48

계획작품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삼정디자인그룹 54

소개지
천안기숙사／李逢春 56

회원갤러리
오후(91×116.7)／姜聲益 58
잔／金琪碩 59

좌담회
건축정보체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崔泰容／姜哲求／權棹雄／金宇成／蔣應在／趙亨燮／崔英集 60

기고
건축법 개정방향에 관하여／元鍾一 66

기획연재
건축실무의 역사(2)／宋 律 68

연구
「영조법식」(대목작제도)번역／金度慶＋朱南哲 78
한국의 전통건축(2)／張順鏞 82

건축기행
고딕성당건축(5)／朴孝洵 86

현상설계경기
충주청소년수련원・택견전수관・우록당 96

법 령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중 개정령 102

통 계
1994년 7월분 전국도서신고 현황 106

협회소식 108

發 行 人：吳雄錫
編輯企劃：編纂委員會
委 員 長：李俊憙
委　　員：吳龍夫, 李柱勳, 梁海儁, 崔泰容, 李 馥, 金宗愼
編輯・取材：弘報部／梁元錫, 鄭孝相, 趙漢國, 李善模
發 行 處：大韓建築士協會 (協會創立日：1965年 10月 23日)
住　　所：서울特別市 瑞草區 瑞草洞 1603－55
郵便番號：137－070
電　　話：代表 (02)581－5711, 581－5712~14
팩시밀리：(02)586－8823
登錄番號：서울 라－26(月刊)
登　　錄：1967年 3月 23日
U. D. C ：69／72(054－2)：0612(519)
印 刷 人：李鳳秀／正文社

표지사진：예닮교회
(설계：(주)정림건축)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서울특별시건축사회/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603-55, 581-5715~8 · 서대문분회/서대문구연희동169-25, 333-6411 · 관악분회/관악구신림동1422-17, 882-6744 · 도봉분회/도봉구수유동191-13, 903-3425 · 영등포분회/영등포구양산3/81, 632-2143 · 강동분회/강동구성내동317-4, 484-6840 · 강서분회/강서구화곡동1105-05, 604-7168 · 성동분회/성동구구의동252-16, 446-5244 · 동대문분회/동대문구신설동101-7, 923-0158 · 종로분회/종로구수성동46-13, 735-0905 · 마포분회/마포구성산동275-1, 333-5251 · 송파분회/송파구송파동50-12, 423-9158 · 중구분회/중구무교27-49-11, 279-1415 · 용산분회/용산구원효로1가129-22, 717-6607 · 서초분회/서초구서초1동1623-1, 552-8468 · 은평분회/은평구녹번동79-32, 388-1486 · 동작분회/동작구상도동206-6, 815-3026 · 강남분회/강남구논현동242-30, 517-3071 · 노원분회/노원구상계1동707-4, 933-8070 · 양천분회/양천구신정동1027-9, 653-2892 · 중랑분회/중랑구면목동166-46, 437-7356 · 성북분회/성북구삼선5가410, 922-5117 · 구로분회/구로구구로동86-4, 852-2275

■부산직할시건축사회/부산시진구범천동847-18, 29 (051)634-4973~9

■대구직할시건축사회/대구직할시수성구범어동37가1-8, (053)753-8980~5

■인천직할시건축사회/인천직할시남동구간석1동558-1, (032)437-3381~4

■광주직할시건축사회/광주직할시북구중흥동694-10, (062)521-0025~6

■대전직할시건축사회/대전직할시중구대흥동487-1, (042)255-9350~4

■경기도건축사회/경기도수원시매산로37가124-5, (0331)47-6129~30 · 직할분회/경기도수원시매산로37가124-5, (0331)43-6662, 7072 · 안양분회/안양시안양동523-5, (0343)49-2698 · 부천분회/부천시중구원미동88-1, (032)664-1554 · 성남분회/성남시수정구태평동3407, (0342)755-5445 · 의정부분회/의정부시의정부동182, (0351)876-0458 · 동탄분회/송탄시서정동343-22, (0333)666-6153 · 고양분회/고양군화정주교38통학16룬프, (0344)63-8902 · 구리분회/구리시수택동409-2, (0346)63-2337 · 이천분회/이천군이천읍중리192-1, (0336)635-6545 · 광명분회/광명시철산동220-2, (02)684-5845 · 안산분회/안산시고잔동536-1, (0345)80-9130 · 시흥분회/(032)694~4121

■강원도건축사회/강원도춘천시옥천동39-5, (0361)54-2442 · 원주분회/원주시중앙동60-54, (0371)43-7220 · 강릉분회/강릉시성내동6-14,

CONTENTS VOL.305. SEPTEMBER 1994

FOCUS

A Bad Claim of Construction Enterprise/Lee, Chong-Kwan 18

COLUMN

Our Authorities and Duty/Kim, Lin 20

WORKS

Yedarm Presbyterian Church/Junglim Architects & Engineers 22

The Head Office of Seoul Securities Co. LTD/Kim, Ho 28

Sangmyung Elementary School-Girls' Middle & High School/Moon, Jung-Il 36

SBS Tungchon-dong Studio/Choi, Kwan-Young & Cheong, Dong-Myeong 42

Berea International Center/Hahm, In-Sun 48

PROCESS WORK

Seongdong Residents Sports Complex/Samjeong Design Group 54

SKETCH

Cheonan Dormitory/Lee, Bong-Chun 56

GALLARY

Afternoon(91×116.7)/Kang, Seong-Ik 58

A Drink/Kim, Ki-Seok 59

DISCUSSION MEETING

The Problem of Architectural Information System & Course of Development/ Choi, Tae-Woong/Kang, Cheol-Ku/Kweon, Do-Woong/Kim, Woo-Seong/ Chang, Eung-Chae/Cho, Hyeong-Seop/Choi, Young-Jip 60

FEATURE

Revising Course of Architecture Law/Won, Jong-Il 66

REPORT

The History of Practical Architecture Business/Song, Yul 68

REPORT

Translation of Chinese Architecture Documentary Records/ Kim, Do-Kyeong & Joo, Nam-Cheol 78

House of Kang-neung Province/Chang, Soon-Yong 82

ARCHITECTURE TRAVEL

Gothic Catholic Church Building(5)/Park, Hyo-Soon 86

COMPETITION

Chungju Youth Training Center 96

LAW & ORDINANCES 102

STATISTICS 106

KIRA NEWS 108

Publisher : Oh, Woong-Suk
Editor : Editorial Committee
Chairman : Lee, Chun-Heon
Member : Oh, Yong-Boo/Lee, Joo-Hoon/ Yang, Hae-Yoon/Choi, Tae-Yong/ Lee, Bok/Kim, Chong-Shik
Assistant Editor : Public Relations Department
Publishing Office :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 137-070
TEL : (02)581-5711, 581-5712~4
FAX : (02)586-8823
Registered Number : Seol Ra-26
Registered Date : March 1967
U. D. C : 69/72(054-2) : 0612(519)
Printer : Lee, Bong-Soo(Cheong Moon Printing 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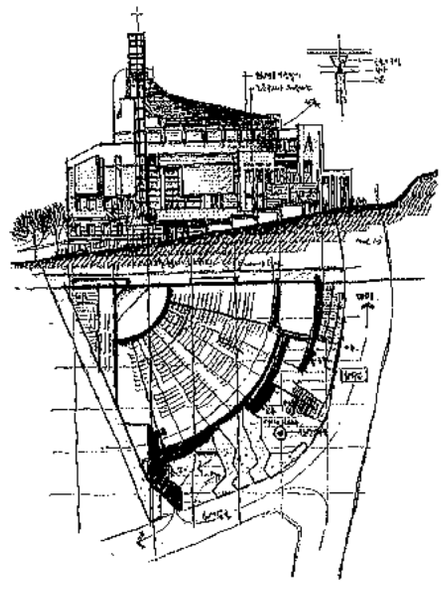

(0391)41-7371 · 속초문화/속초시중앙동466-63, (0392)33-5081 · 삼척문화/삼척시남양동55-43, (0394)31-8708 · 영월문화/영월군영월읍영흥1리960-12, (0373)374-2559

■충청북도건축사회/충청북도청주시복문로3가87-3, (043)56-2752, 53-7342 · 충주문화/충주시연전동673-1, (0441)847-3082 · 제천문화/제천시의림동8-8, (0443)43-6253 · 옥천문화/옥천군옥천읍삼양리222-306, (0475)33-3502

■충청남도건축사회/대전직할시중구대흥동452-2, (042)256-4088 · 천안문화/천안시문화동160-1, (0417)551-4551 · 홍성문화/홍성군홍성읍오관리239-1, (041)32-2755 · 부여문화/부여군부여읍동남리703-1, (0463)835-2217 · 대전문화/대전시대전동197-10, (0452)34-3367 · 서산/(0455)64-8500

■전라북도건축사회/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531-1, (0652)87-6007~8 · 이리문화/이리시남중동1가77-21, (0653)52-3796 · 군산문화/군산시신창동35-4, (0654)43-3816 · 남원문화/남원시 하정동 59-1, (0671)32-5000

■전라남도건축사회/광주직할시서구화정동783-239(추신회관), (062)346-7567, 33-9944 · 목포문화/목포시대안동1, (0631)72-3349 · 순천문화/순천시장천동51-11(061)743-2457 · 여수문화/여수시문수동441번지, (0662)652-7023

■경상북도건축사회/대구직할시동구신천4동338-1, (053)742-8317~8 · 포항문화/포항시죽도동43-8, (0562)44-6029, 46-1664 · 경주문화/경주시동천동801-4, (0561)2-4710 · 구미문화/구미시송정동34-3, (0546)51-1537~8 · 안동문화/안동시선부동157-4, (0571)54-5703 · 김천문화/김천시남산동24-2, (0547)434-2541 · 영주문화/영주시하망3동341-12, (0572)34-5560 · 점촌문화/점촌시중앙동280-3, (0581)53-6677 · 상주문화/상주시남정동36-7, (0582)32-5868 · 경산문화/경산시중방동859-5, (053)812-6721 · 달성문화/달성군화원읍천내리113-3, (053)634-6336 · 영천문화/영천시창구동26-10, (0536)34-8256

■경상남도건축사회/경상남도마산시중앙동3가-47, (0551)46-4530~1 · 울산문화/울산시남구신정동585-6, (0522)74-8836 · 진주문화/진주시본성동7-20, (0591)745-6403 · 충무문화/충무시서호동163-18, (0557)645-7420 · 김해문화/김해시무원동611-1, (0525)35-5692 · 밀양문화/밀양시내일동392-1, (0527)355-4848 · 거창문화/거창군거창읍송정리274-3, (0598)43-6090 · 양산문화/양산군양산읍남부동467-19, (0523)84-3050 · 거제문화/거제군신현읍고현리139-2, (0558)635-3432 · 삼천포문화/삼천포시동금동91-6, (0593)33-9779

■제주도건축사회/제주도제주시2도1동1289-6, (064)52-3248 · 서귀포문화/서귀포시서귀동299-6, (064)62-2233

건설업체의 설계업 허용요구의 부당성

A Bad Claim of Construction Enterprise

李鍾寬/본 협회 홍보위원장
by Lee, Chong-Kwan

자연생태계에는 무수한 생명체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들 개개의 생명체는 지구라는 한정된 환경이 필연적으로 요구하는 생존경쟁, 다시말해 정글의 법칙에 규정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어떤 형태든 생명을 가진 생명체는 이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되새겨 보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 자연생태계를 이루는 무수한 생명체들이 끊임없이 서로 먹고 먹히는 경쟁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욱 큰 자연의 순리, 즉 각 種간의 먹이사슬구조를 근본적으로 파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생태계의 지나친 파괴를 지양하고 자연의 조화로운 법칙을 본능적으로 유지하려는 질서에 따른 것이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먹이를 얻더라도 최소한의 한계가 생태계내에서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생태계를 이루는 하나의 種인 우리 인간도 이러한 자연생태의 생존법칙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생태계의 근본적인 파괴를 지키려는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 또한 인간이 간과하지 말아야 할 자연의 순리라 여겨진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에는 이러한 최소한의 질서마저도 무너뜨리면서 브레이크 없은 정글논리에 사로잡혀 스스로는 물론 타인 마저도 파멸로 몰고가는 이가 많은 것 같다.

최근 우리 건축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종합건설업면허제도에 관련된 한국건설업체연합회의 행태는 자연의 질서에 준하는 사회의 조화로운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무절제한 탐욕의 좋은 예라 여겨진다.

紙上을 통해서도 누차 거론되었지만 한국건설업체연합회가 요구하는 종합건설업면허제도의 요지는 이렇다.

오는 97년부터 국내건설시장의 완전개방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건설업체들이 외국업체의 하청업체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늦어도 내년부터 현재의 건설업면허제를 종합화하여 국내건설업체의 실질경쟁력을 배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구체적 종합화 방안으로 이들의 주장은 현재의 업종과 업역, 부처별로 분리되어 있는 건설업면허체계를 종합건설업면허제로 일원화해야 하고 종합건설업면허가 어려울 경우에는 건설관련업체별로 능력에 따라 종합적인 건설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우리 건축사의 업무와 연관시켜 좀 더 구체적으로 요약하자면 현재의 국내 건설업면허체계는 설계와 시공의 분리로 프로젝트개발 등 다양한 건설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건설시장개방시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건설업종합화 방안과 종합건설업면허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UR타결로 예상되는 외국건설업체에 대응한 국내시장의 보호와 국내건설업체의 효과적인 해외진출을 위해 국내건설업의 국제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한국건설업체연합회의 주장에 우리는 적극 동조한다.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 건축사법 개정을 통한 종합화만이 대안인 양 주장하는 이들의 요구는 심각히 숙고해야 할 문제라 여겨진다.

환경이 변하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 이에 부응하는 법개정은 법자체가 인간을 위하고, 인간의 사회활동을 원활히 하기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때의 법개정일지라도 최소한 입법의 기본정신을 보호, 유지하는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상식이다. 단기적인 긍정효과만을 노려 무리하게 개정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한국건설업체연합회의 종합건설업면허제도를 위한 건축사법개정요구는 건축설계, 감리를 시공과 분리하여 서로 견제와 감시를 통한 협력을 통해 건강한 건축문화를 추구한다는 건축사법 입법의 기본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대형자본의 힘을 무기로 한 나라에서 차지하는 전문업역으로서 건축사의 설자리를 빼앗으려는 오만에서 나온 논리임을 지적하면서 이 주장의 허구성을 헤쳐보고, 건축·건설업의 진정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현명한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건축문화의 발전도 물론이거니와 역사이래 인간이 이룩해 온 찬란한 문명도 더 나은 삶을 위한 선조들의 자기와 타인 그리고 자연과의 경쟁에서 이루어진 성과물이기 때문에 건전한 경쟁은 발전을 위해 가장 적절한 매개임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쳐 다양한 분야의 조화로운 협업으로 이루어진 사회구조의 틀을 흔든다면 이것은 발전을 위한 경쟁이 아니라 파멸을 위한 경쟁일 뿐이다.
> 정글의 법칙을 따를지라도 결코 그 범위와 한계를 넘지않는 자연생태계의 법칙이 주는 교훈을 아는 한국건설업체연합회의 지혜가 아쉽다.

먼저, 현 제도에서도 건설업체가 건축사를 대표로 내세워 독립된 법인을 설립하면 자체적으로 설계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로도 건설업체가 요구하는 종합화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살려 국제경쟁력 배양에 매진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건설업체가 내세우는 이 주장은 단순히 국내시장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뿐이지 국제경쟁력제고를 위한 법개정의 명분이 결코 될 수는 없다.

건축사법의 기본정신을 존중하면서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경쟁력 배양을 위해서는 정보교환과 상호지원 등 기존의 협업체계를 더욱 긴밀히 하는 것이 경쟁력확보를 위해 우선되어야 한다.

일례로 우리가 개방화에 대비하여 본보기로 삼고 있는 미국의 Becthel, Parsons Group등 세계적 회사들도 사실은 종합건설업체가 아닌 대규모 CM(Construction Management)회사로서 건축설계는 건축사사무소, 시공은 시공회사를 선택해서 콘소시엄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다음으로, 한건연의 주장을 보면 국내건설업체가 해외에 진출하여 외국건설회사와 경쟁을 할 때 설계, 시공이 통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마치 경쟁에 뒤지고 있는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국내 건설업체가 해외건설업에 진출할 경우 국내 건축사면허가 전혀 필요없는 실정이며, 건설업체가 국내 건축사면허를 갖지 않더라도 외국업체와의 경쟁에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건설업체가 건축사법개정을 통한 종합건설업 면허제도를 집요하게 주장하는 속셈은 금년초 설계·감리요율이 현실화되어 국내설계 시장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시공과는 독립된 설계분야 마저도 흡수하여 이윤의 극대화를 취하자는 의도에 불과하다.

사실 건축시장의 개방화에 적극적으로 대항하기 위해 해외진출을 하여 국위를 선양하기를 원하는 건축사는 해외진출에 따른 각종 국내 제도가 건설시공회사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처지다. 따라서 개방에 따른 경쟁력제고를 위해서는 건설의 소프트웨어 분야로서 건축사의 전문업역인 설계가 해외에 진출하는데 자유로울 수 있도록 건설시공회사가 일변도의 해외진출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다.

마지막으로 건축물은 계획에서 완성단계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고 있고, 각 단계는 자체의 축적된 기술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가발전해 가고 있다.

즉, 각 과정에서 얻는 개별작업의 성과물은 다음 작업에 반영되어 유용하게 활용되는 것이지 타분야에 반영되어 그 분야를 좌우할 만큼의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한다. 따라서 건설업체가 종합화의 상승효과로 거론하고 있는 시공과정에서 획득된 시공 성과물은 시공의 발전을 위해 환원되어 완벽한 시공을 위한 기술향상에 활용될 사항이지, 설계에 반영되어 설계의 발전을 주도할 만큼의 효과는 구조적으로 기대할 수 없다. 엄연히 설계는 설계자체의 순환구조에 의해 기술축적을 통한 발전을 할 수 밖에 없는 전문영역이기 때문이다.

모름지기 설계분야의 질적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국내건축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설계 노-하우를 존중하고, 육성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그것이 설계자체의 기술력 향상과 건축·건설시장 개방에 대비하는 지름길이다.

건축문화의 발전도 물론이거니와 역사이래 인간이 이룩해 온 찬란한 문명도 더 나은 삶을 위한 선조들의 자기와 타인 그리고 자연과의 경쟁에서 이루어진 성과물이기 때문에 건전한 경쟁은 발전을 위해 가장 적절한 매개임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쳐 다양한 분야의 조화로운 협업으로 이루어진 사회구조의 틀을 흔든다면 이것은 발전을 위한 경쟁이 아니라 파멸을 위한 경쟁일 뿐이다.
정글의 법칙을 따를지라도 결코 그 범위와 한계를 넘지않는 자연생태계의 법칙이 주는 교훈을 아는 한국건설업체연합회의 지혜가 아쉽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과 의무

Our Authorities and Duty

金 麟/종합건축사사무소 가전
by Kim, Lin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에 대한 보수요율을 상향조정하여 시행한지 반년이 되었다. 건축행정의 측면에서 보면 권한에 상응한 의무로서 현상조사검사 업무를 대폭 위임하는 등 일련의 조치들이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조정 이전에 비하여 배에 가까운 설계 감리비를 부담하고 있는 건축주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떠한「서비스」개선이 이루어졌는지 반성해 보아야 할 시점에 있다.

우리가 건축주에게 제공하여야 되는 실질적인「서비스」는 건축물의 질을 높여주는 일이 되어야 마땅하다.

지난날 대다수의 건축주들이 우리에게 요구했던 것은 건축물의 문화적 가치나 품질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행정적인 필요에 의한 요식적인 절차였다. 따라서 건축물의 품질이나 하자에 관한 문제는 설계감리자보다 공사시공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이제 건축설계 및 감리의 보수요율이 상향조정되어 시행중에 있으나 감리자의 업무한계가 명쾌히 정리되지 못한 현실에서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더욱이 허가권자가 수행하였던 현장조사검사 업무의 대부분을 설계자 혹은 감리자에게 위임하여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였기 때문에 건축주와의 새로운 관계성립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크게 나누어 두가지 방향에서 우리의 업무영역을 정리해야할 것 같다. 그 첫째는 건축주에게 제공하여야 할 설계 혹은 감리의 보수에 상응하는 업무한계의 명확한 정립이다. 그리고 두번째는 건축물이 갖는 사회문화적인 공공성에 근거하여 제반 법제상의 조사 검사업무와 행정지도에 대한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확실하게 해두는 일이다.

이미 조정된 설계비 및 감리비의 보수에 합당한 업무영역의 한계는 우리 내부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좀더 중요한 것은 대외적으로 객관성과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업무내용에 대한 대국민적인 동의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96년부터 건설「서비스」의 수입 개방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만큼 추후 어떠한 국제적인 용역계약에 적용하더라도 손색이 없는 설계 및 공사감리에 대한 업무지침과 용역계약의 표준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1986.1.1부터 1993.6.30까지의 감사실태 자료에 의하면, 동기간의 공공건축공사 중 부실공사로 적발된 공사건수는 671건이며, 부실요인을 분류하면 설계의 부적정 건수가 258건으로 38.5%에 달하며, 부당시공 206건의 30.7%보다 7.8%나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대한 건축학회에서 1992.7에 조사 분석한 자료를 살펴보자. 1978년~1990년 사이에 구조안전진단을 수행한 건물중 구조체에 하자가 발생하여 보강한 130건의 사례를 하자원인별로 분류하면, 구조계산의 잘못이 57.4%이고, 설계의 잘못이 23%이며 시공의 잘못이 19.6%이다. 엄밀히 분류하면 구조계산과 설계의 잘못은 모두 설계부분으로 보아야 하므로 설계에 의한 하자가 80.4%로서 구조체 하자의 대부분이 설계의 잘못임을 알 수 있다.

정부는 1994년을 부실공사 방지의 원년으로 정하여 부실방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앞에서 제시한 자료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부적정한 설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실공사의 비율이 당해건수의 38.5%에 달하고, 설계상의 과오로 인하여 발생하는 하자원인의 비율이 당해건수의 80.4%를 차지하는

> 이제 우리는 본연의 업무인 건축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이 지침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설계계약서나 감리계약서에도 업무범위와 「서비스」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건축주에게 제공함으로써 우리의 의무를 다하고 충분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현실을 감안하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가 분명해진다.

과거 허가권자가 수행하였던 현장조사검사 확인 업무의 대부분이 설계자와 감리자에게 위임되어 있고 아직까지 위임되지 않은 부분도 빠른 시일내에 위임할 계획을 정부는 수립해 놓고 있다. 건축물의 적법여부를 조사 검사하는 권한과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설계자와 감리자에게 귀속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이다. 현장의 조사검사 업무를 설계자와 감리자에게 모두 위임하여 책임을 지게하는 건축행정의 사례는 다른 나라에서는 그 예가 없는 우리만의 불행한 현실이다. 현장조사검사 업무는 허가권자가 가져야 할 본연의 업무이며, 이를 외면하는 것은 본연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므로 장기적으로 보아 환원되어야 옳은 일이다.

건축설계비와 감리비가 상향조정된 직접적인 요인은 대외적으로는 96년으로 계획된 건설 「서비스」의 개방화 정책이며, 대내적으로는 부실공사의 근절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그 배경에는 설계 및 감리업무의 강화된 내용과 책임이 뒤따르고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앞으로는 부실공사가 적발되거나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정확히 밝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 정부 건설정책의 기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인 대비가 충분히 있어야 한다. 문제된 건축물이 설계 감리상의 하자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민사상의 배상문제 등 선진국에서 흔히 보는 법적인 사건들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치 못한 과실이 배상이나 변상의 사태로 번질 수 있는 경우에 대비하여 설계 감리 용역에 대한 선진국형 보험제도를 도입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설계와 감리의 업무내용이 갈수록 다양화되고 업무량도 확대됨에 따라 하자 발생요인도 같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건축공사에 있어서 설계자나 감리자가 건축주에게 제공하여야 할 「서비스」의 내용은 주로 전문정보를 제공하는 일과 건축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는 일이다. 이러한 일들이 상대에 따라 즐거운 일이 될 수도 있고 곤혹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이러한 작업들을 게을리하거나 포기할 수는 없다. 게을리하거나 포기하였을 경우는 반드시 후회가 따르며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건축가가 지게 되기 때문이다.

어려운 건축주를 만나 공들여 이해시키고 설득하여 소망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즐거움은 우리 직업만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수에 합당한 업무의 실체가 어디까지인지를 깊이 생각하여야 한다. 건축주가 부당한 보수를 지불하였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쪽에 잘못이 있다고 전제하여야 한다.

일년여 후인 1996년이 되면 선진국의 우수한 기술진이 국내에 진출하여 건축주를 사이에 두고 우리와 경쟁을 벌이게 된다. 건설 「서비스」의 개방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본연의 업무인 건축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이 지침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설계계약서나 감리계약서에도 업무범위와 「서비스」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건축주에게 제공함으로써 우리의 의무를 다하고 충분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예닮교회

Yedarm Presbyterian Church

(주) 정림건축
Designed by Junglim Architects & Engine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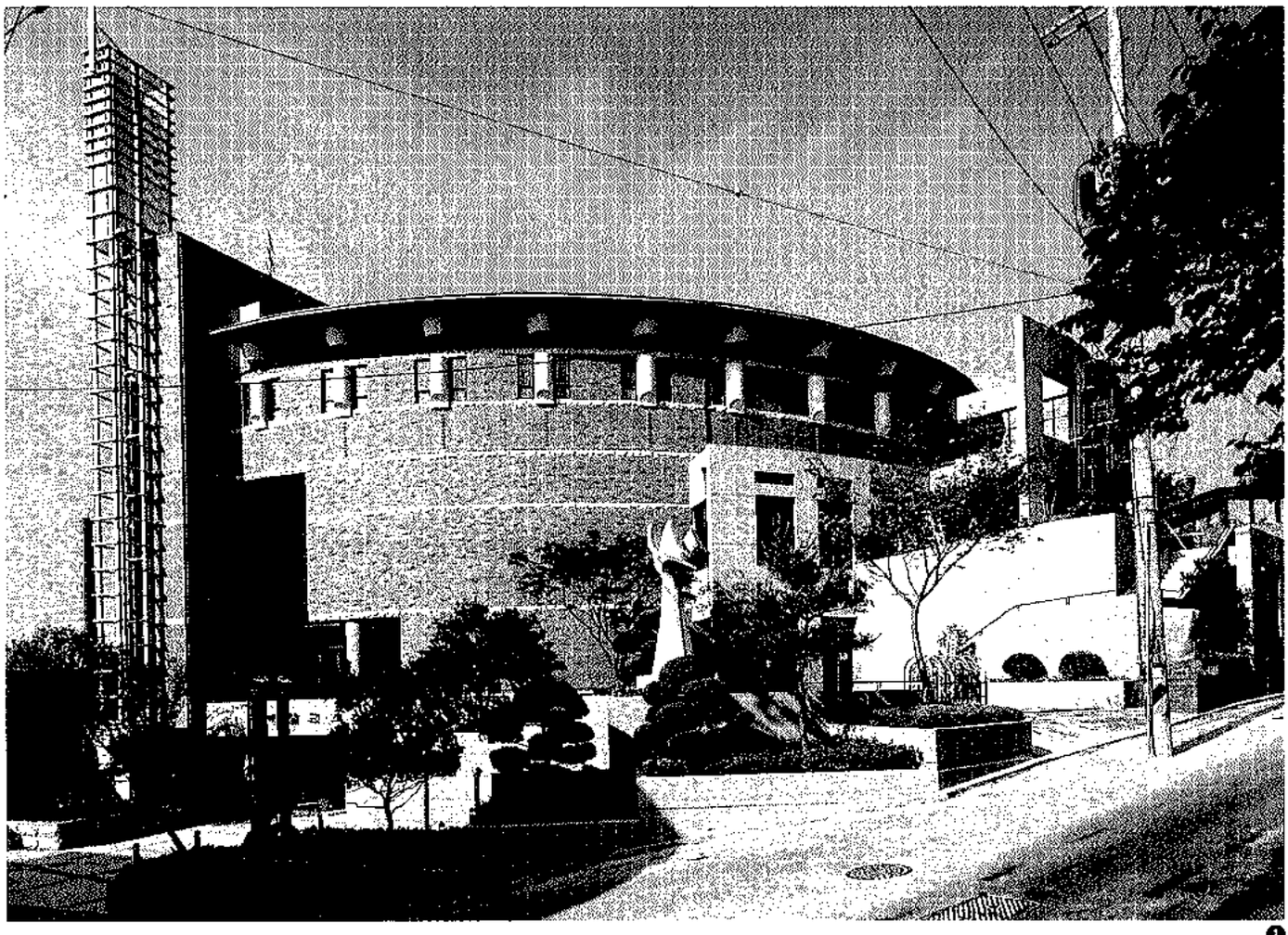

❶

위치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4가 103-25, 103-24, 103-18
지역·지구 / 일반주거지역, 주차장 정비지구
대지면적 / 2,026.7㎡
건축면적 / 890.64㎡
연면적 / 4,392.9㎡
건폐율 / 43.94%
용적률 / 152.07%
규모 / 지하1층, 지상4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일부 철골트러스조
외부마감 / 벽－붉은 벽돌 치장쌓기, 치장 콘크리트, 화강석 혹두기, 복층 유리
지붕－동판 성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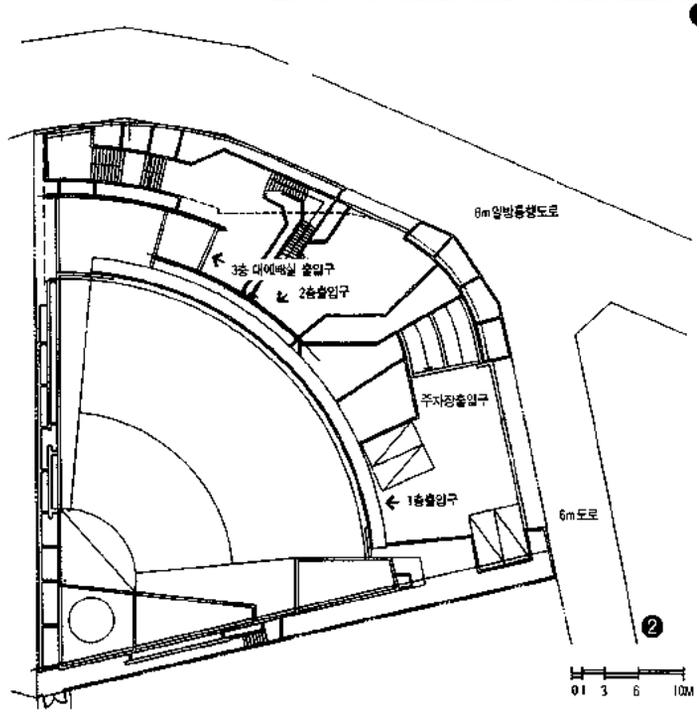

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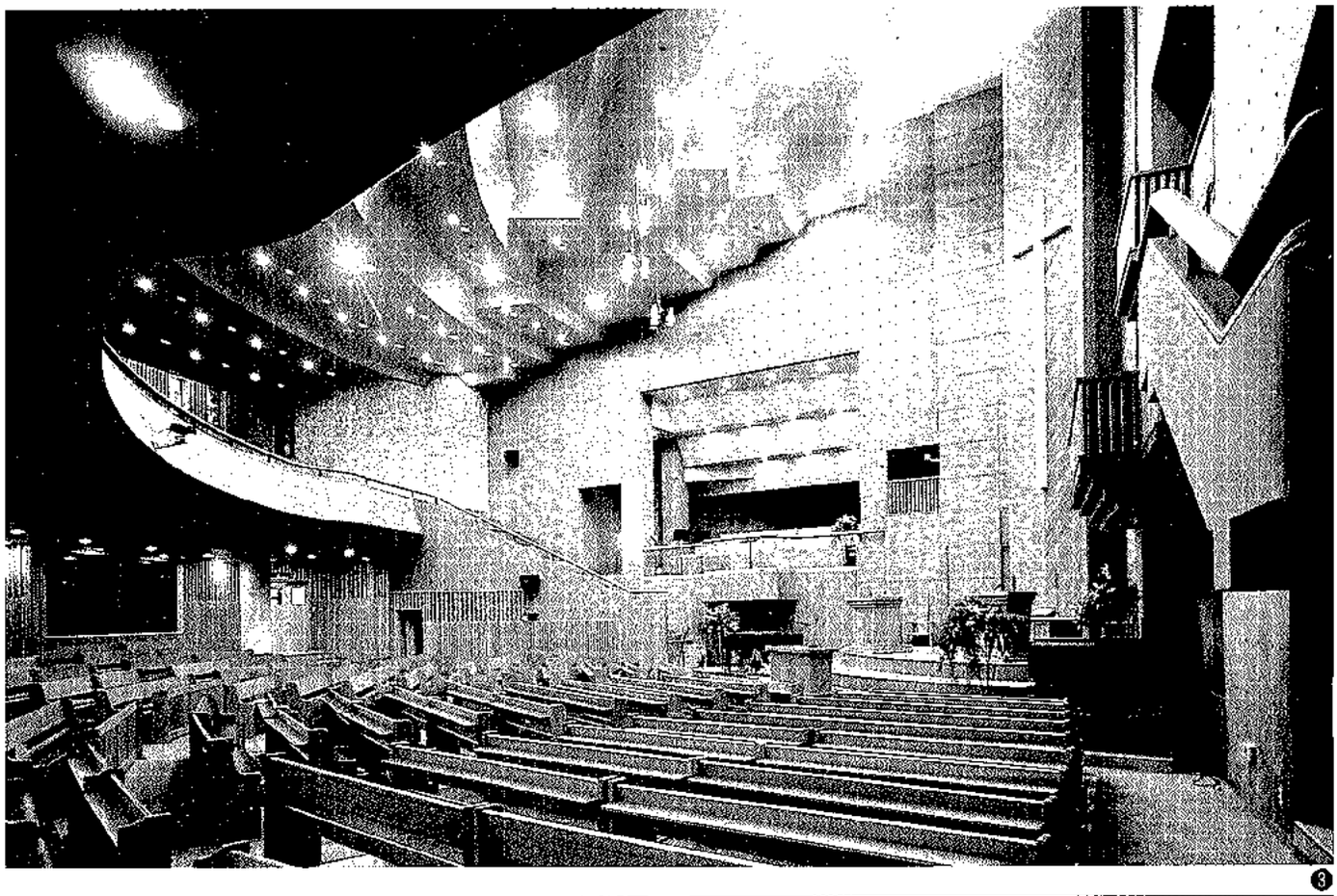

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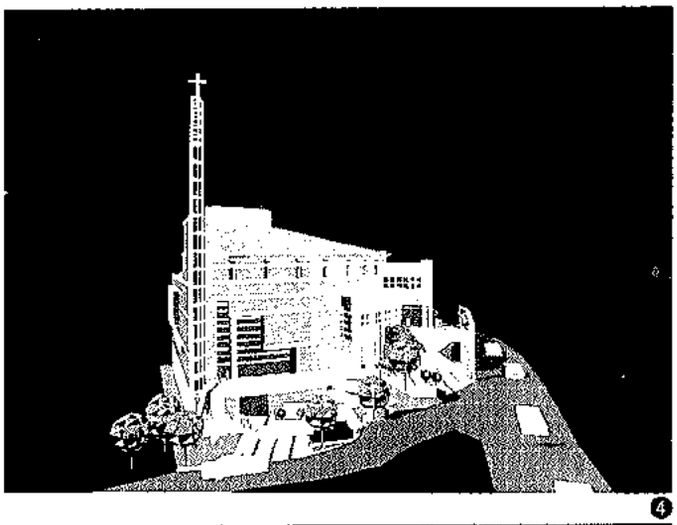

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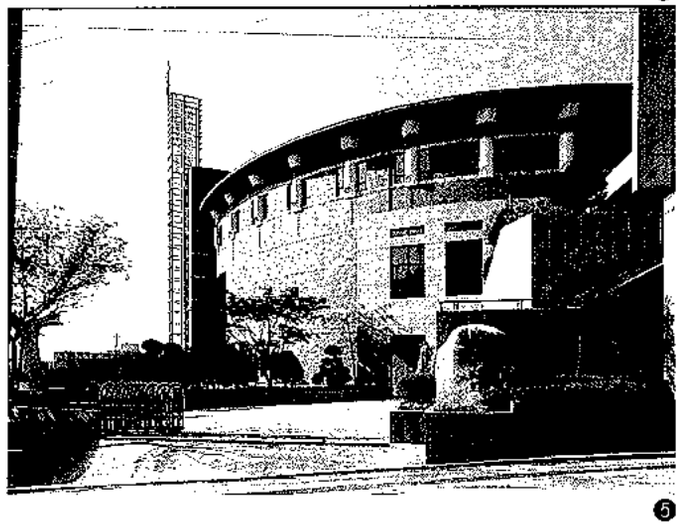

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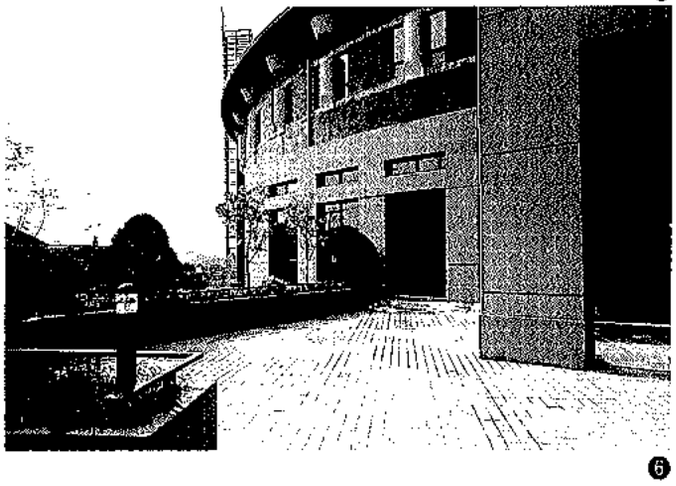

❻

❶ 6m 도로에서 본 전경
❷ 배치도
❸ 3층 출입구에서 본 대예배실 전경
❹ 모형도
❺ 8m 도로에서 본 전경
❻ 3층 출입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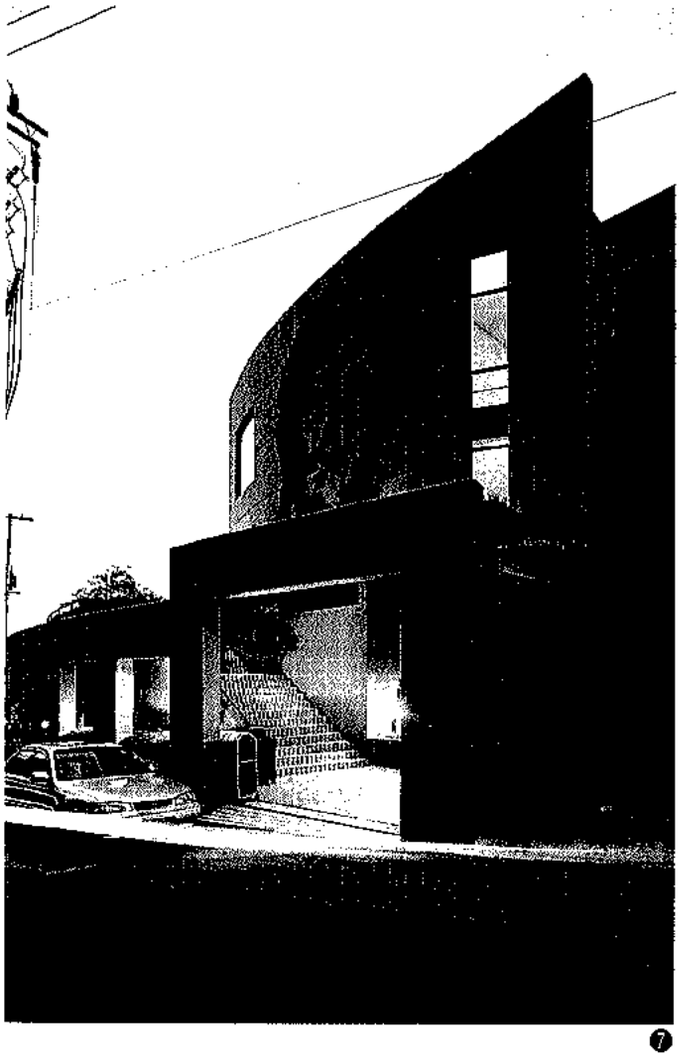

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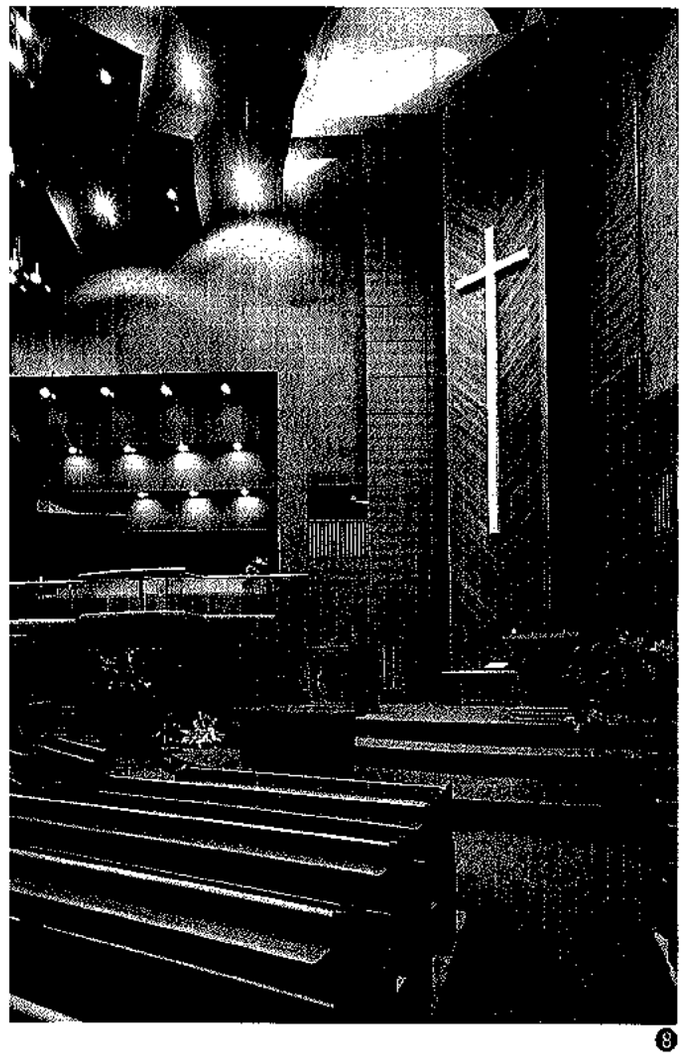

⑧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 1:1)

그로부터 우리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독립된 또 하나의 공간(shelter)을 만들기 위해 수많은 건축물을 짓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그 지역별로, 용도별로 독특한 구성 양식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고대, 근대 그리고 현대로 이어지는 오늘날에도 무수히 많은 양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즈음에 예닮교회 건축을 위한 설계 업무를 맡음에 책임감과 더불어 그 희열감은 우리들을 감흥시키기에 충분하였으며, 그것은 대지를 답사한 후 더욱 충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서울의 자연 환경은 북쪽을 감싸는 북한산 줄기와 남쪽을 흐르는 한강의 자태로 수려한 경관을 가지고 있으며,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를 참고로 주변의 지세를 살펴보면 "한양은 북악 즉 백악을 주산으로 삼아 그 좌우 기에 의하여 환속된 곳이니, 백악의 우기는 서로 달아나 인왕산을 일으키고 돈의문(서대문), 소의문(서소문), 숭례문(남대문)을 거쳐 다시 남산을 동으로 뻗어 혜화문(동소문)을 지나 낙산에 이르러 무릎을 꿇었다.…"
(이병도의 풍수적 해석)

이와 같이 뒤로는 북한산 산자락을 기대고 앞으로는 멀리 영을 넘어 관악산이 맞이하고 남쪽으로 끝없이 펼쳐지는 수도 서울의 모습이 길게 엮어지는 남향받이 구릉지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은 우리 근대사에서도 그 의미를 가지는 돈암강 지역으로 그야말로 역사성과 지역성이 함께 하는 곳이며, 근래에 와서는 주변 환경의 쇠퇴로 새롭게 재개발이 요구되고 현재 또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계획 목표로는 지역 선교의 중심지로서의 사명을 가질 수 있는 역할을 수용하며, 주변 환경을 이끄는 강한 중심적 조형과 선교적 소망을 담는 형태를 구성하고, 소박하고, 자연스럽고, 한국적인 우리의 고유미가 존중될 수 있는 우리의 교회 창출을 시도한다.

배치 계획으로 기존의 지형을 최대로 이용한 동선 처리와 도시 가로축을 수용하여 우측 6m 도로의 낮은 레벨에서 1층과 지하 주차장으로의 차량 진입을 유도하고 후면 8m 도로에서는 대예배실 진입을 위한 계단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그 중간 모퉁이 지점에 2층 진입과 더불어 작은 마당을 확보하여 전체적으로 접근성이 편리하고 담장이 낮은 열려있는 장소 표출로 모퉁이 양도로측으로 많은 외부공간을 확보하며, 충분한 조경과 의도적인 예술 장식 조형물 설치로 주변 환경에 편의성을 기여토록 하였다.

각 층의 평면 계획으로는 교육, 사무, 선교 기능을 1층과 2층에 배치하였으며, 특히 작으나마 유치원과 탁아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장차 지역 사회 기여에 따른 선교적 봉사 활동의 구심체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3층과 4층의 대예배실은 보다 한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공간이 되도록 부채꼴형 중앙 집중식 좌석 배치로 구성하여 총 950석의 예배석이 배치되며 특히 일부 발코니층의 좌석 연결 배치는 연속된 공간으로서의 일체감을 갖도록 하였다. 70석 규모의 성가대석은 시각적, 음향적 기능이 고려된 위치로(우측 중층) 배치하였으며, 특히 2층의 소예배실은 그 규모가 250석 정도 수용가능하며 활용도 높은 이용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부대 시설로는 지하 1층에 30대 이상, 통로 포함하면 50대 정도 주차 가능한 주차장을 배치하였으며, 지하 지질 구조상 가장 낮은 위치에 지하 3층에 해당하는 파워 플랜트(power plant)를 배치하였다.

예닮교회의 조형으로 표출되는 입면 계획으로는 정중한 직선면과 부드러운 원형의 조화로 조용하면서도 동적인 느낌의 흐름이 안정되고 화합된 예닮의 의지와 그게 파장되어 나가는 선교적 이미지를 표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주변의 랜드마크적, 상징적 조형 창출로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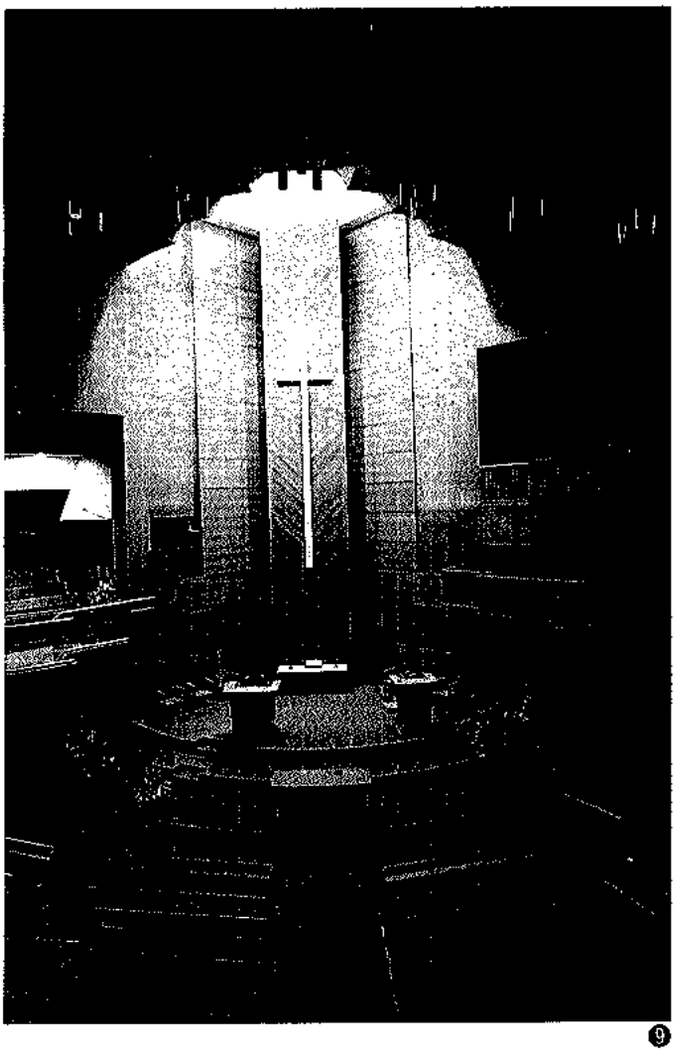

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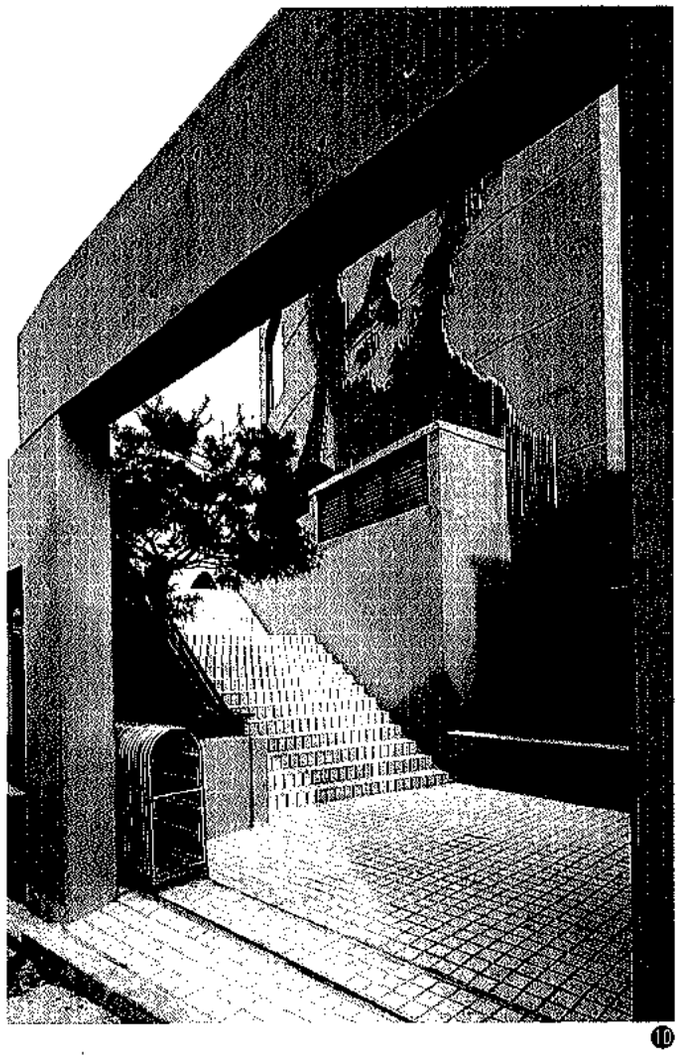

❿

체되지 않고 항상 앞서 전진하는 움직이는 교회로서의 인지도와 4면이 서로 다른 다양한 모습으로서 표출됨은 리듬감있는 외적 공간 구성과 더불어 항상 새롭게 친근감을 유도토록 의도하였다.

처마, 공포, 기둥의 이미지를 유추 재해석하여 현대화함으로써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어주는 시간과 공간의 영속성을 예시하며 자칫 경직, 중량감을 줄 수 있는 종탑 표현은 그리드에 의한 격자 패턴으로 구성함으로써 경쾌한 경량감과 함께 소망과 비전(vision)을 담은 우리 것에 대한 상징성 추구 및 한국적 이미지를 수용 제시하는 새로운 교회형태로 시도하였다.

외장 재료로는 내구성있는 화강석을 기단부로 사용하고 붉은 벽돌과 노출 콘크리트의 적절한 조화로 화려하지 않고 소박한 친근감과 고전적이면서도 현대적인 느낌으로 그 이미지를 주도록 하였다.

기타 자연채광, 자연통풍 그리고 유지관리와 편익성을 고려한 에너지 계획을 하였으며, 대예배실의 3,4층은 여유있는 층고 계획과 주공간으로서의 개방감을 충분히 확보토록 하였으며 설교대 상부 철강의 빛과 음향적 효과를 고려한 예배장소로서의 인테리어를 구상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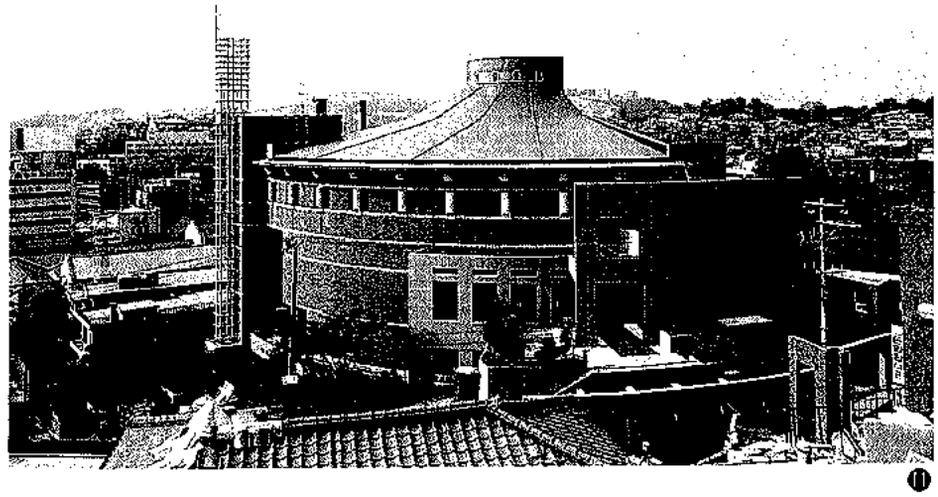

⓫

❼ 3층 출입구측 야경
❽ 대예배실의 예배석에서 본 설교대와 성가대석
❾ 2층에서 내려다 본 대예배실 설교대
❿ 3층 출입구 디테일
⓫ 예수상 부조가 보이는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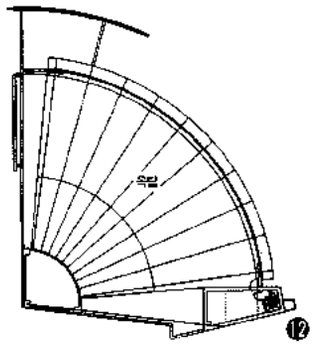

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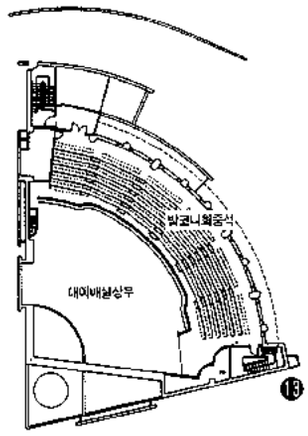

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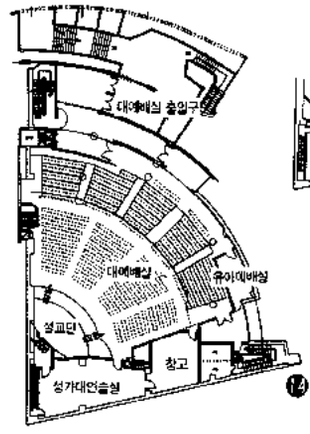

⑭

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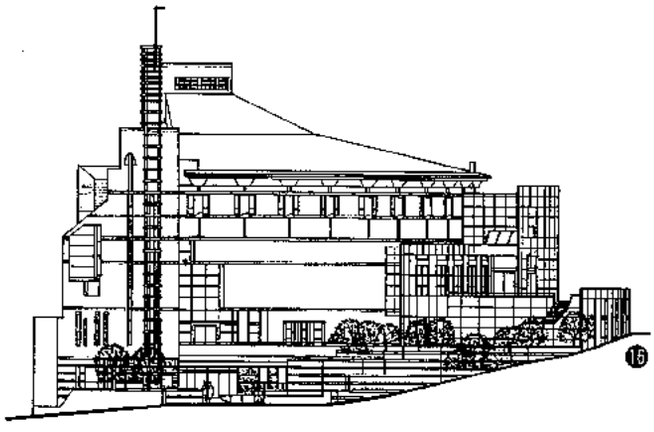

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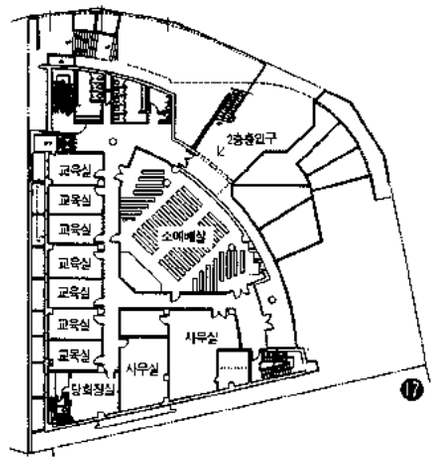

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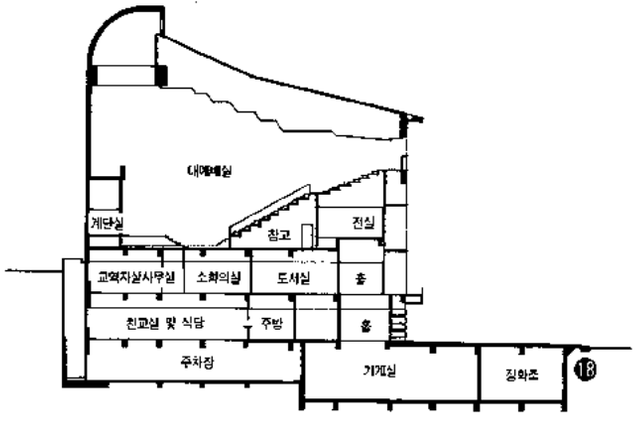

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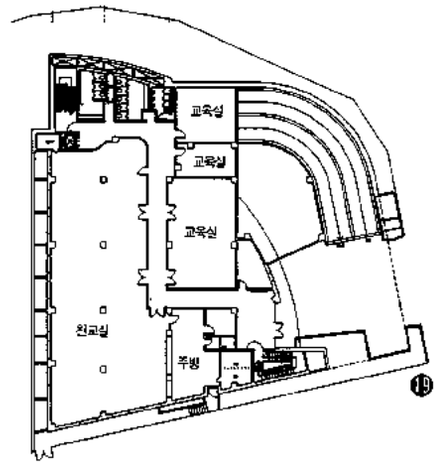

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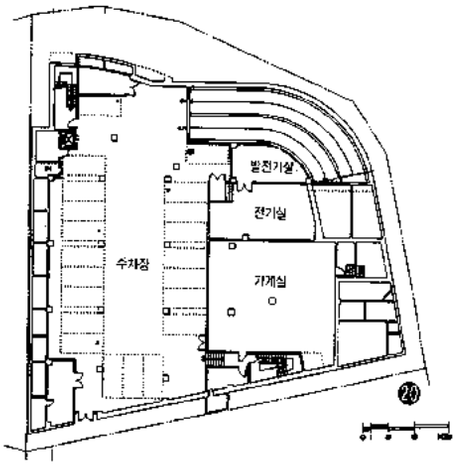

㉔

⑫ 옥탑층 평면도
⑬ 4층 평면도
⑭ 3층 평면도
⑮ 중3층 평면도(성가대석)
⑯ 등측면도
⑰ 2층 평면도
⑱ 횡단면도
⑲ 1층 평면도
㉔ 지하1층 평면도
㉑ 야경
㉒ 스케치
㉓ 모형도
㉕ 설교대 상부 및 천장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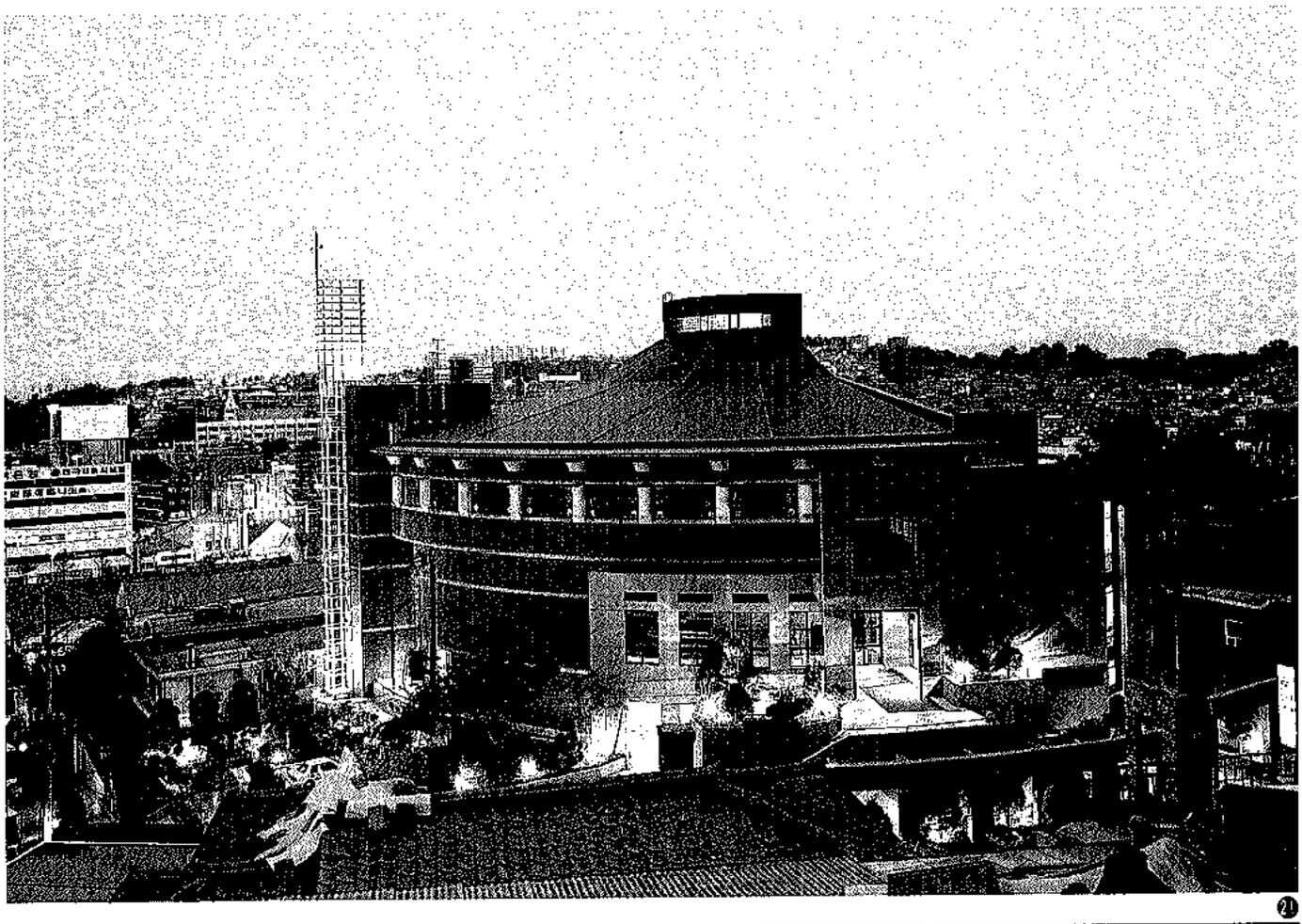

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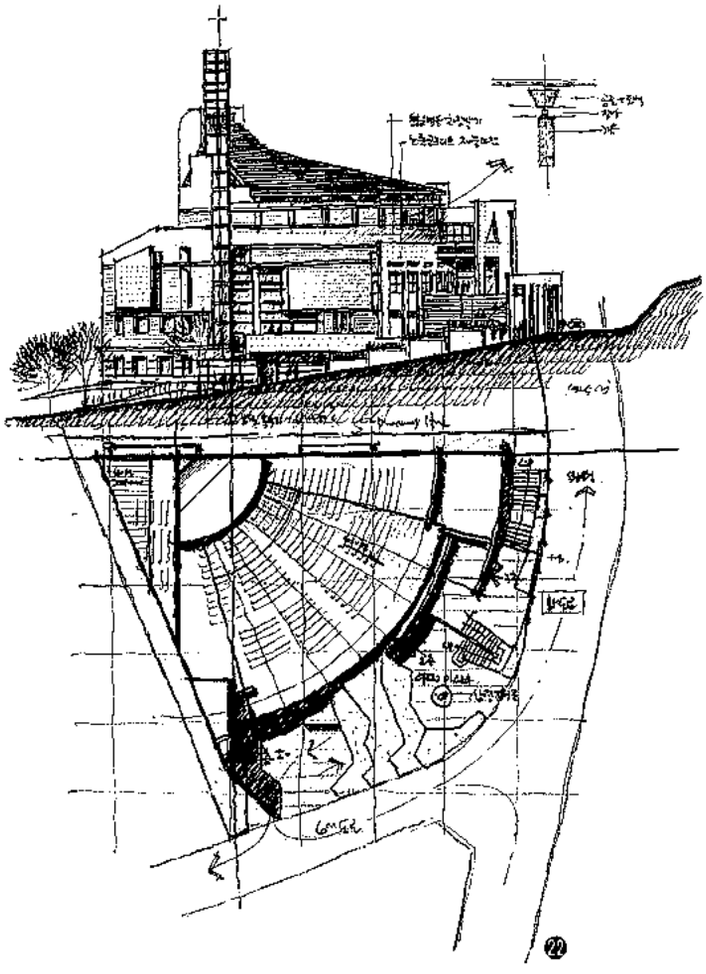

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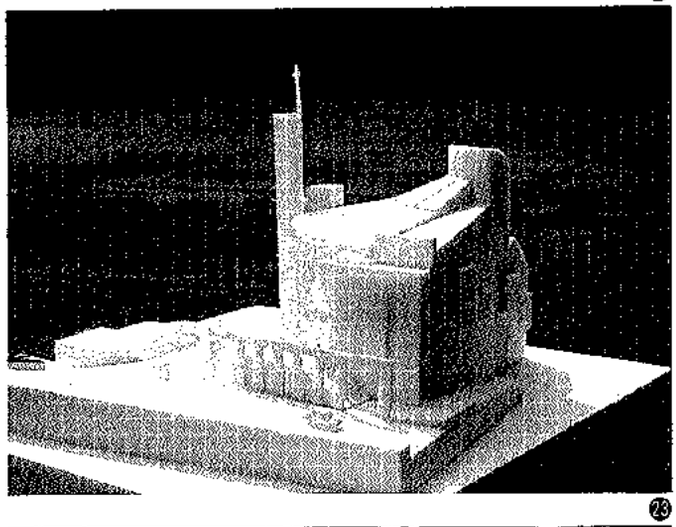

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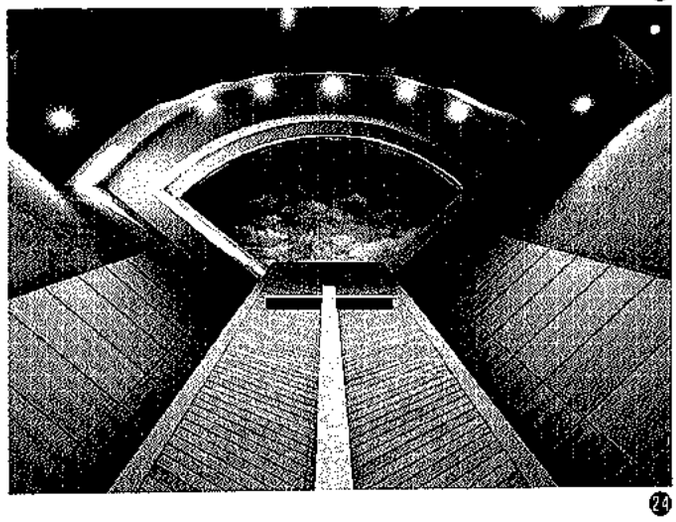

㉔

서울증권사옥

The Head Office of Seoul Securities Co. LTD.

金 浩/(주)부림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Ho

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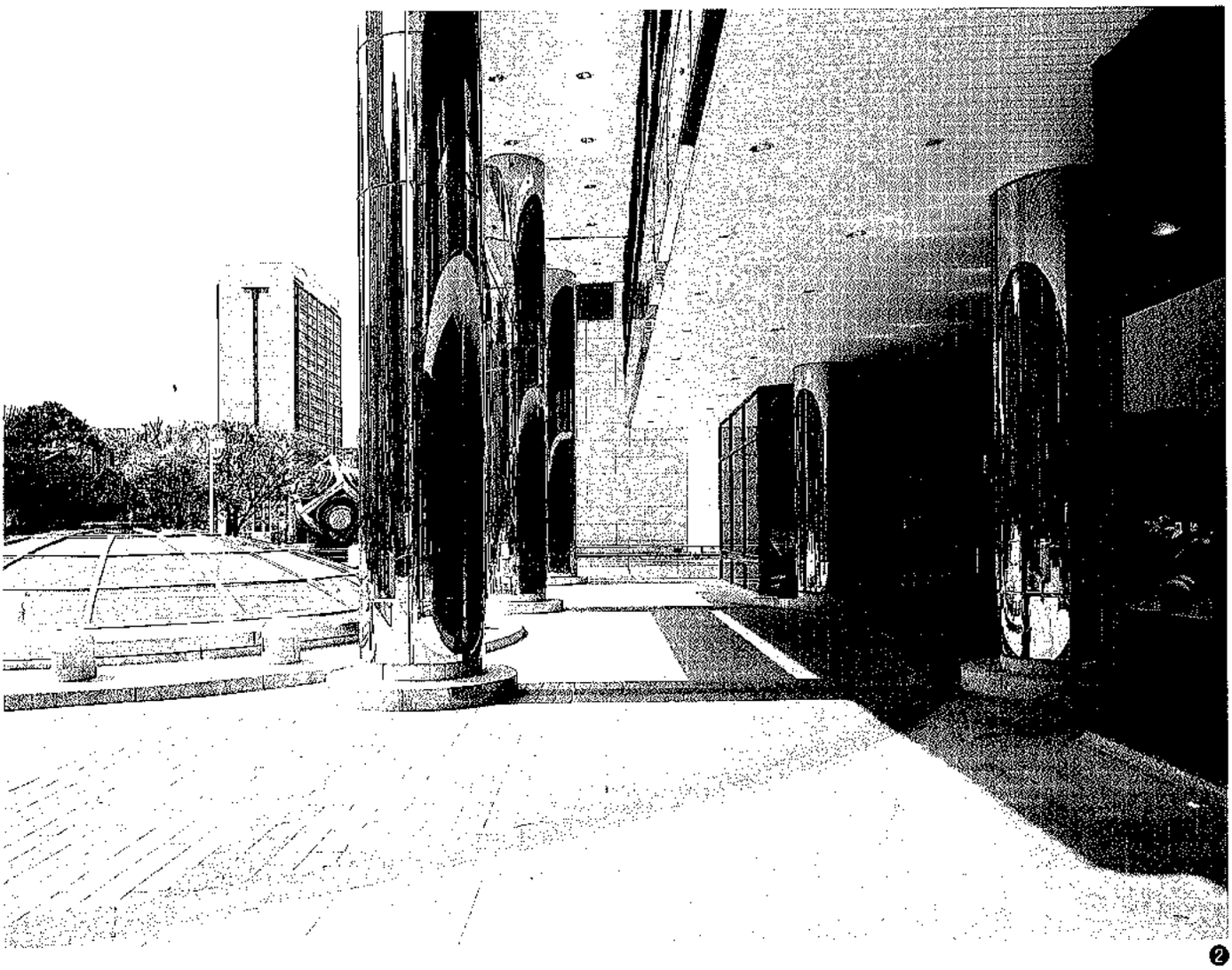

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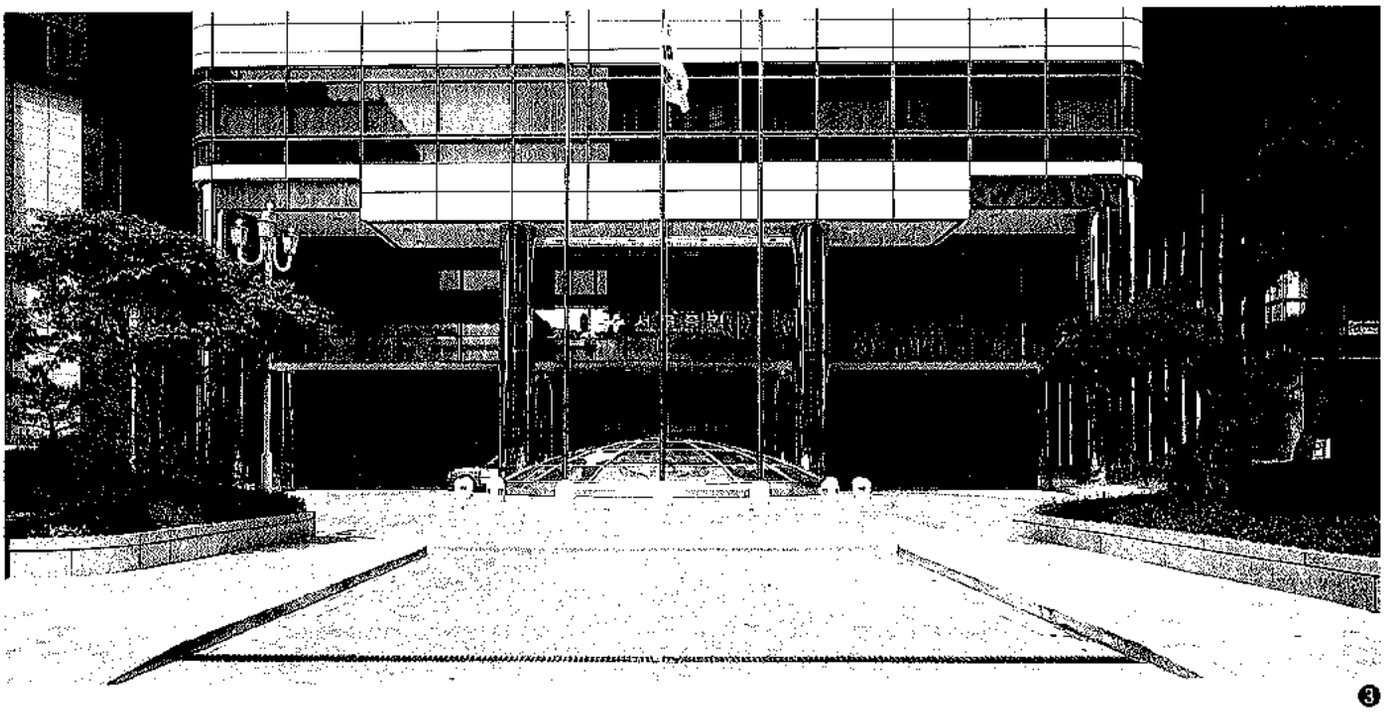

❸

위치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9
대지면적 / 3,176㎡
건축면적 / 1,266.615㎡
연면적 / 40,439,985㎡
건폐율 / 39.88%

용적률 / 694.1%
규모 / 지하6층 지상 20층, 옥탑2층
구조 / 철골및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 법랑패널, 화강석 판재
AL.BAR/24㎜ 복층유리

❶전경
❷정면 주출입구 캐노피
❸주출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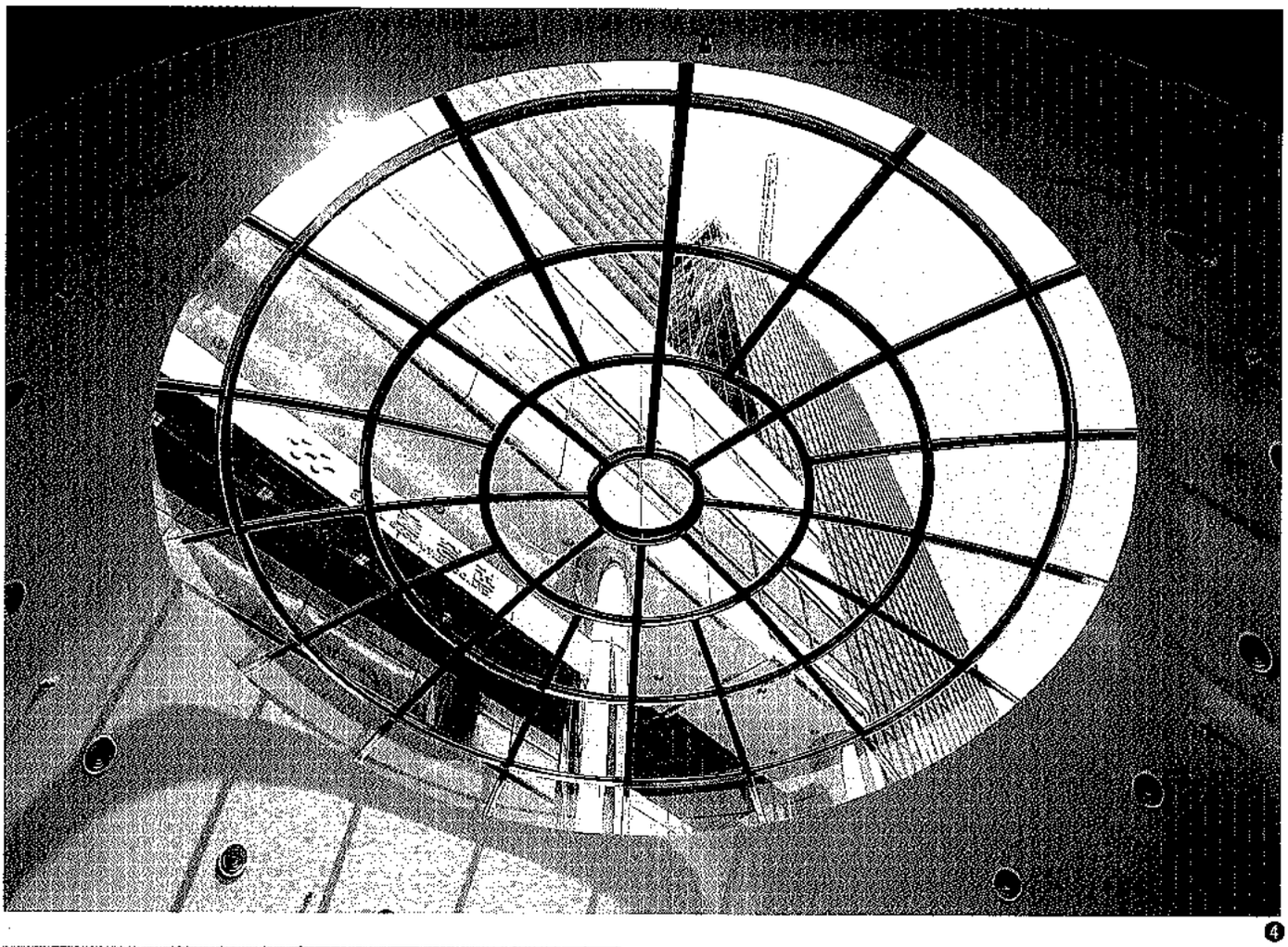

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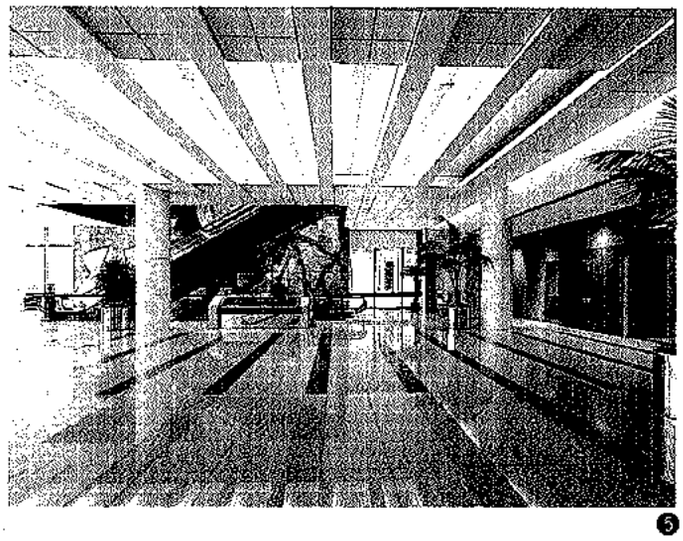

❺

❻

❹지하1층에서 본 탑라이트 상부
❺1층 로비
❻지하1층 증권영업장
❼옥외 계단에서 올려다 본 모습
❽지하1층 휴게실
❾20층 식당전경

1. 배치 및 동선계획

여의도 광장을 전면에 두고 10,000여평(33.058㎡)의 대지에 서울, 고려, 제일, 쌍용, 선경증권 등 9개사의 증권사옥이 들어서 증권타운이 형성되었는데, 서울 증권사옥의 부지는 여의도 광장을 도심축으로 볼 때 후면 대지에 동양증권과 선경증권사옥을 사이에 두고 위치한다.

본 건축물은 높은 집적도의 사회적, 상업적 중심기능을 상징하도록 주변여건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대지경계선에서 30여m를 두고 후퇴하여 건축선을 조성하고, 대지후면은 3.5m 폭의 공동 조경 Zone을 두어 개방감을 최대한 느낄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또한 보행자의 Approach에 친근감을 주기 위해 지상주차를 억제하고 보행자와 차량동선을 적절하게 분리함과 동시에 차량동선을 One Way 방식으로 처리하여 보다 합리적인 동선을 유도하였다.

2. 외관과 조경개념

외관계획의 기본개념은 최대의 경제성과 공간의 효율성을 위해 전체 Mass을 구형(矩形)으로 하고, 장식적인 요소를 가능한 절제하여 저층부와 고층부를 Mass로 분리, 완만한 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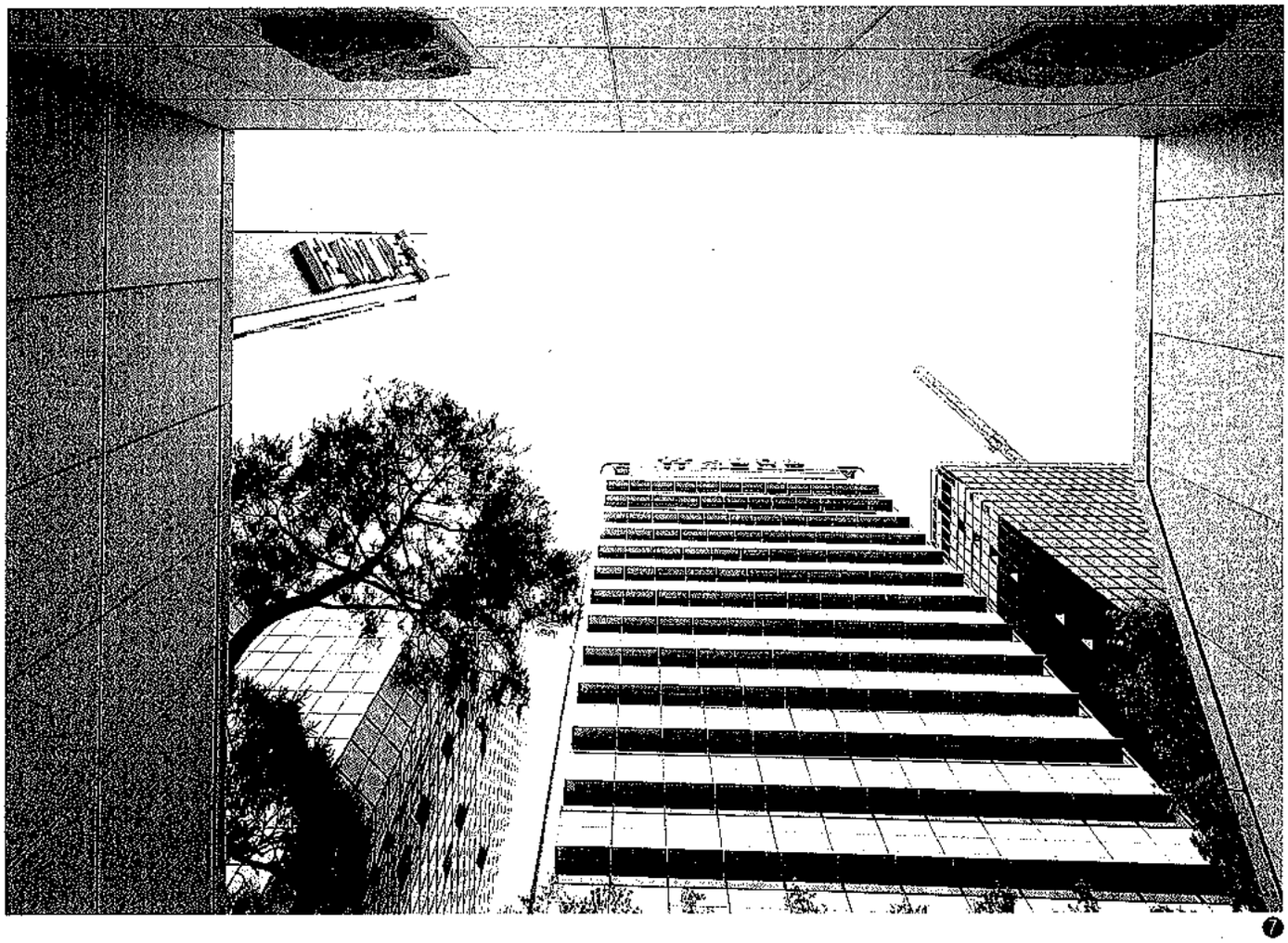

⑦

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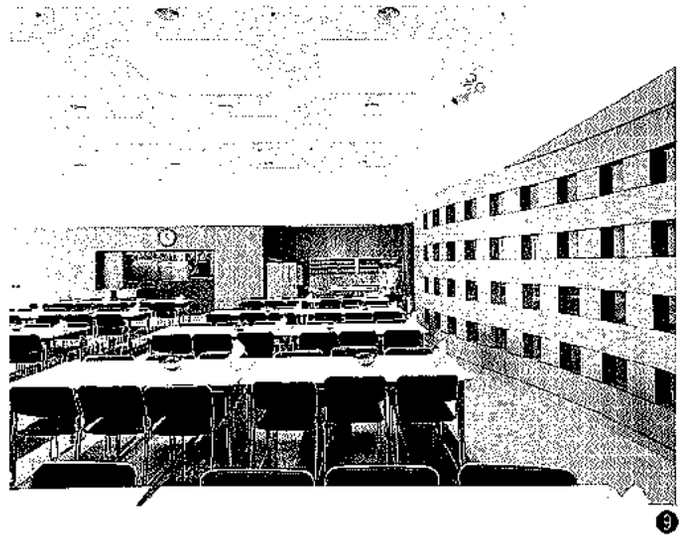

⑨

화를 주어 수직적인 상승감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전면부는 빕랑 Pannel과 스테인레스 스틸을 적절하게 혼합 배치하여 수평적 요소를 강조하고, 배면부는 국산화강석을 사용하여 전면부와 다른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Design하였다. 또한 정면 저층부는 Main Entrance로의 적극적 유도를 위해 1,2층을 Set Back시켜 노출 기둥으로 하여금 건물의 방향성과 건물전체의 강한 수평적 요소를 적절하게 완화시키도록 노력하였다.

건물 전면의 공간은 원형 DOME의 Top Light로 하여금 옥외공간의 균형을 이루어 절제된 동선 흐름을 유도하였으며 측면의 부정형의 Sunken Garden과 옥외계단으로 하여금 변화있는 옥외공간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3. 평면계획

본 건물은 세부분으로 층별용도가 구분되어지도록 계획하였다.

즉, 기계, 전기실과 주차공간으로 이루어진 지하층(B1~2층), 사무실, 식당으로 이루어진 Main Tower로 구분되어진다. 옥외계단 및 Sunken Garden으로 연계되는 지하1층은 실내공간의 확장을 꾀하여 증권영업장이 들어서도록 하였고, 대형 영업장과 전산실등은 확대공간의 가능성과 함께 실 분할의 유연성을 주기위하여 포디엄을 달은 저층부에 두었다.

1) 로비

국산 화강석을 이용하여 단순한 Design과 밝은 색조로 개방공간화하여 공간의 여유를 부여하였으며 지하1층, 1층과 2층은 에스컬레이터로 연결연속된 공간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로비측면의 조형물은 단순한 로비내부에서 미세하게 느낄 수 있는 변화감을 주기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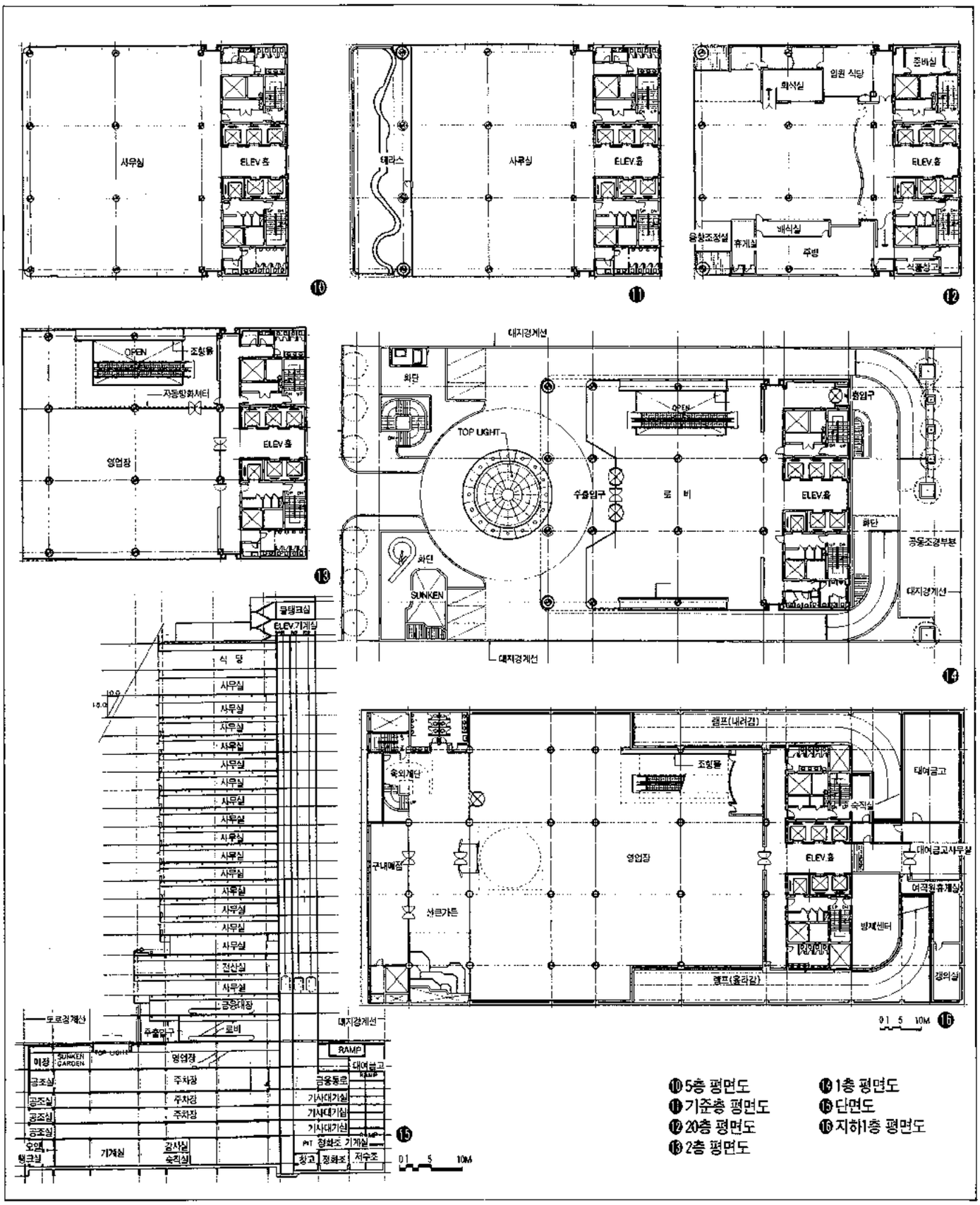

한 요소로 사용하였다.

2) 기준층

Rear Core 형태를 취함으로서 남향에 사무공한을 두어 작업환경 및 Flex-ibility를 좋게 하였고 전면에 Light Shelfer를 설치 직사광선의 실내 유입을 막고 남향의 자연채광을 반사시켜 실내 깊숙히 줄어 들임으로서 에너지 절감 및 작업환경을 높이는데 주안하였다.

5층 전면부에는 테라를 두어 휴식공간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며, 최상층인 20층에 식당을 두어 사용자에게 휴식처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다

3) 기타

본 건축물은 사무자동화(Office Automation, 통신서비스(Telecommuni-cation, 빌딩관리(Building Automation, 있어서 I.B.S (Intelligent Building System)의 개념을 도입, 고도 정보사회의 풍부한 지적 생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건물의 Quality를 높였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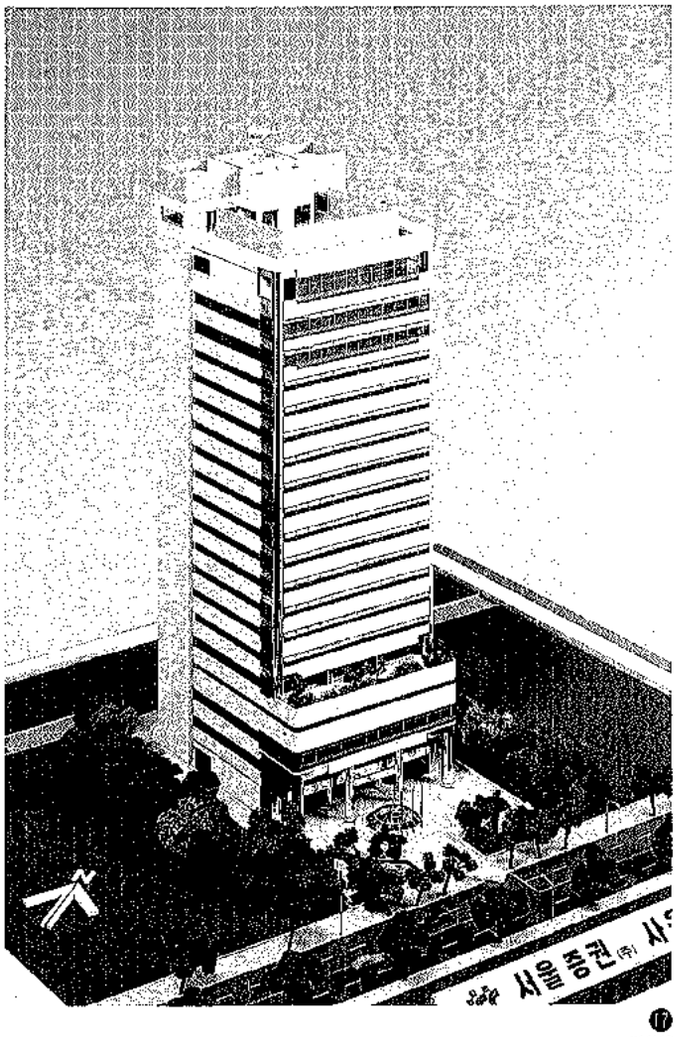

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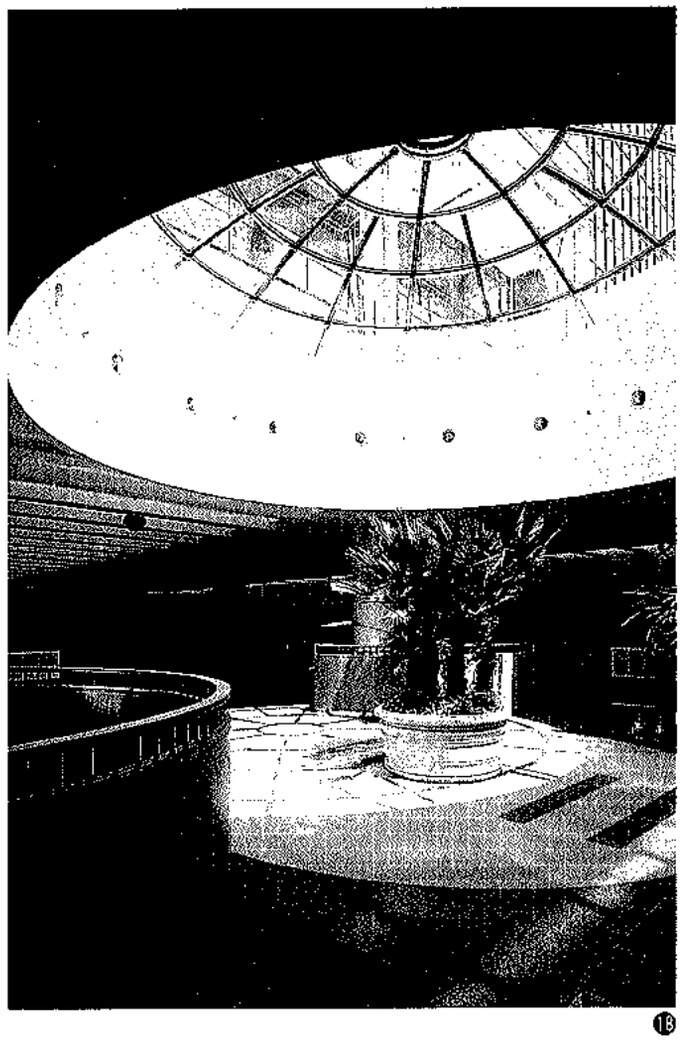

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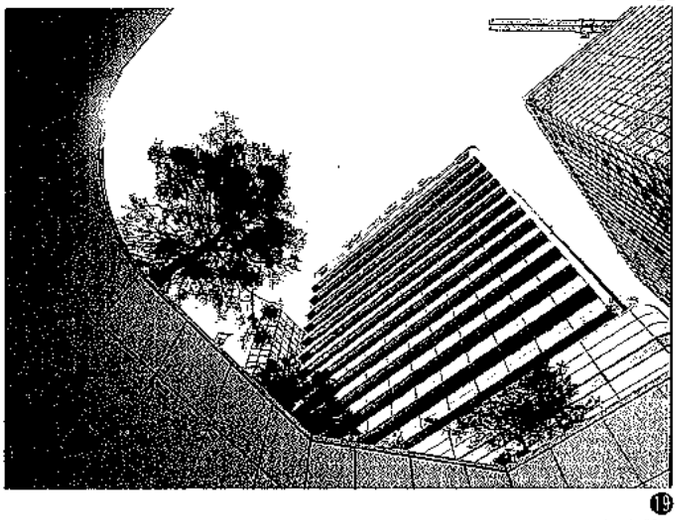

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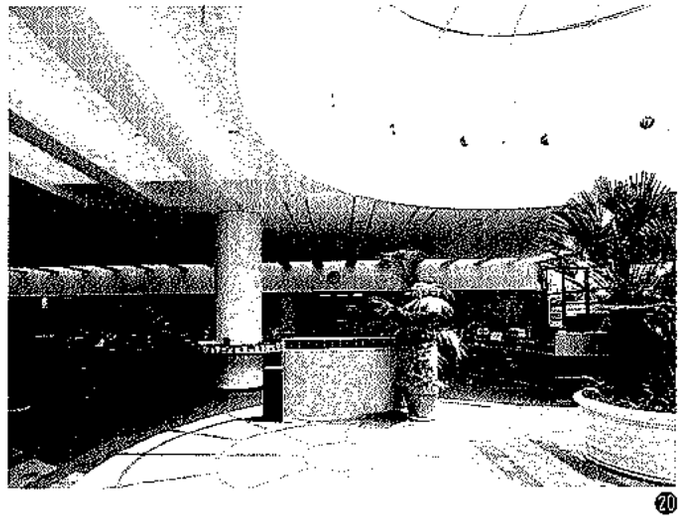

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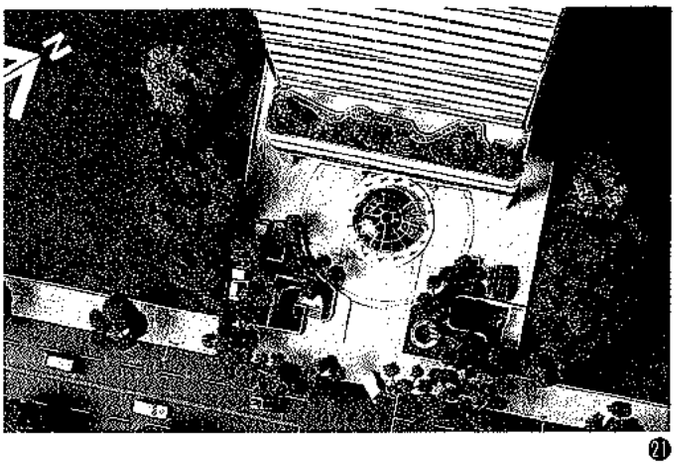

㉑

⑰ 모형도 1
⑱ 지하1층 영업장과 탑라이트 하부
⑲ 옥외계단에서 올려다 본 모습
⑳ 지하1층 영업장
㉑ 모형도 2

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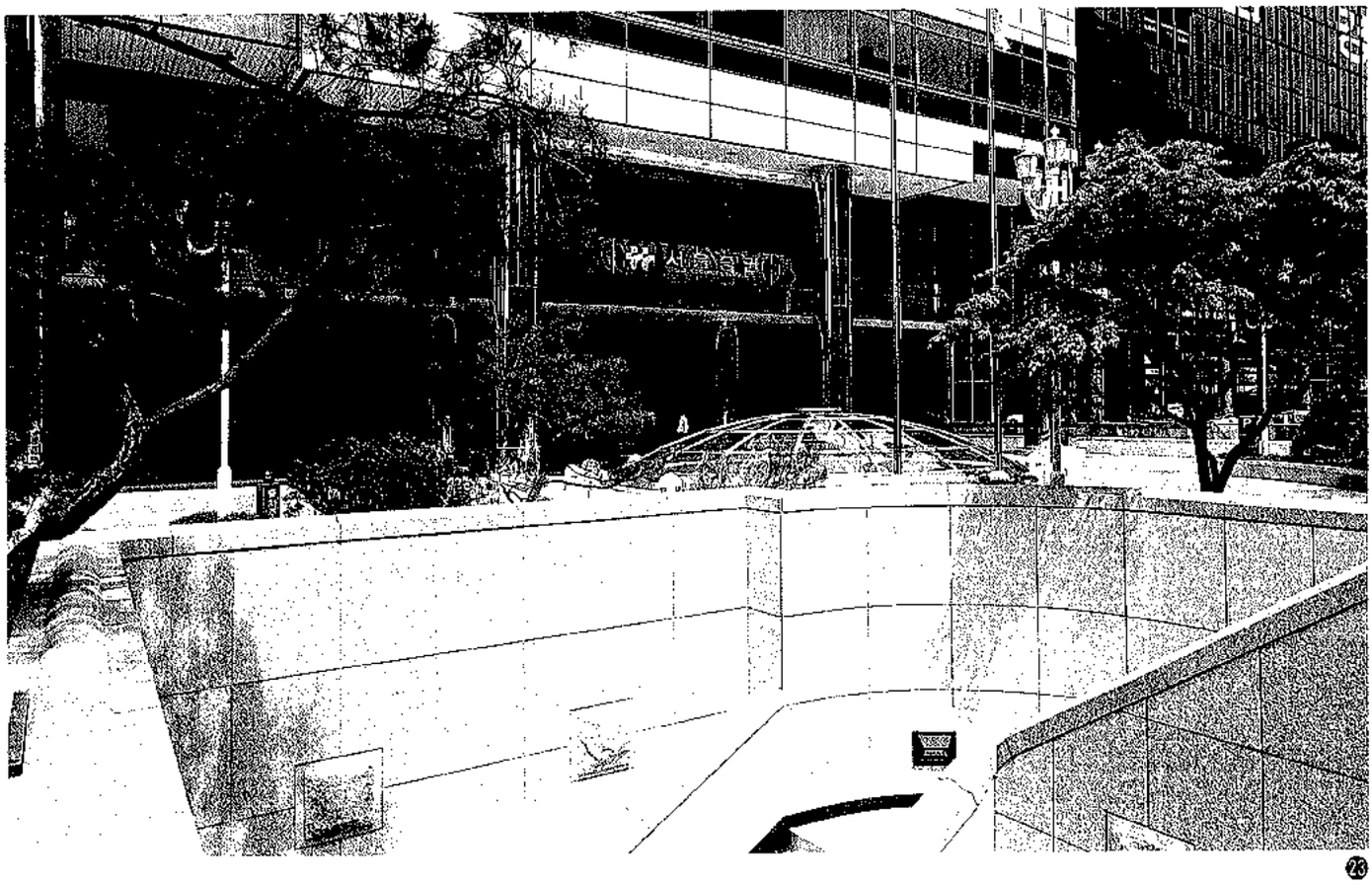

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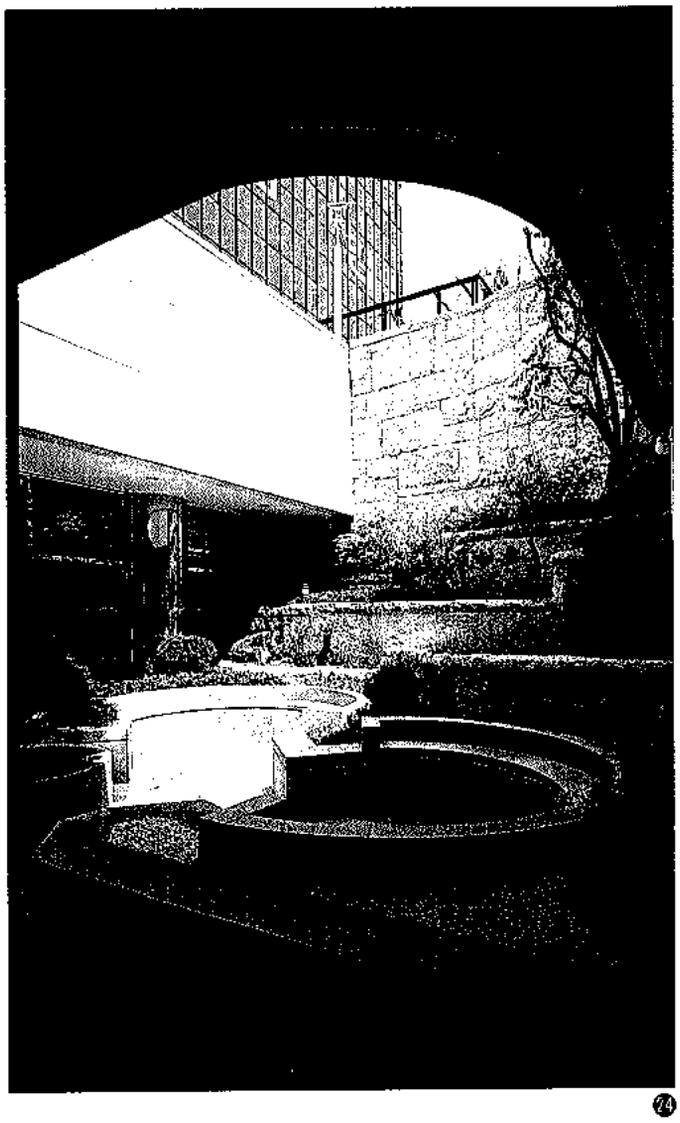

㉔

㉕

㉒ 주출입구 디테일
㉓ 옥외계단에서 본 주출입구
㉔ 지하1층 선큰가든
㉕ 지하1층 증권 영업장 내부

민정학원

Sangmyung Elementary School-Girls' Middle & High School

文政一/우원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Moon, Jung-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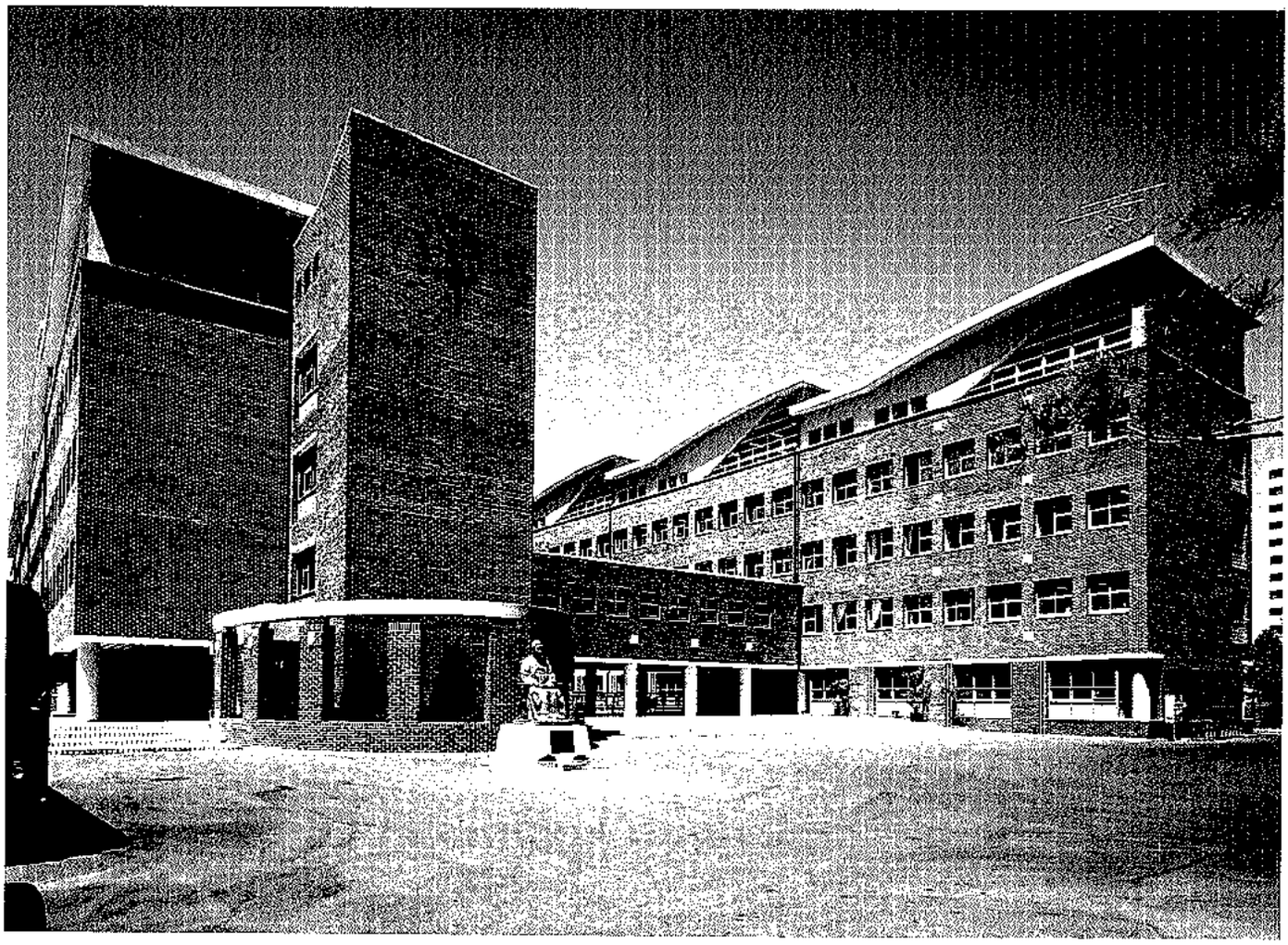

❶

대지위치 / 노원구 중계동 515
지역·지구 / 일반주거, 주차장정비, 학교용지
대지면적 / 30,253㎡
건축면적 / 5,881㎡
연면적 / 26,687㎡
건폐율 / 19.44%
용적률 / 64.88%
규모 / 지하1층, 지상5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외장 / 벽-적벽돌 치장쌓기+콘크리트제물
치장위 페인트
창호-컬러알미늄새시+24㎜ 복층유리
내장 / 바닥-에폭씨레진몰탈
벽-수성페인트
천정-흡음텍스
설계기간 / 1991.10~1992.12
공사기간 / 1992.12~199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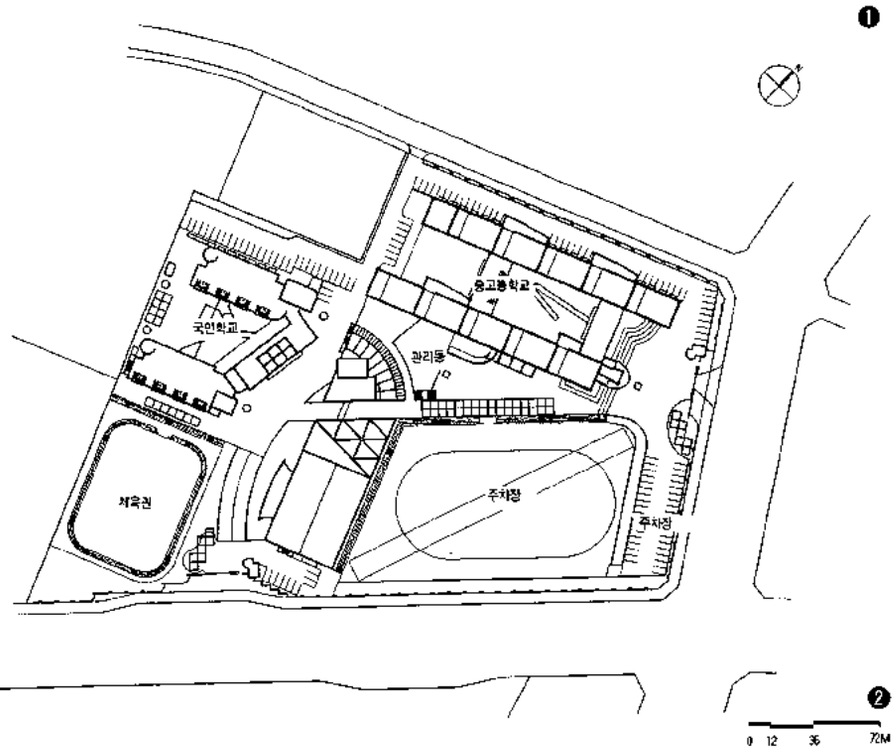

❷

0 12 36 72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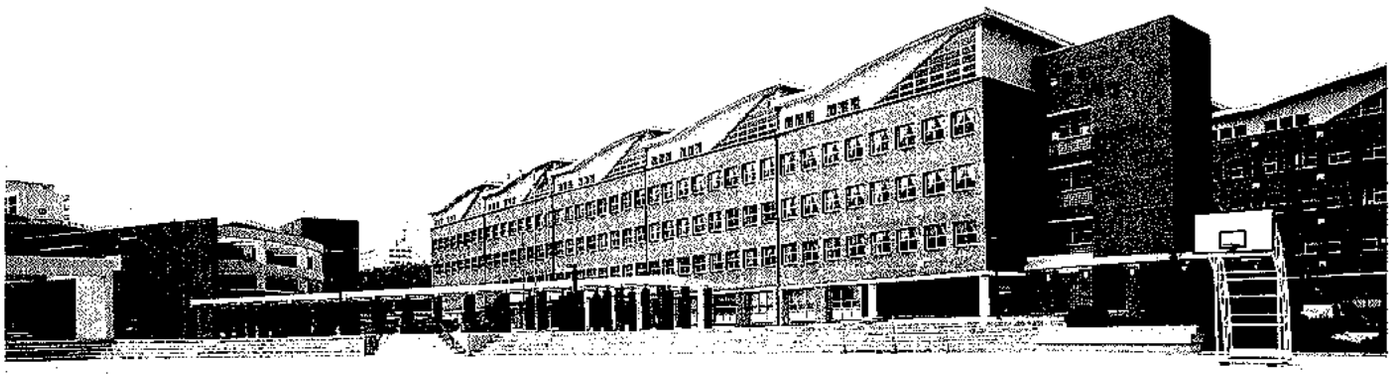

❸

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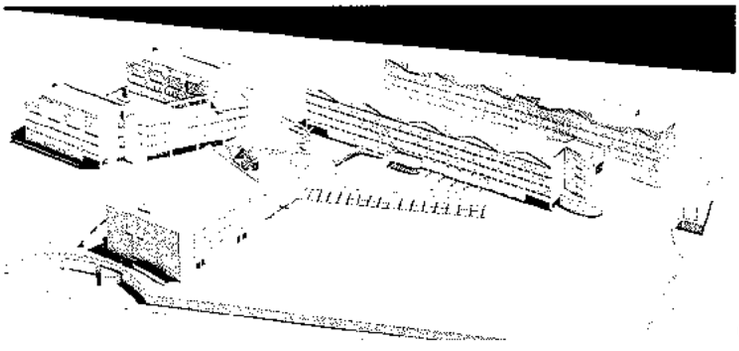

❺

❶ 중고등학교 진입부 전경
❷ 배치도
❸ 중고등학교 남측전경
❹ 국민학교 정면
❺ 모형도

⑥

처음 대지를 접하면서 학교건축이 당면한 사회적, 교육적 문제점을 최소화 시키면서 학교가 지양해야할 방향과 기능 및 형태의 규범에 따른 건축적 접근 방법을 염두에 두며 종래의 학교건축이 갖고있던 고정관념을 탈피해 보고싶었다.

협소한 대지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접근방법으로 외부공간의 구성을 적절하게 분배하여 학생형태에 따른 특성과 어울릴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건물과 건물 사이로 생기는 외부공간을 선큰으로 처리하여 지하층의 기능을 활성화 하였고 채광, 환기를 가능케 함으로 필요한 용적을 해결할 수 있었다. 또한 대지형태가 주는 방향성에 맞추어 건물의 축이 모두 다르게 변화시켰다.

종래 학교건축의 대부분이 획일적이며 일제시대의 문제점을 탈피하여 재미있고 즐거운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국민학교는 열린교육 개념하에 평면계획하였고 수영장, 체육관 등은 사립학교가 갖는 특별한 시설이 되었다.

중·고등학교는 교실 내부의 형식보다 외부와 내부공간의 연계성, 공간 크기와 비례 등 새롭게 계획하였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연결 브릿지는 경사진 선큰(시각적 요소)과 정방형 선큰(중립적 요소)이 서로의 관계를 유니크하게 대비시켰다.

관리동과 체육관으로 연결되는 곳에 선큰을 두어 관리동지하의 학생식당, 교사식당, 체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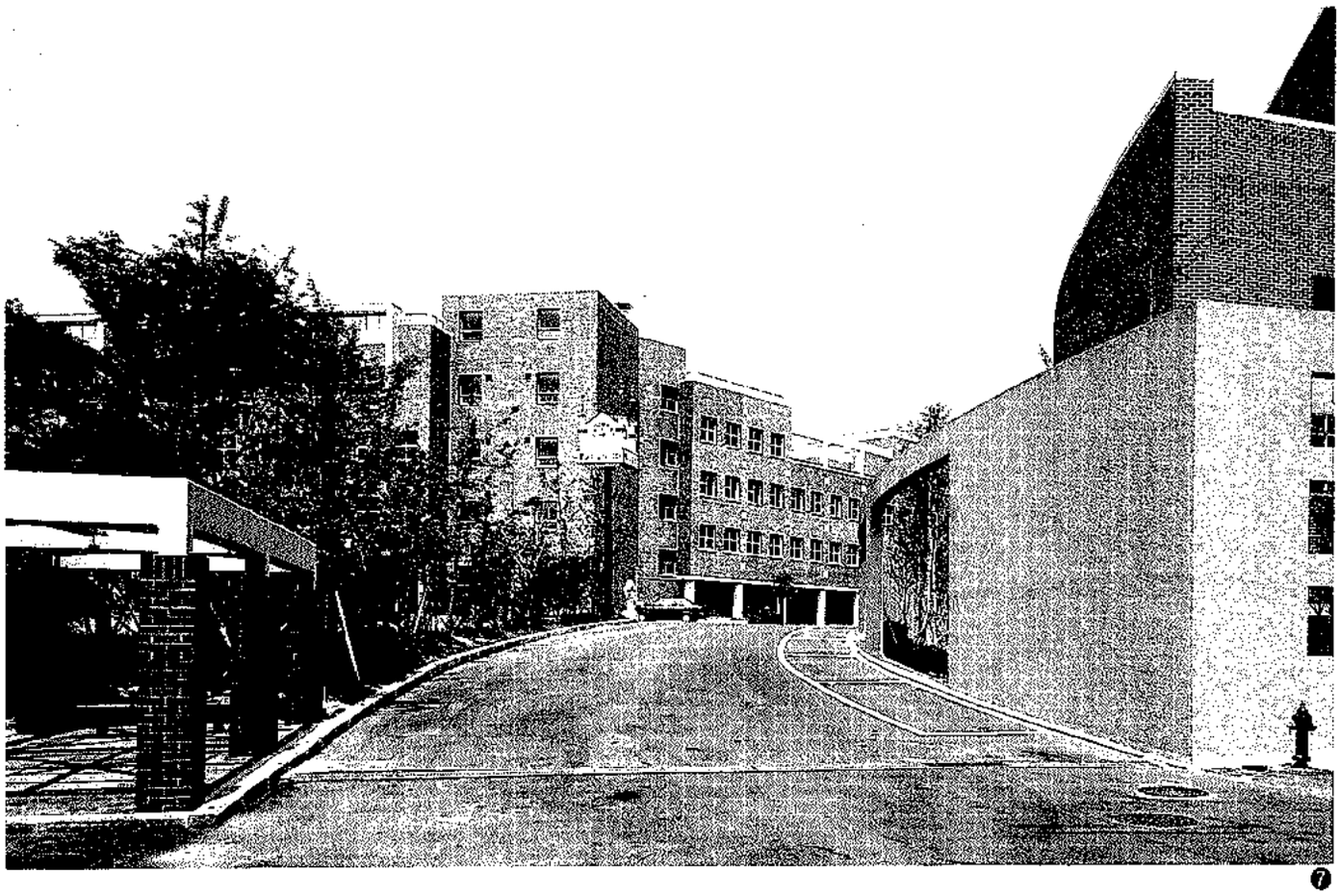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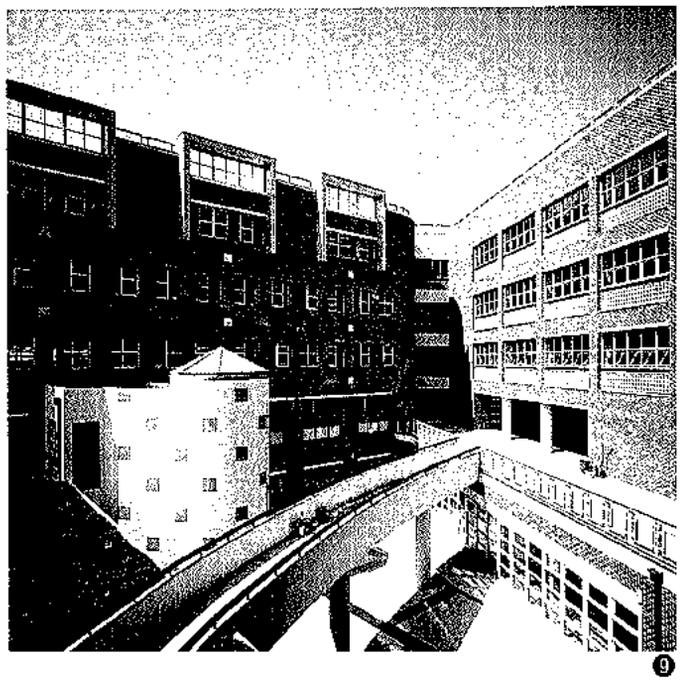

관으로 자연스럽게 이농되도록 하였으며 그곳에서 운동장으로 직접나오도록 동선을 연결하였다.

형태계획은 주변의 고층 아파트군의 단조로움과 지루함을 벗어나기 위하여 지붕의 형태를 곡면지붕으로 계획하였으며 교실창 형태는 밝고 건강하게 보이도록 하였다.

외부재료 계획은 건물전체 벽돌의 단조로움을 없애기 위해 상부에는 시멘트몰탈에 페인팅을 하여 건물 전체의 안정감을 주었고 창의 형태도 비상하는 모양으로 계획하여 새로움을 시도하였다.

색채계획은 벽돌집의 단조로움을 없애기위해 가벽의 원색과 교사동 내부는 층마다 색의 변화를 주었고 문짝, 복도벽, 교실 및 복도 바닥 등 다양한 색상을 시도하였다.

설계가 끝나고 긴 시간동안 시공과정을 지켜 보면서 의도한 결과는 아쉬움으로 남았고, 준공후 건물 분위기에 맞지않는 기물과 집기들의 배치가 애써 설계하고 시공한 결과에 대한 우리를 당황하게 하였다.

학교건축이 당면한 사회적, 교육적 문제점도 중요하지만 정부차원에서 학교건축에 대한 재정적인 배려가 있어야 학교건축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탈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❻ 중고등학교 선큰 계단실
❼ 국민학교 진입부 전경
❽ 중고등학교 선큰 가든 전경
❾ 국민학교 선큰 가든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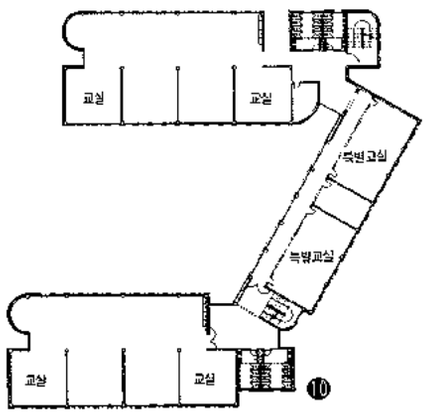

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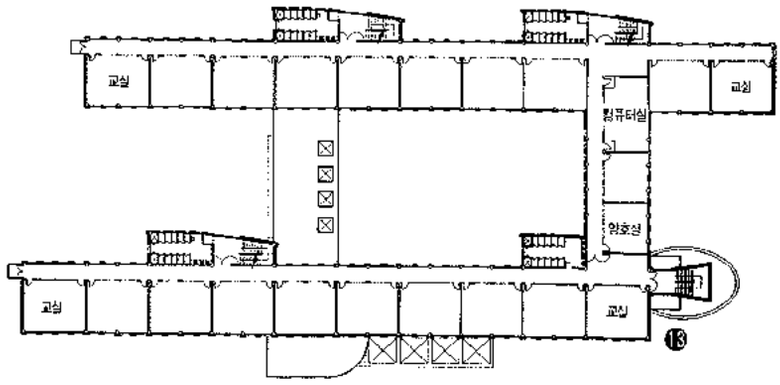

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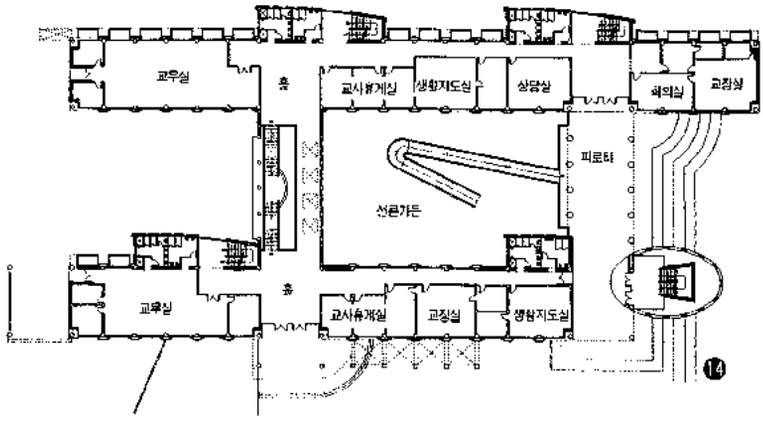

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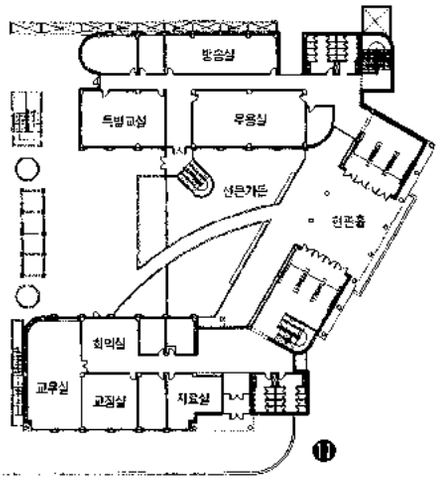

⑪

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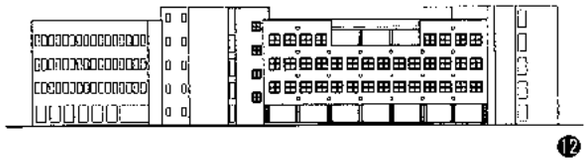

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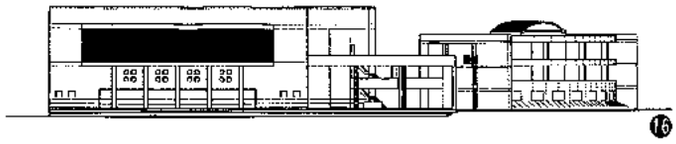

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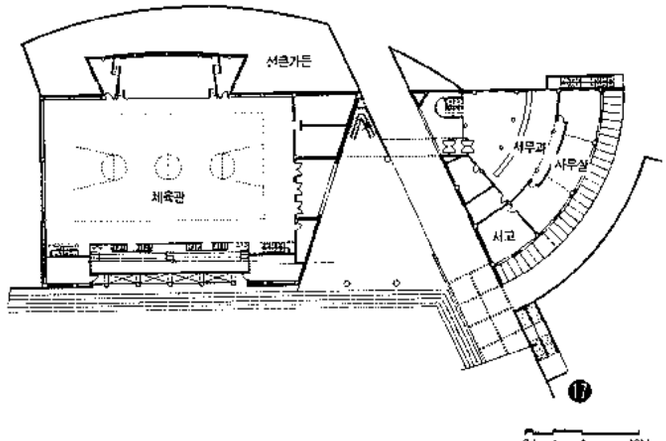

⑰

⑩ 국민학교 기준층 평면도
⑪ 국민학교 1층 평면도
⑫ 국민학교 동측면도
⑬ 중고등학교 기준층 평면도
⑭ 중고등학교 1층 평면도
⑮ 중고등학교 정면도
⑯ 체육관, 관리동 단면도
⑰ 체육관, 관리동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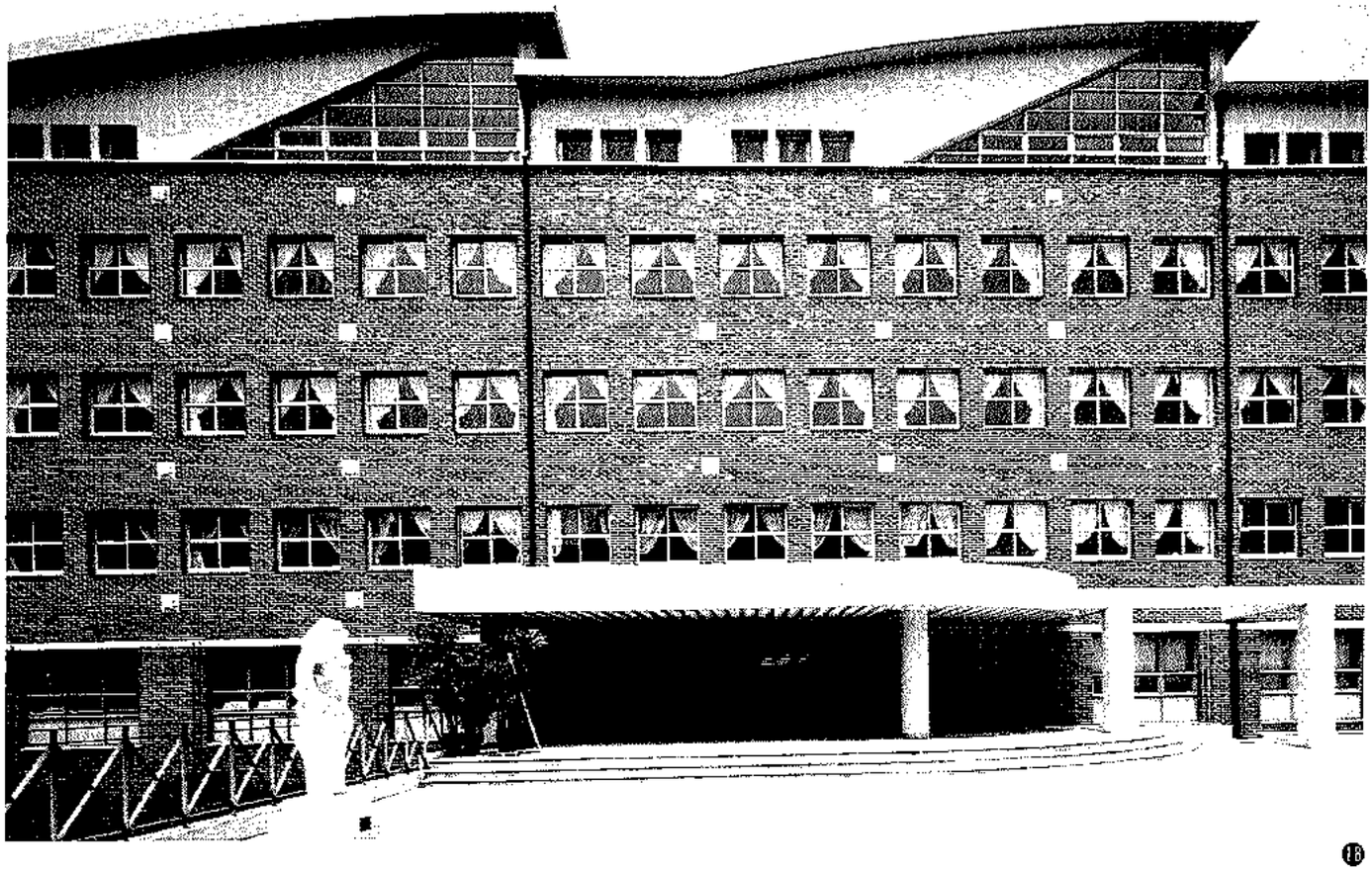

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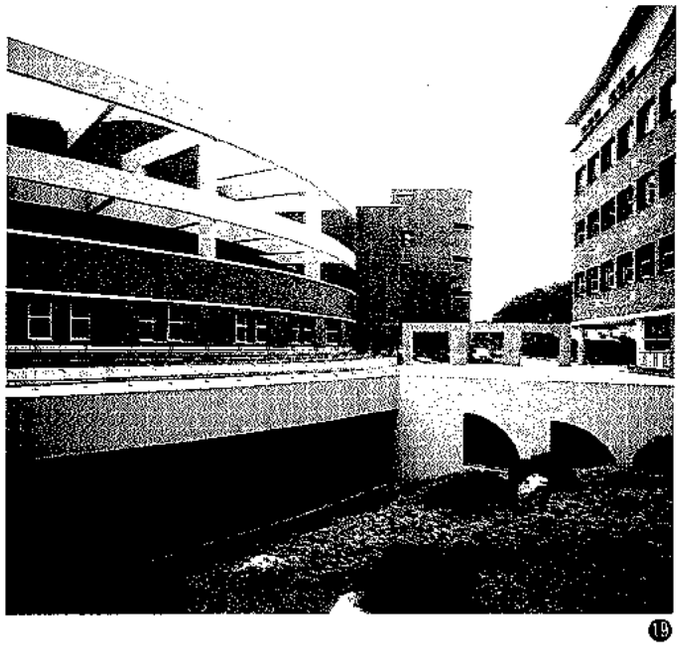

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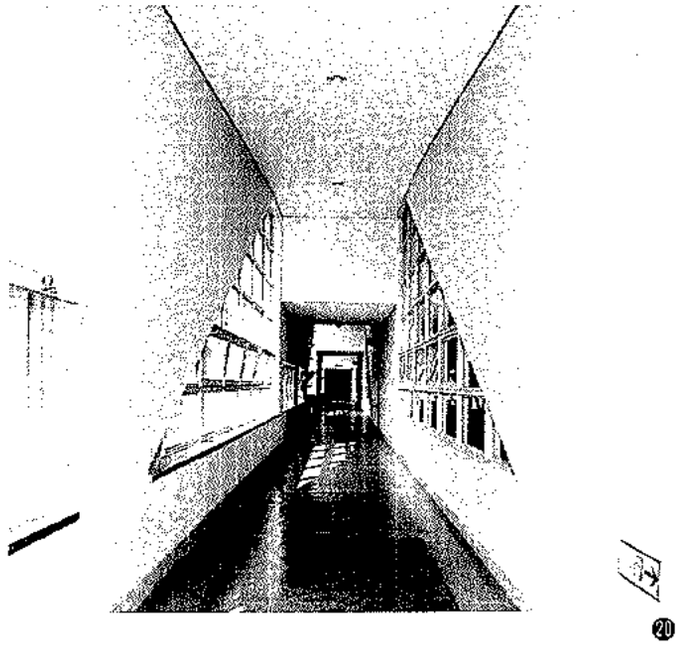

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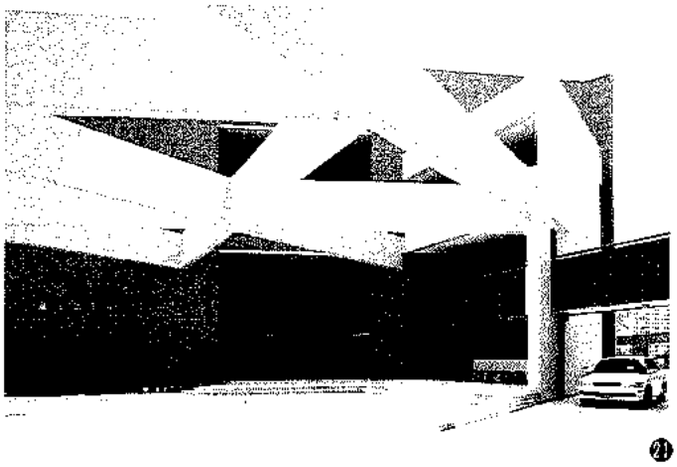

㉑

⑱ 중고등학교 정면
⑲ 관리동 선큰 가든
⑳ 중고등학교 5층 복도
㉑ 체육관 주출입구 전경

SBS 등촌동 공개홀

SBS Tungchon-dong Studio

崔寬泳十鄭東明/일건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Choi, Kwan-Young & Cheong, Dong-Mye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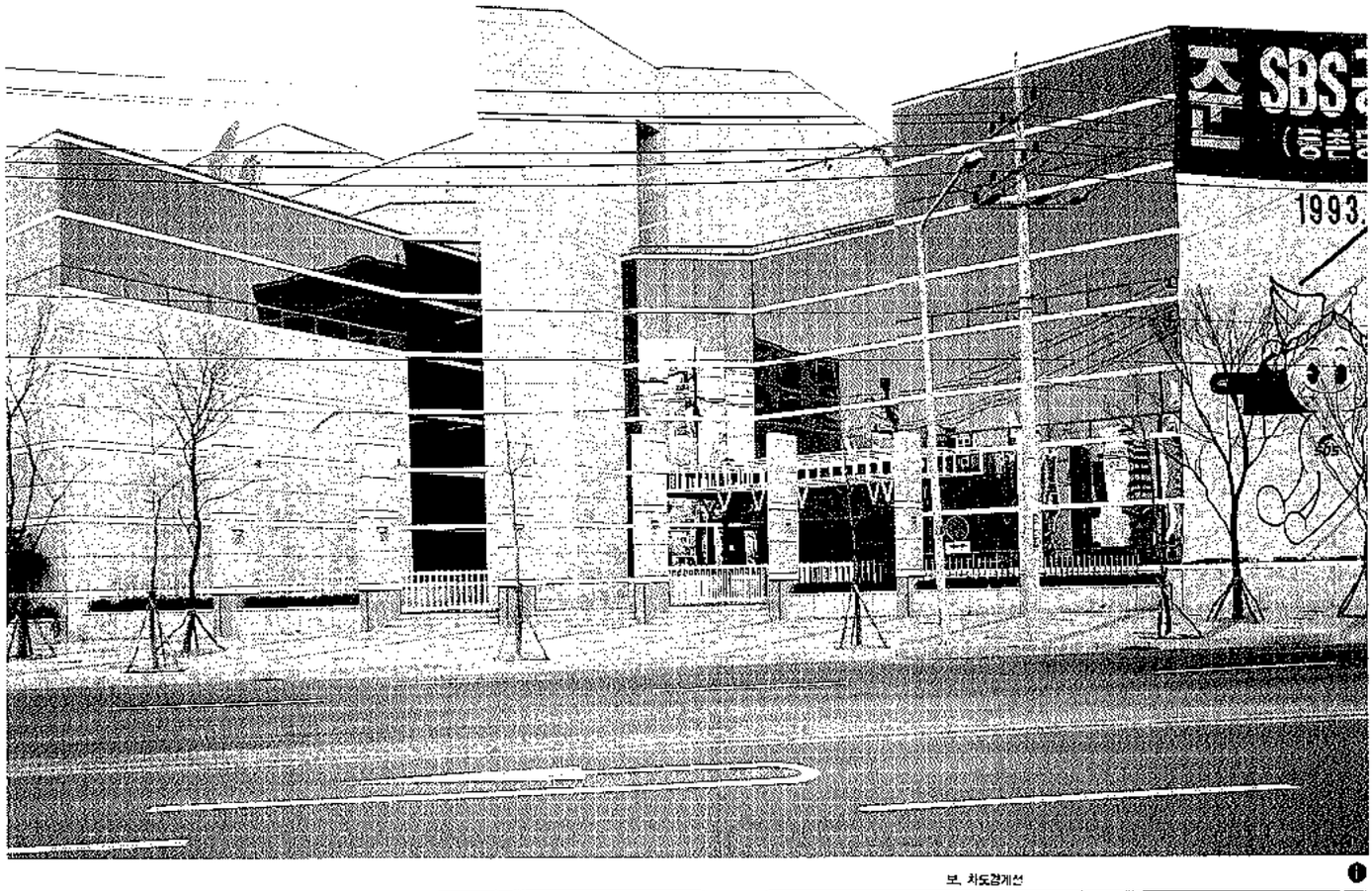

위치 /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58-1
지역 / 준공업지역
대지면적 / 3,749.4㎡
건축면적 / 2,186.6㎡
연면적 / 6,935.8㎡
건폐율 / 58.3%
용적률 / 123.7%
규모 / 지하1층, 지상4층
구조 /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외부마감 / CRC 패널, 알루미늄 커튼월
건축주 / (주)서울방송
시공자 / (주)태영건설
구조설계 / 센구조연구소
설계기간 / 1992년 8월~11월
공사기간 / 1992년 11월~1993년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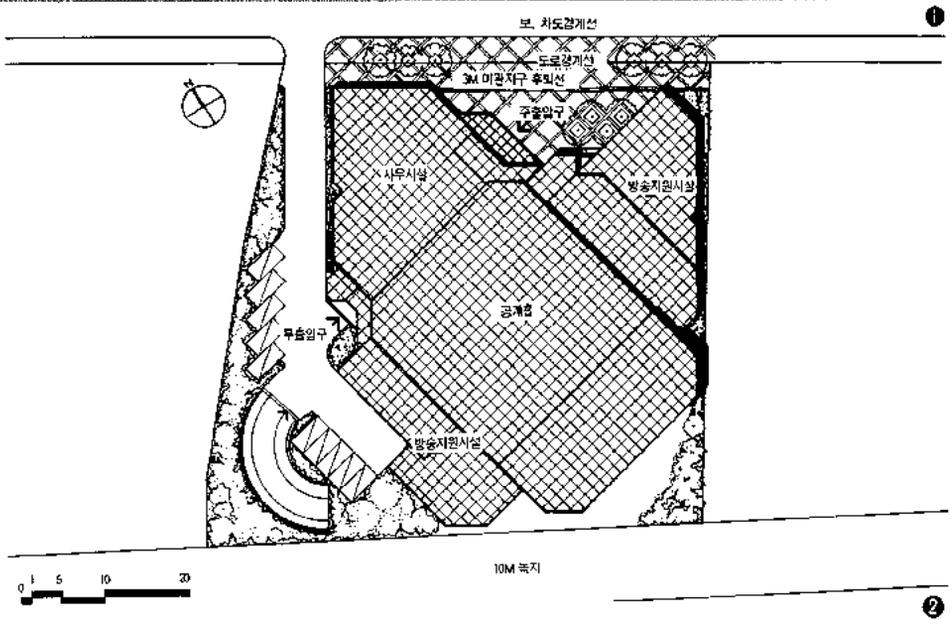

❶주출입구 전경
❷배치도
❸부출입구 디테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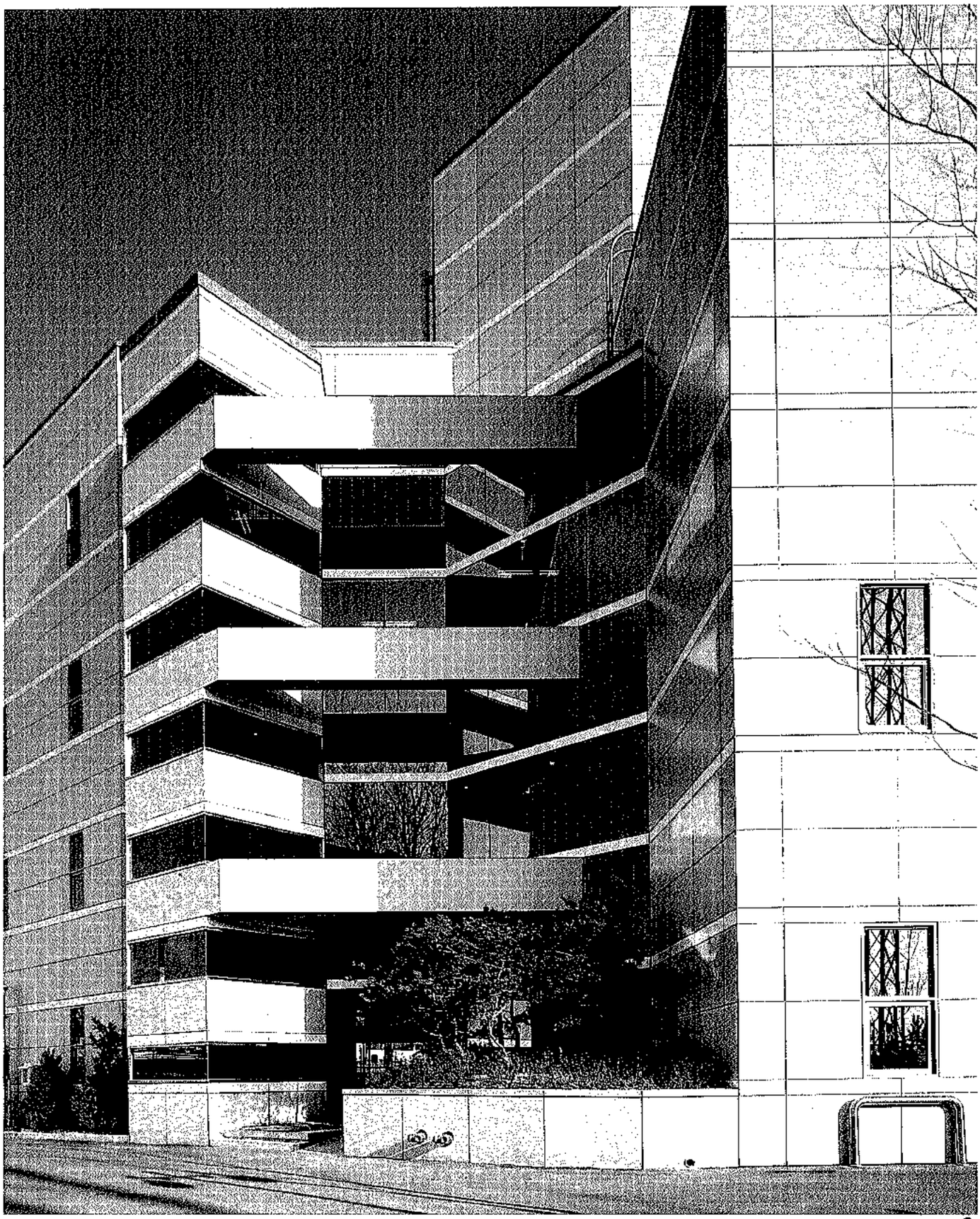

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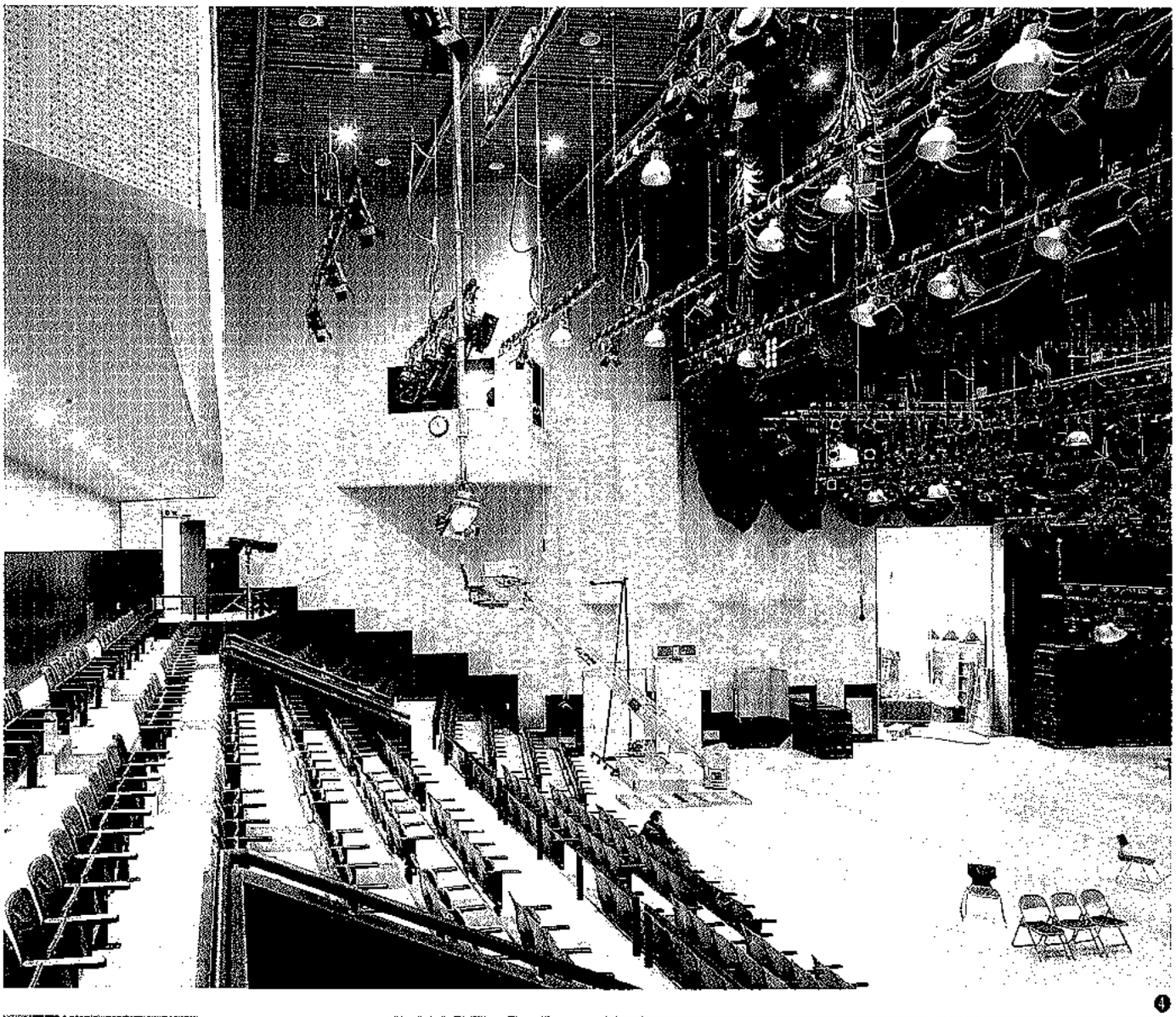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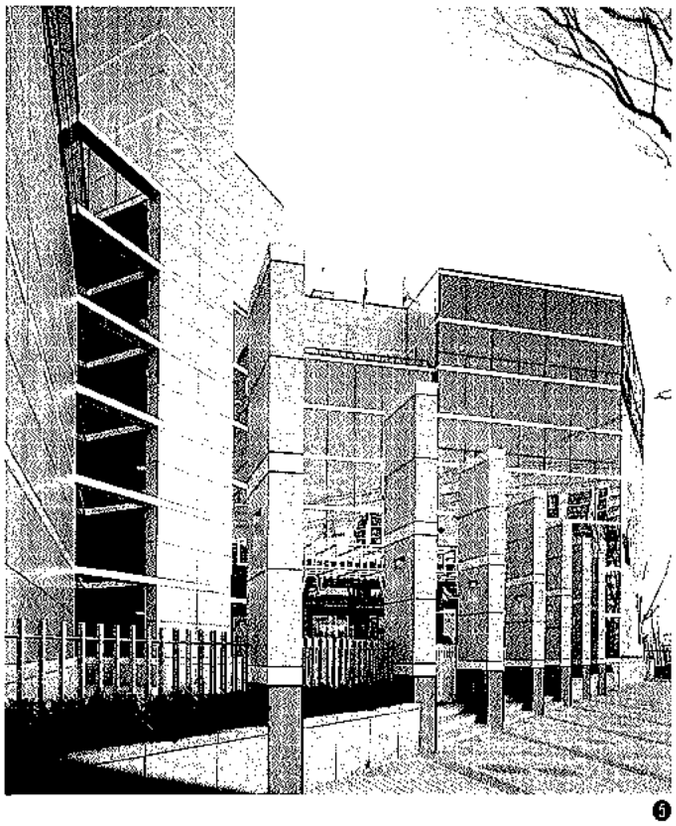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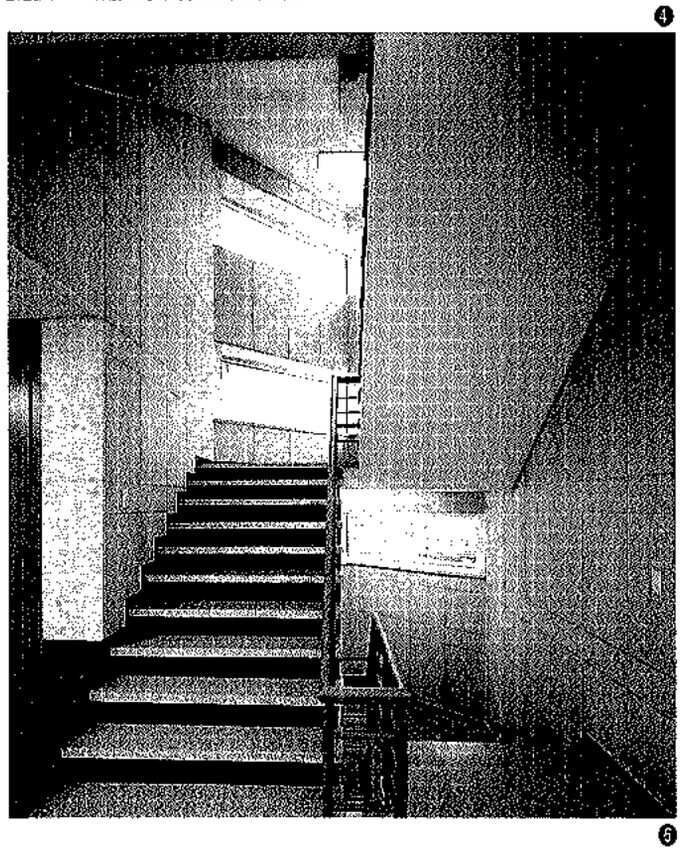

⑤

건축주의 최초 주문은 공개 스튜디오를 창고같이 싸게, 임시 건물처럼 빨리 지을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해달라는 것이다. 그당시 개국 1년이 가까이 되었는데도 제대로 된 TV제작 스튜디오 하나 없이 마냥 불편하기는 한데 땅이 너무 좁아 본격적인 스튜디오가 되기도 어려운것 같고 또 신흥개발지역이라 급격히 발전(?)하고 있어 금방이라도 상업지역으로 바뀌는 날이면 크게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런저런 이유에서 일것이다.

주변 환경은 준공업지역임이 말해 주듯이 열악하기 그지없이 원래 그 자리에 있었음직한 그런 좋은 집을 만들기는 어차피 틀렸고 개국 2주년 기념행사를 새집에서 하겠다니 공사기간은 1년도 안남게 되어 설계기간 3개월은 오히려 과분한 셈, 이런저런 조건이 모두 마땅치 못한 채 출발한 프로젝트였음을 변명해 둔다.

땅에 비해 커야만 하는 스튜디오를 배치하기는 긴 대각선측이 좋았고 전면 가로와 건물 사이에 절로 생긴 삼각형의 가로와 건물 사이에 절로 생긴 삼각형의 작은 진입마당에 판상의 파일런(pylon)을 세워 공간을 구획하고 전면 가로에 나란한 형태 요소가 되게 했다. 평면 생긴대로 생긴 외부에는 창고용 샌드위치 패널보다는 좀 비싸지만 흔한 알루미늄 패널에 비하면 반값 정도인 CRC패널을 붙였다. 겉보기는 알루미늄 패널과 같으니 성공한 셈인지 모르겠다.

스튜디오 무대 부분 상부에 극장에서의 플라이 로프트(fly loft)와 같은 높은 공간을 만들어 세트를 통째로 들어 올려놓고 그 아래에서는 또 다른 세트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좁은 땅에서 입체적인 공간 활용을 한 셈이다.

1년도 채 안되는 경이롭게 짧은 공사 기간 중에 두번에 걸친 규모 변경이 있어 1,400평이 2,100평으로 늘어나는 등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 만큼 비슷하게 만들어낸 건축주측과 시공자측에 감사하며 시시콜콜 못마땅하여 제풀에 지쳐버린 설계자의 공허함만 남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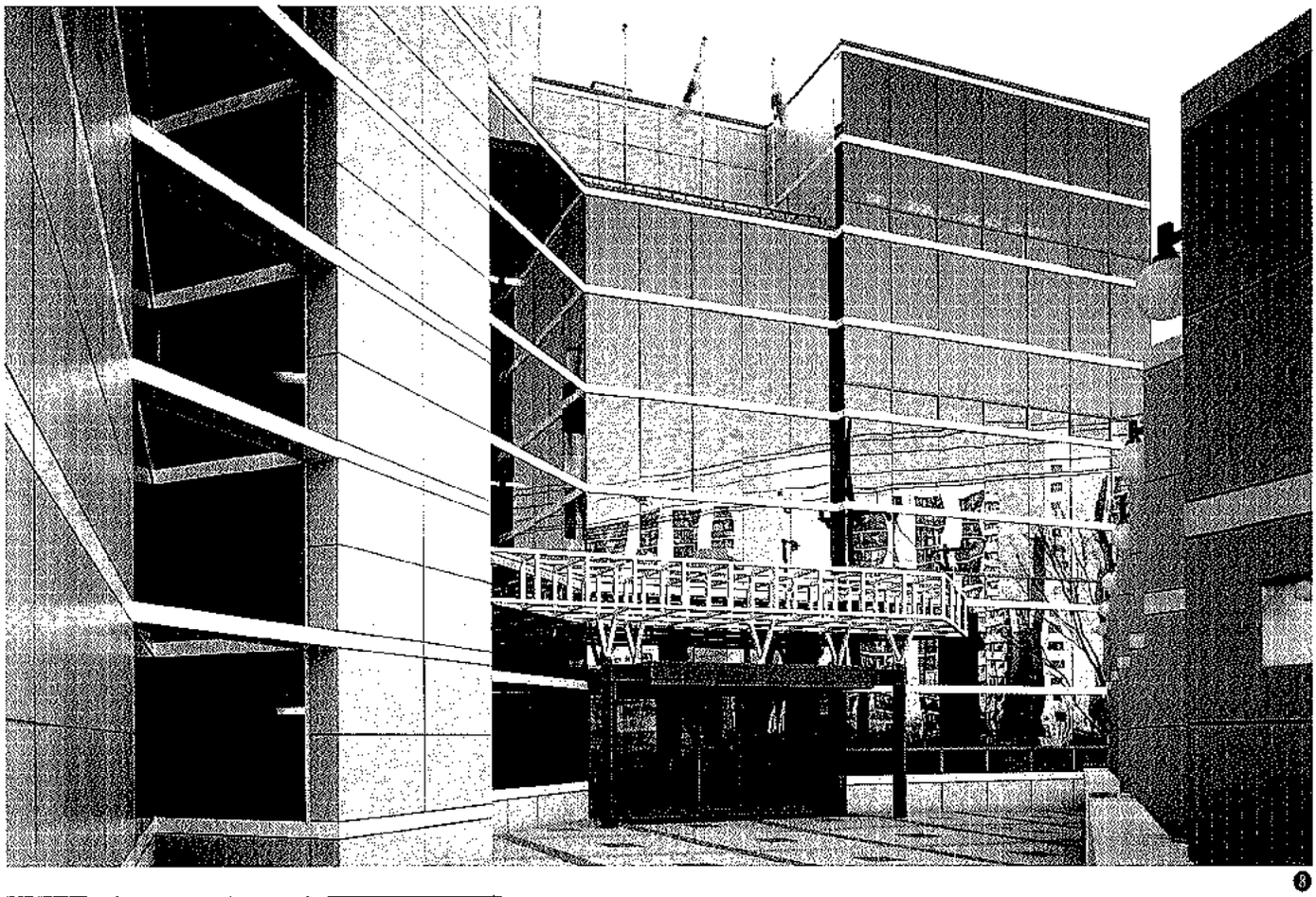

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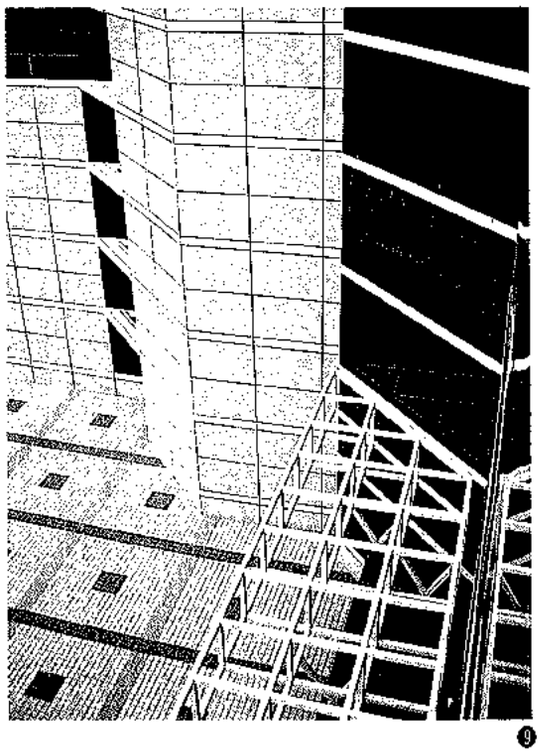

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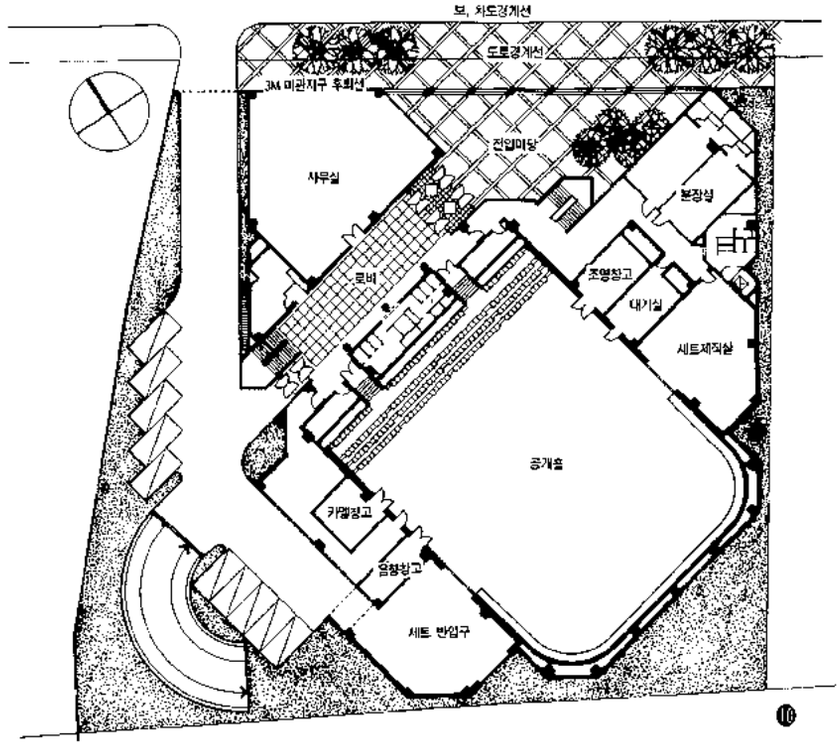

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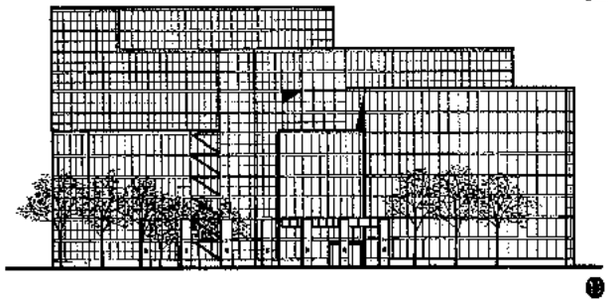

⓫

❹ 제1스튜디오(공개홀)
❺ 주출입구 디테일
❻ 주계단
❼ 주출입구 로비에서 부출입구를 바라본 모습

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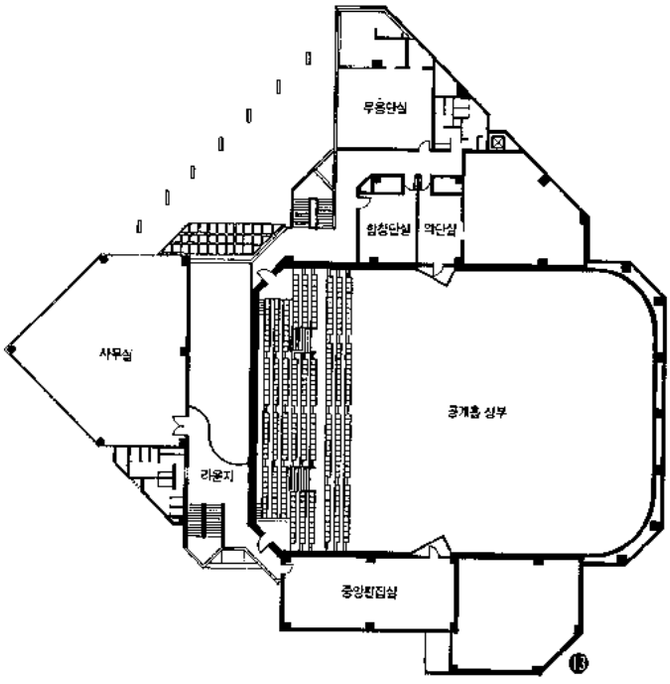

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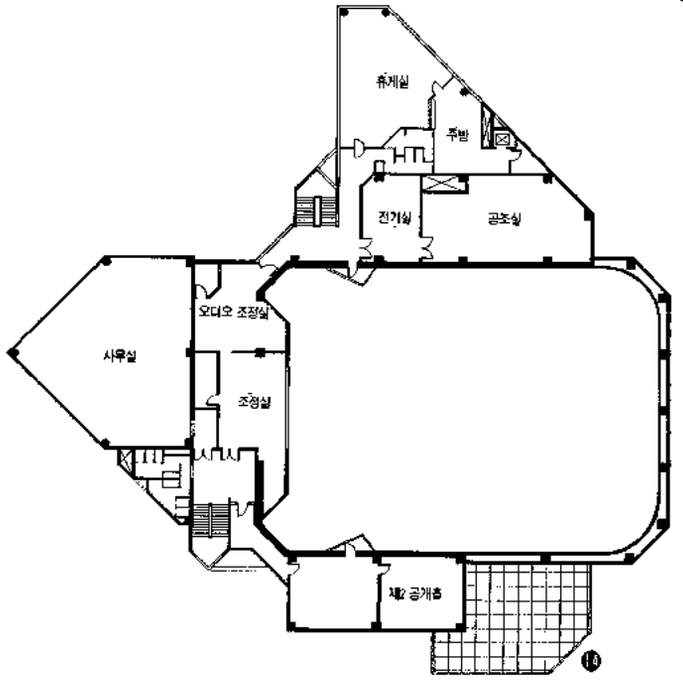

⑭

0 1 5 10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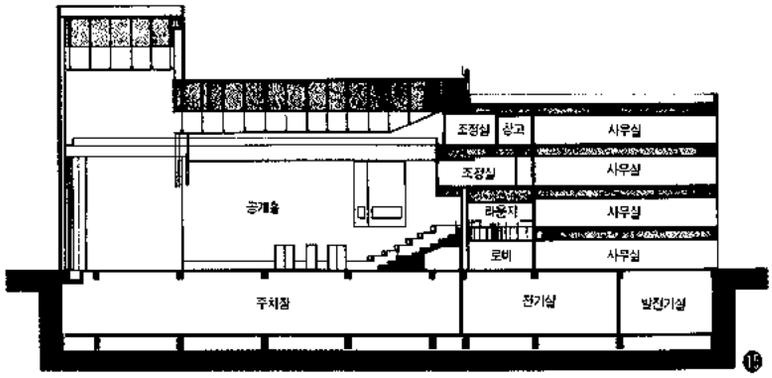

⑮

⑧ 옥외광장(주출입구)
⑨ 위에서본 주출입구 디테일
⑩ 1층 평면도
⑪ 정면도
⑫ 로비상부
⑬ 2층 평면도
⑭ 3층평면도
⑮ 단면도

베리아 국제진흥원

Berea International Center

咸仁善/종합건축사사무소 인우
Designed by Hahm, In-Sun

❶

위치 / 경기도 남양주군 조안면 삼봉리 산 4
−1외 5필지
대지면적 / 7,467.59㎡
건축면적 / 1,774.22㎡
연면적 / 5,961.36㎡
건폐율 / 23.37%
용적률 / 74.97%
규모 / 지상 6층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철골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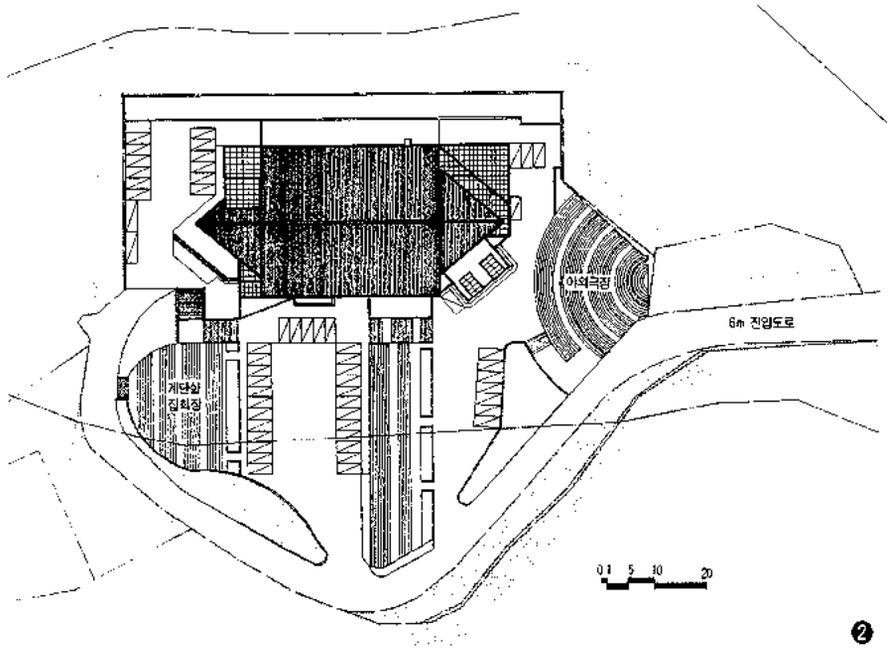

❷

❶ 서측전경
❷ 배치도
❸ 남서측 전경
❹ 남측 상세
❺ 1층 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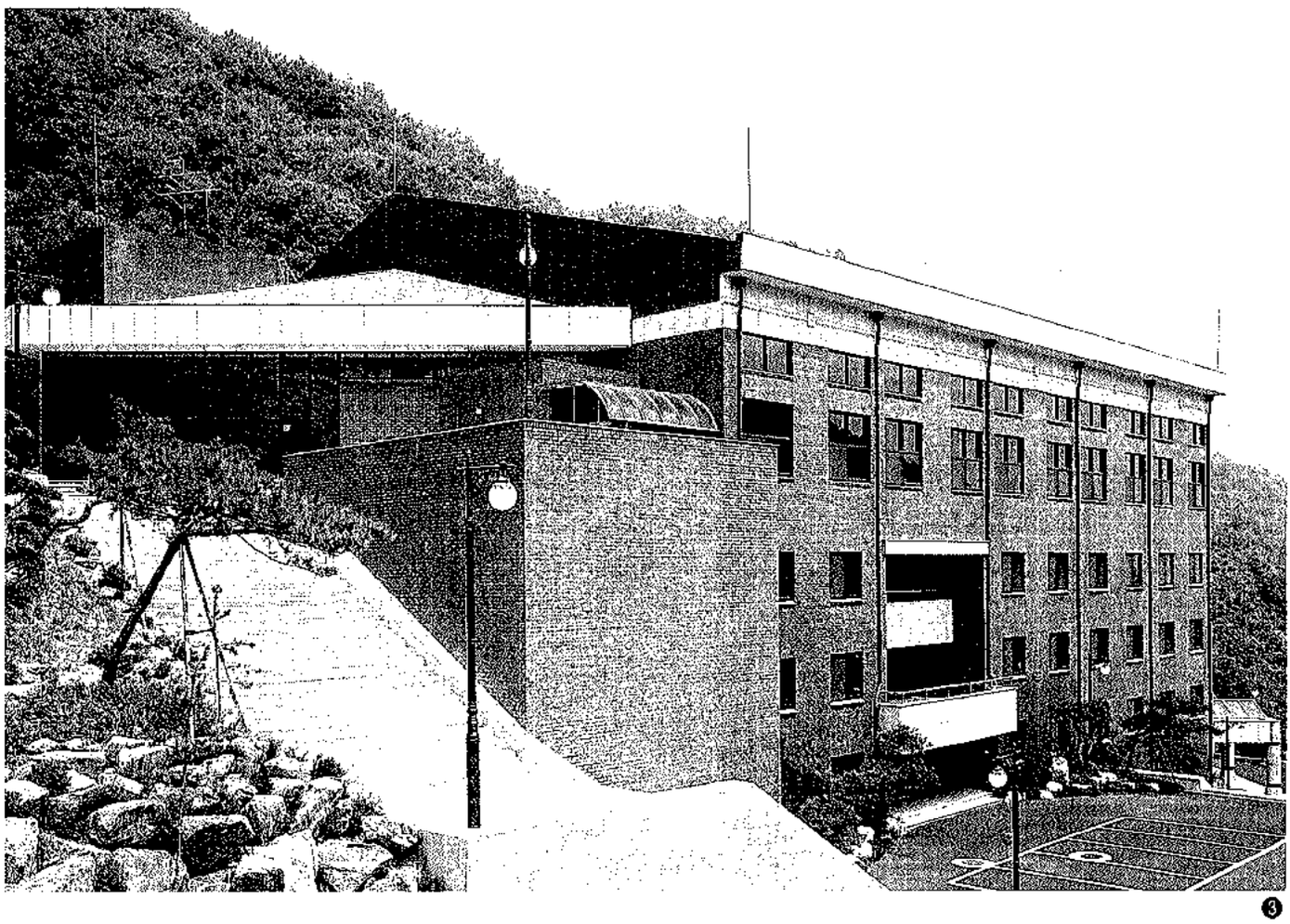

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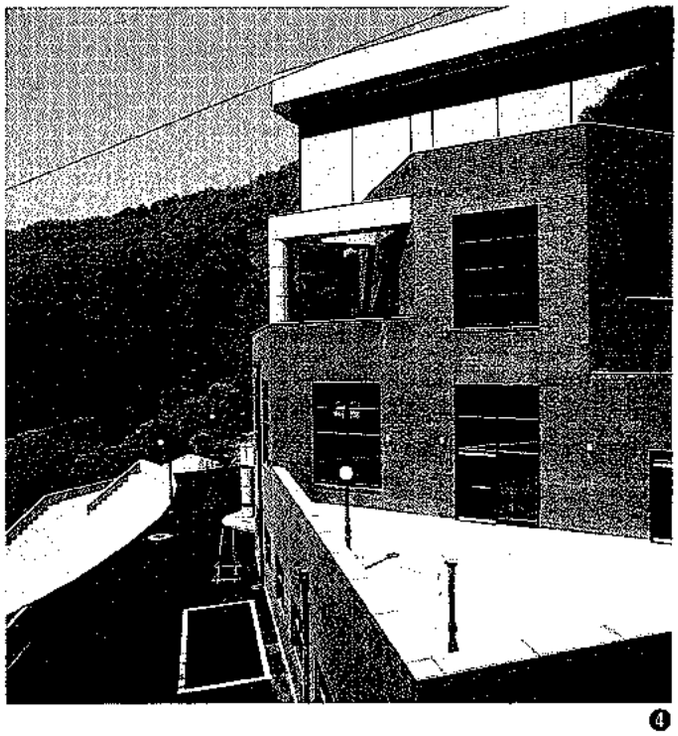

❹

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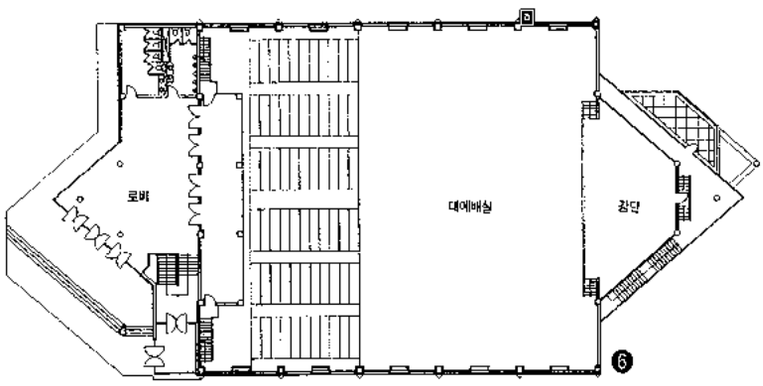

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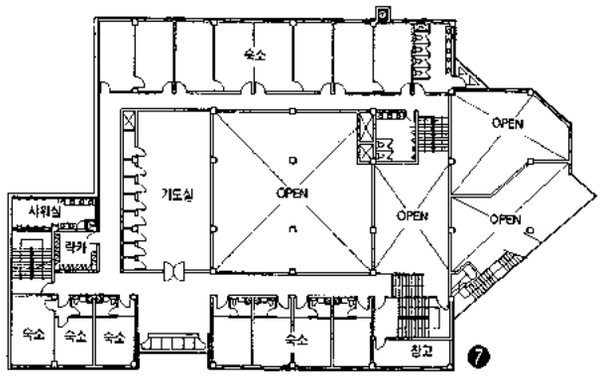

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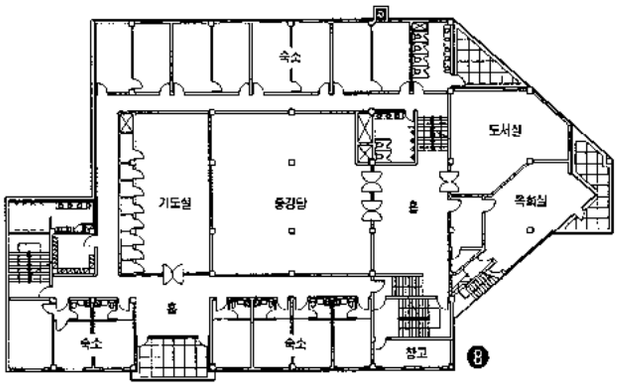

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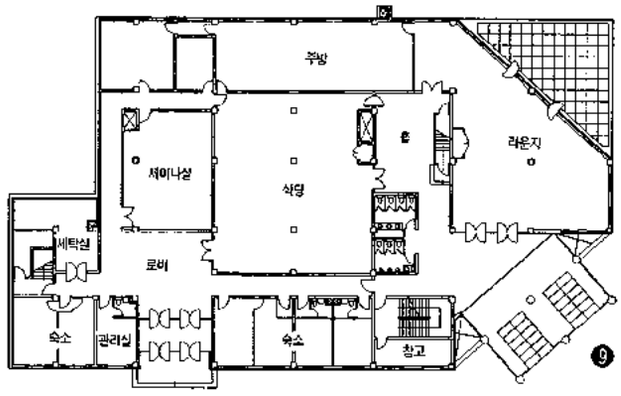

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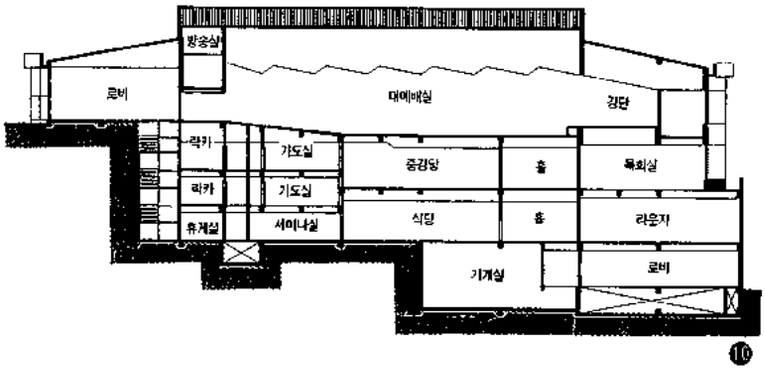

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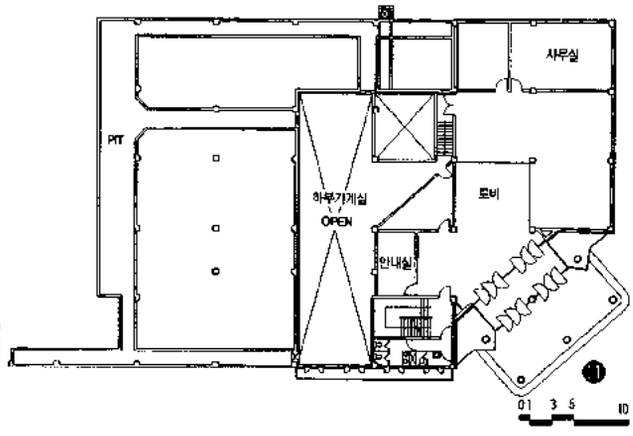

⓫

⓬

⓭

❻ 5층 평면도
❼ 4층 평면도
❽ 3층 평면도
❾ 2층 평면도
❿ 주단면도
⓫ 1층 평면도
⓬ 입면도
⓭ 2층 라운지
⓮ 동남측 전경
⓯ 3층 중강당
⓰ 목회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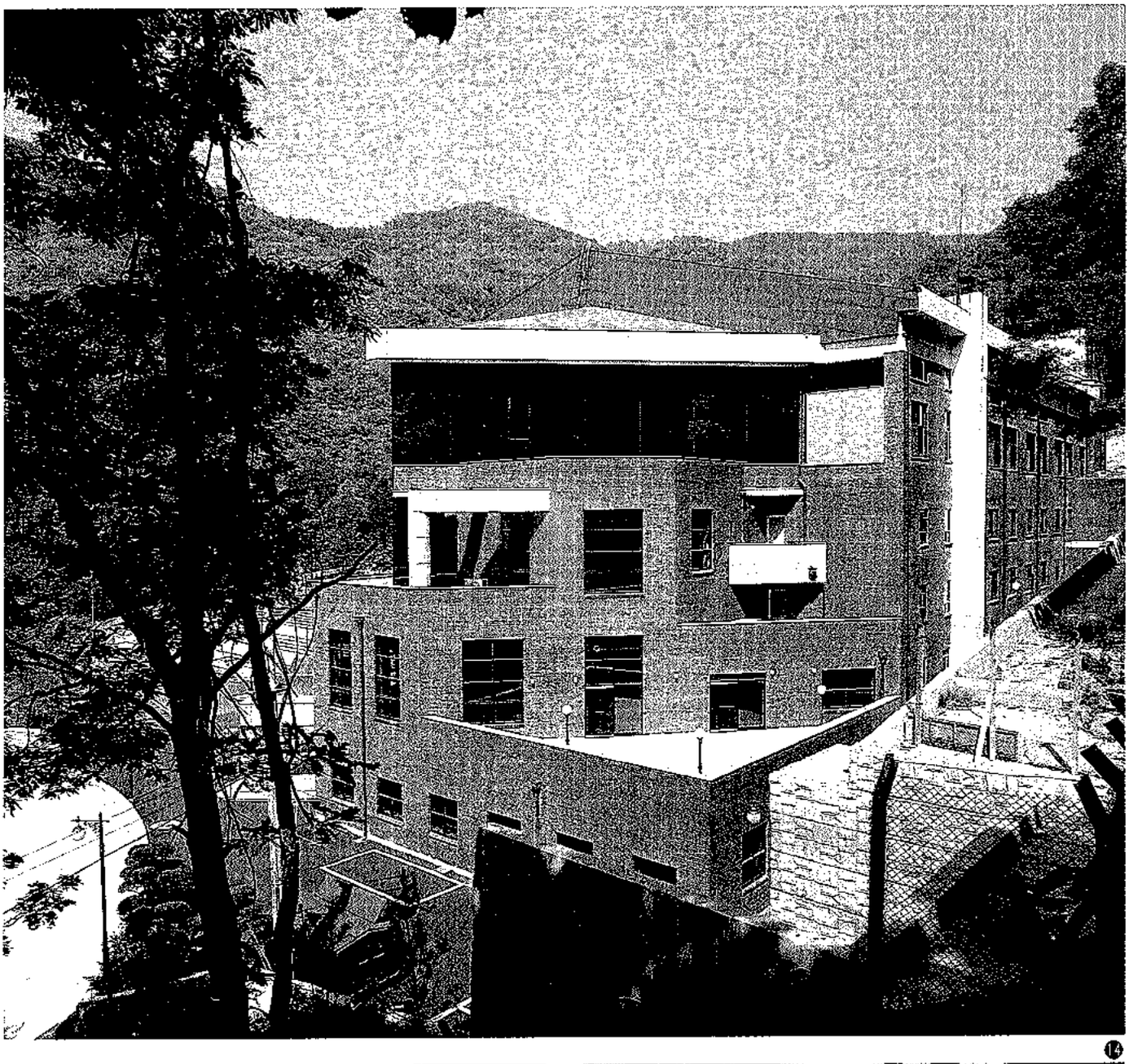

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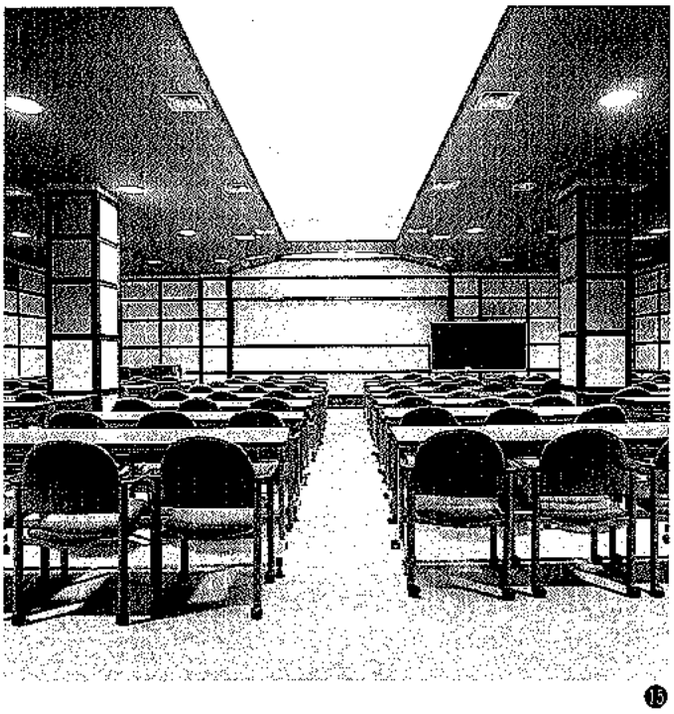

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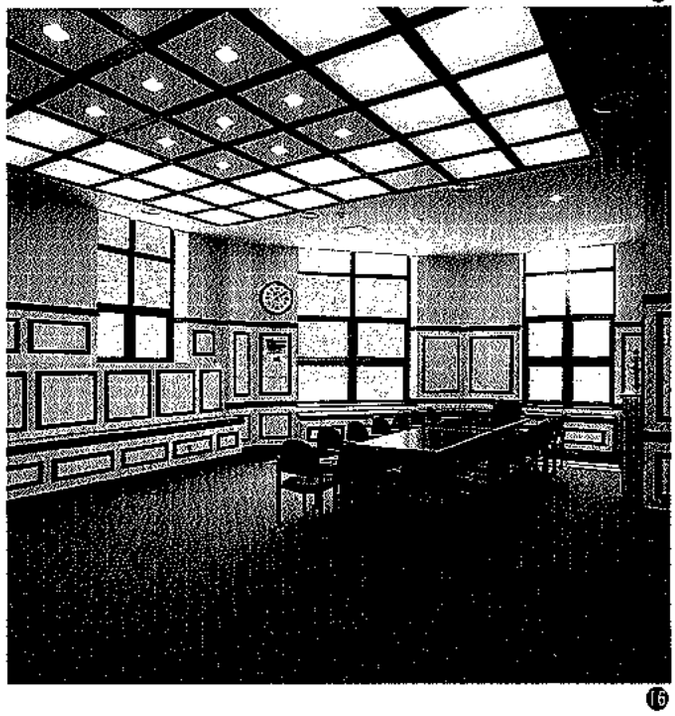

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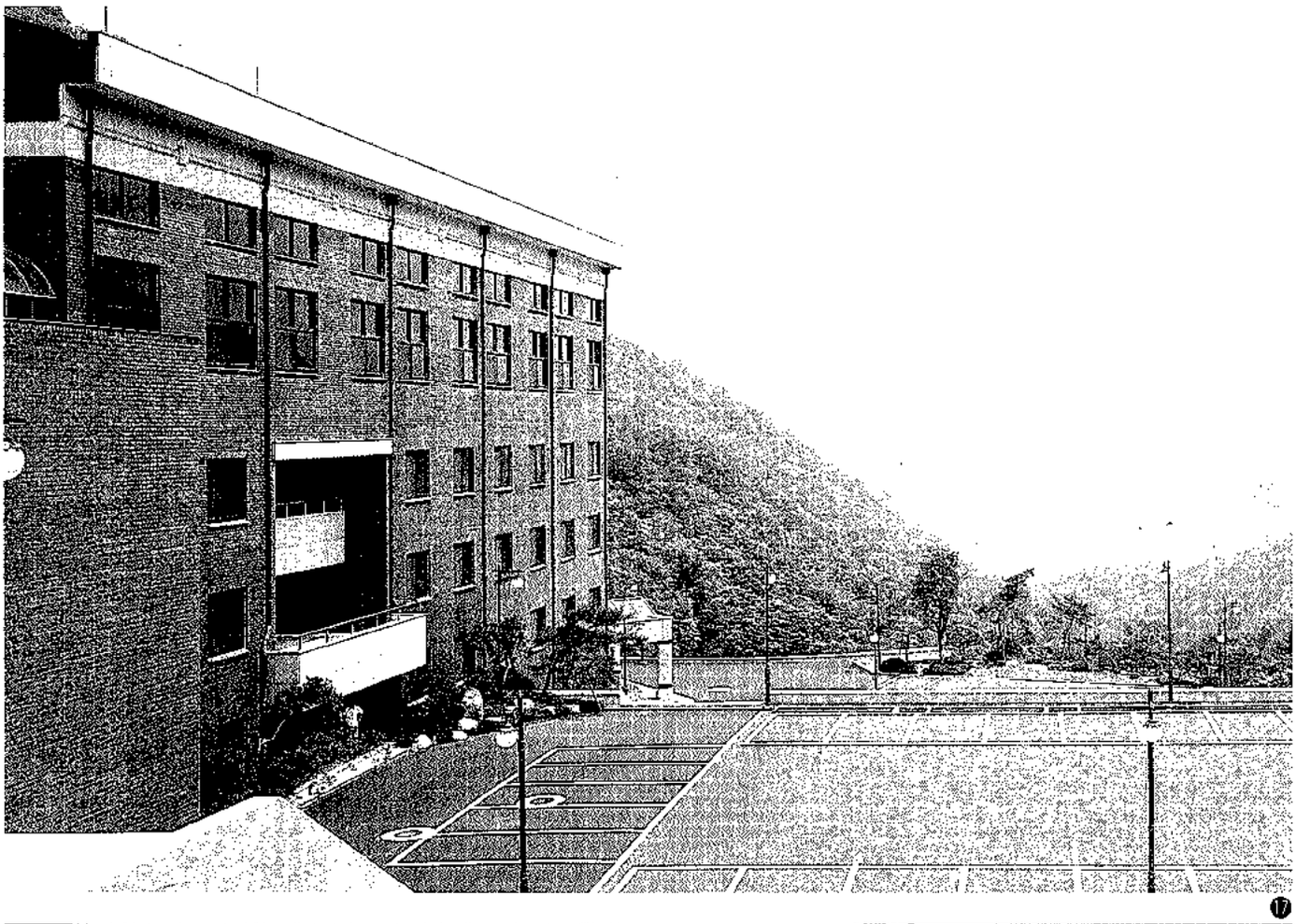

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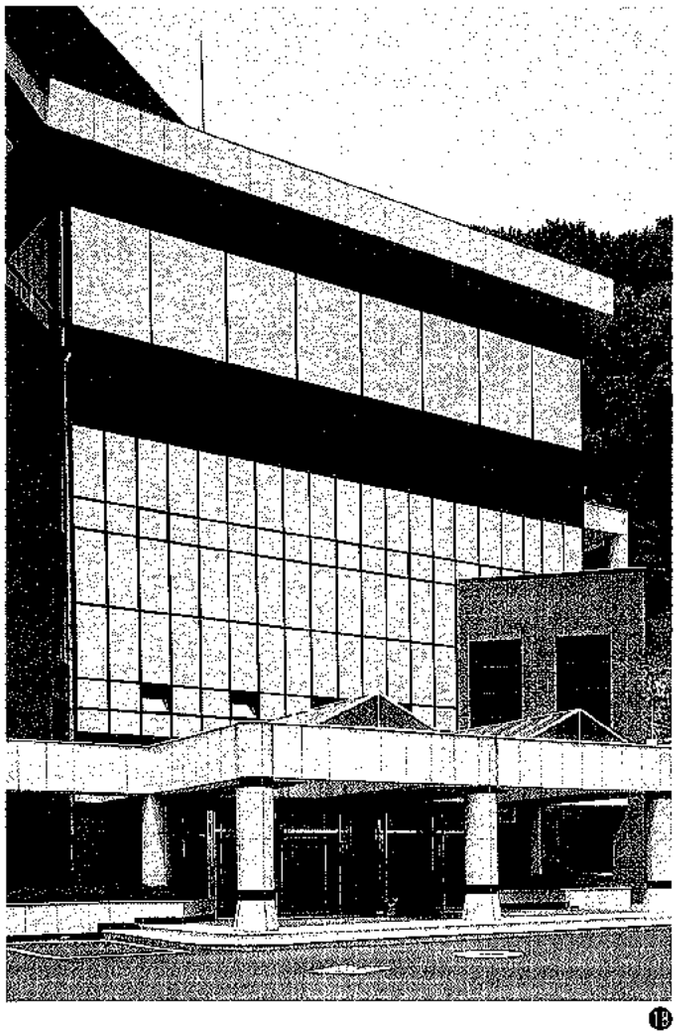

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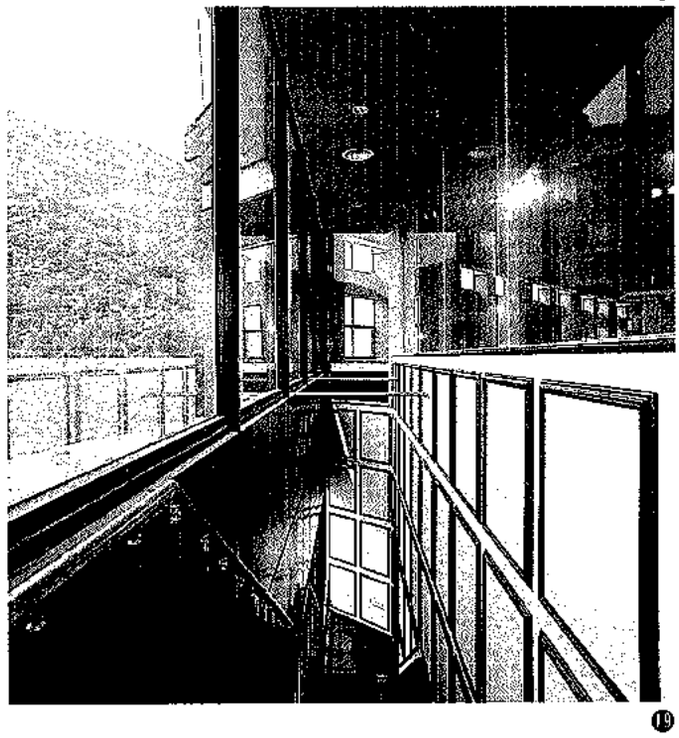

⑲

⑰ 북측전경
⑱ 남측 주출입구 상세
⑲ 5층 로비 계단실
⑳ 주출입구에서 본 전경
㉑ 대예배실
㉒ 2층 라운지 휴게공간

이 건물은 성락교회 산하의 연수 및 휴양 목적의 시설이다. 남한강의 수려한 풍광이 한눈에 조망되는 위치에 자리잡은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 우선되는 계획목표였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건축계획 이전에 산림훼손과 대지조성이 이루어져 건물을 산세에 따라 앉히려던 시도는 좌절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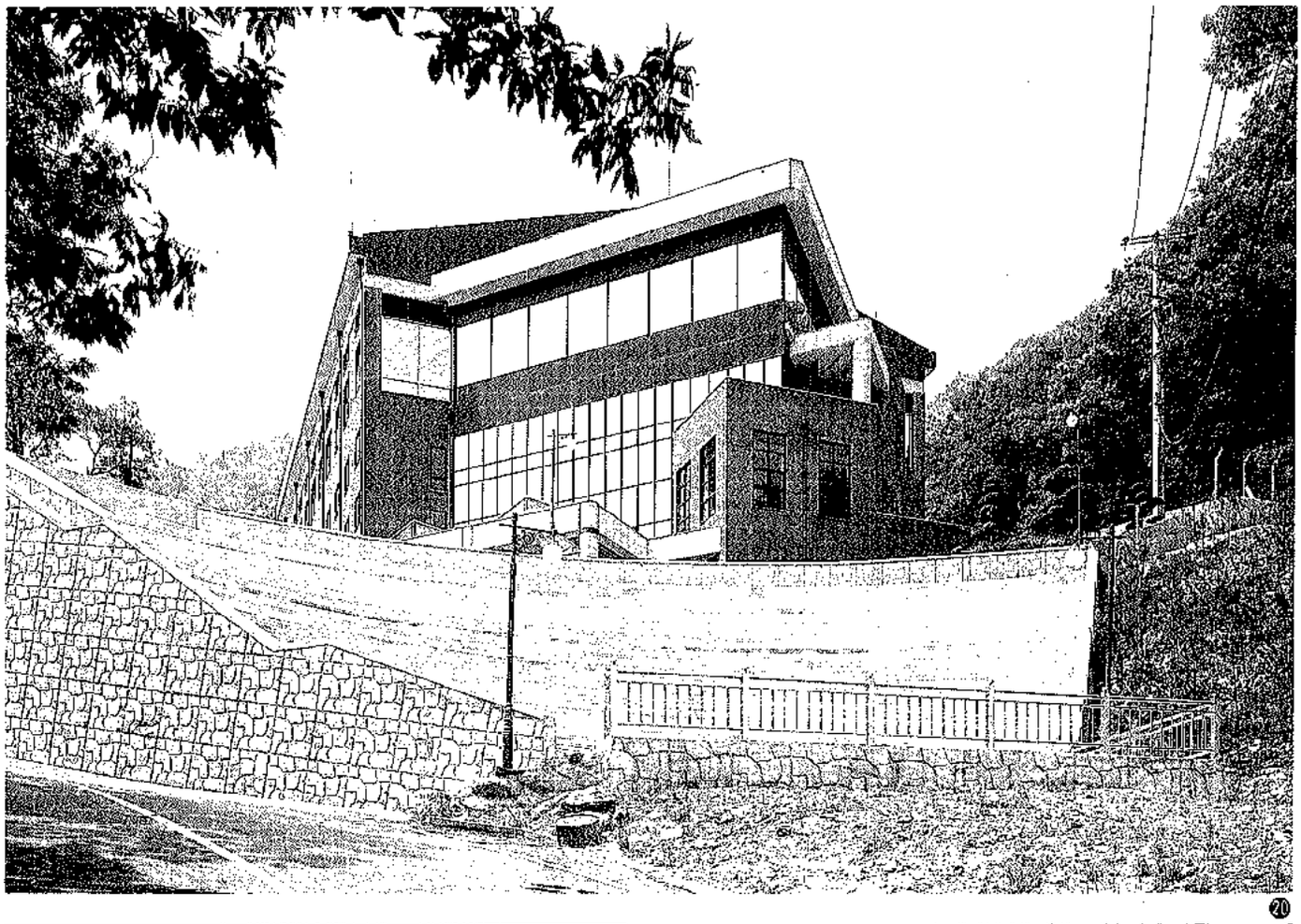

⑳

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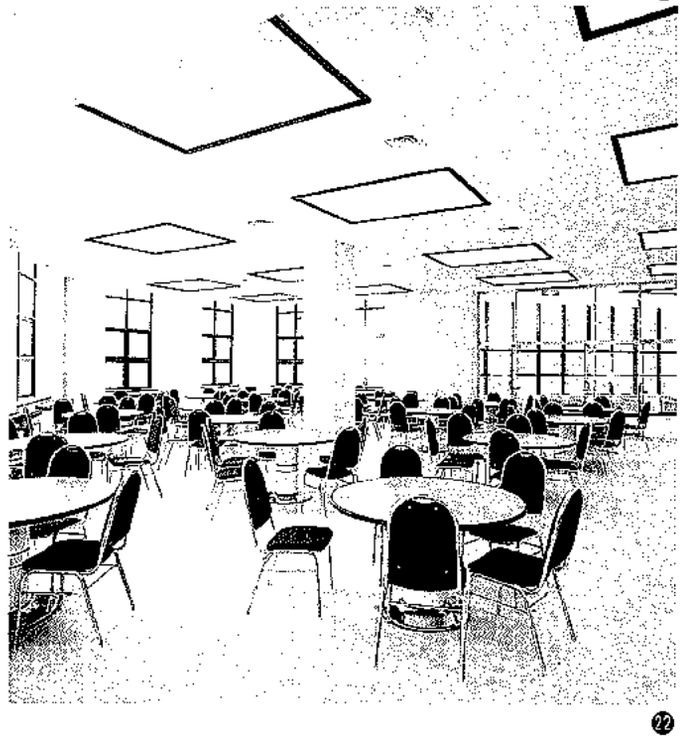

㉒

다만 건물의 전면부 모서리를 45도로 잘라냄으로써 산세에 최대한 순응시키는 차선책을 취했다.

주재료인 벽돌과 주변 경관을 반사해주는 전면 커튼월은 자연 속의 구조물이 취할 수 있는 허용을 생각한 끝에 채택되었다.

가장 특징적인 공간은 최상층의 대예배실이다. 통상적인 예배실들과는 달리 이곳 강단의 배경은 자연이다. 막힌 벽이 아니라 열린 창을 통해 들어오는 아름다운 산수에 의해 경험되는 예배공간은 아주 새로운 것이리라 기대한다.

평면계획에서의 난점은 정방형의 주어진 대지 내에 숙소부분과 기타 기능을 복합시키는 일이었다. 통상적으로 선형(線形)을 취하게 되는 숙소부분이 본건물에서는 건물 외벽을 형성하게 되고 코아부분에 강당, 식당등이 배치되었다. 필요층고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외주부와 중앙부는 Skip Floor의 형식을 가진다.

성동구민 종합체육센터

Seongdong Residents Sports Complex

삼정디자인그룹

Designed by Samjeong Design Group

조감도

위치 / 서울시 성동구 성수 1가 685-20 뚝섬 체육공원내
지역·지구 / 자연녹지지역, 운동장시설
대지면적 / 268,640.8㎡
건축면적 / 2,136.6㎡
연면적 / 6,068.8㎡
건폐율 / 5.71%
용적률 / 7.45%
규모 / 체육센터－지하2층, 지상3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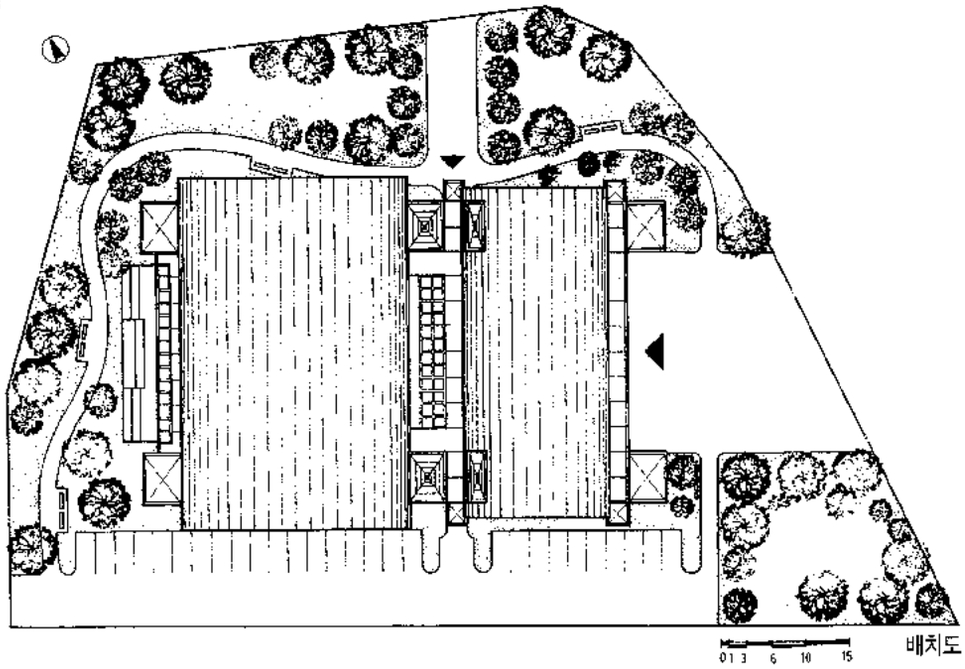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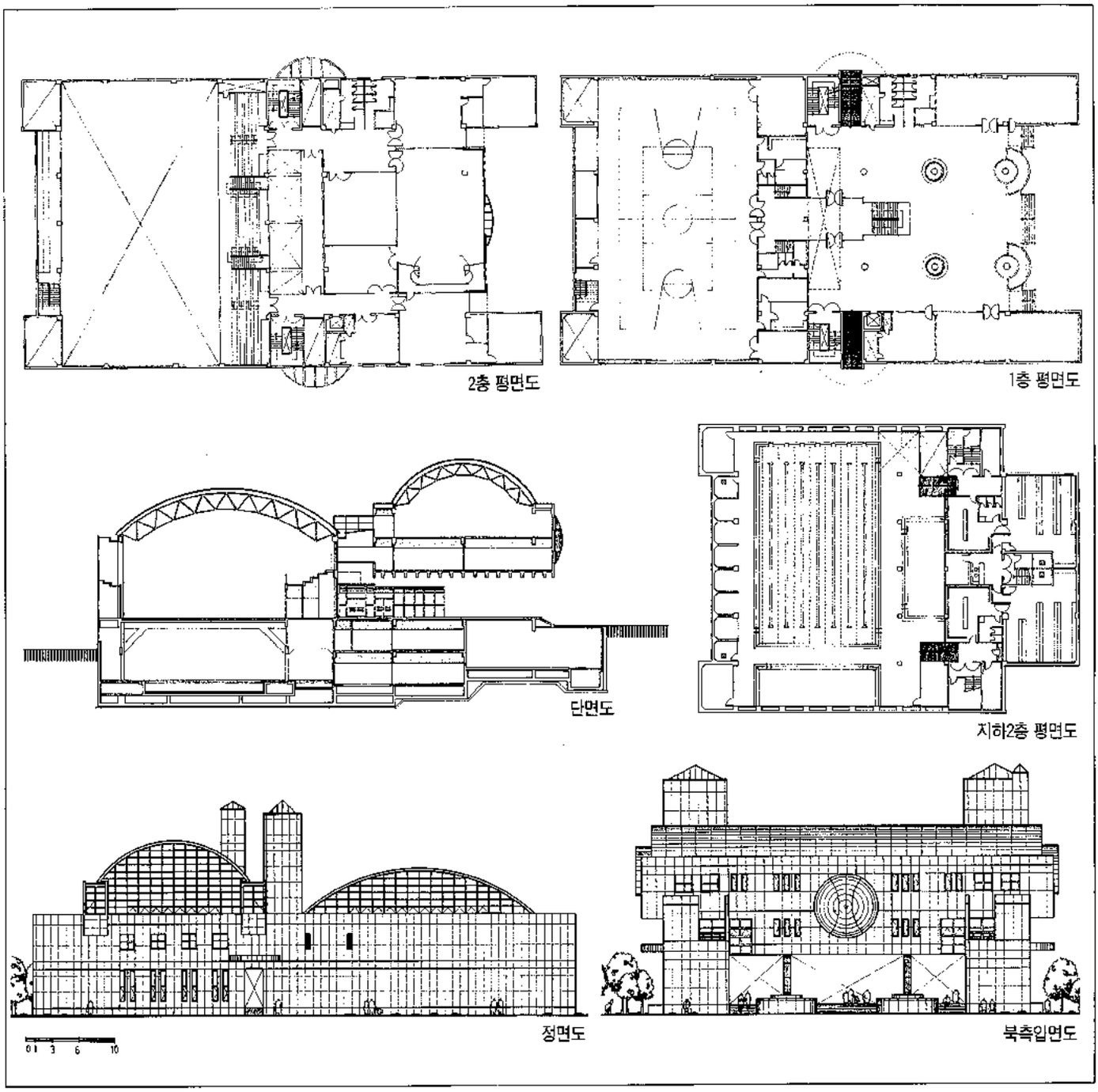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발주공사의 설계를 현상설계를 통하여 잔행해 왔었으나, 군소규모의 설계사무실의 응모만이 이어지자 이에 새로운 방식을 찾게 되었다. 서울시 소재 종합건축사 사무소중 응모하는 업체에서 모두 실적증명을 제출토록 한 뒤, 22개 업체를 선정하였다. 이들 중 추첨을 통하여 설계용역을 시행한 바, 첫번째 사례였다.

'성동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의 확충'이라는 목적아래 시행한 이 Project는 Program이 없이 규모(1,800평)와 공사비만 책정되어 있었고, 대지는 뚝섬 체육공원(구 경마장)내에 있어서 환경은 좋은 편이다. 인근의 도시환경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니지만 체육센터의 이용자는 매우 많으리라 예상할 수 있었다.

우선적으로 국·내외의 사례조사와 기능분석을 통하여 Program을 개발하기로 하였는데 사례조사중 느낀 것은 Program운영자의 사용후 평가(P.O.E)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왔다는 점과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작업없이 일본의 사례를 모방한 경우가 너무 많았다는 점이다. 이런 사례는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 본다.

사회체육과 교육을 겸한 기능을 목적으로 큰 Volume의 기능과 작은 Volume의 기능을 자연스럽게 구분하고, 이를 이어주기 위한 중정을 구상했다. 또, Long Span에 대한 구조 system을 저렴한 공사비로 풀 수 있도록 RC와 Space Frame으로 계획하였다. 체육관의 이미지인 강인한 힘을 느낄 수 있도록 Mass를 구성하며, 상징조형물을 전면에 두었다.

계획완료후, 성동구민의 자긍심이 되리라 기뻐했지만 설계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공사가 진행되었고, 원래 의도와는 다른 모양이 되어 마음이 아프다.

노출 CONC공사를 제대로 해보고자 일본 견학까지 다녀오던 시공자의 열의도, 공사발주가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아 – 1년반 정도의 공사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면서 – 사그라들더니 단지 일하기 쉬운 방법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만 것이다.

설계상의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좀 더 품위있는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설계자의 감리가 반드시 필요함을 새삼 일깨운 Project이다. (글·이종길)

천안기숙사

Cheon-An Dormitory

李逢春/비전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Lee, Bong-Ch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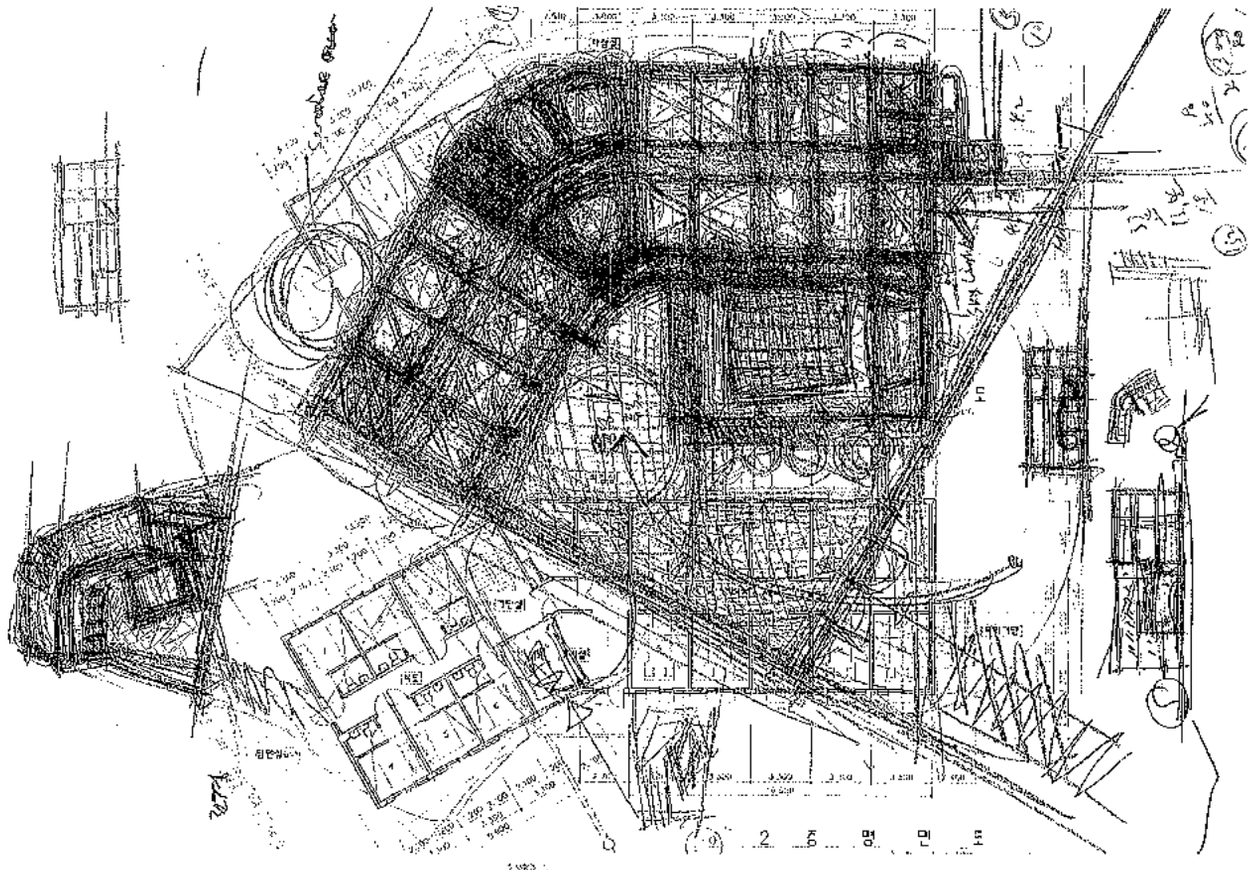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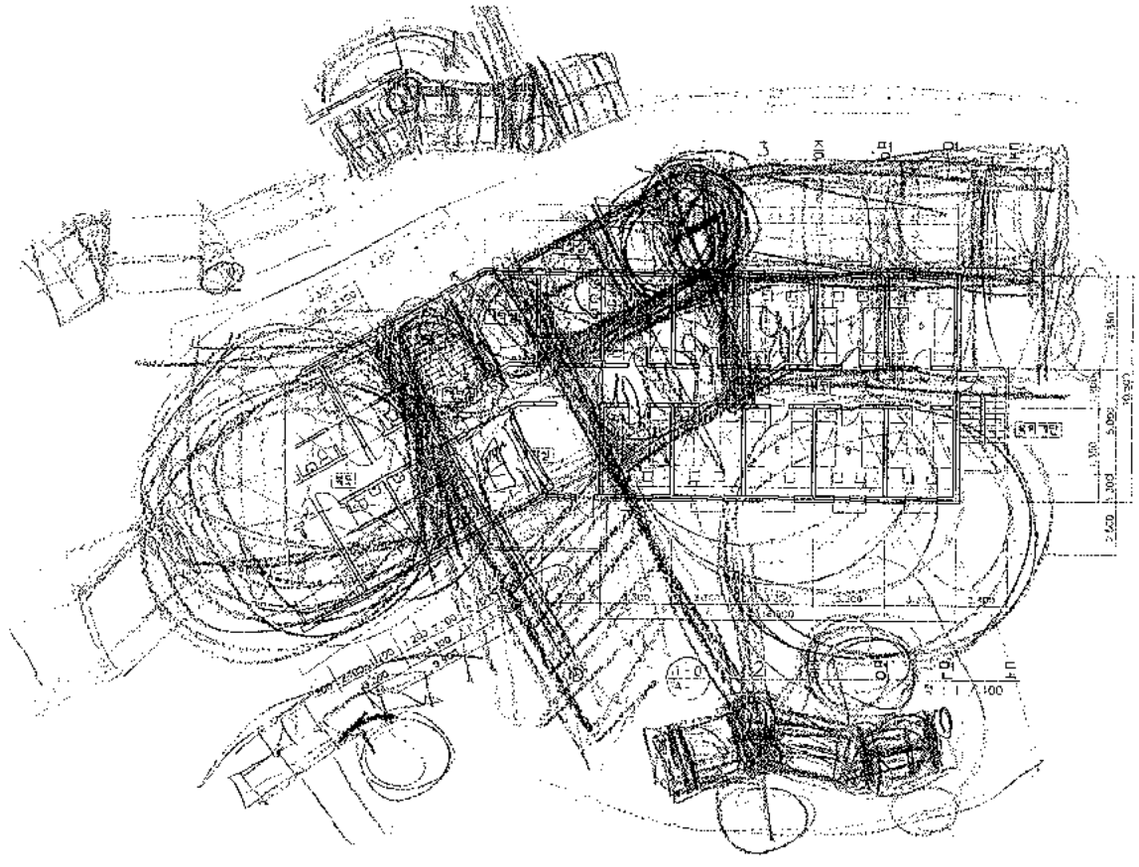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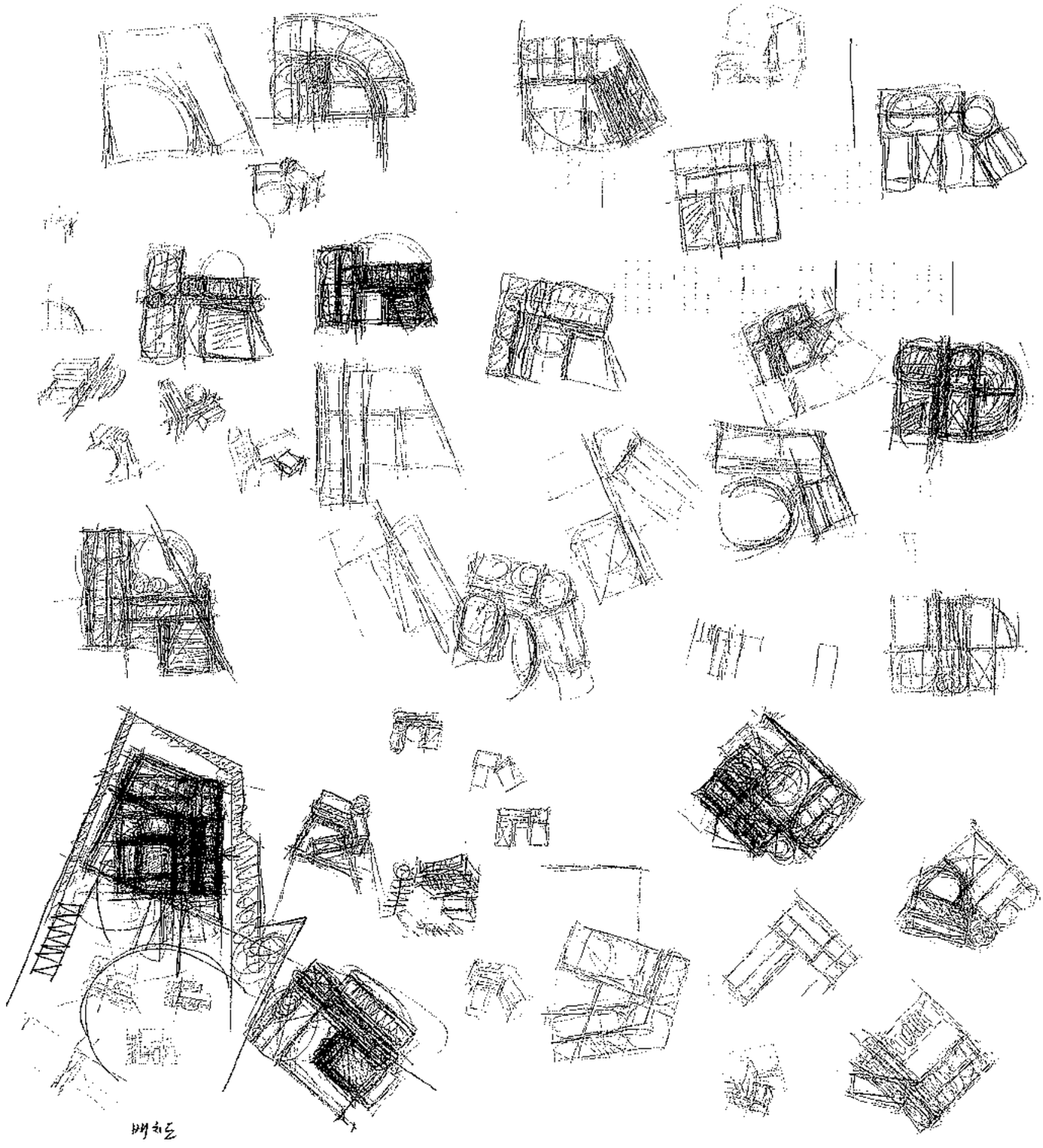

한편의 프로젝트를 건축적 해법으로 풀어가는 과정에서 나는 그 해결의 접근방법을 스스로 체득한 나 나름의 방식에 의하고 있다.

그것은 얼핏보면 온통 황칠을 한 어지러운 낙서와도 같으며 원초적 형상의 단순 도형을 반복하여 그리며 너무 엉키고 뭉쳐지는 무수한 선으로부터 시작한다.

주어진 부지의 지형지세 및 주변여건, 수렴해야 할 크라이언트의 요구사항, 건축적 개념분석과 열리고 닫히는 공간구성, 각 기능별 연결과 단절의 동선체계, 배치에 바탕한 지반층과 그위에 Over Lap되는 각층 평면, 그 평면의 내적 공간과 외적 파사드, 입면과 연관된 단면계획, 구조와 설비의 진단, 간과해선 안될 법규검토, 사용재료의 선택과 시공성, 경제성, 여기서 다시 환원하여 원점으로 난마처럼 얼크러진 복합적인 것들에서 찾아야될 그 무엇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지우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시 지우고 또 그리며 그러하기를 수십번, 그 누군가 건축을 빚어 낸다고 했던가. 눈에 드는 단한개를 얻기 위해 만들고 부수기를 수도 없이 거듭하는 도공의 속마음은 알량한 작가적 자존심 때문인가, 아니면 자아를 초월한 숭고한 예술적 구현을 위함인가, 자신에게 묻고 싶다.

주어진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알고 그 소임을 충실히 하였는가?

적당히 타협하고 손쉽게 처리하며 궤변적 논리로 정당화한 것은 없었는가?

만들고 부수는 도공의 정신은 이 시대의 건축인에겐 그 어떤 작가적 표현으로 나타난다 할 것인가.

건축 정보체계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The Problem of Architectural Information System & Course of Development

정보화 시대를 맞아 정보시스템의 구축은 미래의 생존을 보장받기 위한 절대절명의 과제로 모든분야의 관심 사항이다. 건축설계분야 역시 창작건축물의 질을 높이고 건축실무의 효율화를 이루어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건축정보 시스템의 구축이 어느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지에서는 건축설계 자료의 운용현황과 문제점, 건축설계정보의 체계화 방안과 기대효과, 건축설계정보의 공동개발과 활용방안 등 건축정보체계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점검하고 올바른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건축 정보체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이란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한다. 〈편집자〉

일 시 :
1994. 8. 17(수) 14 : 00
장 소 :
본 협회 소회의실
참석자 :
최태용(이방건축, 사회)
강철구(동우건축)
권도웅(정림건축)
김우성(아키프랜건축)
장응재(원도시건축)
조형섭(삼우건축)
최영집(탑건축)

사 회 : 늦더위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국내·외적으로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건축계에도 정보시스템 구축은 회원모두의 절대절명의 관심사이다. 따라서 오늘 좌담회에서는 창작 건축물의 질을 높이고 건축실무의 효율화를 이루어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의 하나로 건축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여러 회원님들을 모시고 그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우선 설계사무실의 자료의 운용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 바란다.

강철구 : 우리 사무실은 처음부터 사무실의 정보를 두가지로 나누었다. 하나는 분류법에 의한 일반 문헌정보 방식과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보를 분류하는 방식이었다. 두가지 모두 시행착오가 있었다. 일반 문헌정보에 의한 분류법으로 도서관 사서를 고용하여 K.D.C에 의한 분류로 1,000여권의 책을 분류했었다. 그러나 그 분류법이 실무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한번 분류를 잘못하면 책이 어디에 있는지 조차 모를 정도이기 때문에 현재는 실무에 잘 쓰이는 자료만을 사무실에 비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박물관, 인물, 작가별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이것에 의존하여 작업수행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 전자정보방식은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얼마 안되어 우리

사무소 자체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아직은 정보교환시스템이 완성된 곳은 없고, 시행준비 단계라 할 수 있으며 타 사무소와 조인트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리라 본다.

장응재 : 현재 우리 사무실은 자료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10여년전에 사서를 채용하여 문헌관계, 도면, Document 등을 정리 보관하여 카다로그로 분류하였다. 병원에 관한 정보를 얻고 싶으면 사서직원의 List를 이용하여 큰 불편은 없었다. 세월이 흘러 사서직원이 자주 바뀜에 따라 지금은 Project를 직접 진두지휘한 사람이 스스로 자료를 찾아야 하는 등 혼란스럽게 되었다. 거기에다 현재는 Computer에 결부되어야 하는 전자정보는 타 사무소와 크게 다른 점이 없는 듯하다.

사 회 : 조직이 방대해질수록 자료실을 운영하는데 사서 등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있으면 설계업무에 이로운 점이 많으리라 생각된다.

장응재 : 대개 도서관학과 출신을 사서로 고용하는데 건축의 내용을 나름대로 파악하여 업무에 숙달되기까지가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조형섭 : 우리 사무소는 정보시스템이란 용어를 Engineering Data Base란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다. 현재 250대의 P.C를 보유하고 있으며, 모든 업무를 전산화한다는 전제조건이다. 이 가운데 전산으로 검색할 수 있는 것은 잡지, 설계완료된 자료 등이다. 예를 들면 잡지책의 몇년 몇월호의 목차나 Elevator에 관련된 자료를 반아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30만부의 원도를 보관하는데 공간을 많이 차지하므로 Index만 관리해서 몇년도 어느 도면은 어느 위치에서 찾아 읽을 수 있도록 전산화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 사무소의 Engineering Data Base구축방안은 너무나 방대하므로 당사만의 힘으로 이루어질 문제는 아니라고 보며, 사협회나, 학회에서 부분별로 나누어 추진해야 될 일이라고 본다. 미국의 경우 Sweet's Catalogue를 디스켓으로 시중에 판매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설계에 필요한 물가자료, 각종 건축법규를 협회에서 Data Base화하여 단말기를 이용하여 회원들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해야 되리라 본다.

사 회 : Engineering Data Base 분야중 언급된 분야 외에 더 추가해야 될 내용은 어떤 것인가.

조형섭 : 설계에 필요한 모든 Data를 Engineering Data Base라고 부르고 있다. 예를 들면 설계기준 정보 Data,

최 태 용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정보를 잘 정리하면 효용가치는 매우 크다고 보며, 이러한 정보들이 어떤 방식으로 개발되고, 공유할 수 있는가가 관심의 초점이 되리라 본다.

건축법, 기술계산정보, 공사자재, 표준화 디테일, 시공정보를 넓은 의미로 포함하고 있다.

사 회 : 대형 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정보중 상당한 부분은 설계에 매우 유용하리라 본다. 어느 정도는 공개할 수 있는 내용과 비공개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회원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은 어느 정도 되는가.

조형섭 : 우리 사무소에서 정보를 분류한 Engineering Data Base중 원도를 관리하는 단계, P.C로 도서를 검색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 도달했으며, 그 이외에는 계속 연구 추진중에 있다.

강철구 : 정보를 원하는 사람이 자료가 어느 창고에 있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 창고자체가 문서로써 쓸 수 있게끔 되어있다는 내용인가.

조형섭 : 예를 들면 잡지책 몇월호에는 어떤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장응재 : 무역센터 설계시 일본 니켄세케이 팀으로부터 조경기본계획에 관한 도서를 받아 보았는데, 디자이너가 작업을 한 부분은 전체에서 약 20%정도 밖에 안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자료실의 Data Base에서 얻은 자료로 보였다. 실제 작업에 일주일 정도 소요되고 Key Member는 2인이 작업하고 나머지는 자료실 요원이 뒷받침해주는 방식으로 작업되었다고 들었다. 이렇게 하여 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나면 Filling되며 자료실에

보관되어 나중에 다시 자료로 사용하게 된다. 예를 들면 병원을 설계할 때에 그와 유사한 자료가 다시 모아져 자료화된다는 것이다. 이런 자료화 작업이 너켄세케이 같은 경우에 많이 비축되어 설계작업에 매우 유용하게 쓰여지고 있다.

권도웅 : 정보시스템은 내외부에서 생성되는 각종자료들을 단순히 수집, 관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어떤 체계에 의해 가능한 한 빨리, 적기에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가공하고 설계에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가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정림을 포함 모든 설계사무소가 아직은 정보시스템운영의 초기단계라고 본다. 지금까지 정림은 필요, 시급도에 따라 분야별로 정보전산화를 추진하여 왔는데, 그 예로 프로젝트자료관리, 도서자료관리, 시방서, 디테일의 코드화, 도면작업을 단순화 시켜주는 Drawing, Library-Elevator자료, 위생도기, Door, Door Frame 등의 개발 사용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도서자료는 U.D.C분류체계를 건축설계분야에 맞게 변형, 사용자 및 관리자 운영체계로 전산화하여 이용하고 있다. 최근 건설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각종 철근 배근중 Slab배근도 작성용 소프트웨어 개발과 Spacer와 Chair Bar에 대한 것 등도 개발 사용하고 있다. 보 List 및 한글 단, 복선 소프트웨어는 이미 공개되어 판매되고 있다. 올해부터는 보다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정보시스템운영을 위해 MIS(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경영정보시스템)를 추진하고 있는데, 경영관리, 프로젝트관리, 인사·급여관리 등에서부터 기술정보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된다. 단계적으로 개발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할 구상도 가지고 있다.

추진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필요한 모든 분야를 자체개발, 관리하는데는 과도한 투자가 예상되고, 거시적으로 볼 때 타사무소와 중복투자라는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강철구 : 얼마전부터 각사무소마다 정보공유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그러므로 누가먼저 시작하느냐가 중요하다.

김우성 : 목표는 아마도 뚜렷한 것같다. 각 사무소에서 힘을 모아 공동개발하고, 사협회를 창구로하여 현안들을 연구해야 한다. 우리 사무소도 정보체계를 계획자료와 기술자료로 크게 나누어 분류하고 있다. 교회, 사무실 등 용도별 사례를 계획자료로 분류하고 있고, Detail, Design을 위한 기술자료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는 자료를 입수하려면 번잡함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로 모아서 회원들에게

강 철 구

정보공유체계를 이루어 현실적으로 법규나 기본적인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의 검토 등을 자료화하여 회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제공해주는 역할을 사협회에서 수행해야 된다고 본다. 건설기술연구원에서 만들고 있는 표준시방서나 각 사무소의 상세도는 협회차원에서 CD120미터로 발간해서 회원들에게 배부해 주어야 한다. 다음에 우리 건축계에서 낙후된 것은 건축자재에 대한 기술자료이다. 우리나라 자재의 발전을 위해서 포멧을 정해서 자재업체들에게 제공해주어 그에 의해 자재에 관한 자료가 정리된다면 우리나라 건축설계에 매우 큰 도움이 되리라 본다.

최영집 : 대형사무실은 상당히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있으리라 생각했으나, 대부분 아직 초기단계인 듯 싶다. 대형사무실에서는 나름대로 필요성에 의해 정보를 자체 개발하거나 분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정보센터는 이러한 중복 투자를 피하여 개발의 질을 높이고 공유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본다. 우리 사무소의 정보체계는 아직 초기단계이다. 따라서 자체 개발능력이 없는 대부분의 사무실들은 사협회의 역할에 대해 기대를 가지고 있다. 건축계에도 P.C의 도입초기부터 정보체계에 대해 인식을 가지고 미리 대비했어야 했다. 각 사무소별로 데이타를 만드는 비용, 시간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 공공단체 중 사협회가 주축이 되어서 추진해 주어야 한다. 또한 건축정보센터에 대해서 처음부터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기 보다는 건축정보도서관이라도 먼저 운영이 되어야 한다. 건축정보센터를 운영하려면 각자 회원들 Mind가 바뀌어야 한다. 학자가 논문을 발표하여 인정받듯이 작품도 발표와 동시에 작품에 대한 Know How를 회원들이 어느정도 공유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되어야

권 도 웅

정보시스템구축은 일단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며, 사협회는 Task Force System 전문조직을 구성하여 2, 3년 후에는 회원들이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한다

김 우 성

여기저기 분산돼 있는 자료를 입수하려면 번잡함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로 모아서 회원들에게 제공해 주는 역할을 사협회에서 해야 된다

하고, 명예와 더불어 거기에 따른 반대급부를 받을 수 있도록 원칙이 세워져야 한다. 건축을 위한 공개념이 그런면에서도 체계화되어야 한다.

사 회 : 현재 정보공유에 대한 공감대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행이 안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최영집 : 우리나라 건축설계수준은 회원이 회원의 설계를 검토하는 단계이고 심의를 받아야 하는 수준이라고 한다. 회원들 서로 자료를 공유하고 이용하는 철학이 정립되어야 한다. 폐쇄지향적이고 건축계 흐름을 도외시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서로의 잘못을 검토하고 자신의 작품을 떳떳이 공개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관계로 접어들어야 한다.

권도웅 : 회원들 스스로 무엇을 할 것인가? 좀 더 자기 성찰이 있어야 겠다. 하지만 이런 인식이 공감되어 있다는 사실에 가능성은 충분하리라 본다. 정보 시스템구축은 일단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사협회에서는 Task Force System 전문조직을 구성하여 2, 3년후에는 회원들이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한다. 정보의 개념도 공개, 비공개로 구분이 된다. 예를 들면 각 군의 조례, 방침은 당연히 공개되어져야 되며, 사협회에서 먼저 투자하고 나중에 수익적 사업으로 운영해야 한다. 현재 건축정보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건설공제조합이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우리는 건설자재 정보를 받고 있다. 따라서 사협회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를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사 회 : 사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정보만이라도 잘 정리해도 효용가치는 매우 크다고 보며, 이러한 정보들이 어떤 방식으로 개발되고, 공유할 수 있는가가 관심의 초점이 되리라 본다.

장응재 : 사협회는 건물의 분기별 허가건수, 연면적 등은 발표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나, 어떤 Project에 대한 규모, 설계자, 시행내용 등에 대해 총괄적으로 기록, 정리된 자료는 없으며 사협회 차원에서 이런 자료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최근 건설부 Sheet로 보여지는데 착공신고를 통해 이런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들었다. 건축관계의 자료를 수집하고 종합화 시키는 노력이 각 분야별, 연구소나 정부기관에서 각각 추진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개인 설계사무실 차원에서 알기도 쉽지 않으므로 사협회 같은데서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설계작업에 필요한 자료를 종합화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영집 : 건축잡지가 발행된지 10년이 지났다. 그 당시에 협회 도서관이라도 있어서 도서, 문헌 등을 기증받아 정리하여 왔다면 상당한 체계가 세워졌을 것이다. 문헌자료에 관한 정보는 당장에 시작하여야 하며, 디자인이 아닌 각 사무실의 표준설계도서는 회원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견표출들은 작년부터 대두되어 올 봄에 김우성 소장님과 함께한 토론회에서도 집중적으로 거론되었다. 이번 좌담회를 통해 한단계 더욱 발전시켜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단계로 접어들어야 한다.

사 회 : 건축정보화시스템에 대하여 조직의 필요성과 타 단체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 바란다.

김우성 : 우선 정보분야에 유능한 인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상황을 파악하고 예산 등 관련 제반사항을 협회 집행부에 건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권도웅 : 무엇이든지 시작이 중요하다. 위원회를 조직해서 운영하거나 Task Force System을 조직해서 운영해도 시행착오는 있다. 사용자의 정확한 요구를 장기적이고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건축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본다. 정보는 과감히 검색하여 버릴 것은 버리고 Update 되지 않은 정보도 분석하고 가공하여 과감히 취사하는 정보시스템이 필요한 것이다. 현 시점에서는 시공화사, 건설공제조합, 주택공사와 서로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하며, 건축도서관은 자유 열람실 형태보다는 도서를 검색하여 Printing까지 할 수 있고 자재시험소와 연계하여 회원들이 안심하고 자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되며, 또한 사무실에서 공간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관보를 전산화하고, 표준화된 상세도와 시방서도 이용자가 Printing까지 할 수 있어야 하고, 홍보기능, 교육, 세미나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건축도서관이 되어야 한다.

사 회 : 취합된 정보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려면 그 선택기준을 정하는 것 자체도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일례로 자재를 선택할 때에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권도웅 : 우리 사무소는 자재를 선택할 때에 기준을 세우고 쓰고 있다. 공업시험연구소의 시험성적표 등에 대한 검토를 한후 가격이 같고 외제의 성능에 비해 80%정도의 수준이 되면 국내 건축자재의 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국산을 쓰고 있다.

장응재 : 자재에 대한 정보가 실제적으로는 문제가 많은 부분으로 정리된 자료가 신용있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려면 전체 생산, 산업계의 수준과 관련이 있으며 최소한 수집된 정보가 상당한 기간 효용이 있으려면 조사 및 판단에 기준도 있어야 하고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신용이 전제되어야 한다.

최영집 : 사협회의 나아갈 방향은 연구시험기능은 외부전문집단에 용역을 주고 활용 정보는 비축하여

장 응 재

협회 차원에서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규모, 설계자, 시행내용, 도면 등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설계작업에 필요한 자료를 종합화하여야 한다

회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21세기를 대비하여 회원 각자가 자기사무소에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도서관을 겸한 건축정보센터를 구축할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

조형섭 : 건축정보센터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조직은 위원회같은 일시적인 조직보다 정보에 관한 모든 것을 통괄하는 항구적인 상설조직이 필요하다.

데이타 베이스를 구축하였다 하더라도 검색하고 최신정보를 바로바로 입수하는 차원에서는 상설조직으로 편성하여 여러단계에 걸쳐 방향을 넓혀가는 것이 급선무이다. 또한 협회에서 데이타베이스화하여 사무실에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정보시스템은 법규의 데이타 베이스화이며 서울시내 20층 이상 고층건물을 알아보는 Project 등의 D. B화 또한 협회가 앞으로 해야할 일이라 본다.

최영집 : 정보시스템구축에 필요한 경비는 협회 회비에 의존하지 말고 자생력과 수익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정보 사용료와 자료검토, 규모검토를 협회 정보센터에서 서비스해 주면서 사용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각 사무실의 실계·도서 자료도 정보센터와 연계시킬 수 있을 것이며, 기술축적이 이루어지면 협회에서 항구적으로 건축에 관한 종합자료를 관리하는 체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사 회 : 위원회 조직보다 차더라도 상설조직이 필요하며, 한편으로 타집지와 연계하여 정보센터를

조 형 섭

협회는 장기적으로 설계에 필요한 물가자료, 각종 법규 등 제반 자료를 Data Base화하여 회원들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최 영 집

21세기를 대비하여 회원 각자가 자기 사무소에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도서관을 겸한 건축정보센터를 구축해야 한다

운영한다면 수익성이 충분히 보장되리라 본다.

강철구 : 정보시스템 운영은 수익자 부담이 되어야 한다. 먼저 사협회에서 우선 일정기간 투자하고 일정기간 회수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자. 현실적으로 법규나, 기본적인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의 검토 등을 자료화하여 회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투입된 비용은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자.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조직으로는 위원회 조직이 적당하다. 두번째로는 비교적 자료관리의 시스템이 잘되어 있는 사무소의 노하우를 입수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으로 하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면 현실적으로 우리 회원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가능하리라 본다.

김우성 : 우리 건축분야와 관련이 있는 전기, 설비, 토목협회와 서로 자체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System이 될 수 있도록 하자.

장응재 : 1년동안에 허가된 건물과 준공된 건물을 알 수 있는 연감을 발행해서 회원들에게 정보교환이 되도록 하자.

사 회 : 작은 것부터 규모를 확장해가야 되리라 본다. 건축 도서실이라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인 듯하다.

김우성 : 현시점에서 설계사무실에 있는 원도보관이 가장 큰 문제이다. 원도보관은 앞으로 설계사무실에 보관하기보다는 건물주가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하고 이주하게 되더라도 인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협회에서는 보존가치가 있는 전문서적에 대해서는 국립중앙도서관에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활용토록 한다면 별도의 건축도서관을 설립하는 것보다 현실적일지 모르겠다.

강철구 : 가능한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동의견서를 집행부에 제출하여 사업의 가능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자.

권도웅 : 외국에 사례중 Elerbe Becket의 경우 미국내 다섯개의 지부와 미네아폴리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각 지부에는 실무부서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이다. 각종 관리체계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고품위 Rendering, Animation등 중복투자가 우려되는 분야는 모두 미네아폴리스 본사에서 통합운영하면서 각 지사에 온라인 서비스체계를 갖추고 있다. 정림건축의 종합정보시스템구축에도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규모가 영세한 회원들이 대부분인 사협회의 경우, 회원사별로 건축정보시스템구축이 가능하다고 보며, 정보의 정확성과 획득을 위한 소요시간 단축으로 회원사들의 디자인과 기술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이 형성될 것이다.

사 회 : 바쁘신 가운데 장시간 토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토론내용이 향후 협회 회원업무에 유익한 고언이 되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축법 개정의 방향에 관하여

Revising Course of Architecture Law

元鍾一/세종건축사사무소
by Won, Jong-Il

지난 5월 건축법령 개정방향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을 때는 종합건설업 면허제의 도입여부 논란이 한창이기도하여 건축법과 건축사법 개정에 관한 관심이 매우 고조되었다.

개정된지 불과 2년여 밖에 되지 않은 건축법을 또 다시 개정하겠다고 하는 건설부의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의 간섭, 역할 최소화에 상응한 건축행정력의 민간이양 강화를 통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또한 이와 같은 조치와 아울러 현행 법정기술 기준을 민간 학회기술기준으로 민간 권한체제로 이양함으로써 국제화, UR개방화에 대처하겠다는 것이 기본골자인 것 같다.

이번에 건축법을 개정하겠다는 근본배경에는 문민정부가 주도하는 법규제 완화와 민간 자율능력으로의 이양이라고 하는 표면적 취지가 설득력있게 보이기도 하지만 실은 공청회 과정에서도 학계와 여러 전문가들이 우려한 바와 같이 우리 대중의 사회정신 및 건축문화 이해수준으로 보았을 때 선진국에서 조차도 건축을 공공성이 매우 강한 분야로 인정하여 건축행정을 공권력으로 상당히 규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건축행정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민간자율에 맡기는 식으로 법개정 한다는 것은 건축행정이 악이용되거나 교란되어 건축문화가 더욱 퇴행될 소지가 있어 법개정 목표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관이 해야 할 일을 민이 한다거나 상호이해가 얽혀 있는 일을 상호간의 견제구도가 없이 어느 한 편으로 하여금 독단적으로 수행케 하는 것은 그 모순으로 인한 업무상의 갈등과 비능률을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UR에 대비키 위한 건축사의 업무능력제고라고 하는 근본적 목표와도 역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의 근거와 당위성에 대하여 관으로부터 민간 설계사무소에 위임된 현장조사·검사업무를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하나의 건축물이 완성될 때까지 직업적으로 활동하는 주요 분야로써 설계, 시공, 감리 및 건축행정 등 4분야가 있다.

이중 건축행정은 민간의 건축활동이 공공대중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건축활동의 위법을 사전에 예방할 뿐만 아니라 시공중에 있는 건축물이 위법되지 않도록 부단히 감시 및 의법조치하여 공공대중을 불법 건축행위의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현장조사·검사업무는 건축행정 업무중 하나로써 그 주요 업무는 건축물의 규격, 용량과 수평, 수직적 위치가 건축법에 부합되어 건축허가신청 및 준공허가 신청시 인가될 수 있는가 여부를 결정하는 일이다.

이 업무는 매우 공정성이 필요한 업무인데 왜냐하면 만일 이 업무가 건축주에게 이권을 주기 위해 자의가 게재된다면 신축건물 주변의 주민들이 바로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이다.

설계사무소라고 하는 민간에게 이 업무를 위임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건축사는 건축주에게 설계를 수주하기 때문에 변호사처럼 자신의 고객인 건축주에게 될 수 있는대로 편익을 제공할 수 밖에 없는 위치에 놓이게 되므로 건축주의 자의적인 불법을 묵인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처지에 있는 건축사로 하여금 불법건축물을 통제하는 업무인 현장조사·검사업무를 하라고 하는 것은 마치 변호사에게 범죄 혐의가 있는 변호사의 고객을 변호사 자신으로 하여금 고발하라고 시키는 것과 같은 매우 이율배반적인 발상인 것이다.

변호사가 검사의 역할을 겸할 수 없듯이 설계업을 전문으로 하는 건축사 또한 자신의 고객인 건축주의 자의적 위법을 감시하고 적발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작년 말에 매스컴에서 일제히 감사원 적발사항으로서 건축사가 대행하는 현장조사·검사의 47%가 건축주와 협잡하여 허위 보고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건축사가 불법 건축에 앞장섰다고 매도한 것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의당 관이 해야 할 일을 관이 하지 않은 데서 발생한 구조적 모순을 반증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이

> 현재 소규모 건축물은 법적 시공자 없이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감리비는 실제로는 현장조사·검사 용역비에 해당되고 실제의 업무내용 또한 그 정도에 지나지 않으므로 차라리 소규모 건축에서 감리비를 현장조사·검사업무 수행비로 전환시켜 예산을 확보하여 이 예산으로 건축사를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겠다.

구조적 모순으로 말하자면 47%의 허위보고가 아니라 100%의 허위보고 개연성을 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장조사·검사업무가 매우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여 건축사 이상의 전문능력을 갖춘 인력으로 밖에는 수행할 수 없는 일이라면 일본의 경우처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한 인력을 특별히 채용해서 공무원 신분으로서 수행케 할 것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소규모 건축물은 법적 시공자 없이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감리비는 실제로는 현장조사·검사 용역비에 해당되고 실제의 업무내용 또한 그 정도에 지나지 않으므로 차라리 소규모 건축에서 감리비를 현장조사·검사업무 수행비로 전환시켜 예산을 확보하여 이 예산으로 건축사를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겠다.

현장조사·검사업무의 민간 건축사로의 위임으로 인한 폐해는 이전에도 수없이 지적돼왔으며 이 제도로 인한 설계사무소의 막대한 고충은 위헌 여부를 논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사실 이 규정이 이번 법 개정시 폐지되지 않고 더욱 확대 존속되어 설계사무소의 운영을 더욱 파행적으로 몰고 간다면 위헌시비가 더욱 거세질 지도 모를 일이다.

그 보다도 설계업의 전문기술 능력향상과 UR대비 및 국제화를 지향하여 개정한다고 하는 이번 건축법이 설계사무소로 하여금 건축행정에 발목이 잡히게 하여 결과적으로 설계 사무소의 전문적 업무인 디자인 및 엔지니어링 능력향상 목적에 침해를 준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위헌시비 이전에 이 규정이 전문가의 활용면이나 국익차원에서도 매우 비능률적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분명한 사실은 건축사는 관에서도 일할 수도 있고 민간으로 일할 수 있지만 현장조사·검사업무같은 공공성이 강한 건축행정은 어디까지나 공무원 신분으로서 수행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미국, 일본을 비롯한 모든 선진국이 거의 다 현장조사·검사업무를 공무원 신분으로 하여금 직접 수행케 하는 이유는 건축이 공공성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그들의 정책수행자가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이렇게 건축행정이 정당하게 제 위치에서 역할하기 때문에 그들의 우수한 건축디자인이 이런 정책토양 속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갖고 매우 능률적으로 창출되었던 것이다.

현장조사·검사업무와 감리업무와의 혼동을 막기 위하여 차이점을 구별하자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작금의 우리 세태를 공권력 결핍의 시대라고 평한 것이 이번 법 개정상황에 걸맞는 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관이 공권력으로서 공정하게 해야 할 일을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민간건축사를 대리로 시켜 설계사무소를 딜레마에 빠트리고 업무를 비능률적으로 왜곡되게 해서는 안될 일이다.

이에 덧붙여 건축허가 제도 등도 국민의 건축행정 편의를 위하여 허가신청 도면을 간소화하고 중간검사도 민간의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는 하지만 이 또한 선진국 보다 상당히 앞선 제도로서 우리 국민의 자율 및 준법정신을 시험대에 올려 놓는 결과라는 것을 생각하면 저질, 불법 건축물의 양산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참고로 미국과 일본의 현장·조사검사 업무제도를 간략하게 소개하면(어느 경우에나 민간 설계사무소에의 위임 규정은 없음)

미국의 경우는

건축현장의 조사·검사(Inspection)업무가 시청의 Inspection Division 소속 공무원에 의해 직접 수행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건축허가 및 준공허가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확인업무는 시, 군, 구청에서 선발한 공무원 신분인 "건축주사"가 수행하며, 시공중인 불법건축물의 단속 또한 선발된 공무원인 건축 감시원이 수행하고 있다.

건축실무의 역사(2)

The History of Practical Architecture Business(2)

—해방전 한국건축—

宋 律/공학박사, 종합건축사사무소 아키반
by Song, Yul

어떤 건물이 역사적 맥락에서 떨어져 이해된다면 그 평가가 매우 달라지게 될 것이다. 내부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파르테논을 건축의 범주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기하학적 형식미에 치중하였던 그리이스 건축의 이상이라는 역사적 맥락을 소기한 것이고 미스의 시그램 빌딩을 진부한 상업주의 오피스 빌딩으로 평가절하하는 것은 브루조아의 장식적 건축에 대항하고자 하였던 근대이념의 역사적 맥락을 제외시킨 결과라 하겠다.

근대건축이 절정에 달한 1930년대 철근콘크리트와 철, 그리고 유리가 섞증나도록 실험되던 서양의 건축에 비해 벽돌조의 장식 섞인 우리의 건물이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하고 자조 섞인 눈으로 우리의 건축을 비관한다면 우리의 역사적 맥락을 지나치게 간과한 결과라 할 밖에 도리가 없다. 건축교육을 하는 대학하나 없었으며 그나마 고등공업학교는 일본인들을 위한 것이었고 전체자본의 94%이상이 일본인들의 소유였으니 건축을 한다해도 일본인들이 한국인에게 설계를 의뢰할 리가 만무하였을 상황이었다. 건축가가 서양에서처럼 예술가라고 고귀하게 대접받고 있지도 못했고 어려운 여건에 일본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여 고등공업학교를 졸업하여도 식민지의 차별대우로 책임있는 일을 하기가 쉽지 않던 때였다.

단지 어려운 여건이었다는 역사적 정황을 변명하듯 나열하여 볼 것 없는 우리의 건축에 동정이나 모아보자는 심사는 아니다. 오늘날 우리의 고민이 넷들어진 고민을 위한 고민이거나 또는 수입된 고민이 아니라 우리가 밟고 있는 토대를 다지는 고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바로 아는 것은 무엇보다 긴박한 일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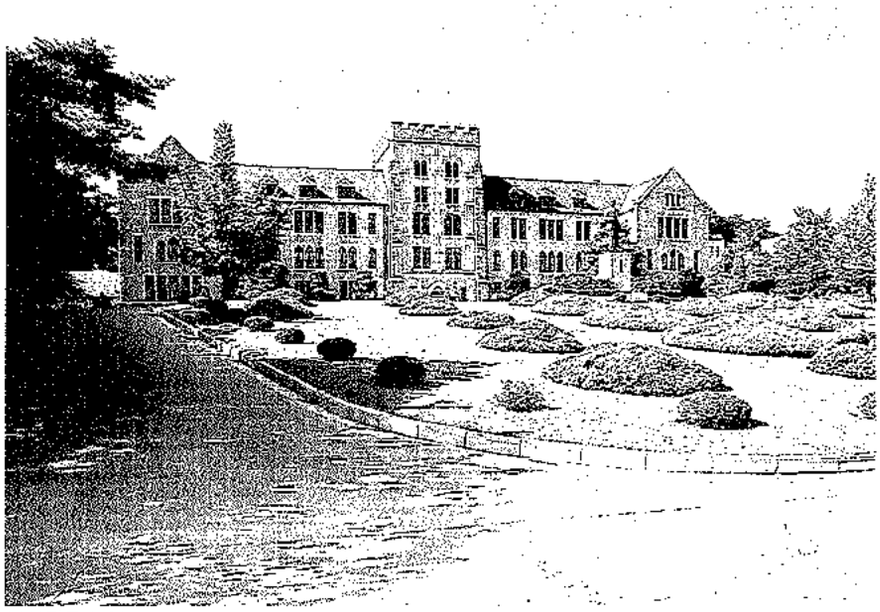

보성전문 본관

4. 실무조직과 건축

해방전 한국인으로서 독자적으로 설계한 건축물을 남긴 건축가로 알려진 사람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 박길룡과 박인준을 제외하면 모두가 실무조직 없이 부업(내직)으로 설계를 하였다.

부업으로 설계를 한 건축가들 중에 박동진 만이 일련의 작품을 갖고 있어 그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1934년 보성전문본관이 첫작품이라 치더라도 박동진은 해방당시까지 약 12년 이상을 설계사무소 없이 부업으로 설계를 하였다. 보성전문본관(1934), 오산중학교 본관(1934), 조선일보(1935), 보성전문도서관(1937), 오산중학교강당, 과학관(1941) 등 큼지막한 건물들을 설계하면서 설계사무소를 개설하지 않았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가지 않지만, 그는 분명 해방 당시까지 총독부에 근무하면서 모든 일은 부업으로 하였다. 그의 부업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지만 해방이후 설계한 남대문교회나 영락교회 등이 보성전문에서 보여준 디테일을 그대로

(표 1) 해방전 독자적으로 설계한 작품을 남긴 한국인 건축가[2]

성 명	출 신 교	졸업
박길룡(1899-1943)	경성공업전문학교	1919
김세연(1897-1975)	경성공업전문학교	1920
강 유(1899-?)	대판공업학교	1923
박봉진(1899-1980)	경성공업전문학교	1926
박인준(1892-1974)	미네소타대학교	1927
유상하(1908-1950)	경성고등공업학교	1930
유원준(1909-?)	경성고등공업학교	1931
이천승(1910-1992)	경성고등공업학교	1932
김희춘(1915-1993)	경성고등공업학교	1937

간직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의 실무형태는 조직이 필요치 않은 것이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반면에 몇몇 단독주택만이 작품으로 알려진 박인준은 설계사무소를 개설하였다. 그의 사무소에는 직원 2~3명정도가 있었으며 주로 주택을 설계하였다.

박길룡의 사무소는 전호에서 잠시 언급하였듯이 규모있는 실무조직을 갖추고 있었다. 도면을 전담하는 직원들이 있었고 정식직원은 아니지만 부업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디자인을 담당하는 실장급의 인원이 있었다. 김세연이 구조를 전담하여 대체적으로 대규모 설계조직의 특징을 갖춘 것이었다. 따라서 박길룡의 작품으로 알려진 건물들은 박동진이나 박인준의 작품이 일관된 것에 비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짐작컨데 프로젝트를 담당한 실장급의 인원의 참여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디자인의 실험이 가능했을 것이다.

5. 건축주와 건축실무[2]

해방전 한국인 건축가들의 활동을 가능케한 요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한국인 건축주들의 후원이다.

서양건축의 후원자는 르네상스에서 18세기 정도까지 건축가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서양의 후원자와 같은 개념으로 한국인 건축주들을 후원자라 칭할 수는 없지만 식민지 상황이었고 한국인 건축가들의 독자적인 활동이 전적으로 한국인 건축주들에게 의존적이었던 점을 들어 한국인 건축주들을 후원자라고 칭할 수 있을 것이다.

후원자가 된 자본가들은 크게 3부류로 귀족관료출신(한상룡, 민규식), 지주출신(김성수, 김연수, 전형필), 토착 상업자본(박흥식)으로 나뉜다. 한상룡은 규장각 부제학 한관수의 3남으로 태어나[3] 중추원참의원을 지낸 인물로서 일본의 英語學校와 成城學校에서 공부하였다. 도회부의장, 조선생명사장, 조선신탁, 조선공작 각 사장, 조선화재해상 조선맥주, 조선운송 각 이사(취체), 조선도시경영, 금강산전기철도, 북선제지화학공업 각 감사를 지냈고 조선방적 상담, 조선실업구락부회장, 제국비행협회 조선철도협회, 조선방송협회 각 이사를 지낸 인물이었다.[4] 이완용이 외숙이었던 한상룡은 일본의 명사들과 교제할

(표 2) 한국인 건축가에게 의뢰한 한국인 자본가의 건축물

건축주	년도	건 축 물 명	설계자
한상룡	1930	조선생명보험사사옥	박길룡
민규식	1931	동일은행남대문지점	박길룡
민규식	1931	종로백화점 동아	박길룡
민규식	1937	영보빌딩	이천승
박흥식	1935	종로빌딩	박길룡
박흥식	1937	화신백화점	박길룡
전형필	1934	북단장	박길룡
전형필	1938	간송미술관(보화각)	박길룡
김성준	1935	한청빌딩	박길룡
안 홍	1943	이문당사옥	박길룡
임흥순	1936	임가장	유원준
	1935	조선일보	박동진
김연수	1942	경성방직 님천공장	박동진
김연수	1929	성북동 김 연수댁	박길룡
이기진	1940	함흥병보육상	유원준
최창학	1938	평동정고장(죽첨장)	김세연
박흥식	1940 ?	가회동 박흥식댁	박인준
윤치창	193?	가회동 윤치창댁	박인준
윤치호	193?	가회동 윤치호댁	박인준
	1934	아서원	박동진
		종로대서관	박길룡
		경성일보공장건물	유원준
백락승		태창 직물공장	박길룡

오산중 과학관

오산중 강당

보성전문 도서관

기회가 많았고 많은 일본인들과 친분을 유지하였다.[5] 그가 조선생명보험사 사옥을 박길룡에게 의뢰했는 지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그가 1928년 조선생명주식회사 사장에 취임한 것으로 보아 1930년 조선생명보험사옥이 신축될 당시 건축주였을 가능성이 높다. 박길룡이 설계한 동일은행과 종로백화점 동아, 이천승이 설계한 영보빌딩의 건축주인 민규식은 귀족 출신으로 동일은행 頭取, 영보(합명회사)대표, 동방식산, 조선중안주조(주)취체, 계성(주)감독을 지냈고 영국劍橋대학 배췰러오버츠의 칭호를 받았다. 1931년 신축된 동아백화점은 화신과 경쟁관계에 있던 백화점으로 결국 화신에게 패배하여 그 건물이 화신에 넘어가게 되었다. 35년 화재로 소실된 건물을 재건축한 것이 현재의 종로빌딩이다. 민규식은 한일은행두취를 거쳐 1937년에는 휘문의숙상무이사를 지냈다. 그는 6.25전쟁 중에 납북되었다.[6] 박길룡이 설계한 주택과 박동진이 설계한 경성방직 남천공장의 건축주라 할 수 있는 김연수는 김성수의 동생이며 전라도 지주출신으로 경성방직(주)사장, 조선신탁, 조선저축은행(주) 각 감사, 조선서적 인쇄, 소화기린맥주(주) 취체, 삼양사(자)대표를 지낸 바 있고 1921년 교토제국대학 경제학부졸업 경성 섬유 전문 경성방직 취체역, 해동은행 전무등, 조선공업협회 부회장 등을 지냈으며 중추원 참의원을 지내면서 학병을 권유하는 등의 친일 행위로 반민특위에 회부되었지만 민족운동가에게 독립운동자금을 제공했다는 공로를 참작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인물이었다.[7] 김세연이 설계하였다고 알려진 경교장의 건축주인 최창학은 광산업으로 자본을 모은 인물이었다. 대창산업(주)대표와, 다사도철도, 경성방직, 매일신문사(주)의 이사(취체)역을 지냈다.[8] 해방후 반민특위에 회부되는 등 일제시기의 반민족 행위에 대해서 지탄을 받자 죽첨장[9]을 백범의 사저로 쓰도록했다.[10] 또한 경성공업학교 광산과 교사를 최창학이 기부하기도 하였다.[11] 화신백화점과 종로빌딩의 건축주인 박흥식은 평안남도 출신으로 곡물무역업, 인쇄업 등으로 사작하여 1924년 조광인쇄사장에 취임하였고 이후 화신백화점, 화신무역, 선일지물, 서선산업, 대동흥업, 대동직물 사장, 북선제지화학, 조선석유, 평안철도, 제주도흥업, 조선생명, 조선공작, 경성방직의 취체(이사에 해당), 장기일일신문 감사를 지냈다.[12] 동척 위원, 군수공업책임경영 등 반민 범죄사실의 혐의로 반민특위에 회부되었지만 창씨개명을 거부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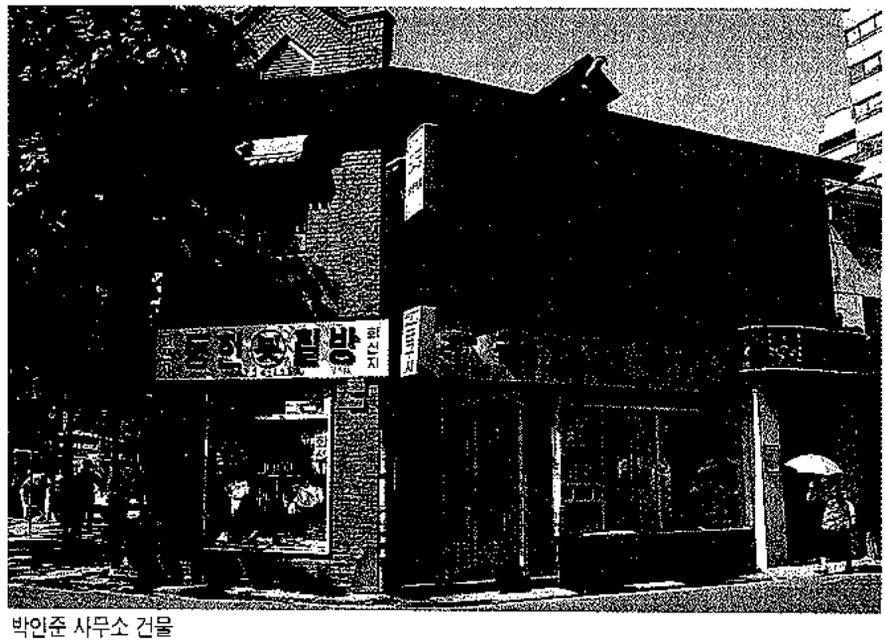
박인준 사무소 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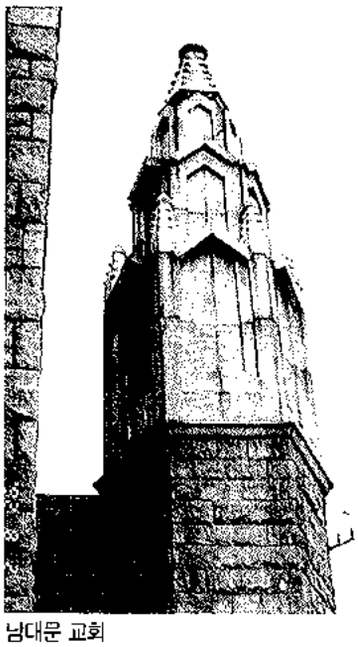
남대문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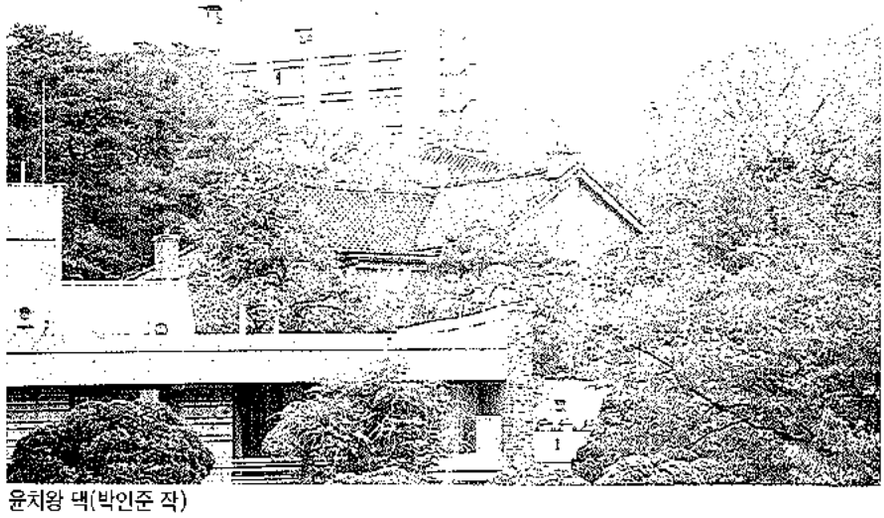
윤치왕 댁(박인준 작)

도산 안창호의 옥바라지를 맡은 사실 등 정상을 참작하여 검거 100일 후 병보석으로 석방되었다. 북단장과 보화각(현 간송미술관)의 건축주인 전형필은 거부의 집안에서 태어나 그 유산으로 문화재의 수집에 열중하였던 인물이었다.[13] 문화재를 수집하여 보관과 연구할 장소의 필요로 지은 것이 북단장과 보화각(간송미술관)이었다. 대규모 자본가들 외에도 중규모자본가들도 있다. 임가장빌딩의 임흥수와 이문당 사옥의 안 홍이 그들이다. 임흥수의 임가장은 1935년 설립된 회사로 토지건물의 매매와 금융 그리고 광산경영 및 광산금융을 목적으로 하였다.[14] 임흥수는 건축청부업도 하였다.[15] 이문당은 1925년 설립된 서점으로 도서출판 및 판매와 그에 관련된 일을 하는 합자회사였다.[16] 임가장과 이문당 모두 설립자와 중역들이 전부 한국인이었다. 이들 한국인 자본가에 의해 금융회사 사옥(동일은행, 조선생명보험사사옥), 상점(화신, 이문당, 종로백화점 등아, 종로빌딩), 사무소(한청빌딩, 영보빌딩, 임가장)와 저택(김연수, 최창학, 박흥식)등을 한국인 건축가들이 설계할 수 있었다. 한국인 건축가와 자본가 건축주를 연결지어 고려할 경우 이들 건축주들의 자본의 성격이 민족적이었다고 이해될 오해의 소지가 있다. 식민지 상황에서 자본의 규모가 커지면 어쩔 수 없이 일본과의 제휴가 불가피해지기 때문에 건축주가 된 대규모 자본가들 대부분은 친일성향을 가지고 있었다.[17]

(표 3) 한국인 건축가에게 의뢰한 의사와 건축물

건축주	년도	건 축 물 명	설계자
오원석	1932	오원석병원	유상하
이성봉	1942	이성봉 소아과의원	박동진
백인제	1944	백인제 외과 수술실	박동진
구영숙	1936	구영숙 소아과	박길룡
심호섭		관철동 심호섭 내과의원	유원준
윤치왕	193?	가회동 윤치왕댁	박인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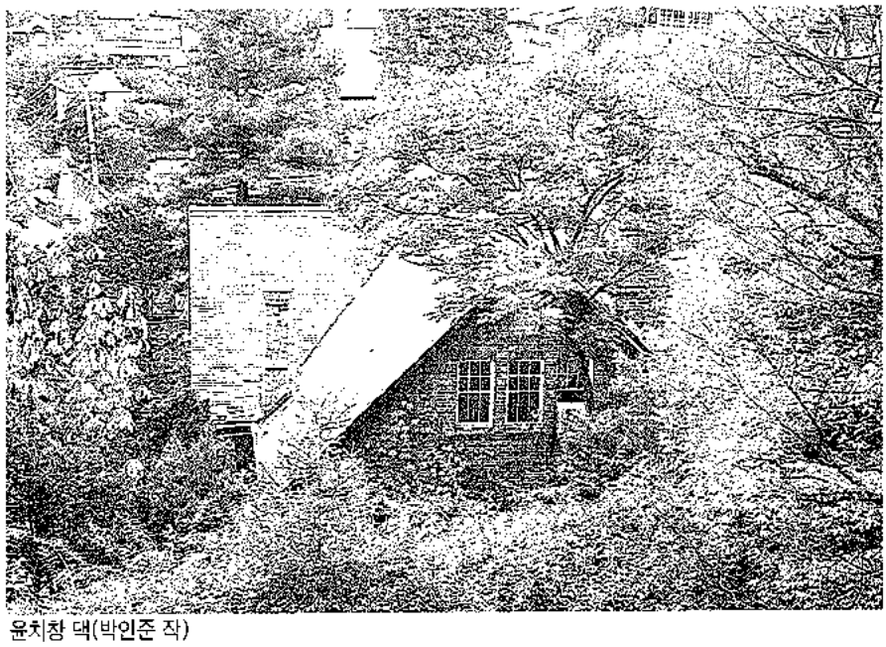
윤치창 댁(박인준 작)

일제시기 한국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출세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 의사가 되거나 법관이 되는 것이었다. 1916년에 경성의학전문학교가 생겨 매년 15~20여명의 한국인 졸업생들이 배출되었고 경성법학전문학교는 1922년에 개교하였다.[18] 세브란스연합 의학전문학교는 1917년에 생겼다.[19] 3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한국인 의사들의 개인 병원이나 주택이 한국인 건축가의 손에 의해 지어지기 시작하였다. 尹致昊은 의학박사로서 글라스고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 교수를 지낸 인물이었다. 윤치왕의 주택을 박인준이 설계했으며 이 주택은

구영숙 소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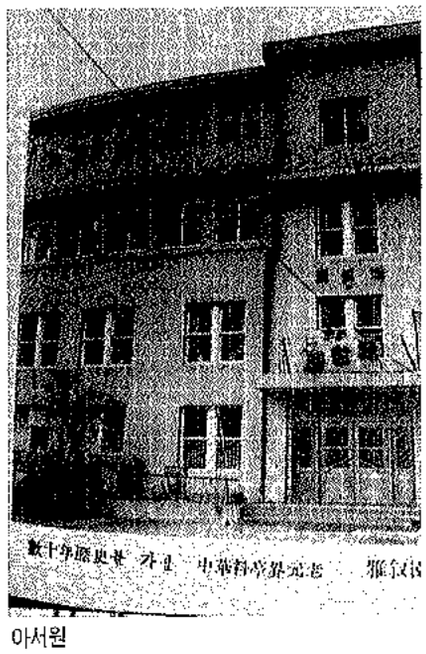
아서원

서양식의 주택이었다. 白麟濟는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교수를 지낸 사람으로 구미각국에 유학한 경험을 가졌다.[30] 또한 총독부 의원을 지냈다.[31] 백인제병원은 백병원의 전신이며 인제대학은 백인제의 이름을 따서 설립한 학교였다. 한국인 의사들의 병원으로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오원석 병원이다. 오원석은 경성의학전문학교 조교수를 지냈다.[32]

1895년 민영환이 설립한 홍화학교를 시작으로 한일합방 이전인 1909년까지 한국인이 설립한 사립학교는 40개교에 달했다.[33] 그렇지만 1908년 이 재극이 동덕여자의숙으로 설립하여 변천한 김세연 설계의 동덕여자고보의 1933년 교사가 자료로 파악된 한국인 건축가가 설계한 최초의 근대건축 교사였다.

그렇지만 한국인의 사립학교 교사로서 전국적인 명성과 함께 사립학교 교사의 전형을 이룬 것은 박동진의 보성전문 본관일 것이다. 보성전문의 건축주인 김성수는

(표 4) 한국인건축가가 설계한 사립학교

건 축 주	년 도	건 축 물 명	설 계 자
유 진 억	1937	경성여상 구강당	박길룡
박 홍 석	1943	광신상업학교교사	이천승
이 석 구	1933	동덕여고보 교사	김세연 1908
김 성 수	1937	보성전문도서관	박동진 1905
김 성 수	1934	보성전문학교(고대)본관	박동진 1905
현 상 윤	1937	중앙중학교 강당	박동진 1908
현 상 윤	1936	중앙중학교 본관	박동진 1908
불교재단	1927?	불교전수학교본관(혜전)	박길룡
이 숙 종	1943	성신학원	박길룡
주 기 용	1941	오산중학교 강당	박동진 1907
주 기 용	1941	오산중학교 과학관	박동진 1907
주 기 용	1934	오산중학교 본관	박동진 1907
	1938	명신중학교 강당	박 동진
	1937	명신중학교 본관(재령)	박동진
	1941	평안공업학교 대강당	박동진
	1940	평안공업학교 본관	박동진
전 형 필	1940	보성중학교 별관교실	박동진
		개성정화여학교	박길룡
		대동공업전문학교	박길룡
		대신상업학교	박길룡
		청진동중앙보육학교	유원준

백인제 병원

전라도의 지주의 아들로 태어나 1906년 昌平英學塾에서 수학하고 1908년 일본으로 건너가 동경의 正則英語學校에 입학하고 1909년 동경 錦城中學校 5학년에 편입한 후 1914년 早稻田 대학 행정학부를 졸업한 후 귀국하여 1915년 중앙학교를 인수하였고 1917년에는 京城織紐주식회사를 인수하여 경영한 후 1919년 경성방직주식회사를 설립하고 1920년 동아일보를 창간하였다.[34] 김성수와 박동진의 관계는 후술토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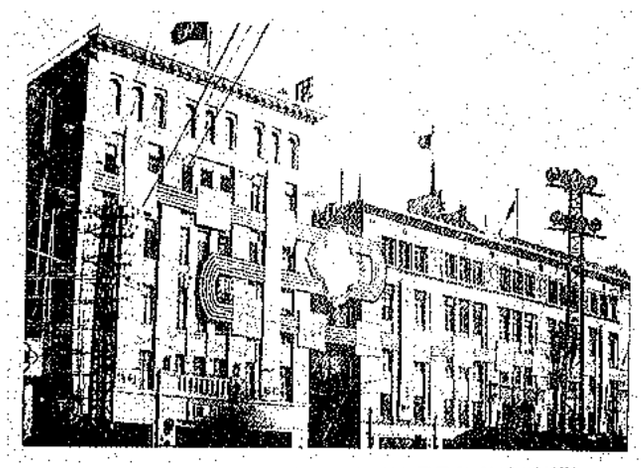

1932년 화재 이후 보수된 화신 동관 건물과 일부 준공된 화신 백화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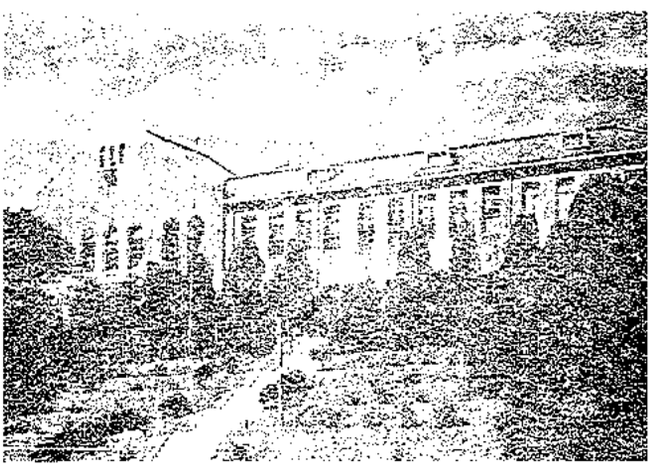

동덕여고 본관

그 밖의 한국인 건축가가 설계한 주택과 기타의 건물로는 다음의 것들이 알려져있다.

(표 5) 주택 및 기타의 건축물

건축주	년도	건 축 물 명	설계자
김명신	1931	관훈동 김명진택	박길룡
민모씨	1940	청운동 민씨댁	유원준
윤모씨	1938	신당동 윤씨댁	박길룡
윤모씨	1940	사직동 윤씨댁	유원준
이모씨	1939	가회동 이씨댁(전용순)	박길룡
김용제	1940	청운동 김용제댁	유원준
	1939	대화기독교 사회관	강 윤
일본인		동경건물회관	김희춘
일본인		백정빌딩	김희춘

1920년대 말에서 본격적으로는 1930년대부터 해방 전까지 한국인 건축주들이 한국인에게 근대식 건축물의 설계를 의뢰함으로 인해 한국인 설계의 건축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들 건축주는 자본가들과 지식인 그리고 의사들이었다. 당시의 전체적인 건축물과 건축주 그리고 건축가와의 관계에 관한 통계자료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전적으로 한국인 건축가에게만 설계를 의뢰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한국인 건축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의 독자적인 실무는 전적으로 한국인 후원자에게 의존되었다. 한국인 건축가들이 설계할 수 있었던 건물은 한국인 자본가가 의뢰하는 저택과 금융계통의 건물 그리고 상업건물과 한국인의 사립학교, 그리고 한국인 의사의 개인병원 등에 한정되었다. 공공건물은 전부 총독부나 관청의 설계조직 또는 일본에 자사를 두고 있는 대규모 건설회사의 설계조직이나 일본인 설계사무소에서 행해졌다.

1926년 동아일보사를 전환점으로 한국인 건축가의 설계작품이 등장한다는 것은 근대건축교육을 받고 독자적인 실무능력을 배양한 한국인 건축가들이 20년대 중반이후 등장하게 되는 것과 맞물린다. 20년대 중반 이후 그리고 본격적으로는 3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인 건축가들에 의해 설계된 건축물들이 등장하는 것은 건축가들의 실무능력 배양만으로 설명되기 보다는 근대 건축물을 요구하는 한국인 건축주들의 등장과 함께 설명되야 한다. 왜냐하면 동아일보사 이전의 근대건축물의 건축주는 대부분이 왕이나 귀족중심이었는데 반해 이후의 근대건축물의 건축주는 자본가, 의사 등으로 다양해지기 때문이다.

한국인이 건축주가 된 근대건축물의 전체 물량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인 건축주들이 한국인 건축가들에게만 설계를 의뢰했다고 주장할 근거는 없다. 그렇지만 1943년 서울 내의 건축대서사 분포를 보면 한국인 건축주들이 한국인

백정빌딩

(표 6) 43년 경성부 건축대서사 현황[29]

지 부	총 수	한국인수	한국인 건축대서사
본 정 지 부	29	4	新井 一雄, 安東 堂振, 權大 東鎭(박동진), 金山 民樹(손민수)
종 로 지 부	4	4	大原 *允(강윤), 金宗亮, 杉原 仁俊(박 인준), 金剛 世演(김세연)
동대문지부	10	2	廣本 栖文(이병문), 平木 永福
서대문지부	5	3	以東 丙連, 辛島 光俊, 西原 敎善(한 교선)
용 산 지 부	12	6	金澤 松信, 德本 種億, 金山 鍾成, 松江 禹澤, 金德 哥雄, *川義三
영등포지부	7	3또는 4	毛川 淳川, (松江 義雄), *川宣平, *川福來
합	67	22또는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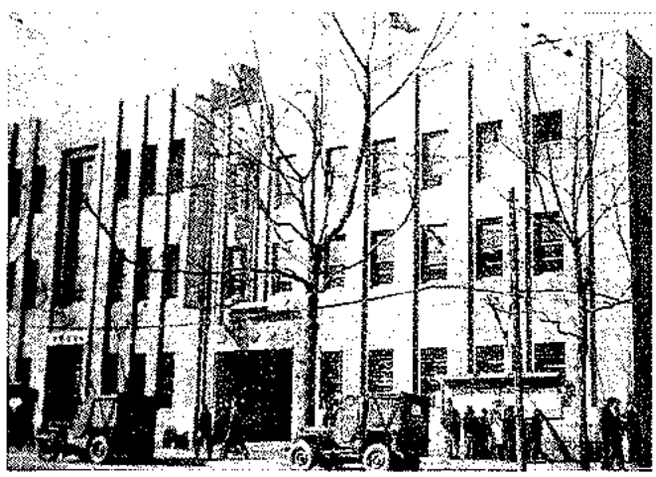
청진동 중앙보육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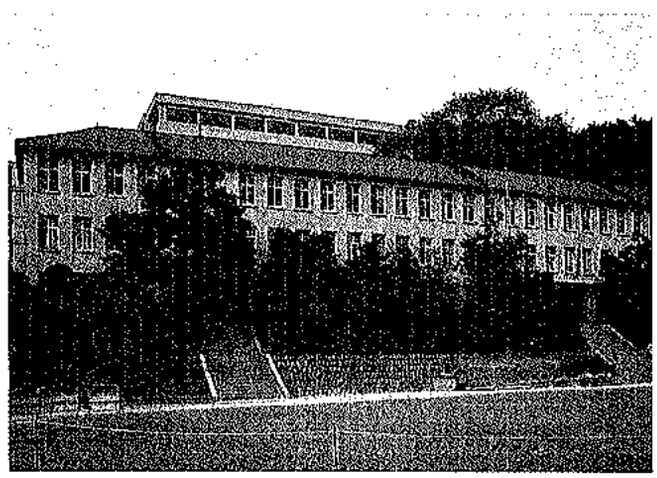
성신학원 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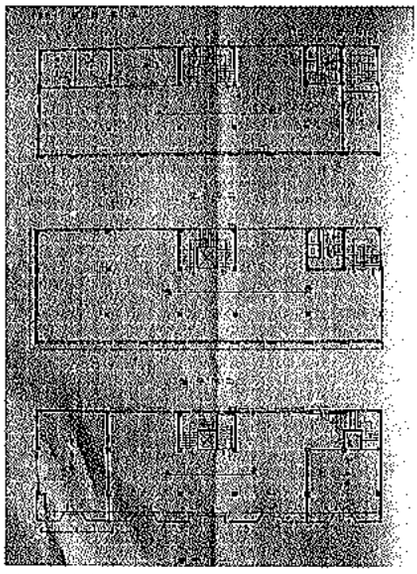
종로백화점 동아 평면도

건축가들에게 배타적으로 설계를 의뢰했다고 볼 수 있는 간접적인 근거가 마련된다.[27] 본정은 일본인들이 주로 활동했던 지역이었고 종로는 한국인들의 상권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져 있던 지역이었다. 종로의 4명의 건축대서사 모두가 한국인이었다는 사실은 종로지역에서의 신축은 거의 한국인 건축가들이 설계했다는 것을 말해준다.[28]

일제시기 한국인 대자본가들의 숫자는 극도로 소수일 수 밖에 없었고 그러한 소수의 대자본가 중 건축주로 알려진 인물들의 숫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아니다.

이들 자본가들이 건축주가 되어 한국인에게 설계를 의뢰하였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다. 왜냐하면 32년 박길룡 건축사무소가 개설되기 전까지 한국인이 운영하던 설계사무소는 하나도 없었는데 반해 일본인 설계사무소들은 다수가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931년 1월 1일 현재 조선내 본점을 둔 청부업 관련회사는 125개 회사가 있다. 이 중 주식회사는 7, 합자회사는 102, 합명회사는 16개소이다. 이들 토목건축청부회사(건설회사) 중 青水組, 多田工務所, 朝鮮有馬組, 三木合資會社, 坂本組 등이 설계업무까지 했다.[29] 한국인 회사도 6군데 있었으나 설계를 업무에 포함하지는 않았다.[30]

「都市と建築」 창간호(1940)의 광고에 나타난 건설회사 및 설계사무소들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大林組 경성지점, 大倉土木주식회사 경성출장소, 鹿島組 경성지점, 間組조선지점, 清水組경성지점, 多田공무소, 錢組경성지점, 朝鮮工營株式會社, 東京건물주식회사, 조선건물주식회사, 今井건축사무소, 玉田건축사무소, 新宅건축사무소, 松島건축사무소, 朴吉龍건축사무소, 中島義건축공무소, 大隅건축사무소, 太田건축창작소, 新興건축사(趙興鎬), 藤田건축사무소, 東亞건축사(韓敎善), 新住宅社(張之煥), 朝鮮都市經營株式會社. (한국인의 사무소는 괄호안에 이름을 기입했다. 조선공영주식회사도 한국인 회사였다.)

한국인 건축가들의 독자적인 설계활동은 전적으로 이러한 한국인 건축주들에 의존했다는 것은 앞서 이야기하였다. 후원자와 건축가의 관계는 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관계를 유지했는 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경로는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그렇지만 다음의 후원자와 건축가의 관계는 긴밀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박홍식은 특별히 건축가들과 관련이 많은 인물이었다. 화신은 박길룡이 설계하였고, 박홍식의 주택은 박인준이 설계하였다.[32] 또한 이천승이 설계한 광신상업고등학교도 박홍식이 설립한 것이었다.[33] 또한 이천승, 김태식, 이명휘, 김명집, 김중업 등 다수 건축가가 참여했던 조선비행기공장도 박홍식이 설립한 것이었다. 해방 후 이천승, 이희태 등을 중심으로 설립된 도시계획연구소도 박홍식이 후원하였다. 박홍식의 제안으로 이 도시계획연구소에서 영동지구 개발계획을 제안하였다.[34] 보성전문의 석조가 박동진보다 김성수의 개인적인 건축관이 크게 작용한 것처럼 화신과 종로빌딩도 박길룡보다 박홍식의 건축관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첫째는 박길룡의 작품 중에 서양의 양식건축을 절충적으로 사용한 예가 그다지 많지 않고, 둘째는 서구 모더니즘 건축에 근접하게 설계하였던 1931년의 동아백화점을 개수하면서 절충적인 양식건축이 되었기 때문이다. 박길룡이 설계한 한청빌딩(1935), 이문당(1943), 간송미술관(1938) 모두 서구 모더니즘 건축에 근접한 것이었다. 더욱이 1931년 설계된 동아백화점은 전체적으로 수평성이 강조되고 입면에서 유리창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이 높아 매우 근대적인 것이었다. 화재후 동아백화점을 개수한 종로빌딩은 화신백화점과 아울러 절충적인 양식건축의 입면을 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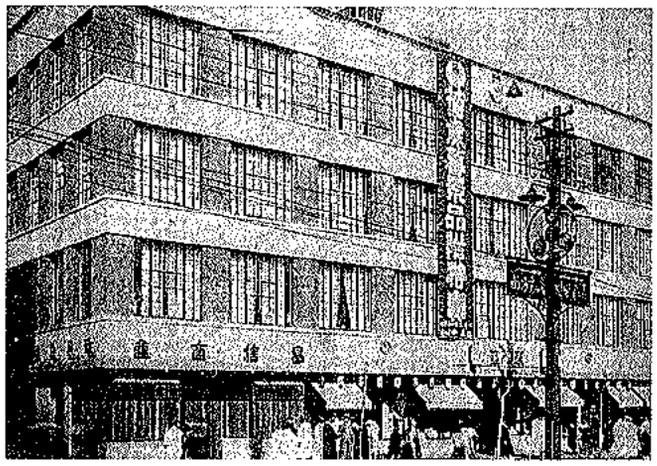
1931년 신축당시 종로백화점 동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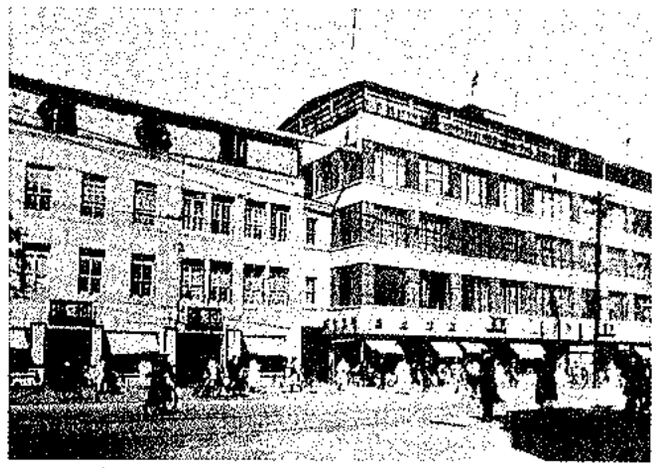
1932년 화신에 병합된 종로백화점 동아, 화신과 연결되고 화신 동관으로 불리게 됨

있는데, 이는 당시 삼월 백화점을 겨냥하여 한국인도 일본인과 같은 양식건축을 가질 수 있다는 과시의 측면이 강하지 않았는가 추측된다.

김성수는 남달리 건축에 관심이 많았다. 1926년 완공된 동아일보사 사옥은 일본인에게 설계를 맡겼지만 1929년에서 1931년까지 구미각국을 여행 한 뒤로는 보성전문학교 본관, 도서관 등을 박동진에게 설계의뢰를 하였다. 박동진을 설계자로 선택한 데에는 민족주의적 성향이 깔려 있었다. 김성수는 '보성전문학교의 설계는 민족의 기술자가 설계하여야 한다'[35] 는 소신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때에 주택 공사현장에서 현 상윤씨의 소개로 박동진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36] 박동진은 김성수와 만나게 된 때를 회상하면서' …그 당시 선생은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건축을 공부한 사람이 없는 줄로만 아신 모양이었고…'라고 회고하고 있다. 1929년에 동생인 김연수의 주택을 박길룡이 설계한 일이 있음에도 한국인 건축가가 없는 줄로만 알았다는 회고는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다. 그렇지만 박동진씨가 김성수씨를 만난 것이 31년에서 33년 사이(33년에 김성수와 함께 안암동의 보성전문학교 대지를 둘러 보았다.)라고 한다면 33년까지 경성고공을 졸업한 한국인 숫자가 16명이고 그나마 실무를 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던 총독부에서 기수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던 사람은 박길룡, 김세연, 장연채, 박동진 4명과 철도국의 김윤기 정도 뿐이었다. 따라서 김성수가 한국인 건축가를 만난 것을 의외로 알았으리라는 것도 가능하다. 이후 김성수는 박동진에게 보성전문학교와 중앙중고등학교 건물들을 의뢰하게 되었다. 보성전문학교 본관의 건축에 대해 '김성수는 구미 각 대학의 건축을 살펴본 안목으로 교사로서 갖추어야할 첫째 조건은 석조건물이어야 한다는 것이었고, 그러한 석조 철근 콘크리트의 학교건물이라면 고딕 양식이 풍격에 맞으리라는 것이 박동진의 생각이었다.'[37]

도서관의 경우 '그 양식과 구조는 인촌과 논의 끝에 교수 오천석의 모교인 미국 듀크 대학의 도서관을 앨범에서 보고 이것을 참고로 한 것이었다.'[38] 박동진이 총독부 영선계에 있을 당시 총독부에서 지은 석조건물은 거의 없었다. 그렇다면 박동진은 사진을 보고 석조건축물의 건축수법을 익혔다는 이야기가 된다. 박동진은 설계사무소를 개설한 일이 없었고, 보성전문을 설계할 때는 김성수 집 2층에서 작업을 하였다고 한다. 박동진에게 김성수의 역할은 매우 지대했으리라는 추측을 가능케

중앙중 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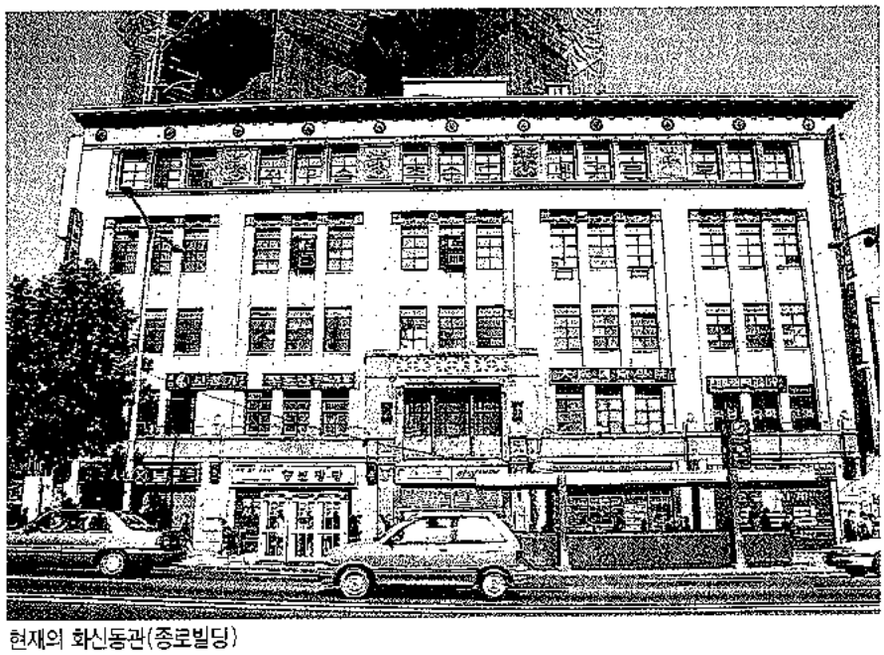

현재의 화신동관(종로빌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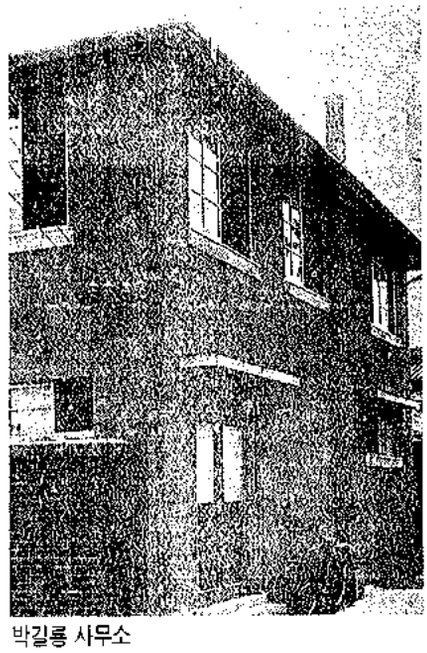

박길룡 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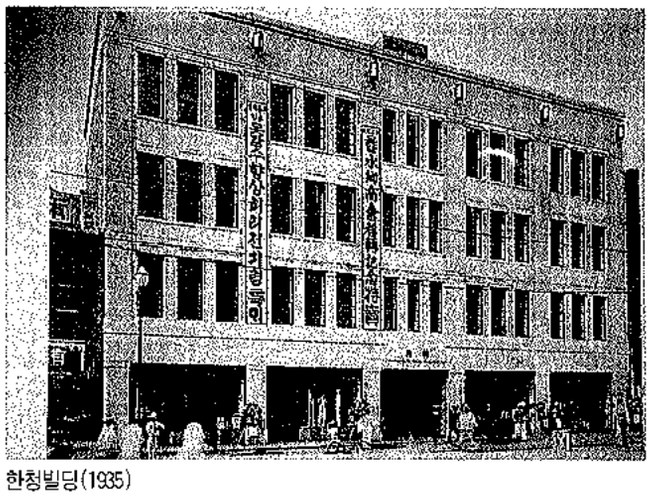

한청빌딩(19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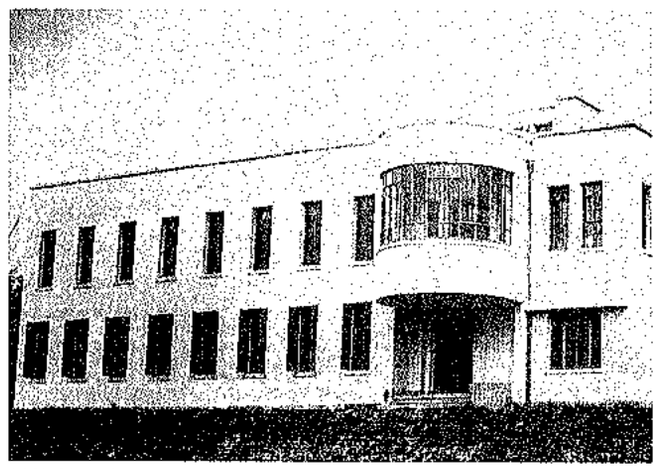

보화각(1938)

하고 있다. 이후 박동진은 석조건축물들을 주로 설계하였을 뿐 아니라 (1946영락교회, 남대문교회 등) 보성전문이 사립학교의 전형처럼 받아들여지게 되어 다수의 학교를 설계하게 된다.

유상하가 설계한 오원석 병원 신축당시 오원석의 자신의 신축병원에 대한 기사는 건축에 관한 견해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병원을 세우려고 하면 그 위치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중략) 좁지만 중심지이면서 구청도 학교도 가까이 있고 교통도 편리한 곳입니다. 땅값이 높은 관계상 될 수 있는 한 땅을 효과적으로 쓰고 싶어 일부 부정한 형상에 순응한 건축을 하려한 점이 힘들었지만 대체로 생각했던 대로 작은 건물이 완성되었습니다. 아래층이 31평정도 윗층이 27평정도로 합하면 58평여평 정도 됩니다. 방의 배치에 상당히 신경썼습니다. 좁은 대지를 될 수 있는대로 넓게 쓸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대합실을 문이 달린 실로 구획하지 않고 넓게 홀로 해서 현관 우측에 계획했습니다. 현관에서 홀은 직접 보이지 않지만 개방적이면서도 한 방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중략) 진찰실과 치료실은 창문을 넓게 해서 채광 통풍을 좋게 했습니다. (중략) 동서남북의 광선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것이 기쁘고 설계자 劉相奎[9]군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는 정말로 친절하게 설계를 도와주었습니다. (중략) 난방은 천상식에 페치카로 했는데, 좁은 건물에서는 경제상으로도 최선의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한번으로 세 방이 충분히 따뜻해집니다. (중략) 좁은 건물에 병원같은 건물은 무리가 있지만 나의 전문이 외과이므로 많은 환자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해서 당분간 알맞게 충당할 것 같습니다. 치료실은 넓은 편입니다."[10]

주)

1) 그들의 작품에 대해서는 본 저자의 「한국근대건축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57~58쪽 참조. 유상하의 작품은 알려진 것이 없었으나 1932년 오원석 병원이 유상하의 작품인 것으로 확인.

2) 본 글은 필자의 논문 "한국의 근대건축가의 형성과 후원자"(건축역사연구 통권 3호) 중에서 발췌하여 요약한 내용임.

3) 반민족문제연구소, 「친일파 99인」 2권, 돌베개, 1993.

4) 帝國秘密探偵社, "大衆人事錄", 13권, 1940.

5) 반민족문제연구소, 앞의 책.

6) '이천승, 그 지나온 건축 50년', 건축가 1981. 5/6

7) 안 철, "미군정기 국가기구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102쪽.

8) 帝國秘密探偵社, 앞의 책.

9) 백범이 일본식의 이름이 싫다며 관철에 있는 다리이름을 따서 경교장으로 개명하였다.

10) '백범일은 경교장', 조선일보 1982. 4. 30) 기사

11) 朝鮮建築會, 「朝鮮と建築」, 1934년 9호의 기사

12) 帝國秘密探偵社, 앞의 책.

13) 최완수, '간송선생일기', 한국민족미술연구소, 「澗松文華」, 61~122쪽

14) 朝鮮銀行調査部編纂要錄, 1942년. 24쪽.

15) 京城商工會議所, "京城商工名錄",

16) 朝鮮銀行調査部編纂要錄, 1937년. 346쪽.

17) 梶村秀樹, '민족자본과 예속자본', 「한국근대경제사연구」, 사계절, 1983.

18) 京城諸會社一覽

19)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 600년사", 619쪽.

20) 帝國秘密探偵社, 앞의 책.

21) 총독부 직원록, 1928. 113페이지

22) 1928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 직원록 122페이지

23) 신천식, 「한국교육사」

24) 중앙중학교는 김성수가 인수하였지만 그와 막역한 친구인 현상윤이 교장으로 있었다.

25) 오산학교는 남강 이승훈이 1907년에 설립한 학교였다. 1930년 이승훈이 사망한 후 오산학교 건물이 신축될 당시 교장은 주기용이었다.

26) 帝國秘密探偵社, 앞의 책. 김성수의 이력은 "인촌 김성수의 생애"참고.

27) 전체 자본 중 6%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한국인들의 경제력과 함께 고려하면 1943년 전국의 건축대서사 중에서 한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큰 것이었다.

(표) 1943년 전국의 건축대서사

지 역	총 수	한 국 인 수	지 역	총 수	한 국 인 수
경 성 부	67	22(23)	경 상 남 도	28	4
인 천 부	3	1	황 해 도	4	1
개 성 부	3	1	평 안 남 도	15	6
충 청 북 도	3	1	평 안 북 도	14	4
충 청 남 도	8	2	강 원 도	6	2
전 라 북 도	7	2	함 경 남 도	16	8
전 라 남 도	17	8	함 경 북 도	19	4
경 상 북 도	9	6	총 계	219	72(73)

28) 「朝鮮と建築」, 43년 5호의 박 길룡 추모기사 중 다음의 회고들이 간접적으로 뒷받침한다.

笛慶 一 : ' … (박길룡의 작품은) 백화점, 학교, 회사, 상점, 주택 등 수도 많고 대표적인 것도 많으며 특히 종로의 스마트한 상점은 다수가 박길룡의 작품이며 기업자의 신용 또한 컸던 것이다 … '

金岡 敏雄(金 敏雄) : ' … 종로의 앞을 걸어도 뒷길을 걸어도 형의 작품이 하루라도 눈에 띄지 않는 일이 없으니 … '

黃英 治郎(黃 英燮) : ' … 자년의 잡지에 박 선생을 소개한 글중 '씨의 설계는 하루에 한 동이 설 정도로 일년에 365동을 설계하는 건축가'라고 말하였는데 실제로도 매우 다망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그에 대한 평이다. '

29) 朝鮮警務協會, 「朝鮮と建築」 4집 1호, 25~27쪽의 「전국대서사명부」를 도표화 한 것임. 창씨개명으로 한국인 대서사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장기연씨의 도움으로 대략적인 것을 파악한 것임. 경성부의 경우는 1명이 정확치 않음.

30) 京城商工會議所, 「朝鮮會社表」, 1931.

31) 이들 한국인 회사는 다음과 같다.

회 사 명	회 사 주	업무의 내용
합자 送達社	金 永 鎭	분묘자의 補土修護保護및 人夫의 供給葬儀의 請負 婚喪 必要品의 판매및 인대 婚喪에 관한 자금의 대부
합자 東信社	金 正 鎬	도목건축청부및 재료판매
平院 합자	金 奎 鎭	도목건축청부및 곡물잡화의 무역판매
三南工務所	崔 琮 球	水利測量設計鐵工건축
합자 三和組	姜 俊 植	運送人夫供給請負業및 그에 부수하는 일체의 업무
합명 京城工務所	金 恒 作	堤堰築港請負業
합명 光山工務所	金 容 哲	하천수리사업의 설계 및 청사진의 청부

32) 김희춘 증언에 의하면 박홍식과 박인준은 평양이 동향인 관계로 박홍식 주택을 박인준이 설계하였다.

33) 「화신 50년사」

34) 건축가 1980. 5/6 원로와의 대화(1) "이천승-그 지나온 50년"

35) 인촌기념회, 「인촌 김성수의 생애」, 1976.

36) 현상윤의 주택도 박동진이 설계하였을 것이다. 박동진의 회고에는 선친과의 인연으로 김성수씨를 만나게 되었다고도 진술하였다.

37) 인촌기념회, 「인촌 김성수」, 1976. 346쪽.

38) 앞의 인용 367쪽

39) 유상규는 유상하의 오기임. (논자, 「한국근대건축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논, 1993.6 1~62쪽 참조)

40) 朝鮮建築會, 「朝鮮と建築」, 1933년 4월호.

『營造法式』〈大木作制度〉번역

Translation of Chinese Architecture Documentary Records

金度慶/(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朱南哲/(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by Kim, Do-Kyeong & Joo, Nam-Cheol

總目次

Ⅰ. 序論
1. 『營造法式』의 編纂沿革과 版本
2. 『營造法式』의 구성
Ⅱ. 本論
1. 卷第四 大木作制度一
1-1. 材, 1-2. 栱, 1-3. 飛昂, 1-4. 爵頭, 1-5. 枓, 1-6. 總鋪作次序, 1-7. 平坐
2. 卷第五 大木作制度二
2-1. 梁, 2-2. 闌額, 2-3. 柱, 2-4. 陽馬, 2-5. 侏儒柱(斜柱附), 2-6. 棟, 2-7. 搏風版, 2-8. 栿, 2-9. 椽, 2-10. 檐, 2-11 擧折
Ⅲ. 結論

Ⅰ. 序論

※『營造法式』〈大木作制度〉번역에 즈음하여

중국은 우리와 오랜동안 문화적으로 밀접한 교류관계에 있었다. 따라서 중국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는 우리의 것을 이해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建築史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라 생각된다. 특히 동양삼국(한국, 중국, 일본)의 목조건축은 세부양식간에는 차이가 있지만, 架構式구조로 특히 '栱包'라는 구조양식이 기본구조를 이루는 점을 생각할 때, 한국목조건축에 대한 연구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중국의 목조건축을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본고는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건축에 관한 중요한 문헌중의 하나인 『營造法式』〈大木作制度〉를 번역하고 註釋을 붙임으로써, 이 방면을 연구하기 위한 자료로 삼음과 동시에 이 방면의 연구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본고의 제목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營造法式』 전체가 아닌 그 일부인 〈大木作制度〉에 한정된 점이 아쉽기는 하지만, 〈大木作制度〉가 중국목조건축의 기본임을 생각할 때 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誤譯에 대한 여러분의 지적과 질책을 기다린다.

1. 『營造法式』의 編纂沿革과 版本

『營造法式』의 편찬은 중국 北宋 熙寧年間(1068-1088)에 將作監으로 하여금 營造法式을 편찬하도록 하라는 칙령을 내림으로써 시작되었다. 이렇게 營造法式을 편찬하도록 한 원래의 동기는 宋의 개국이후 많은 건축물을 짓게 되면서 국고의 낭비가 심하게 되자 이를 막기 위해 건물의 규모와 목재치수 등을 규정하여 경제적인 영건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였다. 이에 北宋 哲宗 元祐6년(1091)에 李誡[1]의 營造法式과 같은 이름으로 된 소위 『元祐營造法式』이 완성된다. 그러나 哲宗 紹聖4년(1097) 11월에 『元祐營造法式』의 내용이 실용적이지 못함[2]를 이유로 李誡에게 編修를 명하게 됨으로써 哲宗 元符3년(1100)에 營造法式이 완성되어 頒降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海行營造法式』이다. 이후 徽宗 崇寧2년(1103)에 小字를 이용하여 鏤版함으로써 『營造法式』이 初刊되었다.

현재 보급되고 있는 營造法式은 1925년에 朱啓鈐씨가 四庫全書와 清 道光年間(1821-1850)의 張鏡蓉抄本 등 公私에 전해오는 여러 版本을 참고로 하여 7년만에 「國學基本叢書」의 하나로 만든 것으로 臺灣商務印書館에서 발간한 것이다. 본고에서 근간으로한 營造法式은 1968년 臺灣商務印書館에서 발간한 것으로 1925년 臺灣商務印書館의 초판을 근거로 한 것이다[3].

주)

1) 李는 明仲으로 鄭州 管城縣 출신이다. 하급관리에서 출발하여 수많은 건물의 영건을 담당하였다. 건물을 지을 때마다 그 건물과 기술의 훌륭함을 인정받아 16차례에 걸쳐 승진하여 10여 년 동안 將作이라는 벼슬을 지냈다(『營造法式』 〈序目〉 李誡補傳). 본 『營造法式』의 지자이다.

2) 이는 1자 營造法式의 규정수치들이 너무 방대하여 규제를 가하는데 어렵기 때문이었다.

3) 목조건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결여되어 있기는 하지만 『營造法式』을 직역한 한글 완역본으로는 국토개발연구원에서 간행한 『營造法式(一) : 1984』과 『營造法式(二)1989』가 있다.

2. 『營造法式』의 구성

『營造法式』은 序目과 附錄을 합하여 總34卷, 357篇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555條目을 수록하고 있는 건축전문기술서이다.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 序目 : 전체의 目次.
- 第1卷~第2卷 : 總釋으로 건축의 명칭과 술어의 고증, 자주 사용되는 기하학 도형, 계산법칙, 노동일수를 정하는 기준 등을 기록.
- 第3卷~第15卷 : 諸作制度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工程別로 壕寨, 石作, 大木作, 小木作, 彫作, 旋作, 鋸作, 瓦作, 泥作, 彩畫作, 塼作, 窯作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法式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
- 第16卷~第25卷 : 諸作功限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건축적산의 기초가 되는 資料와 재료의 정량, 工作質의 등급, 工期 등을 諸作制度의 순서와 동일하게 工程別로 열거.
- 第26卷~第28卷 : 諸作料例 및 諸作用釘料例로 材料의 積算에 필요한 資料를 제시.
- 第29卷~第34卷 : 諸作의 도면을 그려 놓은 圖面集으로 위의 諸作制度나 諸作功限과 같이 工程別로 순서를 정하여 도면을 열거.
- 附錄

이 내용 중 본고에서는 제4권〈大木作制度一〉과 제5권〈大木作制度二〉에 해당하는 부분, 즉 목구조 부분만을 번역하고 주석을 달았다[4].

Ⅱ. 本論

1. 卷第四 大木作制度一

1-1. 材

材 其名有三; 一曰章, 二曰材, 三曰方桁.
凡構屋之制, 皆以材爲祖; 材有八等, 度屋之大小, 因而用之.

第一等 : 廣九寸, 厚六寸, 以六分爲一分°
右(上)殿身九間至十一間 則用之. 若副階并殿挾屋, 材分減殿身一等 : 廳屋減挾屋一等, 餘準此.

第二等 : 廣八寸二分五厘, 厚五寸五分. 以五分五厘爲一分°.
右(上)殿身五間至七間 則用之.

第三等 : 廣七寸五分, 厚五寸, 以五分爲一分°.
右(上)殿身三間至殿五間 或堂七間 則用之.

第四等 : 廣七寸二分, 厚四寸八分. 以四分八厘爲一分°.
右(上)殿三間, 廳堂五間 則用之.

第五等 : 廣六寸六分, 厚四寸四分. 以四分四厘爲一分°.
右(上)殿小三間, 廳堂大三間 則用之.

第六等 : 廣六寸, 厚四寸, 以四分爲一分°.
右(上)亭榭 或小廳堂 皆用之.

第七等 : 廣五寸二分五厘, 厚三寸五分. 以三分五厘爲一分°.
右(上)小殿及亭榭等 用之.

第八等 : 廣四寸五分, 厚三寸. 以三分爲一分°.
右(上)殿內藻井 或小亭榭 施鋪作多 則用之.
栔廣六分°, 厚四分°. 材上加栔者 謂之足材.
施之供眼內兩科之間者 謂之暗栔.

各以其材之廣, 分爲十五分°, 以十分°爲其厚.
凡屋宇之高深, 名物之短長, 曲直擧折之勢, 規矩繩墨之宜, 皆以所用材之分° 以爲制度焉. 凡分寸之分皆如字, 材分之分音符問切. 餘準此.

〈表 1〉 八等度

等 度	단면크기		基本寸數	사 용 건 물
一等度	높이	9寸	1分°=6푼	殿身9-11칸
	너비	6寸		
二等度	높이	8寸2分5厘	1分°=5푼5리	殿身5-7칸
	너비	5寸5分		
三等度	높이	7寸5分	1分°=5푼	殿身3-殿5칸 堂7칸
	너비	5寸		
四等度	높이	7寸2分	1分°=4푼8리	殿3칸 廳堂5칸
	너비	4寸8分		
五等度	높이	6寸6分	1分°=4푼4리	殿 小3칸 殿堂 大3칸
	너비	4寸4分		
六等度	높이	6寸	1分°=4푼	亭榭, 小廳堂
	너비	4寸		
七等度	높이	5寸2分5厘	1分°=3푼5리	小殿 및 亭榭
	너비	3寸5分		
八等度	높이	4寸5分	1分°=3푼	殿內의 藻井이나 小亭榭에 鋪作을 많이 한 경우
	너비	3寸		

주)
4) 본고의 내용중 많은 부분에 있어 梁思成, 『營造法式註釋 卷上』(北京:中國建築工業出版社, 1983)의 내용과 도면을 많이 참조하였다는 점을 밝혀둔다.

재(材) : 명칭이 세개가 있는데, 하나는 장(章)이고, 둘째는 재(材)이며, 셋째는 방형(方桁)이다.

집을 짓는 制度는 모두 材를 근본으로 한다. 材에는 여덟 等級이 있는데, 집의 규모에 따라 이를 사용한다 〈表.1, 그림.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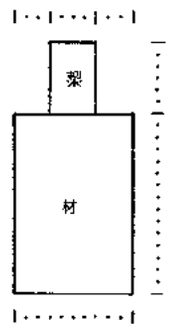

〈그림1〉 材와 栔의 높이와 너비

제1등급은 단면높이[5]가 9寸, 너비가 6寸이다[6]. 1분은 6푼이다.[7].

殿[8] 身[9] 이 9칸에서 11칸인 경우에 사용한다. 副階[10]와 殿에 딸린 挾屋[11]인 경우에는 材의 分°數를 殿身보다 1등급 줄인다. 廊屋[12]은 挾屋보다 1등급 줄인다. 나머지는 이에 준한다.

제2등급은 단면높이가 8촌2푼5리, 너비가 5촌5푼이다. 1분은 5푼5리이다.

殿身이 5칸에서 7칸인 경우에 사용한다.

제3등급은 단면높이가 7촌7푼, 너비가 5촌이다. 1분은 5푼이다.

殿身 3칸에서 殿 5칸 규모나 7칸 堂인 경우에 사용한다.

제4등급은 단면높이가 7촌2푼, 너비가 4촌8푼이다. 1분을 4푼8리로 한다.

3칸의 殿이나 5칸의 廳堂인 경우에 사용한다.

제5등급은 단면높이가 6촌6푼, 너비가 4촌4푼이다. 1분은 4푼4리이다.

작은 간살의 3칸 殿이나 큰 간살의 3칸 廳堂에 사용한다.

주)

5) 『營造法式』에서는 높이나 너비를 말함에 있어 '廣', '高', '厚'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廣'은 경우에 따라 높이 혹은 너비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廣'은 높이를 의미한다.

6) 현재까지 발견된 宋尺에 의하면 宋代에는 營造尺, 黃鍾尺, 布帛尺이 같은 단위길이로 31.1cm~34.1cm이다.(윤장섭, 『한국의 營造尺度』〈建築學硏究〉, p.74, 서울:태림문화사, 1985)

7) 뒤에서도 다시 언급되지만 '分'은 두가지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절대적인 척도단위를 나타내는 '分(푼)'이며, 또 하나는 상대적인 척도단위를 나타내는 '分(분)'이다. 원문에는 이러한 의미의 구분 없이 모두 '分'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본고에 게재한 원문에는 의미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절대적인 척도단위인 경우 '分'으로, 상대적인 척도단위인 경우 '分°'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번역문에서도 각각 '分'과 '푼'으로 구분하여 게재하였다.

8) 殿과 廳堂은 건물의 기둥과 가구법에 의해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殿은 外陳柱의 기둥높이가 동일하여 외진주와 내진주 위에 모두 공포를 두고 여기에 보를 걸치는 가구법을 사용한 건물이다. 이에 반해 廳堂형의 건물은 내진주의 높이를 외진주보다 높게 함으로써 외진주 위에만 공포를 두고, 내진주에는 공포를 사용하지 않고 보를 걸치는 가구법을 사용한 건물이다. 일반적으로 殿이 廳堂보다 규모나 격식상 중요한 건물에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이에 의해 구분된다고는 할 수 없다.

9) '殿身'은 평면이나 가구의 구성에 있어 건물의 주체가 되는 부분이다. 즉 중국고대목조건축에는 殿身의 지붕보다 지붕을 한 단 낮추어 덧달아 낸 부분(副階)—우리의 퇴칸의 개념과 비슷하지만 그 형식은 다르다.—을 두는데, 이 덧달아 낸 부분을 제외한 몸체부분을 '殿身'이라 한다. 〈그림2〉.

그런데 본문의 내용에서는 '殿身○間'과 '殿○間'이라는 표현이 있어 구분을 하고 있다. 따라서 '殿身○間'이라고 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덧달아낸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殿○間'이라고 한 경우에는 덧달아낸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뒤에 나오는 3等材의 사용에 있어서 '殿身三間至殿五間'이라고 하여 그 표현을 구분한 점과 2等材에서 같은 다섯칸의 규모이지만 '殿身五間至七間'이라고 하여 '殿身'이라는 표현을 써서 구분한 점에서 확실히 알 수 있다.

즉 '殿身五間'이라고 한 경우에는 덧달아 낸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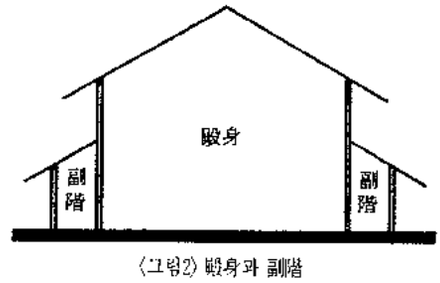

〈그림2〉 殿身과 副階

10) 殿身 네 주변에 덧달아 낸 회랑과 같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의 지붕을 殿身의 지붕보다 한 단 낮게 구성하여 전체적으로 이층처마를 이루도록 한다. 이때 하층의 처마를 이룬 부분을 副階라 한다(그림 2).

11) 宋이전에는 주요한 殿堂의 좌우양측에 이와 병렬하여 비교적 작은 殿堂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挾屋이라 한다.

淸式의 耳房은 일반적으로 주택에 많고 대규모의 殿堂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와는 달리 宋式의 挾屋은 주로 殿堂에 사용되고 주택과 같은 작은 규모의 건축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12) 회랑이다.

제6등급은 단면높이가 6촌, 너비가 4촌이다. 1분은 4푼이다.

亭榭나 작은 규모의 廳堂인 경우 모두 이를 사용한다.

제7등급은 단면높이가 5촌2푼5리, 너비가 3촌5푼이다. 1분은 3푼5리이다.

小殿및 亭榭 등에 사용한다.

제8등급은 단면높이가 4촌5푼, 너비가 3촌이다. 1분은 3푼이다.

殿 내부의 藻井이나 작은 亭榭에 鋪作을 많이 설치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梁[13]는 단면높이를 6분, 너비를 4분으로 한다. 材 위에 梁를 더한 것을 足材[14]라 한다. 栱眼 내부, 즉 栱[15] 兩端에 있는 枓 사이에 설치하는 것을 暗梁[16]라 한다.

각 등급의 부재는 材의 단면높이를 15等分하여, 그 10등분을 단면너비로 한다.[17]. 처마의 높이와 깊이, 부재의 길이, 지붕물매[18], 각종 도형의 기본은 모두 사용되는 材의 分°數를 기본적인 제도로 한다. 分寸의 分은 모두 글자와 같고 材分의 分은 音이 符와 問의 半切이니 나머지도 이에 準한다.

〈참고문헌〉

國土開發硏究院, 『營造法式(二)』, 1989

國土開發硏究院, 『營造法式(一)』, 1984

金度憲, 『朝鮮時代營造儀軌의 栱包用語에 관한 硏究』, 고려대석사 학위논문, 1992

徐伯安, 郭黛姮, 『宋〈營造法式〉述語匯釋』 〈建築史論文集〉 第六輯, 北京 : 淸華大學出版社, 1984

梁思成, 『營造法式註釋 卷上』, 北京 : 中國建築工業出版社, 1983

尹張燮, 『韓國의 營造尺度』 〈建築學硏究〉, 서울 : 태림문화사, 1985

李誡, 『營造法式』, 臺北 : 臺灣商務印書館, 1968

中國建築史編輯委員會編, 梁金石 譯, 『中國建築槪說』, 서울:태림문화사, 1990

주)

13) '梁'는 '材'의 부차적인 개념으로 높이 6분, 너비 4분이다. 이와 같은 '梁'의 개념은 공포의 구성에서 栱(첨차)과 枓(소로)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높이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 즉 〈그림 3〉과 같이 상하 두개의 첨차 사이에 소로가 위치하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상하의 첨차 사이에 소로의 높이만큼 빈 공간이 생기게 된다. 이 빈 공간의 높이가 一梁이다.

14) 足材는 材의 높이 15분 위에 梁의 높이 6분을 더한 것으로 높이가 21분인 부재를 말한다. 즉 1材梁의 높이가 되는 部材를 足材라 한다. 이에 반하여 梁를 사용하지 않고 材만을 사용하여 높이가 15분인 부재를 '單材'라 한다(그림 3, 4).

15) 공포의 구성에 있어서 보방향과 도리방향으로 사용된 부재의 총칭이다. 우리의 '첨차'와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 있으나, 조선중후기의 부재형상이나 사용된 용어에 의하면 첨차는 도리방향으로 사용된 공포부재만을 가리르므로(김도경, 『朝鮮時代 營造儀軌의 栱包用語에 관한 硏究』, pp. 111-112, 고려대석논, 1992)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리의 용어인 '첨차'로 고치지 않고 원문과 같은 '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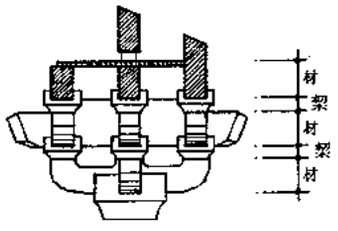

〈그림3〉 4鋪作 才와 梁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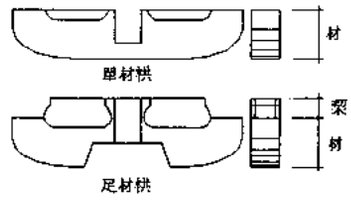

〈그림4〉 單材栱(1材)과 足材栱(1材1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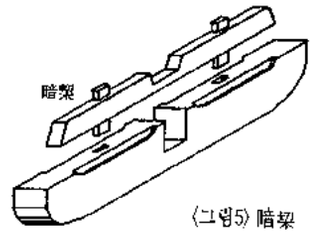

〈그림5〉 暗梁

16) 〈그림 3〉와 같이 상하의 栱 사이와 좌우의 枓 사이에 생기는 공간을 메우기 위해 사용되는 부재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중국에서 暗梁의 사용이 실제로 발견된 경우는 없다고 한다.

17) 『營造法式』에서는 건물의 규모를 8등급(이들 8등급의 절대치수 사이에는 비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으로 나누고 이에 따라 적당한 기준이 되는 단위척도인 '材'의 단면크기를 규정함으로써 건물을 이루는 각 부재의 기본적인 단위로 삼도록 하였다. 이러한 기본단위의 규정은 건물의 규격화를 통해 경제적인 영건을 이루고자 하는 의도였을 것이다. 材는 단면의 높이를 15등분 하여 그 1분을 비례척도의 기준으로 하고, 단면의 너비를 10분으로 한다. 여기에서 부재의 높이와 너비는 3 : 2라는 일률적인 비가 되어 부재의 구조적인 단면성질을 최적의 상태로 이루도록 한 역학적인 배려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그림 1). 또한 각 건물에 있어서는 栱의 단면크기가 材라고 하는 비례척도의 기준이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營造法式의 내용에서는 '材' 이외에 '栱'라는 부차적인 비례척도를 사용함으로써 모든 부재의 크기를 'O材', 또는 'O材O梁'라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그림 3, 4). 우리나라 목조건물의 경우 장혀나 첨차가 각 건물의 기본적인 단위척도로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은 추측뿐으로 앞으로 이에 관한 많은 연구가 요구된다.

18) '擧折'에 해당하는 적당한 우리의 용어가 없어 일단은 '지붕물매'라는 말로 번역하였다. '擧折'은 건물 전후의 수평거리와 종도리 높이의 관계를 고려하여 지붕이 적당한 물매를 이루도록 도리를 거는 기술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뒤에 '擧折'의 항목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한국의 전통 건축

House of Kang-neung Province

—강릉 曺守煥 가옥—

張順鏞/삼성건축사사무소
by Chang, Soon-Yong

조수환 가옥전경 : 작은 언덕을 배경으로 전면에만 토담이 설치되고 그 앞으로 경작지가 전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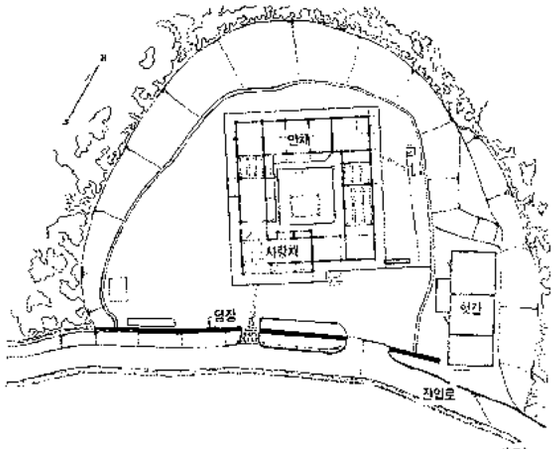

배치도

1. 강릉의 山水

조선 땅의 지리를 논한 "擇里志"는 이중환(1690~1756)이 지금으로부터 250여년전에 전국을 유람하여 살핀 바를 기술한 책이다. 그 중에 강원도를 평가하여 "태백산맥이 너무높아 異域과 같아 한 때 놀러가기는 적당하나 오래 살 곳은 못된다."라고 표현하였다. 조선시대에 살면서 당시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분석된 것으로 추측되지만, 현대문명이 가져다준 각종 공해와 차량 홍수라는 역기능의 피해로 인해서 위의 평가는 반대로 되어야 할 듯 싶다.

그러나 서편으로 높은 산맥을 끼고 동편에는 바다에 임한 지리적 여건이 주거의 형태에 독특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택리지에서 山水勝地의 하나인 江陵鏡浦臺를 "豁達中雄渾, 窅遠中安穩, 有不可名狀"이라 하였다. 활달한 가운데 웅장하여 막힘이 없고, 요원한 가운데 안온하여 형용하기 곤란하다는 의미인 것이다. 기후 조건만 보더라도 바람이 잦고 폭설이 내리지만 역설적으로 온화한 기후가 만들어 내는 인심이 주택의 배치와 평면구성에서도 내륙지방의 건물과 유사하면서도 또다른 양면성이 엿보인다. 실로 강릉지역의 주거에 대한 모습도 형용하기 곤란한 면이 없지 않다.

2. 조수환 가옥의 배치

이 가옥은 강릉시 유산동 51번지에 소재하고 유형문화재 제 96호로 지정된 건물로서 원래는 강릉도립의료원 근처에 있던 것을 150여년전에 현재의 장소로 옮겨 지은 것이라 한다. 따라서 원래의 모습을 얼마나 유지하고 있는 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기본적인 구조는 그대로 갖추었을 것으로 간주하고 현재의 상태를 기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강릉지역에서 전원풍경을 갖춘 마을의 입지조건을 살펴보면 마을 전체가 나지막한 구릉으로 감싸여지고, 한 편으로 마을입구로 진입하는 길이 트여지고, 또한 어느 특정한 위치에서는 언덕 너머로 바다가 보이는 장소로서 큰 길에서는 마을이 직접 보이지 않는 안온한 장소가 선호되는 것 같다. 그리고 집의 사랑채 또는 문간에서면 소유한 경작지가 내려다 보이는, 구릉을 등진 곳에 주택을 배치하고, 온화한 기후의 영향 때문인지 남향의 주거를 고집하지 않아 동향과 서향에 가까운 배치를 보이기도 한다.

이 가옥은 남동남향으로 배치되었고 집 뒤의 구릉은 서편이 높고 동편이 낮아지는 지형에 집 앞으로는 널찍한 경작지가 전개된다. 남편의 진입로 변에 담장을 쌓아 경계를 표시하였으나 대문은 설치하지 않고 담장이 트인 곳에 계단을 두어 대문역할을 하며 사랑채 마루와 직면하고 있다.

불규칙한 반달형의 대지에 약간 동편으로 치우쳐 '口'자형의 주택이 배치되어 전면이 사랑채 앞마당이 되고 서편이 널찍한 안마당이 되며 주택 동편의 좁고 긴 마당이 수도가 있는 뒤꼍이 된다. 전면 담장의 동편에도 담장이 트여 있는데 그 동편에 있는 축사와 창고 건물의 동선을 편하게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로 동편의 뒤꼍이 바라 보이게 되는 것을 나지막한 토담 한 칸으로 가로막은, 이른바 照壁이 설치되었다.

집 뒤편의 언덕에는 竹林과 松林으로 防風林이 형성되어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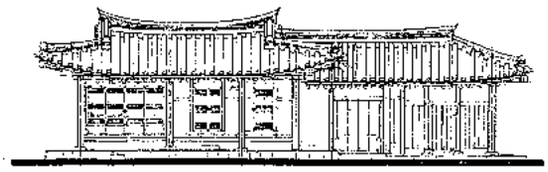

남측면도

양양한 하늘과 경작지와 수림이 어우러지는 사계절의 서정을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아마도 이 같은 집에서 성장하여 도시에 나가 살게되면 고향을 그리는 정이 더욱 애틋하여지고, 뜻대로 쉽게 움직일만한 형편이 못된다면 더더욱 귀거래사를 읊게 되는, 한민족의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이상향에 가까운 고향의 모습이 여기가 아닐까 싶기도 하다.

3. 평면구성

본채의 평면은 북편에 안채가 들이서고 서남편에 사랑채가 있으며 주위를 행랑채로 연결하여 '口'자형을 이루고 있다.

전편에서 사당과 사랑채와 부엌간의 배치관계를 언급하였듯이 이 건물에서는 별도의 사랑채가 없으므로 앞마당과 안마당이 연결되는 남서편에 사랑채를 두고 부엌을 이와 대칭적인 북동편에 배치된 것으로 해석된다.

1985년에 문화재로 지정한 후에 세운 안내문에 의하면 안채는 양쪽에 부엌이 있다하였으나 현재는 동편에만 부엌이 있으므로 평면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안채에서 특이한 점은 부엌 서편으로 칸막이된 온돌방이 연속하여 있고 대청칸은 마련되지 않아 전면의 퇴마루가 행랑채의 마루로 연속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개방된 마루방 보다는 난방이 되는 온돌방이 선호된 것으로 보이고, 보방향의 길이가 12자반 정도인데도 중간에 기둥을 배치하고 있는 것은 강원도 산간지역에 분포한 겹집구조 형식이 전래되는 모습이며, 아울러 중간의 기둥이 용마루까지 연장되어 종도리를 받는 삼량구조로 되며 고주간을 고미보로 걸고 고미 서까래를 걸치고 진흙으로 바르는 이른바 고미반자로 구성하기에도 편리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고미반자의 기능은 지붕 밑에 완충공간을 두고 그 밑으로 나무와 흙으로 구성되는 반자를 설치함으로서 외부의 한서기온을 실내에서는 쾌적한 환경으로 전환시키는 단열 겸 축열 기능이 수행되도록 하는 자연스런 공기조절이 되는 점에 있고, 부차적으로는 이곳을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다만 현재는 고미반자를 없애고 평반자로 대치되어 있는 바이며 어느시기에 변형되었는지는 확인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지붕을 삼량구조로 하여 서까래가 12자 정도의 긴 부재를 사용한 것은 그러한 목재를 조달하기에 어려움이 없는 지역적 특성인 것으로 해석된다.

온돌방에서는 전면과 후면에 창호를 두어 환기가 원활히 되도록 한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이점은 역으로 실내에 가구를 설치하기 곤란한 평면구성이 되는 것이다. 옛 살림에서는 현대와 같이 다양한 가구가 사용되지 않았던 점을 인식할 수 있고 따라서 요즈음에 한옥을 설계하려면 가구배치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사랑채는 전변 3칸에 측면 1칸반의 팔작지붕 형태이고 여기에 행랑채 지붕이 접속된다. 서남측 모서리에 배치된 사랑대청은 전면에는 사분합문을 설치하고 서측면에는 쌍창을 북측에는 다락을 두었다. 사랑채 온돌방은 전면에 쌍창과 독창을 설치하고 대청쪽에는 맹장지 분합문을 설치하였으며 이 문의 실내측에는 한시를 표구하여 사랑방의 운치를 더하였다. 온돌방의 북편에는 처마밑으로 가퇴를 만들어 벽장을 구성하였고 방과 대청의 전면에는 반칸의 퇴마루를 두었고 퇴마루의 양측면 부분은 벽체로 막아 주변의 시야를 부분적으로 차단한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사랑대청 북편에는 부엌간이 접속되어 서행랑 온돌방의 부뚜막이 구성되고 다시 그 북편으로 온돌방 두칸과 마루방 1칸이 이어진다. 이 서행랑채의 마루방이 원래의 모습은 아닌 것으로 추측된다.

사랑채 동편에는 대문간이 있고 그 동편에 외양간이 배치되고, 외양간 북편으로 우물마루의 고방 3칸이 연속되어 동행랑을 구성한다.

동행랑의 북편과 부엌의 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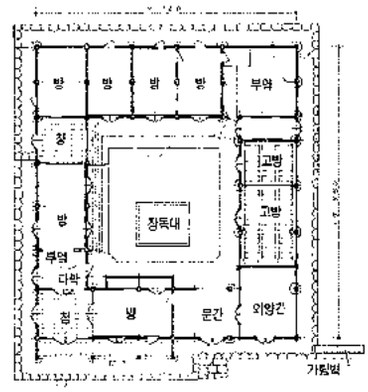

평면도

서측면전경 : 왼편의 안채와 오른편의 사랑채가 연결되어 口자 평면을 구성하였다.

언덕에서 본 진입로 전경 : 사랑채 앞으로 트인 담장이 대문이고 오른편의 안마당과 담장너머로 마을 경작지와 진입로의 구성이 한가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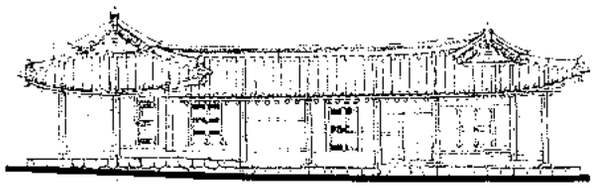
서측면도

남측면 전경 : 사랑채의 존재가 폐쇄적인 주택에 개방성을 부여하였다.

사랑채 정면 : 대칭의 분합문과 온돌방의 창호, 퇴마루, 편액과 주련이 사랑채 임을 어설히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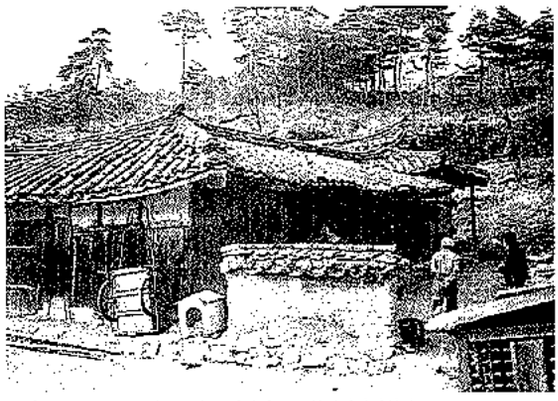
동측면 전경과 가림벽 : 뒤쪽을 가림벽으로 부분 차단하였다.

사이에는 4자폭의 공간이 형성되어 뒤꼍으로 나가는 문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부분의 지붕이 특이한 방법으로 연결되어 있어 원래는 안채와 분리된 지붕이었던 것을 빗물처리가 곤란하여 근근히 접속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농행랑은 판벽으로 만들어 창고내의 환기를 도모하는 구조로 만들었다.

건물전체의 면적은 정면길이 14.18m에 측면길이 15.55m로 69.4평 정도의 규모이고, 중정의 면적 23평을 제외하면 46.4평이 되는 규모있는 건물이다. 기둥은 평균적으로 7치각을 사용하였고, 기둥의 배치간격은 6자에서 13자의 범위로 다양하며 기본적인 간격은 8자 내외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평면구성의 기본 개념은 정면 6칸이고, 측면 6칸에 건물간격 반칸을 합하여 6.5칸이 되고 중정부는 3칸에 2칸반이 된다.

강릉지역의 평면구성에서 안채와 행랑채가 분리되고 사랑채가 이어져 전체로는 'ㅁ'자형 배치가 되며 건물간의 이격거리에 따라 약간씩 구성을 달리하는 상황을 인식할 수 있으며 본 가옥에서는 외곽의 기둥배열은 완전한 'ㅁ'자형이고 사랑채에만 반칸 퇴가 추가된 모습이어서 평면구성상으로는 경상도 산간지방에서 보이는 'ㅁ'자형 건물과 유사하다. 그러나 지붕의 모습이 분절되는 상황을 겹쳐서 생각하면 외관적인 형태는 달라지며, 특히 안채에서 대청의 구성이 축소되거나 없어지는 점은 크게 다른 점이라 하겠다.

외양간이 대문간 옆에 건물의 전면쪽으로 배치되는 것은 다른지역과도 공통되는 점이며, 이것은 농경사회에서 소가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이고 동시에 관리상의 편리성을 추구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현재의 상황으로는 인력난과 기계화 영농의 추세 때문에 외양간의 기능이 창고로 바뀐다는 시대적인 변화가 있다.

4. 평면의 발전과정

폐쇄적인 'ㅁ'자형 평면구성은 산간지방의 생활에서 짐승들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대비와 폭설이 내릴 경우 교통두절로 고립되므로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자급자족할 수 있는 평면형태인 것으로, 오랜 세월의 경험에 의해 이루어진 모습이라 하겠다.

강원도 고성군 왕곡마을의 주택은 겹집형태의 일자형 평면에서 전면쪽에서 외양간을 덧달아 내어 구성하는 독특한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강릉지방의 'ㅁ'자형 주택의 발전과정을 추측해보면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①겹집형의 일자형 주거에서 출발하여 소가 있을 경우 외양간을 집안에 둔다.

②주거면적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외양간을 겹집 밖으로 덧 달아 내면 왕곡마을의 주거 형태가 된다.

③규모가 있는 농가에서는 별도로 사랑채를 만들되 도난과 폭설시를 대비하여 서로 유기적인 연결이 되도록 하고 최소한의 생활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ㅁ'자형 배치로 발전하고, 이 경우 외양간은 대문간 옆에 두어 관리에 편리하도록 하면 본 가옥과 같은 평면이 구성된다. 결국 'ㅁ'자형 집을 선립할 당시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면 농사규모가 만만 치 않았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주택이다.

④영농규모가 더욱 커지고 가족구성원도 다양해지면 바깥마당에 별도의 대문채와 행랑채를 세우게 되고 안채와 사랑채 간의 간격을 더욱 벌려 반 개방적인 'ㅁ'자형의 주거형태의 완성단계로 접어 든다. 이런 정도이면 마당의 동북편에 조상을 모시는 사랑채도 건립하고, 가족 구성원의 상황에 따라 별도의 고간채 겸 별당이 추가될 수 있다.

그리고 농사규모와 집의 규모에 따라 가하여지는 각종의 세제와 사회관습상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건물의 규모에 제한이 있었을 것이며, 그러한 표준적 규모의 범주에 드는 것으로 본 가옥이 포함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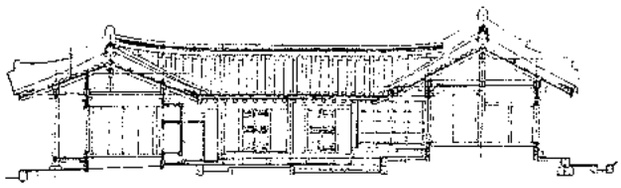

종단면도

면적상으로는 50평 내외이고 실제 사용되는 칸 수로는 부엌 두칸에 온돌방 6칸, 대청 두칸, 고방 두칸에 외양간 한 칸과 문간 한 칸반으로 도합 14칸반 정도인 것을 알 수 있다. 약간의 변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현재의 평면에서 온돌방 한 칸에 평균적으로 2인이 거주한다고 가정하면 정상적인 최대 거주인원은 12명이 된다. 현대의 핵가족 개념으로 보자면 대규모 가족구성이라 하겠으나 약간만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가족구성이 삼대 또는 사대에 이르므로 12명은 표준적인 인원수가 되는 것이다.

연면적을 인원수로 나누면 1인당 소요면적이 4평 정도인 것을 알 수 있고, 현대적인 주거개념의 소요면적과 유사한 것이다. 다만 자급자족적인 경제체계 때문에 외양간과 창고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지 않으나 한옥에서 활용되는 외부공간의 면적도 있으므로 단순한 수치비교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5. 정면구성과 가림벽(照壁)

이 건물의 정면에서는 좌측에 있는 사랑채 세칸이 팔작지붕 구성이고 동측의 문간보다 반칸이 돌출되어 있어 시각적인 중심점이 되고 있다. 그리고 사랑방 정면으로 崇德齋라는 堂號를 게첨하고 기둥에는 먹바탕에 흰 글씨로 초서체의 주련을 평주와 고주에 각각 걸어 놓아 학문을 하는 사랑방이라는 표시를 하였다.

사랑방과 문간의 사이에는 회벽으로 발라 구분하고 있는데 원래는 토벽이었던 것으로 짐작되며 기 편이 돌출되어 보이는 회벽보다는 색조가 적절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사랑채 보다 지붕이 한 단 낮게 구성하여 접속되는 문간의 지붕은 동측단부에서는 우진각으로 처리하여 문간채의 볼륨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였다. 그리고 이부분의 문과 벽은 판벽과 판문으로 하고 상단부에만 토벽으로 처리한 전형적인 기법을 보이고 있다.

외양간에 소가 드나드는 문은 여닫이와 미닫이의 경우가 있으나 여기서는 여닫이로 하여 바깥쪽으로 여는 것은 기능상 당연한 것이고, 출입하는 대문을 바깥쪽으로 여는 경우와 안쪽으로 여는 방법에서 본 가옥은 전자를 선택하였다. 이 점은 대문에 들어서서 외양간의 출입문과 사랑방, 아궁이를 대문이 가로막게 되는 것을 피하고 대문간의 공간활용을 위해 선택된 것으로 보여진다.

정면 기단의 동측끝에서 길이 9자 정도로 토담을 설치하여 조벽을 구성한 상황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으며, 이와 같은 모습이 한옥에 응용되는 인간적인 면이라 하겠다. 이담이 뒤꼍을 가리기 위한 목적이지만 결코 완전히 가리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어차피 뒤꼍에서 앞마당으로 나오는 동선도 필요하므로 완전히 차단하지 않을 바에야 차단한다는 표현만으로 충분하다는 개념일 것이다. 우리의 생활문화에서 헛기침으로 표현하는 방법과 일맥상통하는 점이라 하겠으며, 제주도에서 집주인의 유무에 따라 문간에 표시해 놓는 방법도 동일한 착상이 아닐 수 없다. 역설적으로 해석해 보면 집주인으로서는 외부인이 보지 않도록 조치하여 놓았으니 그 다음은 방문객이 알아서 처신하여야 할 것이고, 그런 예절을 지키지 못해 생기는 잡음과 문제는 객이 담당할 몫이라는 자세라고 볼 수 있다. 어찌보면 다분이 낙천적 기질이라고 볼 수 있으나, 예를 범사에 으뜸으로 치는 민족적 정서를 건축적으로, 경제적인 방법으로 구현하면 이와 같은 표현이 가능한 것이다. 아마도

동측면과 뒤꼍 : 가림벽이 필요한 이유를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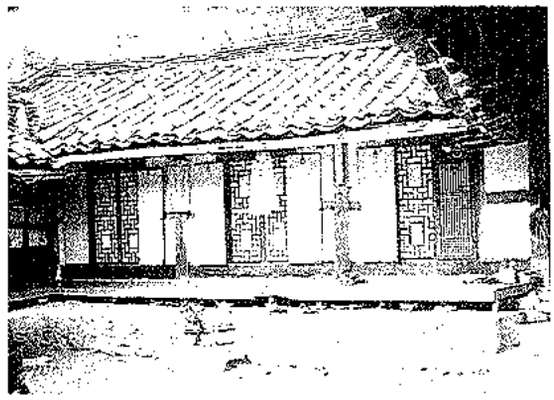

안채 정면 : 온돌방의 영창을 완자창으로 하여 고급스런 분위기로 안채의 성격을 표현하였다.

동편 행랑부 서측면 : 판벽에 판문으로 고방을 만들고 왼편에 뒤꼍으로 나가는 출입구를 두었고 마당 중앙에 장독대를 설치하여, 늘상 장독들을 관리하도록 되어있다.

이와 같은 점이 서양건축에서 기둥 것은 완벽하게 감추어 버리는 것과는 극단적으로 대조적인 모습이라 하겠으며 虛實相對이라는 분명치 않은 개념이 건축에서 분명하게 적용되는 지혜로운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이런 기법은 현대 건축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소재인 것으로 생각된다.

고딕 성당 건축(5)

Gothic Catholic Church Building(5)

—스페인의 부르고스(Burgos)성당—

朴孝洵/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공학박사
by Park, Hyo-Soon

1. 부르고스(Burgos)市의 역사

카스틸라 지방의 요람이며 스페인의 전통적 도덕가치를 지니고 있는 수호지인 부르고스는 유명한 대성당의 톱니모양의 뾰족탑을 의연하게 드러내고 있다. 9세기 디에고 포르셀로스(Diego Porcelos)는 여러번 침략 유린당한 도시국가에 다시 사람들이 살도록 만들었다. 951년 페르낭 곤잘레스(Fernan Gonzalez)는 부르고스를 카스틸라의 백장령으로 선택했으며 1037년 페르디난드 1세가 카스틸라의 왕국들인 레옹(Leon)과 아스튀리스(Asturies)를 그의 왕권아래 합병했을 때 번성하고 융성하는 황금시기가 시작되었다. 1083년 마드리드(Madrid)를, 1085년 톨레도(Toledo)를 무어족(북아프리카 모리타니인)들에게서 획득함으로써 새 왕국은 이름을 떨치게 되었고 무어인 소국왕은 평화의 대가로 매년 조세를 바쳐야만 했다. 부르고스에서 9km 떨어진 비바르(Vivar)태생인 로드리고 디아즈(Rodrigo Diaz)는 11세기말 카스틸라 역사에 발자국을 남기기도 하였다. 이 명석한 장수는 카스틸라의 왕 산체(Sanche) 2세의 야심적인 계획을 도왔고 그 다음으로는 믿기 어려운 상황속에서 그의 형을 계승한 알퐁스(Alphonse) 6세의 야망에도 도움을 주었다. 시드(Cid)가 그를 의심하는데 대해 못마땅했던 알퐁스(Alphonse)6세는 그의 사촌 쉬멘느(Chimene)를 시드(Cid)에게 배우자로 준 후인 1081년 카스틸라에서 시드를 추방했다. 그래서 로드리고(Rodrigo)는 사라고스(Saragosse)의 무어인 군주의 병영에 들어가 기독교 군대와 교전을 하게 되었다. 그 후 그는 그의 옛군주와 화해를 하고 1094년 발랑스(Valence)를 점령하기도 하였으며 이후 4년 후 즉, 1099년에 사망했다. 무어족에 의해 포위당한 발랑스(Valence)에서 용감한 쉬멘느(Chimene)는 3년을 더 저항했으나 화재로 인해 카스틸라로 피신을 했다. 이 두 부부는 카르데나(Cardena : 부르고스에서 동쪽으로 10km 떨어짐)의 산페드로(San Pedro)수도원에 묻혔으나 1921년 그들의 유골은 부르고스 대성당으로 옮겨졌다. 부르고스(Burgos)에서 발라돌리드(Valladolid)로 수도가 옮겨졌지만 아직도 부르고스(Burgos)는 상업적 예술적 활력의 중심지이다. 또한 마드리드(Madrid)의 합법적 공화정부에 항거한 임시정부가 있었던 곳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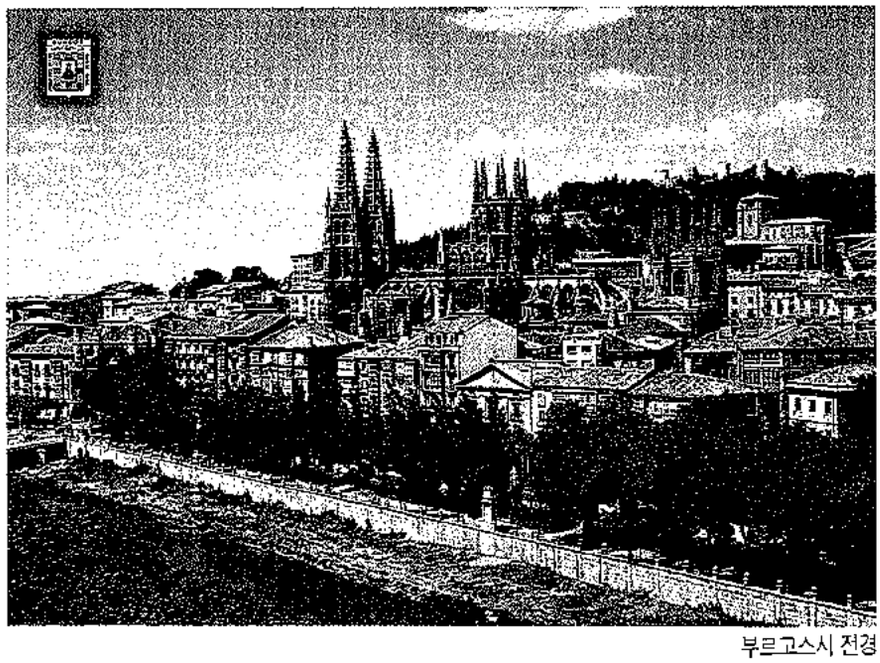

부르고스시 전경

2. 대성당의 건립배경과 건축적 특징

역사가들에 의하면 첫번째 대성당은 부르고스에서 40km 떨어진 오카(Oca)에 세워졌다고 한다. 이곳에 사도 쟈끄(Jacques)성인은 주교좌를 정했다. 714년 회교도들이 침입하여 대성당을 완전히 파괴하였다. 깊은 신앙심으로 특정지어지는 오카(Oca)사람들은 아프리카인들에게 깊고도 끈질긴 증오심을 품었다. 1074년, 알퐁스6세(Alphonse)의 누이들인 우라까(Urraca)공주와 엘비르(Elvire) 공주가 주교좌를 부르고스에서 2km 떨어진 가모날(Gamonal)로 옮겼다. 1081년 알퐁스 6세(Alphonse)는 그의 아버지 페르디난드(Ferdinand)에게서 물려받은 궁궐들을 양도하여 부르고스에 대성당을 지을 수 있게 되었다. 1219년 돈 모리시오(Don Mauricio)주교는 페르디난드 3세(Ferdinand)의 부인이 될 수아브(Souabe)의 베아트리스(Beatrice)를 스페인에 데려오기 위해 독일로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는 여행도중에 보았던 프랑스와 독일의 고딕성당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고 돌아오게 되었다.

이해 11월 30일 왕의 결혼식이

거행되었다. 그러나 국민들은 대성당이 모든 초대손님을 참석시키기에 공간이 좁다는 이유로 불만을 나타내었다. 이 때문에 왕은 주교와 함께 카스틸라(Castille)에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실한 신자들에게 긍지를 갖도록 하기 위해 훌륭한 대성당을 짓기로 의견일치를 보았다. 이렇게 해서 페르디난드 3세(Ferdinand Ⅲ)에 의하여 기독교 예술의 찬란한 작품인 대성당의 건립이 시작되었다. 이와 같은 대성당의 건축을 위하여 부르고스(Burgos)의 고위 성직자 중의 한 사람이었던 알롱소(Alonso)가 스위스 바젤의 종교회의에서 돌아올 때 플랑드르(프랑스 북부, 벨기에 서부, 네덜란드 남서부를 포함하는 지역)와 라인란트(독일의 라인강 서부지방) 그리고 부르고뉴(프랑스의 동부지방)에서 온 여러명의 건축가, 조각가들을 데리고 와서 건축과 작품제작을 했기 때문에 북유럽양식이 도입되게 되었다. 예술가들 중에는 펠리프 비가르니(Felipe Vigarny), 질 드 실로에(Gil de Siloé), 쟝 드 콜로니(Jean de Cologne)등이 뛰어났다. 훌륭한 조각가들로는 질(Gil)과 그의 아들 디에고(Diego), 주앙(Juan)과 그의 아들 시몽(Simon), 손자 프란시스코(Francisco)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첫번째 건축가는 확실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거장 앙리끄(Enrique)라고 알려져 있고 주앙 페레즈(Juan Perez)와 페드로 산체스(Pedro Sanchez)가 그 뒤를 이었다고 한다. 드디어 1221년 7월 2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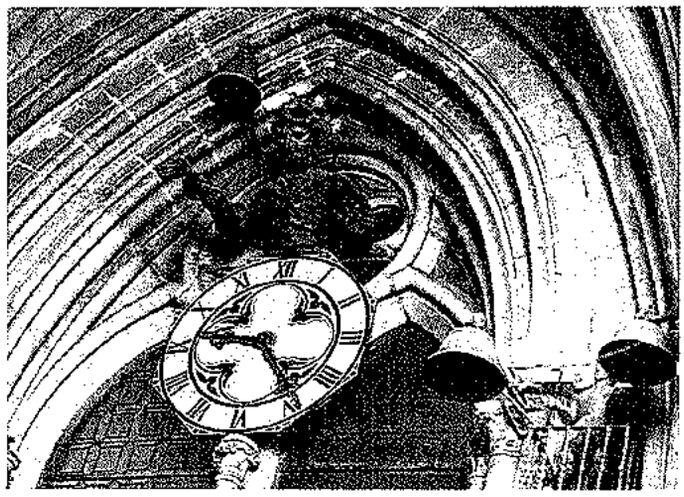
파파모카스

머릿돌을 놓았으며 처음에는 프랑스식 라틴 십자가 평면으로 시작되었으나 부지의 고저차와 회랑, 회중석, 고딕식아일 측면의 제의실의 설치 등으로 대칭성은 무너졌다. 1221~1960년에 내진, 네이브, 트란셉트가 완성되었는데 착공한 지 8년뒤에는 첫번째 미사가 이곳에서 거행되었으며 착공한 지 40년 뒤에는 봉헌식을 올렸다. 이어서 1290~1314년에는 회랑과 회중석을 지었고 1442~1458년에는 西正面의 쌍탑이 건립되었으며 1540~1568년에는 교차지붕에 렌턴이 마지막으로 세워졌다. 쌍탑은 콜룬의 건축가 주앙(Juan)의 설계에 의한 것이며, 탑의 높이는 83.8m이고 탑의 첨두부분은 透造式으로 되어 있다. 공사는 거의 400년동안 지속되었다. 세빌리아와 톨레도(Toledo)의 대성당에 이어 스페인에서는 세번째로 큰 부르고스 대성당은 특히 동정 성모마리아의 승천의 신비를 위해 바쳐진 성당이다. 부르고스는 이 승천의 신비에 대성당을 바쳤던 세계의 여러 도시들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이미 11세기에 카스틸라지방의 왕의 사촌이었던 쉬멘느의 남편으로 스페인의 영웅인 시드(Cid)가 유배를 갈 당시 부르고스를 떠나면서 '영광스러운 성녀 마리아여'라고 성모 마리아를 부르며 보호를 요청하기도 했었다. 이것은 알퐁스 6세(Alphonse Ⅵ)의 지시에 의해 건축된 로마네스크 양식의 고대의 대성당은 이미 성모마리아의 승천에 바쳐졌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후 불행하게도 지면을 수평으로 하여 같은 장소에 현재의 대성당을 짓기 위해 이 대성당을 허물었다. 난방장치를 설치하면서 발굴작업을 했을 때 발견된 수도원 안뜰에 있던 다수의 기둥머리들이 현재까지 남아 있는 것의 전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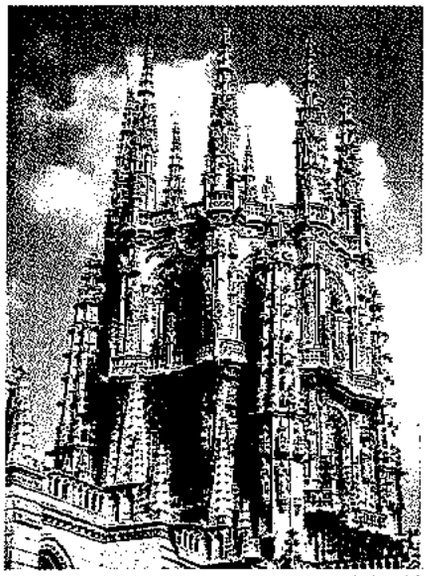
꼭대기 채광탑 상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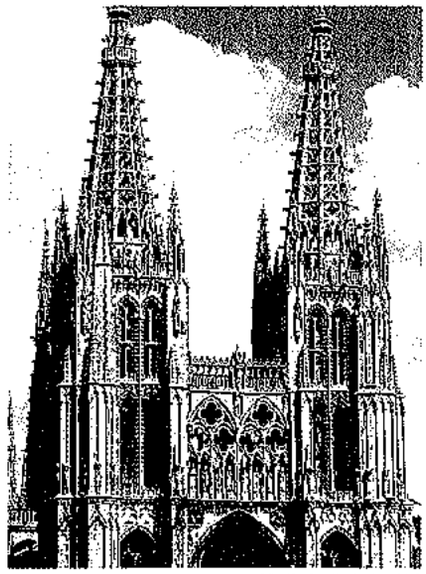
꼭대기 채광탑 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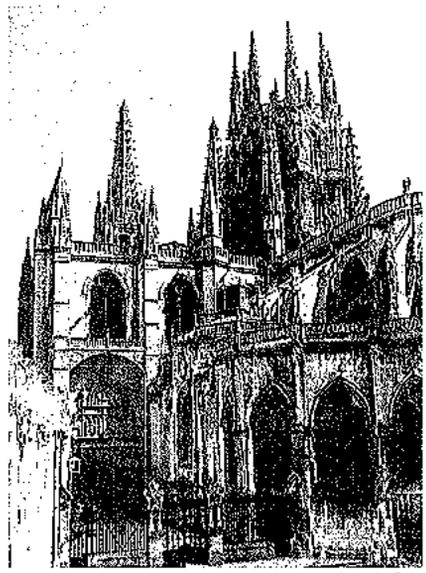
성당의 후진

3. 정면

정면은 매우 오밀조밀하게 장식되어 있다. 중앙 정문의 양쪽에는 페르디난드(Ferdinand)3세, 알퐁스(Alphonse)6세의 입상들과 모리시오(Mauricio)주교와 아스테리오(Asterio)주교, 오카의 선임주교의 입상들이 있다. 또한 솔로몬의 관인이라고 불리우는 삼각형을 두개 포갠 육각별 모양을 한 아라베스크식의 구도를 가진 원화창이 있다. 그 위쪽에는 페르디난드(Ferdinand)1세부터 3세까지 카스틸라의 왕으로 간주되는 입상 8개가 있는 회랑이 있다. 탑들과 함께 정면은 초기 건축 시대(13세기)의 것이다. 두 첨봉(뾰족한 꼭대기)은 15세기에 장 드 콜로너(Jean de Cologne)에 의해 건축되었다.

3-1. 불켜진 대성당

1970년 6월 29일 밤 10시 10분에 정부관료들과 수많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278개의 반사경으로 된 새로운 조명에 대한 제막식을 거행했다.

3-2. 대성당의 정문들

대성당에는 4개의 정문이 있는데 18세기에 형편없이 복원되어 외부의 나머지 부분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주 정문을 제외하고는 아주 예술적이다.

—Coroneria 정문 : 13세기 것으로 아주 섬세하게 다듬은 수 많은 입상들을 주목해 보면 굉장한 예술적인 미를 발견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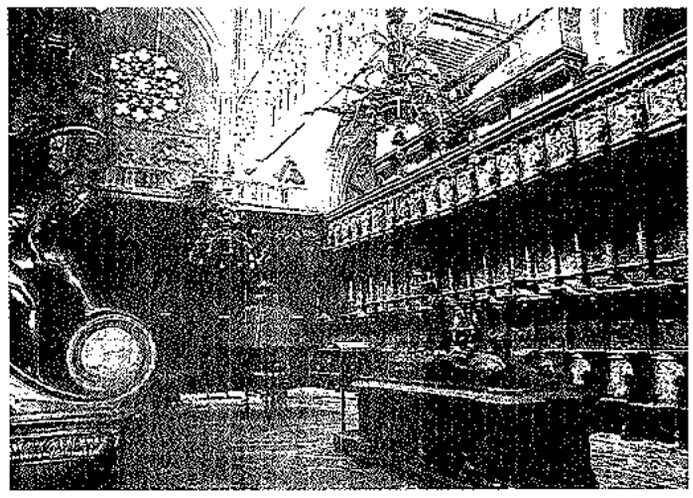

성직자석(내진)

—Pellejeria 정문 : 금속 세공같이 우아한 장식으로 되어 있어 제단뒤의 장식 벽같이 보이는 문이다. 16세기의 것으로 프란시스코 드 콜로너(Franciosco de Cologne)에 의해 제작되었다.

—Sarmental 정문 : 여러개의 정문중 가장 아름다운 정문이라 할 수 있다. 수많은 장식과 아름다움에 의해 돋보이는 이 문은 아주 섬세한 고딕양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합각벽은 유럽에서 고딕양식의 조각중 가장 완벽한 작품가운데 하나로 간주된다. 4명의 복음사가들에게 그의 말을 받아쓰게 하고 있는 그리스도와 경사진 작은 책상위에서 쓰느라고 분주한 4명의 복음사가들을 볼 수 있다. 문사이의 벽에는 모리시오(Mauricio)주교를 새로 제작한 입상이 있다. 13세기에 제작된 원래의 입상은 옛날에는 이 자리에 있었으나 지금은 수도원 안뜰에 있다.

4. 내부

대성당에는 19개의 작은 제단과 38개의 제단, 중앙회중석에 있는 58개의 기둥, 철책 33개, 좌우익랑에 있는 동으로 된 두개의 철책, 내부 회랑속에 있는 38개의 아치, 돌로 된 난간이 있다. 바닥포장은 1863년에 했는데 카라라산의 대리석으로 되어 있다.

성당의 규모는 성모마리아의 문에서부터 총독의 작은 제단(la chapelle du connetable)까지 108m이고 황금계단에서부터 Sarmental정문까지 61m이다. 중앙회중석의 높이는 27m이고 좌우익랑의 높이는 50m이다.

테오필 고티에(Theophile Gautier)는 이 대성당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설령 2년 동안 계속해서 본다고 해도 우리는 모든 것을 보지는 못할 것이다. 이것은 피라미드 처럼 거대하고 여자들의 보석과 같이 섬세한 것으로 어떻게 해서 이러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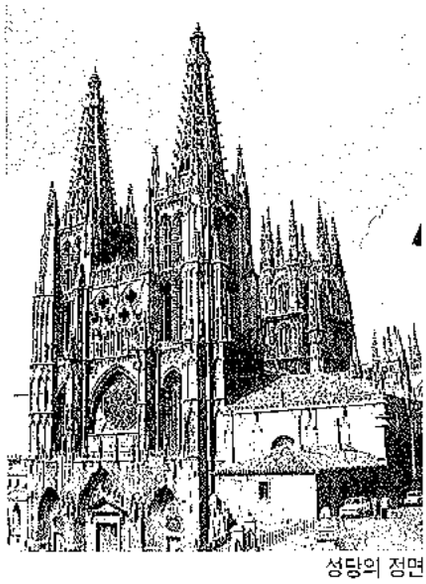

성당의 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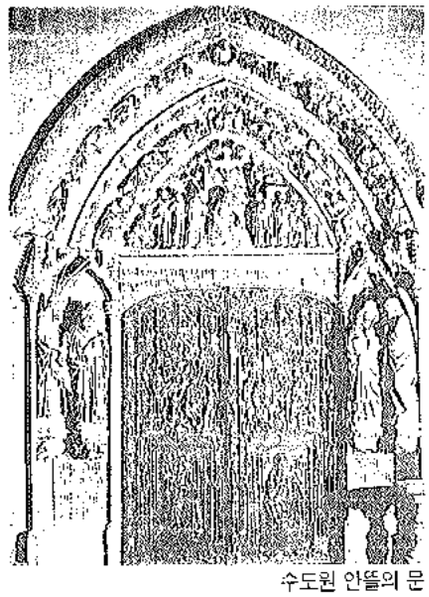

수도원 안뜰의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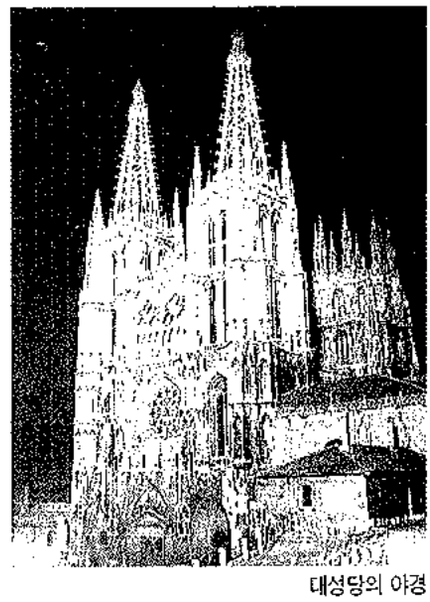

대성당의 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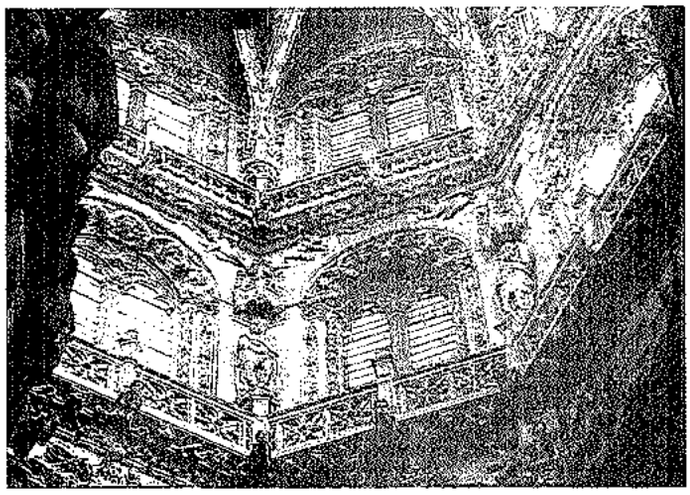
좌우익랑의 채광탑 내부

선조세공(線條細工)이 여러 세기동안 공기 중에 있을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

4-1. 주제단

주 제단은 부르고스의 예술가들인 로드리고(Rodrigo)와 마르젱(Margin)에 의해 건축되었고 마르젱(Margin)의 아버지는 프란시스코 드 콜로너(Francisco de Cologne)와 함께 일을 했었다. 르네상스 양식에 속하며 도리아식, 이오니아식, 코린트식으로 되어 있다. 벽감들은 매우 예술적이며 실물 크기의 사도들의 입상들은 아름다우면서도 활기차다. 중앙에는 부르고스 시의 수호 성녀인 성모마리아가 있다. 15세기의 주교 아퀴나(Acuna)의 기증품으로 순은으로 제작되었다. 성모승천과 골고다언덕은 주앙 드 앙쉬다(Juan de Ancheta)의 작품이다. 받침대에는 구약성서의 대목들이 있다.

아하스에로스 왕의 앞에 선 에스델과 홀로페로스를 죽인 유딧을 볼 수 있다.

제단의 오른쪽 밑에는 알퐁스(Alphonse)10세의 아들 주앙(Juan)왕자가 묻혀있고, 왼쪽 밑에는 백작 산쵸(Sanche)와 페르디난드(Ferdinand)국왕의 증조부인 포르투칼의 피에르(Pierre)왕의 딸 베아트리스(Béatrice)가 묻혀있다.

제단으로 이어지는 계단은 카라라산 대리석으로 되어 있다. 대형 촛대 6개가 세워져 있으며 이것은 모두 돋을무늬 압착세공을 한 은제품으로 매우 정성스럽게 가공했다.

살라망끄(Salamanque)의 제무관 마누엘 크레스뽀(Manuel Cre spo)의 작품이다. 이 제단은 철과 동으로 된 그릴로 보호하고 있다.

4-2. 총독의 작은 제단

이 제대는 굉장히 아름답고 예술적이며 또한 장중하다. 15세기 콜론의 시몽(Simon)이 제작했다. 카스틸라 지방의 총독이었던 페드로 페르난데즈(Pedro Fernandez)와 그의 아내 멘시아(Mencia)가 이 제대의 창립자였다. 투조세공을 한 궁륭의 섬세함이 매우 두드러진다. 8개의 꼭지점을 가졌고 기하학적으로 매우 복잡하게 장식된 별은 불규칙적으로 시작이 되어 8각형으로 끝이 나 있다.

창립자들의 호화로운 분묘가 이 제대의 웅장함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한다. 카라라산의 흰 대리석으로 된 조각들은 깊은 잠속에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프랑스 부르고뉴(Bourgogne)지방의 장(Jean)이 제작했다.

가운데 제단뒤의 장식 벽은 르네상스 양식으로 펠리프 비가르니(Felipe Vigarny)와 디에고 드 실로에(Diego de Siloé)의 작품이다. 그 양쪽에 두장식벽이 있는데 오른쪽 장식벽을 질드시로에(Gildesiloe)가 제작한 것으로 고딕양식이며 왼쪽 것은 그의 아들 디에고 드 실로에(Diego de Siloé)가 금속세공 양식에 의하여 제작한 것으로 유명한 조각 작품인 제롬(Jerome)성인을 볼 수 있다. 그 외의 보물로는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유명한 그림 마리 마들렌느(Marie Madeleine)가 제의실 속에 있다.

4-3. 그리스도의 몸의 작은 제단

그리스도의 몸의 작은 제단은 교회 참사회의실로 가는 통로로 사용된다. 이곳에 시드(Cid)의 상자와 디에고 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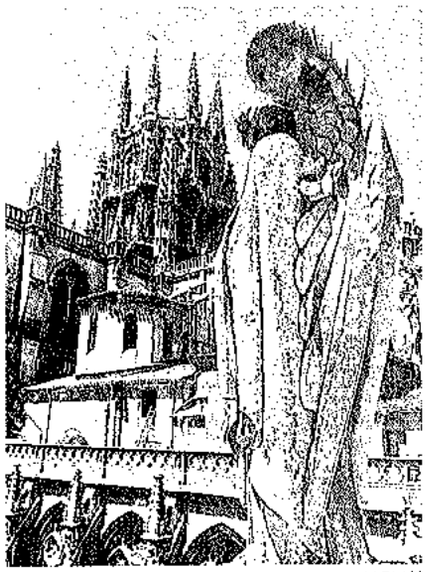
수도원 안뜰의 조상(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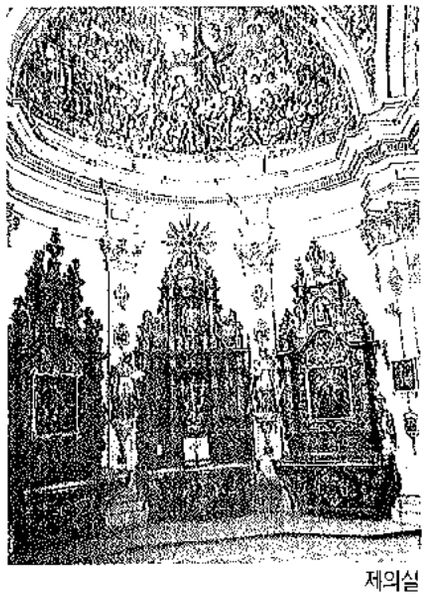
제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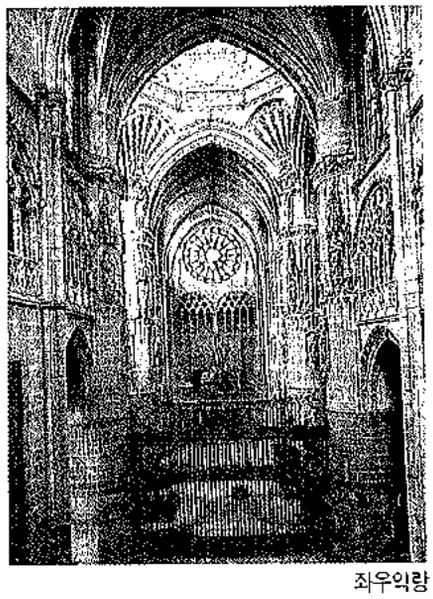
좌우익랑

총독의 작은 제단 일부조각

실로에(Diego de Siloé)의 '채찍질 당한 그리스도'가 있다. 교회 참사회의실은 12~16세기 스페인의 아라비아 예술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 예술 양식인 뮈데자(Mudéja)양식으로 된 천장은 미장널이 찬탄할 만하며 카스틸라 지방의 세폭 그림과 망링(Memling)의 '아기예수를 안고 있는 동정 마리아'도 주목할 만하다.

벽은 16세기의 장식융단들로 처리되어 있다. 이 제단에서 나가면 왼쪽에 16세기 주앙 드 발레조(Juan de Vallejo)의 쌩 쟈끄(Saint Jacques)제단이 있고 몇 발자국 가지 않아 로코코 양식의 중앙 제의실이 있다. 이 중앙 제의실 입구에는 17세기부터 지금까지 점화되어 있는 진기한 화로가 있다.

4-4. 성녀 까뜨린느의 작은 제단

성녀 까뜨린느의 작은 제단속에 보물들이 있다. 가장 귀한 보물 가운데에는 그랑다(Granda)의 제일 큰 성합과 12세기의 로마네스크 양식의 십자가들, 11세기의 비잔틴 양식의 그리스도, 부르고스의 유명한 금은 세공사 마에즈 칼보(Maese Calvo)와 그의 아들이 제작한 아름다운 현대식 성작들이 있다. 벽에는 부르고스 교구를 관리했던 주교와 대주교들의 초상화가 걸려있고 흥미있는 문헌이 진열대 속에 전시되어 있다.

4-5. 세례자 요한의 작은 제단

이 제단은 새로운 보물에 의해 알려졌다. 볼 만한 것으로는 13세기의 무어식 망토, 14세기의 은으로 된 십자가에 못박힌 예수상, 베드로성인, 쟈끄성인, 바오로 성인들의 은으로 된 세 입상(15세기), 주앙 드 아르페(Juan de Arfe)의 대주교의 십자가, 16세기의 성가대 책 한권, 프랑스제의 대주교 십자가, 상아로 된 아기예수와 함께 있는 아름다운 성모 마리아(15세기), 플랑드르의 세 폭 그림 두 점, 동 상아 법랑으로 된 그랑다(Granda)의 성합 등이 있다. 중앙 진열창 속에는 달마티아(유고슬로비아의 주)의 모직으로 만든 백의와 망토가 여러벌 있다. 구전에 의하면 이 망토들 가운데 몇벌은 15세기 종교회의에서 신부들이 이용했었다고 한다.

4-6. 수도원 안뜰의 문과 성모방문의 작은 제단

사르망딸(Sarmental)정문으로 들어가서 오른쪽에 있는 문으로 15세기 질 드 실로에(Gil de Siloe)가 제작한 비길데 없이 훌륭한 가치를 지닌 작품이다. 주랑은 13세기의 것이다. 아키볼트(홍예문을 둘러싼 쇠시리, 조각, 장식 등의 전체)속에 교회의 총 대주교들과 학자들을 나타내는 돌로 된 작은 입상들이 있다.

수도원 안뜰의 문 정면에는 1446년 주교 알롱소(Alonso)의 지시에 의해 장 드 콜로너(Jean de Cologne)가 건축한 성모방문의 작은 제단(la chapelle de la visitation)이 있으며 가장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창설자 주교 알롱소(Alonso)의 무덤이 있다. 그것을 보지 않고는 제대의 아름다움과 화려함을 알 수가 없다. 주교의 담력과 인간미를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으며, 제의, 지팡이, 베개 등은 매우 아름답게 조각되어 있다. 질 드 실로에(Gil de Siloe)가 제작한 것으로 백 대리석으로 되어 있다. 왼쪽으로 가면서 성 요한의 작은 제단앞을 지나면 대주교 마누엘(Manuel)의 무덤을 보게 된다. 이것은 1952년 부르고스의 예술가들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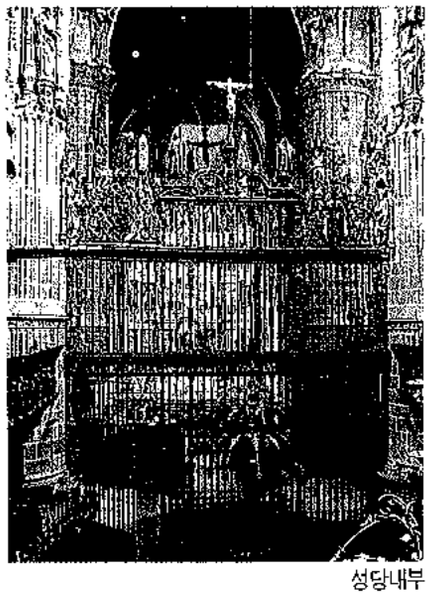

성당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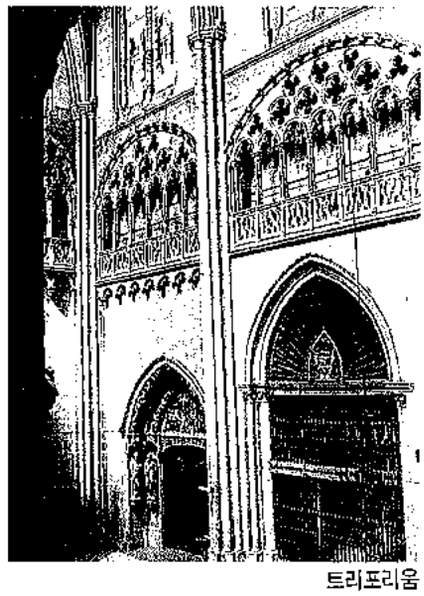

트리포리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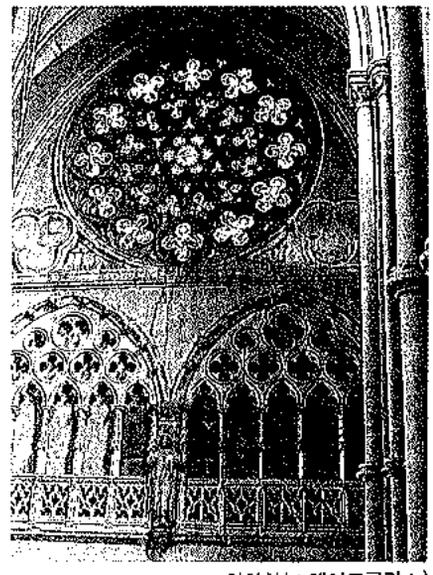

원화창(스테인드글라스)

아버지와 아들이었던
발레리아노(Valeriano)와 앙드레
마르티네쓰(Andre Martinez)의
작품으로서 백 대리석으로 제작되었다.

4-7. 봉헌의 작은 제단

1520년 펠리프 비가르니(Felipe Vigarny)가 제작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밝기와 건축구조이다. 궁륭벽 귀의 예술적인 작은 홍예돌이 궁륭을 받치고 있고 이 궁륭은 매우 공돌여 다듬은 별모양을 나타내고 있다. 작은 제대의 중심 펠리프 비가르니(Felipe Vigarny)가 백 대리석으로 조각한 창설자 곤잘로 드 레르마(Gonzale de Lerma)의 무덤이 있다. 세바스티앙 델 피옹보(Sebastian del Piombo)의 제대의 그림과 부르고스의 예술가 크리스토발 드 앙디노(Cristobal de Andino)의 그릴은 주목할 만하다.

4-8. 성 그리스도의 작은 제단

고대 수도원의 측면으로 주 제단속에 부르고스(Burgos)의 성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지닌 성스러운 입상이 있다. 페드로 뤼츠 드 맹기주앙(Pedro Ruiz de Minguijuan)이라는 독실한 상인이 이 입상을 먼 바다에서 발견하여 부르고스에 가져왔다고 전해진다. 나무로 만들어 물소의 가죽으로 덮어씌운 것으로 턱수염과 머리카락은 마치 입상에서 생겨 자라난 것 같다. 머리는 양쪽으로 움직이며 만일 몫을 뽑는다면 두 팔은 내려오게 되어 있다. 손가락속에는 사람의 손톱을 박았다. 성 그리스도가 주는 느낌은 십자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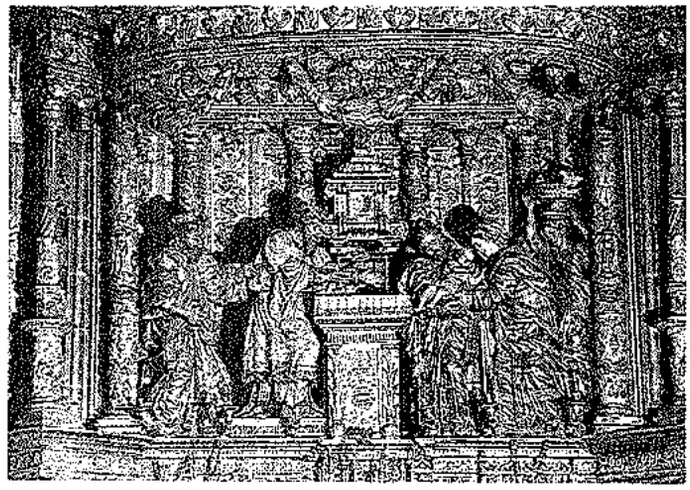

안느성녀의
작은 제단

매달린 주검이 주는 느낌과 다를 바가 없다. 그의 발에는 한 상인이 봉헌한 것으로 아프리카에서 가져온 타조의 알 5개가 있다. 이 성스러운 모습에 대한 신앙심은 부르고스 사람들 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다. 이것과 관계되는 기적은 수없이 많다. 이 입상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 한 단체가 구성되어 있으며 그들의 축제는 매년 9월 14일 개최된다.

4-9. 테클라 성녀의 작은 제단

대성당속에서 가장 나중에 제작된 제대로서 1734년 대주교 마누엘 사마니에고(Manuel Samaniego)가 창립하여 알베르또 쉬리게라(Alberto Churriguera)가 건립했다. 제대뒤의 장식벽은 지나치게 꾸민 장식으로 인하여 대성당 내부에서 부조화를 이루고 있기는 하지만 쉬리게레스크 양식(스페인 바로크 양식의 절정을 일컬음)으로서는 대표적인 표본이라 할 수 있다. 제대의 안쪽에는 13세기의 영세반이 있다. 설교단은 부르고스(Burgos)의 조각가 포르투나토 소딜로(Fortunato Sotillo)의 작품이다. 그릴은 특수한 양식인데 그 가운데서도 대성당 창립자의 방패꼴 무늬의 작은 가문이 있는 꼭대기 장식이 특이하다.

4-10. 안느성녀의 작은 제단

이 제대는 크기는 하지만 밝지가 못하다. 그러나 구성이 견고하고 멋이 있다. 입구에는 질 드 실로에(Gil de Siloé)가 제작한 부주교 돈 페르난도 디아즈(Don Fernando Diaz)의 무덤이 있다. 보자르트(Bosarte)에 의하면 부르고스에 있는 고딕양식의 조각중 가장 우아한 작품이라고 한다. 15세기의 제대 뒤의 장식벽은 질 드 실로에(Gil de Siloé)의 작품으로 훌륭한 예술품이다. 중앙에 요아킴 성인과 안느 성녀가 있고 그들의 발치에는 제세(Jessé)가 수면 상태의 평화스러운 자세로 있다. 그의 가슴에서부터 족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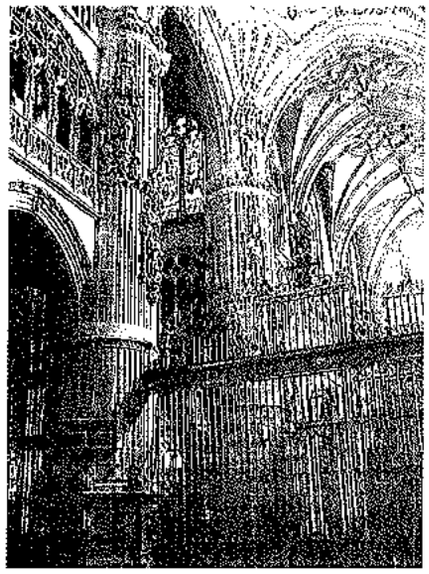

성당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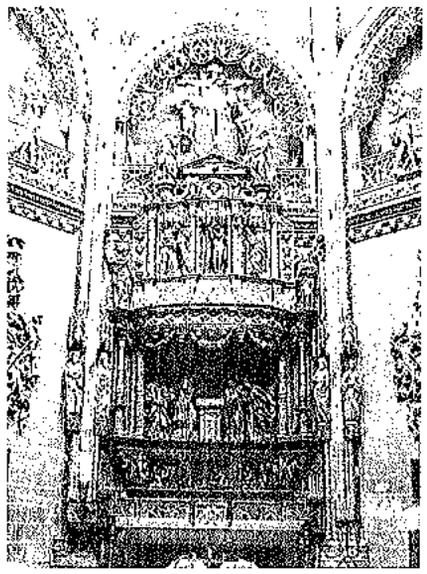

총독의 작은 제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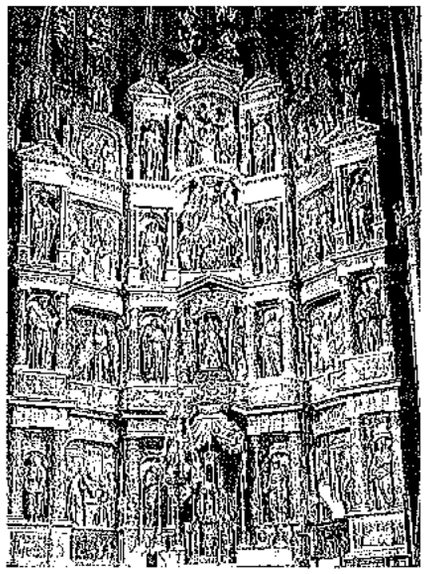

주제단

나무가 자라나 있고 나뭇가지들 속에는 성모마리아의 모든 조상들이 있다. 나무의 끝에는 꽃이 한송이 있으며 이 꽃 위에 아기를 안고 앉아 있는 성모마리아가 있다. 제단의 앞쪽에 창립자 돈 루이스 드 아퀴나(Don Luis de Acuna)의 무덤이 있다. 디에고 드 실로에(Diego de Siloe)가 백대리석으로 제작을 했다. 이 주교는 영혼을 위한 특권보다는 오히려 세상사람들을 위한 바람이기를 원했으므로 유언장에 무덤을 만들지 말도록 써놓았다. 그렇지만 그의 친구들과 양친은 그가 대성당을 위해 했던 수많은 선행과 공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이 무덤의 비용을 지불하였다.

4-11. 황금계단

1519년 디에고 드 실로엔(Diego de Siloé)가 건축했으며 르네상스 양식이다. 초기에는 성당에 들어가기 위해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성주간 동안에 성체 제단을 설치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르네상스양식으로서는 걸작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유명한 파리의 오페라 극장을 지을 때에 이것을 모방했다. 만일 이곳에서 성당 안쪽을 쳐다보기 위해 몸을 돌린다면 형태와 색깔이 뛰어난 대성당의 원화창을 볼 수 있다.

5. 내진과 후진

5-1. 대성당의 내진

내진에는 103석의 성직자석이 있는데 전통적인 것과 민간설화를 이용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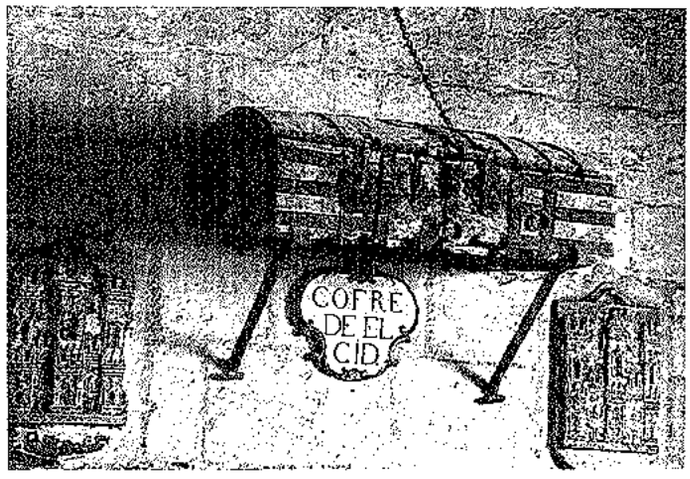

시드의 궤

변화무쌍하고도 기이한 모양으로 회양목에 상감세공으로 장식을 했다. 심혈을 기울여 제작된 환상적인 작품은 우아하면서도 독창적이며 놀라운 세공솜씨를 보여준다. 아마도르 데 로스 리오스(Amador de los Rios)는 대성당의 가장 아름다운 내진들 가운데 하나라고 극찬하였다. 16세기 펠리프 비가르니(Felipe Vigarny)가 르네상스양식으로 제작했다. 모든 것은 호도나무로 조각되어 있다. 중앙에는 대성당의 창설자 주교 모리시오(Mauricio)의 횡와상(누워 있는 상)이 있다. 이것은 나무를 조각하여 동을 얇게 입힌 것으로 옛날에는 보석이 뿌려져 있었다고 하나 오늘날에는 없다. 13세기의 것으로서 이러한 유형의 상으로는 유일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두 파이프 오르간이 있다. 제단 오른쪽의 파이프 오르간은 1636년 주앙 드 아르게타(Juan de Argueta)가 제작했고 왼쪽의 것은 부르고스(Burgos)의 예술가들인 주앙 마누엘(Juan Manuel)과 마누엘 코르테스(Manuel cortes)가 1806년에 제작했다. 매우 아름다운 모양으로 장식한 호도나무와 마호가니로 된 악보대는 주목할 만하다. 1578년 주앙 드 앙쉬타(Juan de Ancheta)가 제작했다. 내진을 닫고 있는 그릴은 장중하다. 16세기 주앙 보티스타(Juan Bautista)의 작품이다.

5-2. 대성당의 후진

대성당의 후진 주위에 있는 회랑에는 돌을 새김을 한 작품이 5점이 있는데 여기에는 골고다 언덕의 가장 중요한 장면들이 묘사되어 있다. 가운데 세 작품은 16세기 펠리프 비가르니(Felipe Vigarny)의 것이고 처음과 마지막 작품은 17세기 알롱소 데 로스 리오스(Alonso de los Rios)가 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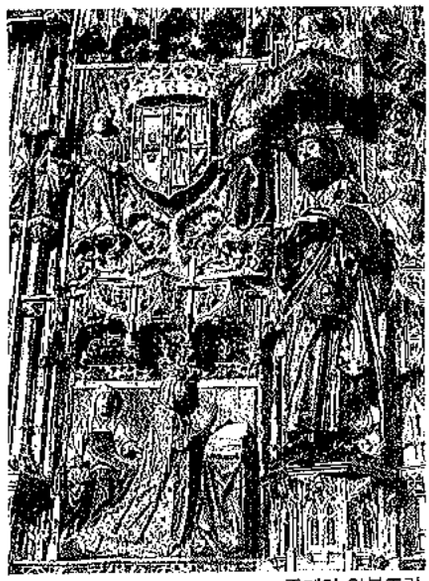
주제단 일부조각

후진의 조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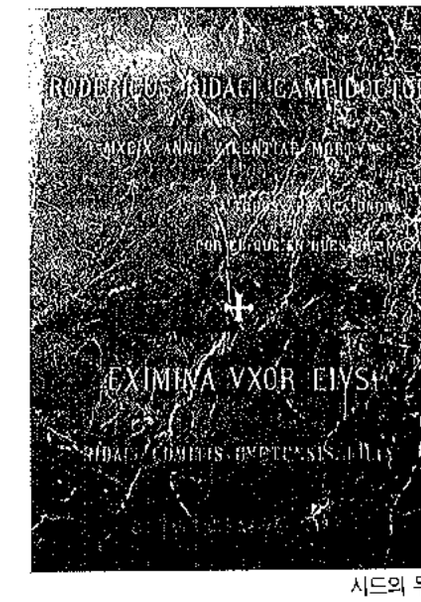

시드의 무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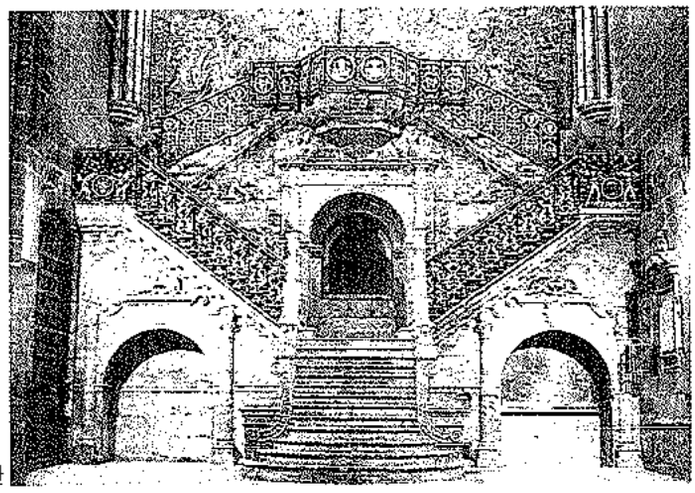
황금계단

6. 구조적 특징

6-1. 좌우익랑

대성당의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는 좌우익랑은 아랍의 영향을 받은 금속세공 같은 건축양식이다. 밑에는 시드(Cid)의 무덤이 있다. 대형 Y자꼴 무늬를 한 둥근천정은 카스틸라의 영웅을 찬양하기 위해 주야로 열려있는 능묘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해가 질 무렵 여러번 좌우익랑의 꼭대기 채광탑에서 새어나온 신비한 빛이 '일찍이 태어난 이에 의해 영광이 모두에게 파급되다'라고 적힌 무덤 위의 금빛 문자들을 밝게 비춘다. 그의 유골은 5년 동안 카르데나(Cardena)의 성 베드로 수도원에 있었다. 그 후 수도원에 남아 있는 수도자들의 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에 신성하다 할 수 있는 유골이 손상이나 모독이 될 것을 염려하여 1835년 시청속에 시드의 유골을 보관하기 위해 부르고스로 옮겨왔다. 그러나 1921년 부르고스 시민들은 이 유골을 가장 신성하고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인 대성당으로 옮기게 되었다.

6-2. 좌우익랑의 별

별을 보면서 필립(Pilippe)2세는 원할 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귀한 보물처럼 덮개가 있는 유리 상자속에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별은 인간의 작품이라기 보다는 천사의 작품처럼 보인다. 회랑에서부터 이 화한한 좌우익랑의 장식을 주시해 보면 놀랍다. 가장 시선을 끄는 것으로는 부라오스(Buraos)의 방패꼴의 작은 가문(家紋)이 있으며 좌우익랑과 주제단 사이에는 알퐁스(Alphonse)8세가 톨로자(Tolosa)와 나바스(Navas)로 1212년에 가져온 군기(깃발)가 있는 것이다.

6-3. 트리포리움과 스테인드 글라스

대성당의 가장 특징적인 것중의 하나가 트리포리움이다. 38개의 홍예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윗쪽에는 왕들, 왕비들, 기사들의 아름다운 머리로 장식이 되어있다. 13세기의 것으로서 15세기에 장식을 했다. 예술적인 원화창 아래에는 두개의 홍예문이 있다. 스테인드 글라스는 19세기의 것이나 첫번째 스테인드 글라스는 1813년 프랑스에 의해 성채가 파괴되었을 때 같이 파괴되어 아쉬움이 많다.

6-4. 수도원 안뜰을 둘러싼 회랑

13세기에 건축된 것으로서 벽이 홍예로 장식되어 있고 정사각형으로 되어있다. 다른 여러시대의 분묘들이 있으며 그중에는 1896년 아르단자(Arlanza)의 성 베드로 수도원에서 옮겨온 11세기의 무다라(Mudarra)의 분묘도 있다. 한 쪽 구석에서 성체 첨례 때 금으로 된 성합을 수송하는 4륜 은마차가 있다. 이 4륜 은마차와 아주 가까운 곳에 두 입상이 있는데 대성당의 창설자 성황 페르디난드(Férdinand)가 그의 부인 수아브(Souabe)의 베아트리스(Béatrice)에게 결혼 반지를 내밀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아주 낭만적이고 정중한 표정 그리고 옷의 우아함은 찬탄할 만하다.

7. 역사적 예술품과 유물

7-1. 벽걸이 장식 융단

수많은 벽걸이 장식 융단 가운데

마리 마들렌느(막달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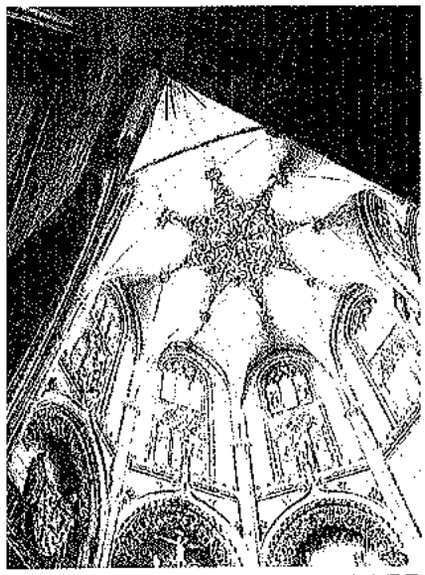
총독의 작은 제단의 궁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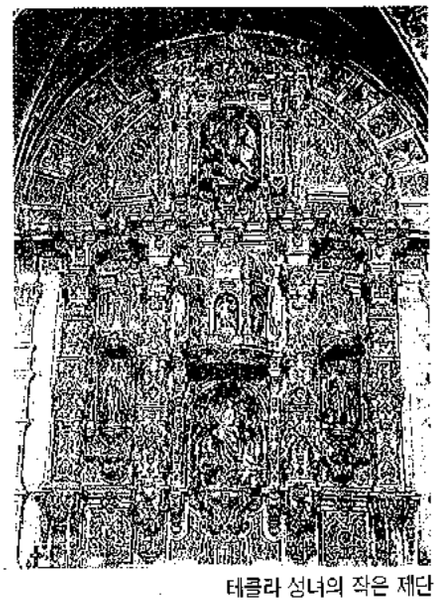
테클라 성녀의 작은 제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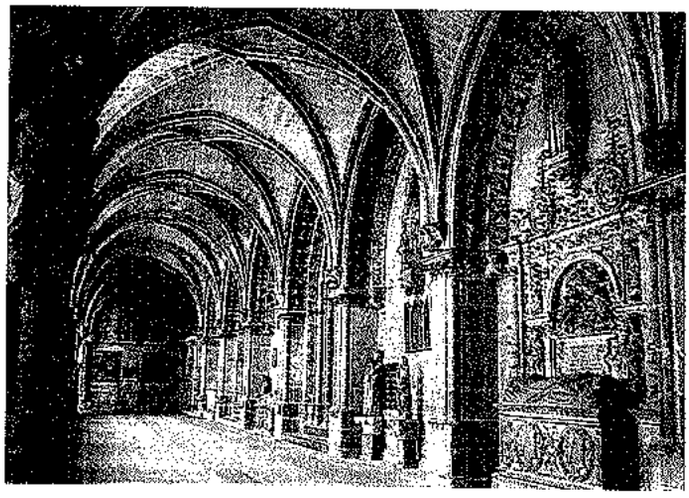
수도원 안뜰의
내부회랑

4작품이 뛰어나다. 첫번째 작품은 16세기 플랑드르의 장식 융단으로 신학적인 장면을 나타내고 있다. 두번째 작품 역시 플랑드르 지방의 것으로 다윗왕을 묘사하고 있으며 질이 낮은 세번째 작품은 천지창조에서 아벨의 죽음까지를 표현하고 있다. 네번째 작품은 고블랭(Gobelins : 파리의 고블랭 직물의 국영공장)회사에서 제작한 7벽걸이로 되어 있으며 덕행을 묘사하고 있다.

7-2. 古代 수사본

대성당은 값을 헤아릴 수없는 귀중한 보물을 소유하고 있다. 가장 오래된 문헌은 774년의 것이다. 이것은 아스투리아스(스페인의 북부지방)의 왕 알퐁스(Alphonse)가 발푸에스타(Valpuesta)의 성당에 기증한 것이다. 코마루비아스(Covarrubias)가 972년 기증한 것이 있고 1068년 산쵸(Sancho)왕이 오카(Oca)성당에 기증한 것도 있으며 1074년 시드(Cid)가 사랑과 영광을 함께 나누었던 쉬멘느(Chimene)에게 보냈던 것으로 알퐁스 6세 (Alphonse VI)와 그의 누이들 엘비라(Elvira)와 우라카(Urraca)가 서명을 한 아라스(Arras)의 헌장이 있다. 또한 9세기의 성경 한권과 추기경 시스네로스(Cisneros)의 지시에 의해 만든 Complutense가 있다. 시선을 끄는 것으로는 1571년 11월 3일 세빌리아에서 보내온 편지로 적의 함대와 기독교인 함대의 군용지도와 함께 레팡뜨(Lepante: 그리이스 코린트만의 입구에 있는 도시)에서 터키함대의 패배를 알리는 내용의 것이다.

7-3. 회화

가장 주의를 끄는 회화(그림)로는 이미 언급한 총독의 작은 제단속에 있는 마리 마들렌느(Marie Madeleine)그림이다. 많은 작가들의 말에 의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레오나르도의 가장 가까운 제자의 작품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또 매우 주목할만한 다른 작품으로서 앞의 작품보다 훨씬 훌륭하다고 여겨지는 것으로 15세기 망링(Memling)의 '아기예수를 안고 있는 동정 마리아'가 있다.

7-4. 금은 세공품

지나간 몇 세기 동안 부유했던 대성당은 프랑스의 침입으로 매우 빈곤해졌다. 오늘날 보관하고 있는 훌륭한 보석가운데는 금은 세공사 그랑다(Granda)의 기념적인 성합이 있다. 이것은 전체가 금, 상아, 법랑으로 되어 있고 무게는 14㎏이다. 백금으로 만들어진 둥근부분은 화려한 보석세공품으로 된 십자가로 마무리되어 있다. 또한 주앙 드 아르페(Juan de Arfe)의 대주교의 십자가와 이미 언급했었던 부르고스의 금은 세공 작품으로 아름다운 현대적 성작도 빼어놓을 수 없다.

7-5. 시드(Cid)의 궤

1081년에 알퐁스(Alphonse)6세는 카스틸라의 시드(Cid)를 추방하였다. 전설에 의하면 시드(Cid)는 돈이 필요했다. 부르고스의 착한 시민 마르땡 앙톨리네쯔(Martin Antolinez)와 협력하여 그는 두개의 궤짝에 돌과 모래를 가득 채워 유대인 라껠(Raquel)과 비다스(Vidas)에게 귀한 보물이 들어 있는 것처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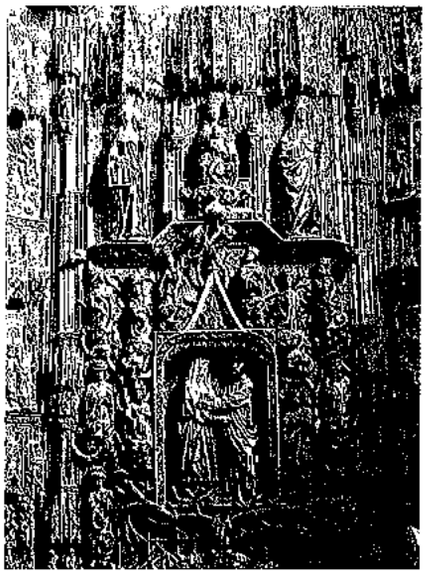
안느성녀의 작은 제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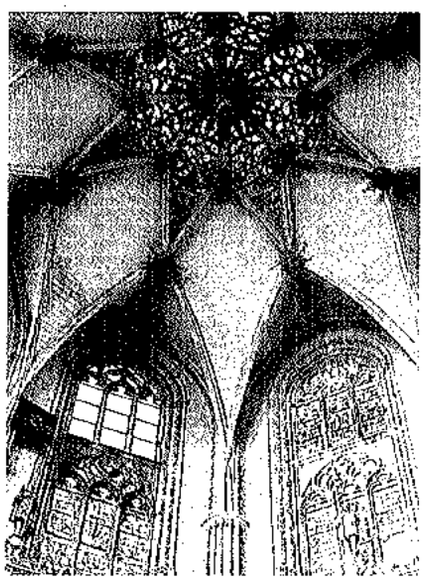
총독의 작은 제단의 궁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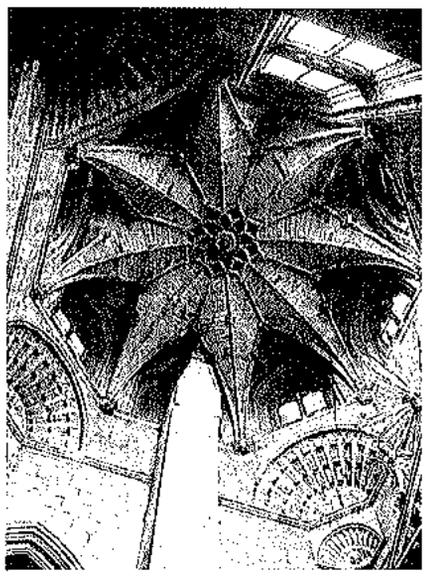
봉헌의 작은 제단의 궁륭

이렇게 하여 그는 금 600마르크를 빌리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일년이 지나기 전에는 궤짝을 열어보지 못한다는 것과 만일 시드(Cid)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보물은 유대인들의 것이 된다는 것을 합의서에 명백히 명시를 했다. 그후 시드(Cid)가 발랑스(Valence)를 정복하고 그는 유대인들에게 '두 궤짝에는 돌과 모래만 들어 있었지만 그 속에 보관된 보물은 빌린 금보다 더 귀중한 나의 약속이었다'고 말하며 빌렸던 금을 돌려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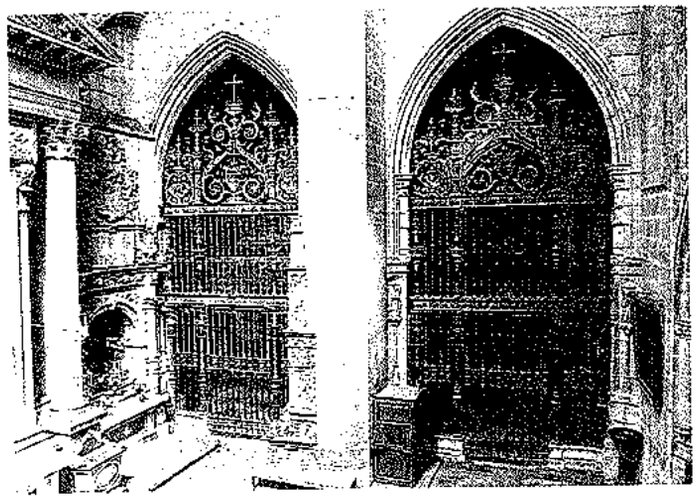
봉헌의 작은 제단

7-6. 파파모스카스

정문으로 들어가면 왼쪽에 유명한 어릿광대가 있다. 15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특별한 기계장치로 시계와 연결해 놓았다. 종이 칠 때마다 입을 열고 닫는 이 어릿광대는 모든 관광객들의 호기심을 불러 일으킨다.

8. 맺음말

부르고스 시는 스페인의 북부도시로서 일찍 사라센 제국의 통치에서 벗어남으로써 대성당을 다른 지방보다 일찍 건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스페인에서 고딕양식 성당으로서는 초기에 건립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아서 이 성당은 초기 고딕양식에 속한다고 볼 수 있지만 관심을 갖고 보면 고딕양식과 혼합된 르네상스식이라는 것을 알수있다. 건축은 고딕양식이지만 장식적인 것은 르네상스식인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많지는 않으나 바로크양식이 있는데 이중 테클라(Tecla)성녀의 작은 제단속에는 이와 같은 바로크양식이 많이 있다. 대성당의 정문과 봉헌의 작은제단 그리고 대성당의 후진속에서 신 고전주의 양식을 볼 수 있으며 아울러 아라비아 예술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 예술인 뮈데자(Mudejar : 12-16세기) 양식은 교회 참사회의실과 좌우익랑에 있는 별모양의 궁륭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주 제의실과 성유골의 작은 제단속에는 로코코 양식이 주의를 끌고 있으며 대성당의 후진 주위에 있는 회랑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양식들 중의 세가지를 볼 수 있다. 왼쪽의 아치는 르네상스식으로 되어 있고 궁륭은 고딕양식, 오른쪽의 메다이용(Médaillon : 인물의 둥근 돋을새김)은 고딕식 기둥의 세로홈을 한 바로크 양식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여러가지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르고스 성당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대별 건축양식에 대하여 사전에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수집, 준비한다면 보다 깊이있게 음미할 수 있는 성당이라 판단된다.

주)

1) 에스델-바빌론에서 태어난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유대인으로 페르시아의 아하스 에로스 왕과 결혼을 하여 아하스 에로스의 신하 하만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할 때 유대인들을 구해냈음.

2) 유딧-아시리아군의 총사령관 홀로페르스가 베툴리아를 포위하고 있을 때 그를 유혹하여 술에 취하게 한 다음 그의 머리를 자른 유대의 영웅.

*다음호 (94.10월호)에는 오스트리아 수도인 비엔나(Vienne)의 쌩떼 띠엔느 (ST-ETIENNE)성당을 소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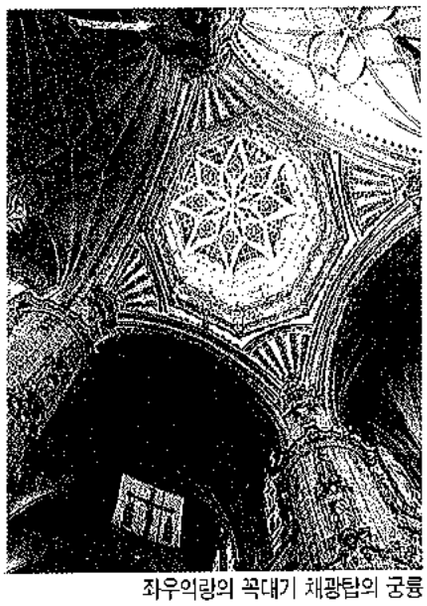
좌우익랑의 꼭대기 채광탑의 궁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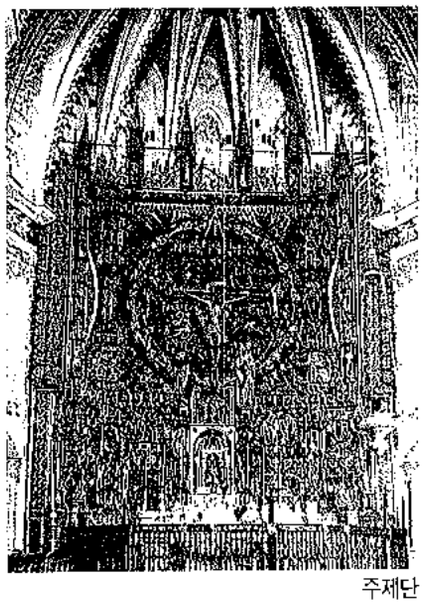
주제단

예수상

충주청소년수련원 · 택견전수관 · 우륵당

충주시에서는 청소년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교육연수기능 확대와 충주시의 전통과 문화유산으로 길이 계승하고자 청소년수련원, 택견전수관, 우륵당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설계경기를 실시하여 지난 7월29일 결과를 발표했다.

총 5개 사무소에서 출품한 이번 설계경기에서 다애건축(대표 : 최성규)안이 당선작으로 선정되었으며, 가작으로는 신세대건축(대표 : 조구현)안과 가화건축(대표 : 강석후)안이 각각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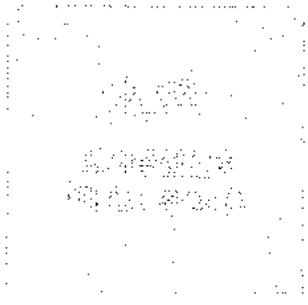

대지위치 / 충주시 호암동 562번지 일원(호암공원내)
대지면적 / 50,636㎡
건축면적 / 5,601.3㎡
연면적 / 11,444.1㎡
건폐율 / 11.1%
용적률 / 18.4%
규모 / · 교육연수관－지하1층, 지상3층
· 청소년극장－지하1층, 지상2층
· 체육관－지하1층, 지상2층
· 택견전수관－지하1층, 지상1층
· 우륵당－지하1층, 지상2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계획담당 / 최종원
조감도, 투시도 / 모던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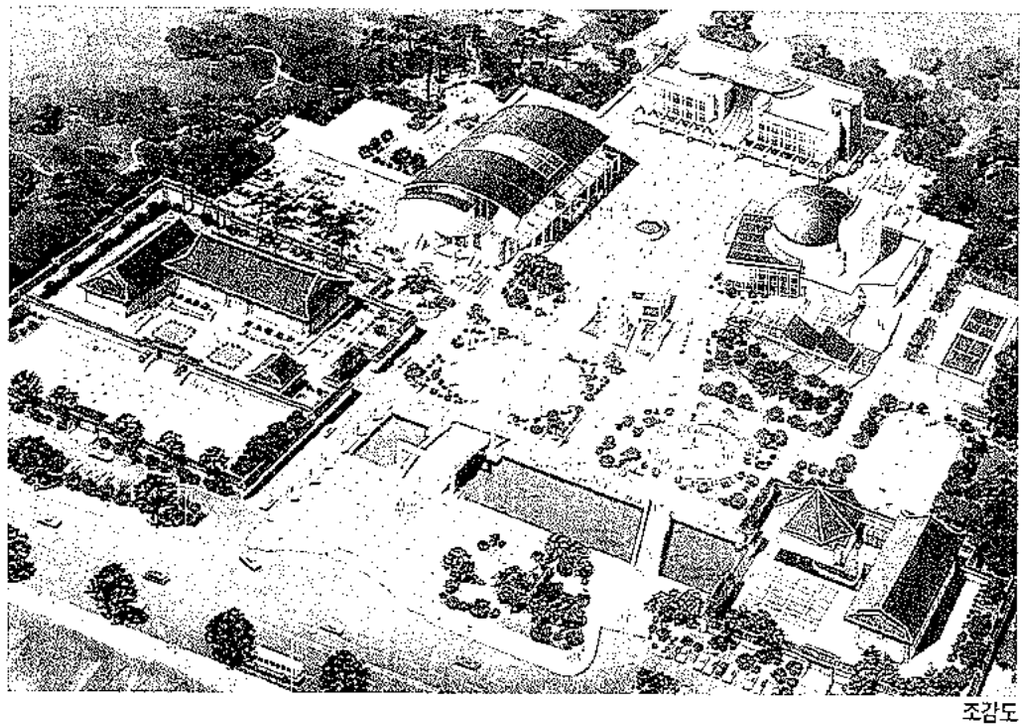

조감도

■배치계획

□건물의 축과 향

25m 간선도로로부터 대지로 접근하는 직각방향의 대지축과 도로 보다 비교적 완만한 경사로 형성된 계획부지로부터 남서쪽 호암지의 조망을 극대화하기 위한 약간 비스듬한 시선축을 주축으로하여 대체로 호암지를 향한 남서방향으로 건물을 배치하였다.

□공간기능 및 배치계획

· 경사진 대지와 호암지의 양호한 경관을 고려하여 계획부지의 상단에 교육연수기능을 배치하고 충주시의 전통과 문화유산으로 길이 계승하고자 하는 택견전수관과 우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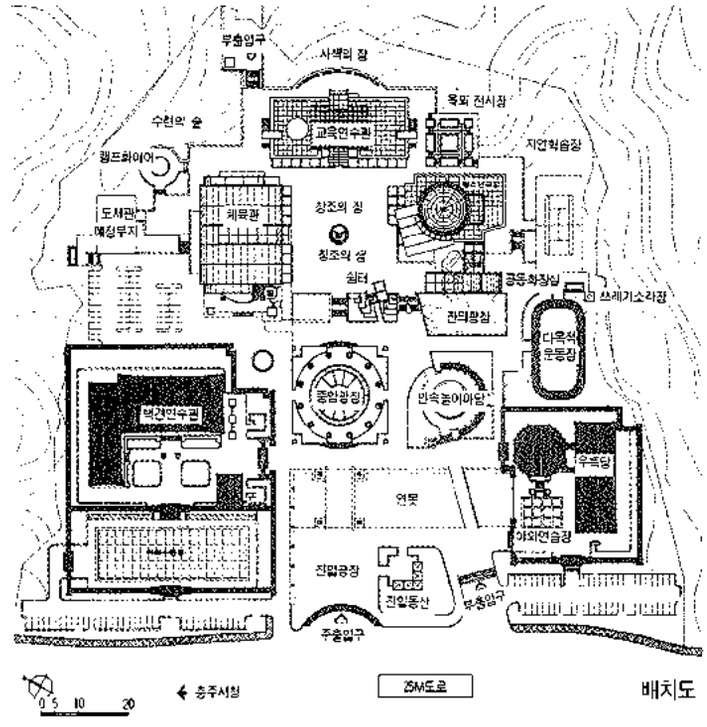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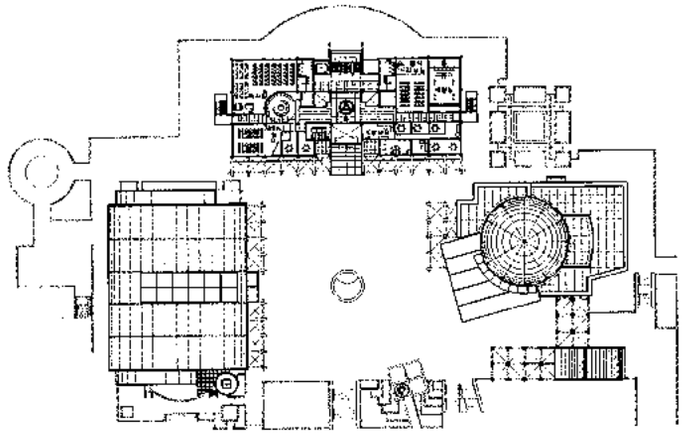

청소년수련원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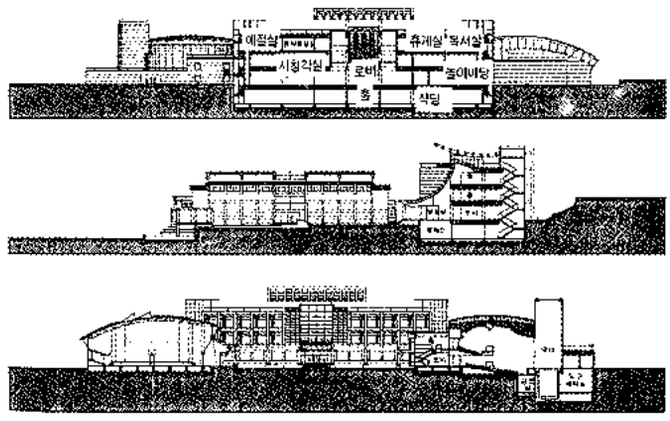

청소년수련원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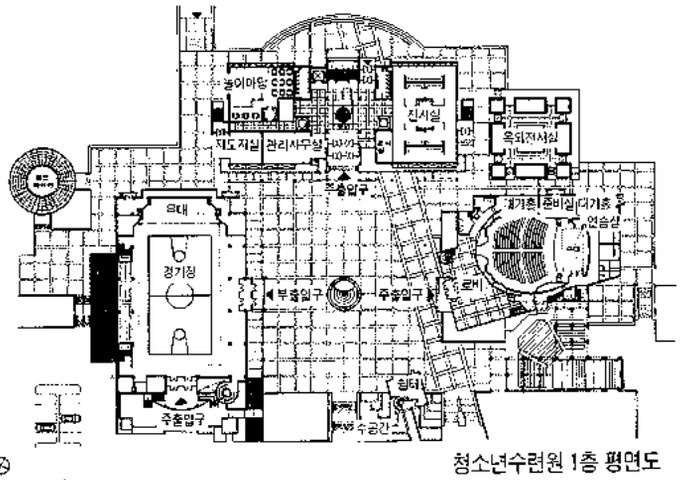

청소년수련원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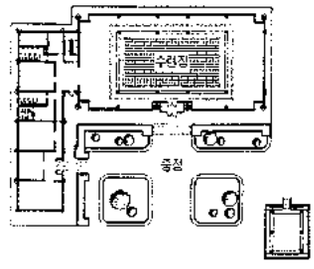

택견전수관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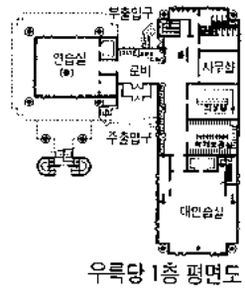

우록당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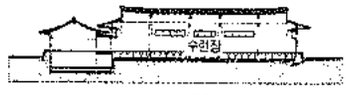

택견전수관 단면도

우록당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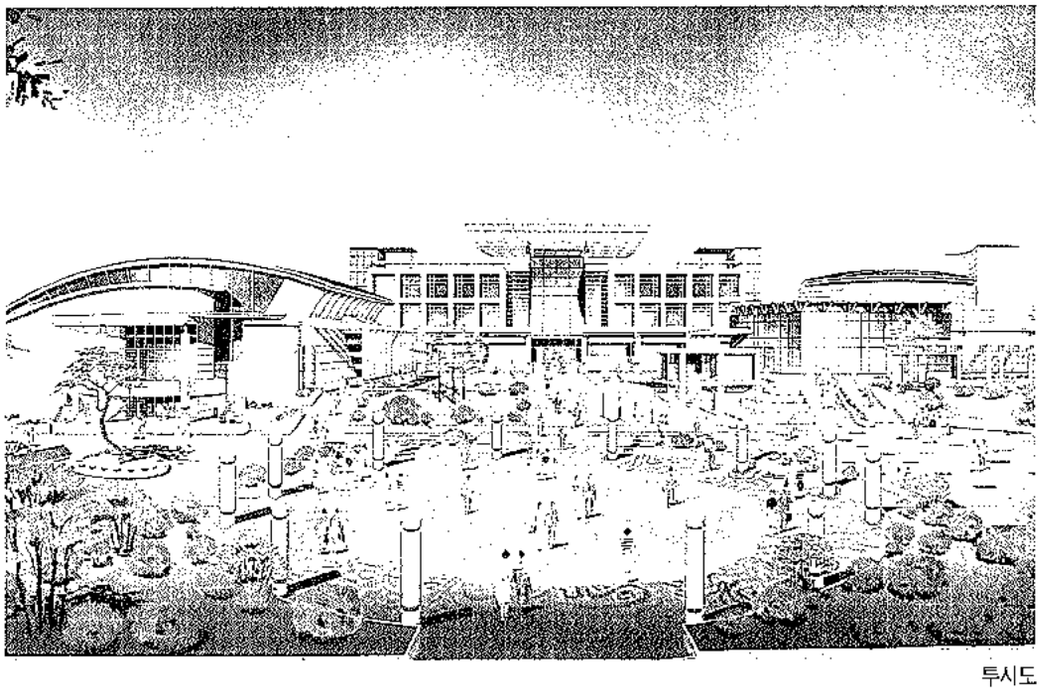

투시도

당은 도로에서 가까운 주진입구 부근에 좌우로 위치시켜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접근이 용이하게 하였으며, 대체로 계획부지의 북서쪽은 정적인 공간으로 동쪽은 동적인 공간으로 공간기능을 배분하였다.

- 주진입구로부터 각시설을 보며 교육연수시설에 도달하는 보행주축에는 질서와 위계가 있는 보행축을 형성하면서 그 주변에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건전한 정신과 사고력을 기르며 동시에 야외활동을 즐길 수 있는 다이나믹한 옥외 공간들을 적절히 배치하였다.
- 택견전수관과 우록당은 계획부지의 좌우능선(완충녹지)을 배경으로 중앙 보행축을 향해 개방감을 느낄 수 있는 "ㄱ"자형 전통한옥형태로 배치, 담장으로 둘러싸인 내부에는 아늑하고 정숙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 북측 수림대부근은 쾌적한 분위기로 조성하여 사색의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하였다.
- 장차 증축될 도서관 건물은 정숙한 분위기를 요하는 시설이므로 북서쪽 정적인 공간 부지내로 그 위치를 고려하였다.

□ 동선계획

- 호암로를 이용한 도심쪽 진입과 도심 외곽쪽으로부터의 진입을 고려하여 차량과 보행자 진입위치를 분리하였다.
- 부지내에서의 차량과 보행자 동선은 엄격히 분리하였다.
- 각단위 시설별로 독립적 동선체계를 형성하되 각 건물과의 연계 동선체계도 함께 고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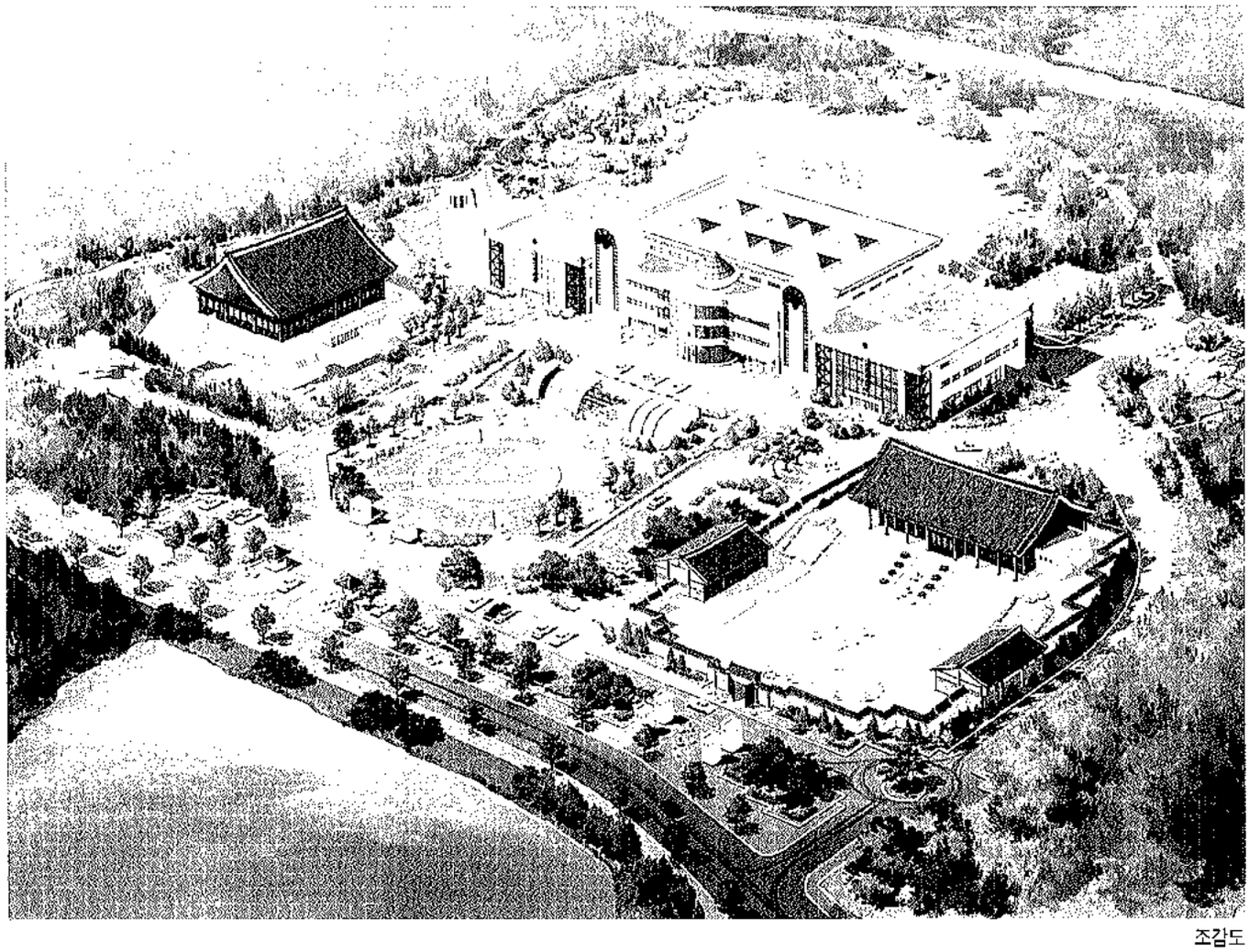

조감도

대지위치 / 충주시 호암동 562 번지일대(호암공원 내)
대지면적 / 50,636㎡
규모 / · 청소년수련원-지하1층, 지상3층
· 택견전수관-지상1층
· 우륵당-지상2층
건폐율 / 12.24%
용적률 / 23.82%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프리플렉스빔
계획설계담당 / 최병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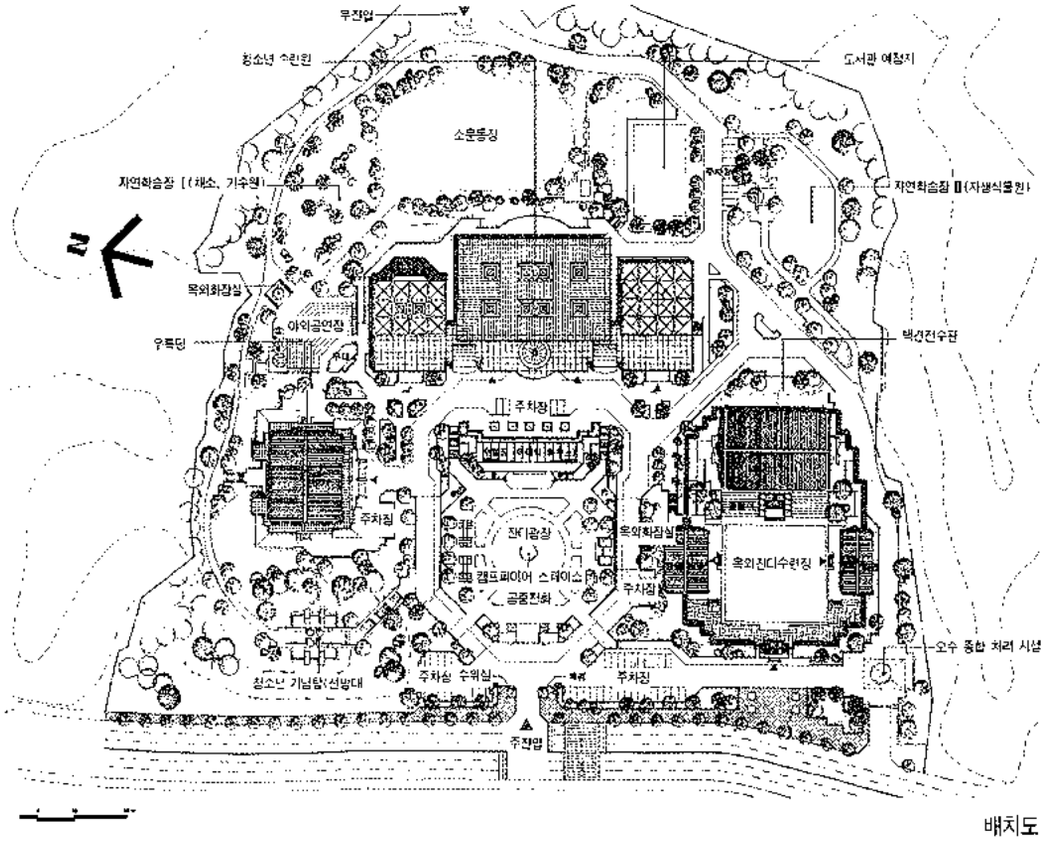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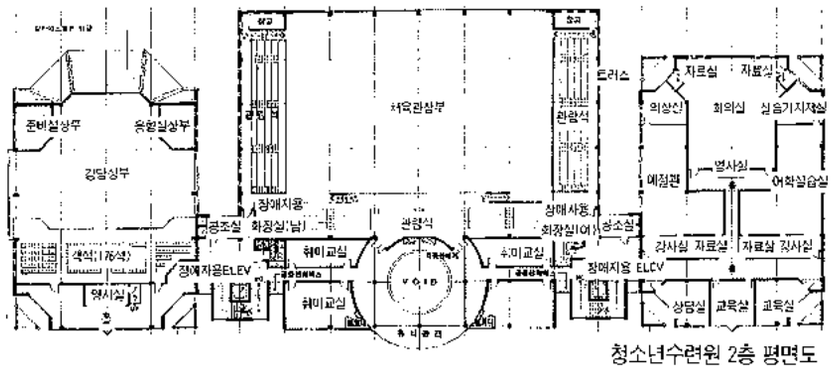

청소년수련원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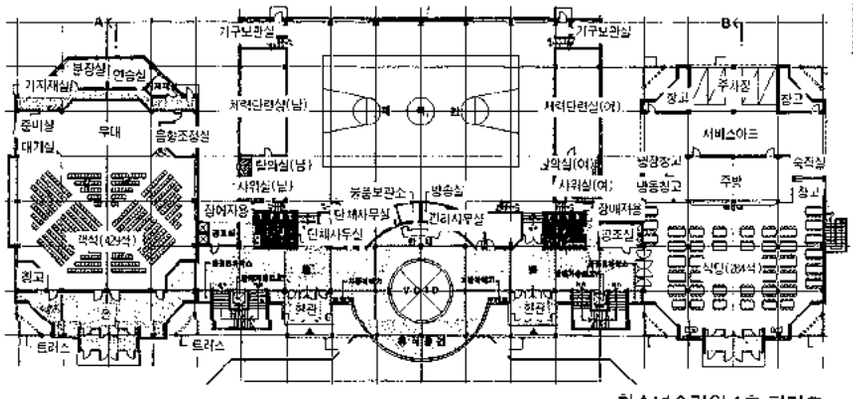

청소년수련원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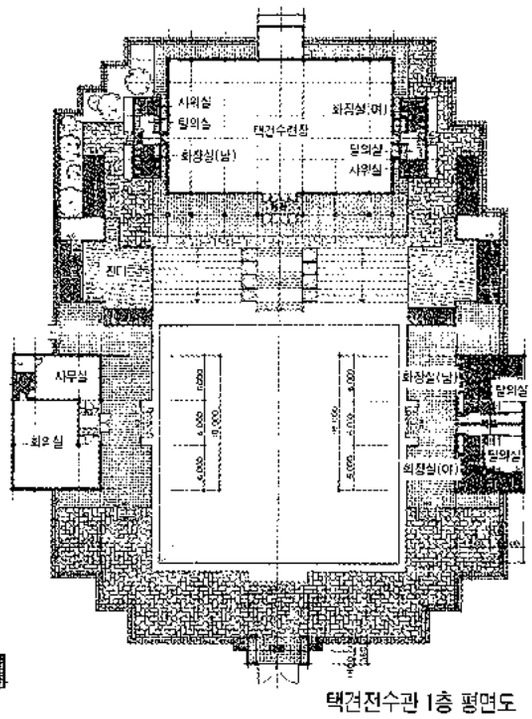

택견전수관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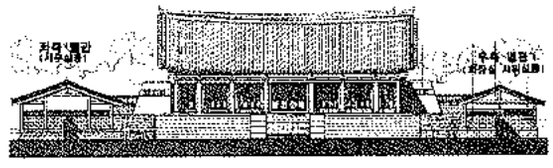

택견전수관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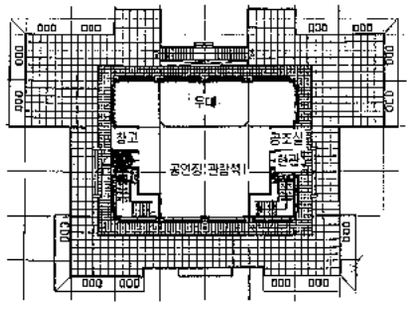

우륵당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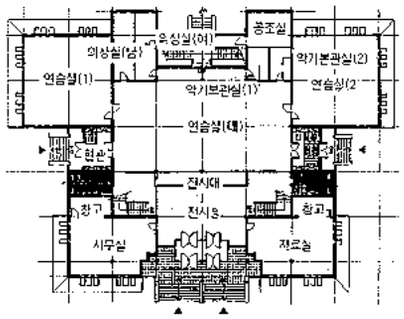

우륵당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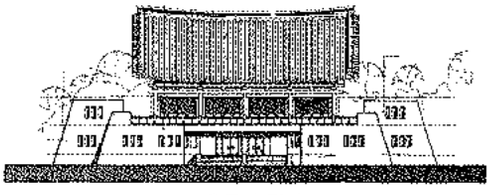

우륵당 정면도

투시도

■계획목표

- 충주시 청소년의 문화, 예술 창작, 체육활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통성과 예술성이 뚜렷한 시설계획
- 시민과 청소년의 이용이 편리한 도시공원적 역할의 사회복지 공간으로 친근함과 특징있는 조형연출
- 주변환경과 조화되고 장래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간의 융통성
- 문화, 예술, 공연, 체육등 이용자의 다양한 형태를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시설계획
- 호암지와 연계되어 충주시민의 정통성 회복과 충주시발전의 근원인 청소년들의 자긍심을 함양할 수 있는 상징적인 건축계획.

■배치개념

배치는 한국 궁전 건축의 배치방식인 자좌오향(子座午向) 형식을 원용, 주건물인 청소년 수련원을 산위에 배치하여 호암호수가 내려다 보이게 하고 부속건물이라 할 수 있는 우륵당은 좌측에, 택견전수관을 우측에 위치하게 하고 도로측에 대분의 역할을 할 수위실과 매점을 배치하였으며, 주위의 산마루가 3건물을 연결하여 회랑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또한 3건물의 중앙에 중정이라 할 수 있는 축제잔디광장을 두어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하였으며, 좌우균제(Symmetry)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배치에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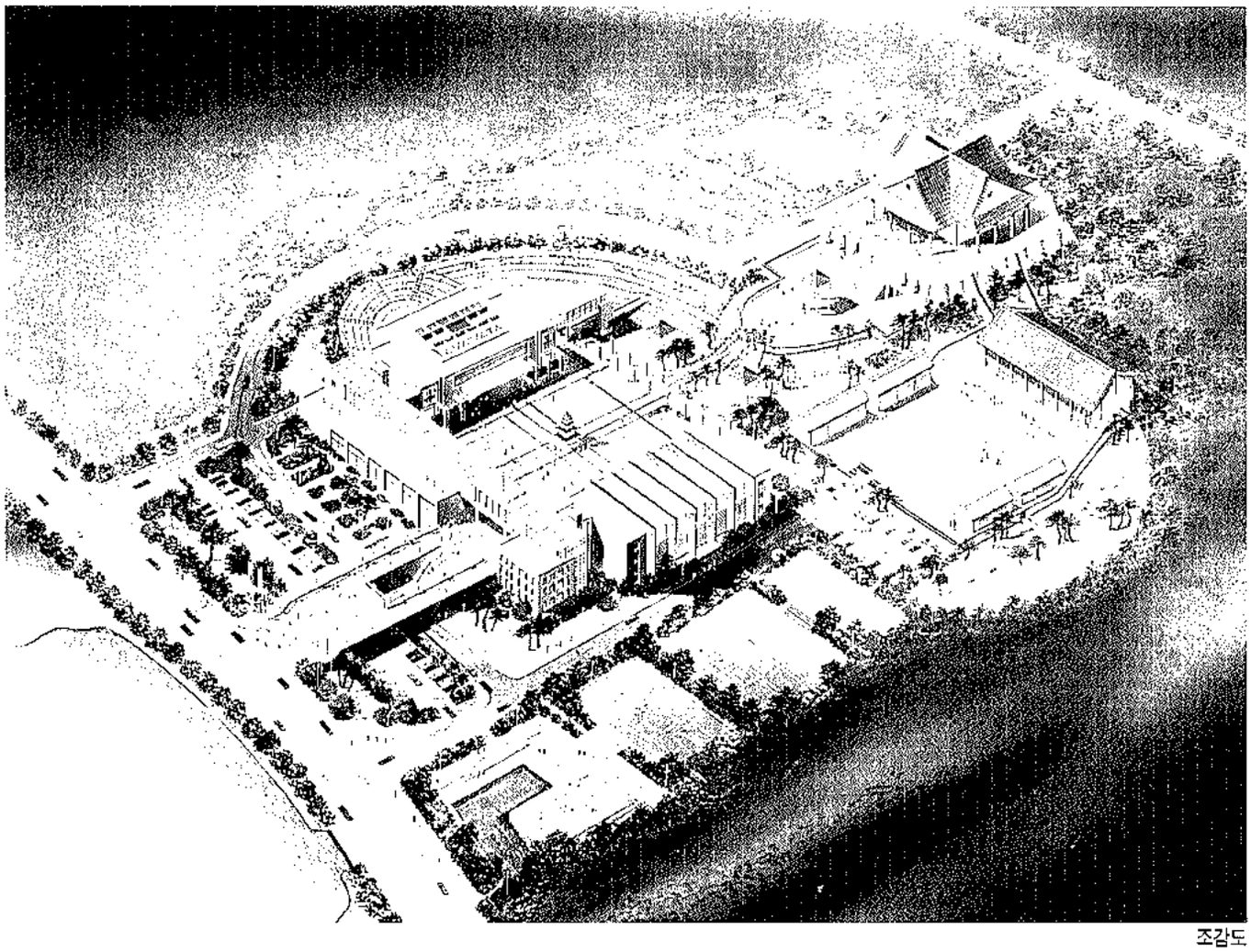

조감도

위치 /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동 562번지
대지면적 / 50,636㎡
건축면적 / 10,790.5㎡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외부마감 / 청소년 수련원－적벽돌 치장 쌓기
우룩랑·택견전수관－화강석 버너구이
주차대수 / 78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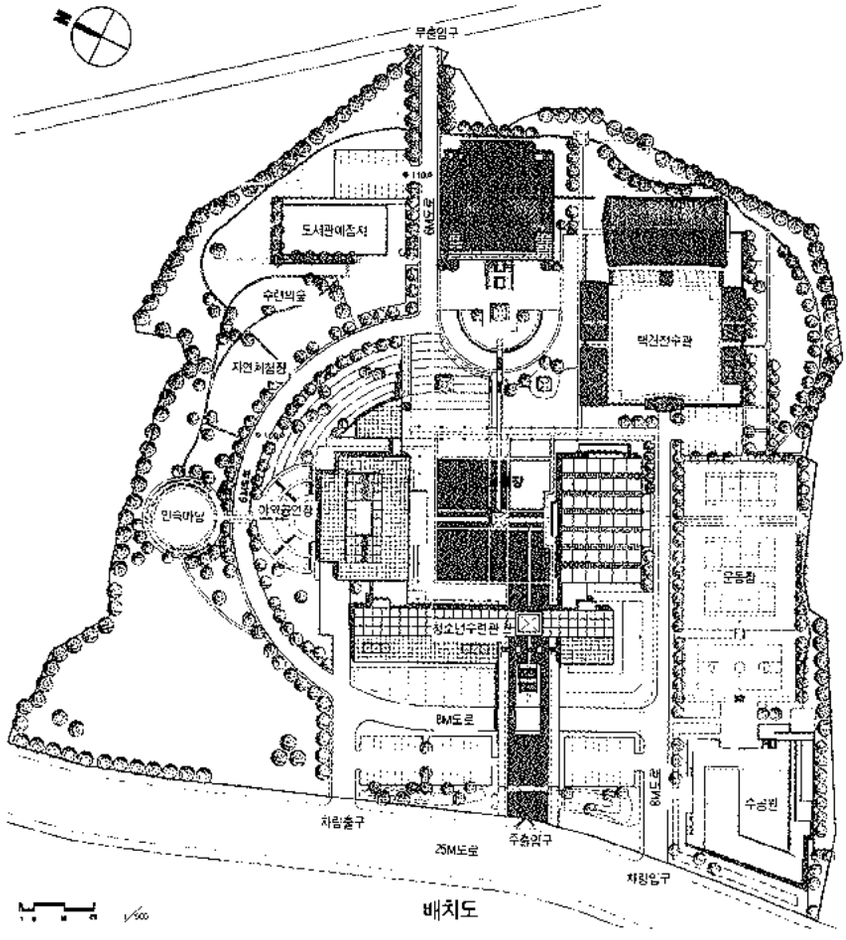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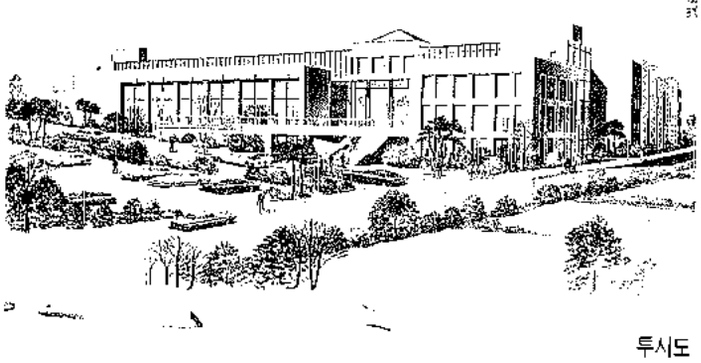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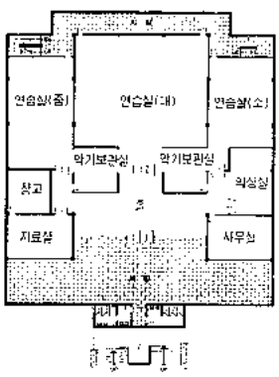

우륵당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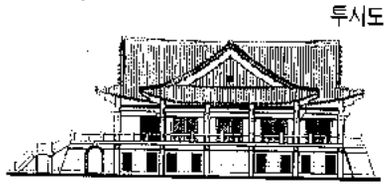

우륵당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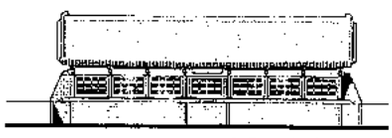

택견전수관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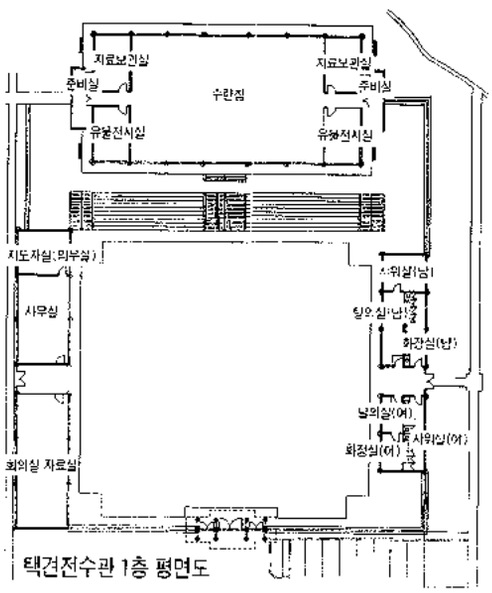

택견전수관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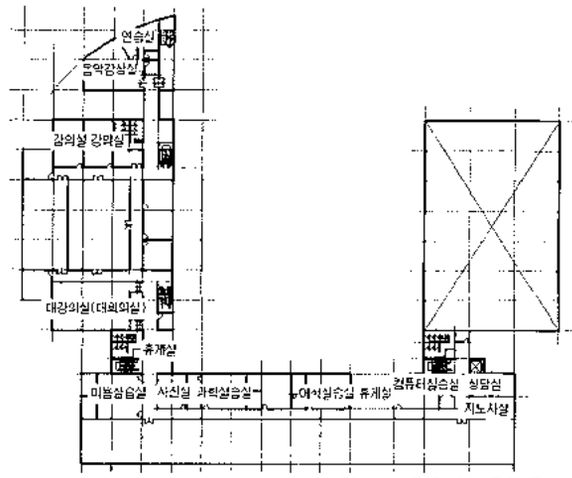

청소년수련원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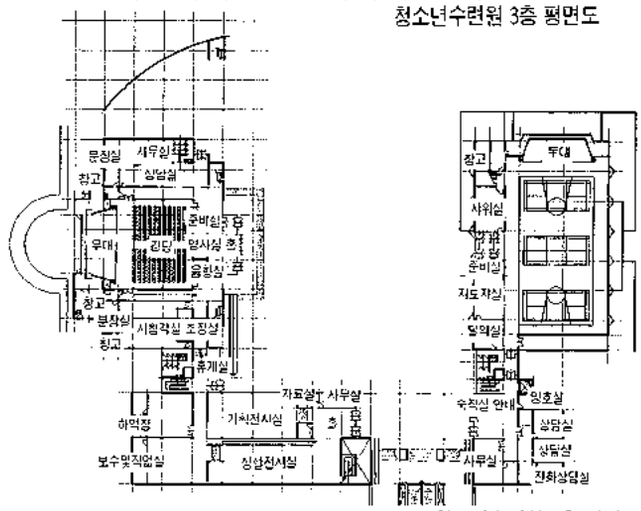

청소년수련원 1층 평면도

청소년수련원 정면도

청소년수련원 우측면도

■합리성과 전통성의 종합을 위하여…

미래에 다가올 21세기 한국의 모습은 어떨까 과연 21세기에는 누구도 가지지 못한 우리만의 건축문화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건축은 사진발 잘받는 덩어리 조형물이 아니다. 양의공간, 음의공간, 혹은 허수의 공간등 각각의 성격을 갖는 공간 그 자체인 것이다.

선배와 선인들의 건축수법 역시 공간 자체를 다루어 왔다. 우리는 여기에 청소년 수련원이 갖는 현대적 합리성과 택견 전수관, 우륵당이 갖는 전통적인 요소의 종합을 공간적인 시각에서 풀어 보고자 한다.

■배치계획

○부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지형을 최대한 보존활용—"있는 그대로 있어야 할데에 있는"—하였으며 전이·매개공간을 형성하여 각 기능의 유기적 연결 도모.

○중앙광장을 두어 개방성과 인지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순간적으로 집중하는 동선의 체계적 분리유도.

○우륵당을 언덕쪽으로 배치하고 청소년 수련원을 전면(낮은쪽)으로 배치 호암공원의 능선흐름에 순응 하도록 함.

○진입 공간에서 전이매개공간 다음 주공간으로 공간의 연속적 반복을 통하여 외부공간에 위계적 연계를 부여함.

○도로변의 차량 소음 완화를 위하여 차단조경(Buffer)확보

○예술·문화(도서관·우륵당·백견 전수관)과 교육·관리·체육(공연·전시장관리·체육관)을 분리 배치하고 정적공간(우륵담·도서관·전시관)과 동적공간(택견전수관·체육관)을 이격 배치하여 공간의 기능성과 독립성을 확보함.

○호암로의 차경요소 적극도입 수공원 설치등

○일조를 최대한 활용 에너지 절약 측면 감안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 제14,349호, 1994년 7월 30일)

◇개정이유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1994.1.7. 법률 제4723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승인전에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바,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범위를 100세대 이상 10층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 하고, 사전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이내에 처리하도록 하여 사업시행절차를 간소화 함(령 제31조의 3 및 제31조의4).

나. 종전에는 주상복합건물로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할 수 있는 경우를 상업지역에서 상업용면적이 50퍼센트 이상이고 주택이 100세대미만인 경우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상업지역외에 준주거지역에서도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의 세대수도 200세대미만으로 확대함(령 제32조 제1항).

다. 종전에는 재건축조합의 경우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사업계획승인신청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부동의자의 소유권등의 매도청구를 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령 제34조의4).

라. 종전에는 공동주택의 감리는 모두 건축사가 행하였으나, 앞으로는 건설되는 주택이 300세대미만인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가 감리하고, 300세대이상인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가 감리하도록 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함(령 제34조의6 내지 제34조의9).

마. 종전에는 지역 및 직장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후에는 조합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등으로 조합원의 수가 20인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을 충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천산확인결과 무자격자로 판명된 경우를 포함하여 결원이 발생한 범위안에서는 이를 충원할 수 있도록 완화함(령 제42조제4항).

바. 건설부장관의 권한중 사전결정권·사용검사권 및 임시사용승인권·감리자의 지정에 관한 권한등을 도지사에게 위임함(령 제45조).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은 그 공급기준 및 건설기준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부령으로 그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

제4조의2본문중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를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로 하고, 동조제4호를 삭제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주택외의 주택으로서 시장등이 재해방지를 위하여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노후·불량한 주택으로 본다.

제6조제8항제2호중 "임원중에서"를 "임원 또는 직원중에서"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중 "2인이상"을 각각 "1인이상"으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건설부장관은 지정업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의 2제1항중 "100호 또는 100세대에"를 "300호 또는 300세대에"로 한다.

제1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4(영업실적등의 제출) ①등록업자 및 지정업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영업실적(개인인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개인인 사업자의 영업실적을 포함한 실적을 말하며, 등록말소 또는 지정취소후 다시 등록 또는 지정한 경우에는 다시 등록 또는 지정한 이후의 실적을 말한다)과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등록업자 및 지정업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월별 주택분양계획 및 분양실적을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국민주택채권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입하는 제1종국민주택채권과 동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입하는 제2종국민주택채권으로 구분하여 무기명증권을 발행한다.

제17조의 제목중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국민주택채권"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국민주택채권중"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자는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을 공급받는 자중 투기우려등을 감안하여 건설부령이 정하는 자로한다.

제20조의2·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제1항중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은 100퍼센트)"를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재건축조합을 제외한다)이나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은 100퍼센트]"로 한다.

제31조의3 내지 제31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3(사전결정의 규모등) 법 제32조의4제1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100세대이상이거나 10층이상인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조성사업지역
2.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개발된 택지개발지역
3.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로 지정되어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4.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이 결정된 지역
5.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구역 및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어 상세계획 및 도시설계가 수립된 지역
6.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개발된 지역

제31조의4(사전결정의 절차등)①법 제3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결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결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도서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치도 및 현황도(지적 및 지형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3. 도로·상하수도의 설치계획도
4. 편입토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사용동의서
5.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서류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주택건설사업의 허용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건설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함에 있어 사전결정외의 다른 심의등의 규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법 제32조의4제4항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물의 층수가 변경되거나 주택건설사업용 부지의 확장 또는 축소로 인하여 대지면적·세대수 또는 건축연면적등이 10퍼센트이상 변경되는 경우
2.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3. 도시계획의 변경등으로 당해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하게 된 경우

제31조의5(사전결정의 내용) 사전결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택의 배치 및 층의 수
2. 주택의 규모 및 건설호수
3. 건폐율 및 용적율
4. 진입도로등 간선시설의 위치와 규모
5.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3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제6호의3중 "제34조의2"를 "제34조의4"로 하며, 동항제8호중 "철거계획서"를 "철거계획서 및 건설된 주택의 처분계획서(당해 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의 환지처분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로 한다.

①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이상의 주택"이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이상의 주택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상의 대지"라 함은 1만제곱미터이상의 일단의 대지를 말한다. 다만, 도시계획구역중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안에서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택의 규모가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이하인 경우
2.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이 50퍼센트미만인 경우
3. 주택이 200세대미만인 경우

제34조제1항중 "건축법에 관한"을 삭제한다.

제34조의4를 제34조의11로 하고, 제34조의3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이를 제34조의4로 한다.

다만, 재건축조합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구분소유권자의 소유권등을 매도청구한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34조의3 및 제34조의5 내지 제34조의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3(임시사용 승인등)①법 제33조의2제5항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건축물의 동별 공사가 완료된 때를 말한다.

②임시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에게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건설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완성된 건축물이 사업계획승인내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사용의 승인대상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대별로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제34조의5(주택의 설계 및 시공)①법 제33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작성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계도서는 설계도·시방서·구조계산서·수량산출서·품질관리계획서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2. 설계도 및 시방서에는 건축물의 규모와 설비·재료·공사 방법등을 기재할 것
3. 설계도·시방서·구조계산서는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
4. 품질관리계획서에는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기준에 의한 세부시행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4조의6(감리자의 자격등) ①법 제33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를 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1. 300세대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건축사법에 의하여 감리자격이 있는 자
2. 300세대이상의 주택건설공사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및 종합감리전문회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인접한 지역에 2인이상의 주택건설단지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감리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감리자격이 있는 자(이하 "감리원"이라 한다)를 공사현장에 상주시켜 감리하되, 법 또는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외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는 착공신고, 감리업무의 범위에 속하는 각종 시험 및 자재확인등을 한 경우에 서명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제34조의7(감리자의 업무)법 제33조의6제2

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공감리에 관한 감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계도서가 당해 지형등에 적합한지의 확인
2. 설계변경에 관한 적정성의 확인
3. 시공계획·예정공정표 및 시공도면등의 검토·확인

제34조의8(이의신청의 처리등) ①시공자 및 사업주체는 법 제33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의 시정통지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10일이내에 시공자·사업주체 및 감리자에게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전문가의 의견등을 참고할 수 있다.

제34조의9(감리자의 교체등) ①건설부장관은 법 제33조의6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감리자를 교체할 수 있다.

1. 감리업무 수행중 발견한 위반사항을 2회이상 묵인한 경우
2. 시정통지한 위반사항이 제34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3회이상 이유없다고 판정된 경우
3. 공사기간중 공사현장에 1월이상 감리원을 상주시키지 아니한 경우

②건설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공자·사업주체 및 당해 감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를 교체한 경우에는 즉시 다른 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감리자의 교체에 따른 감리비의 정산은 건축공정에 따른 비율에 의한다.

제34조의10(부실감리자등에 대한 조치) 건설부장관은 제34조의6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 또는 감리원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감리를 함으로써 당해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입히는등 주택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감리자의 등록 또는 감리원의 면허 기타 자격인정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말소·영업정지·면허취소·자격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제2항제4호중 "제1호 내지 제3호에"를 "제1호 내지 제4호에"로 하여 이를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사업자가 미분양된 주택을 공급받아 당해 주택을 임대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4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제1호라목중 "동일한"을 "동일 또는 인접한"으로 한다.

다만,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으로서 20대미만의 노후·불량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중 "제1호 내지 제3호에"를 "제1호 내지 제4호에"로 하여 이를 제5호로 하며,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범위안에서 충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조합원이 전산조회등으로 부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제42조제5항단서중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지역 노후·불량주택의 소유자가 추가가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며, 동조제8항을 삭제한다.

제43조의2제3항제2호, 동조제4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5항중 "제1항"을 각각 "제2항"으로 한다.

제43조의5제1항제1호본문중 "주택의 사용검사가 완료된 후에 발생하는 주택하자의"를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검사가 완료된 후에 발생하는 하자의"로 하고, 동항제3호본문중 "리스지급보증으로 구분한다"를 "리스지급보증 및 기타지급보증으로 구분한다"로 하며, 동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기타지급보증 : 조합원이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주택건설자재를 구입하거나 주택건설사업용 부지를 매입하는 경우와 주택건설사업용 부지의 매입신청도는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당해 계약에 의한 채권자에게 제출하는 채무보증으로서 공제조합은 당해 채무에 대한 현금지급의 책임을 진다.

제43조의5제1항제5호중 "채무에 대한 보증으로서 공제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시공보증등을 말한다"를 "채무에 대한 보증과, 조합원이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주체로서 토지소유자·주택조합 또는 고용사에게 시공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보증으로서 공제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보증을 말한다"로 한다.

제43조의16제2항본문중 "11인의"를 "17인의"로 하고, 동항제1호중 "6인"을 "12인"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부위원장1인을"을 "부위원장 2인"로 한다.

제43조의21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공제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황조사등을 위하여 당해 공사의 감리자로부터 시공방법·공정 및 사용자재등에 대한 감리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45조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호단서중 "구가·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작서하는 사업계획과"를 삭제하고, 동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6호의2 및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3. 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에 관한 권한.

다만, 수도권지역 또는 직할시 지역의 주택난해소를 위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안에서의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및 임시사용승인에 관한 권한

6의2. 법 제33조의6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의 지정·보고, 감리자교체, 감리업부 지정제한등에 관한 권한

10.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검사에 관한 권한(등록·승인등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제46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영업실적 및 월별 분양계획등의 점수

[별표 1] 제2호의 자목 내지 하목을 각각 카목 내지 너목으로 하고, 동호에 자목 및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제5호가목의 행정처분기준단란중 "영업정지 1년"을 "등록말소"로 한다.

[별표 2] 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제1호다목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또는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의"

자. 법 제33조의5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자가 발생한 때		
(1)내력구조부가 붕괴되거나 안전진단 결과 붕괴우려가 있을때		등록말소
(2)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		영업정지 6월
(3)기타 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		영업정지 3월
차. 법 제33조의6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의 시정통지에 따르지 아니하고 당해공사를 계속한 때		영업정지 3월

를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로 하고, 동표 제3호가목중 "산림조합법에"를 "임업협동조합법에"로, "산림조합중앙회와"를 "임업협동조합중앙회와"로 하며, 동호나목(1)중 "불교재산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불교단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종교단체"를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종교단체와 그에 소속된 종교단체 및 과계법령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등록된 종교단체"로 하고, 동호다목(3)중 "의료보험법 제7조"를 "의료보호법 제10조"로 하며, 동표 제3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법 제47조6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법 제47조의7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건축허가를 받거나 부동산 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별표 3] 제4호중 "5천원"을 각각 "1만원"으로 하고, "2천5백원"을 각각 "5천원"으로 한다.

[부표] 제8호 본문중 "85제곱미터(주거전용면적을 말하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를 초과하는 때와 주거전용 이외의 건축물은"을 "85제곱미터[주거전용면적을 말하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하되 각각의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건축된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를 초과하는 때와 주거전용외의 건축물(공동주택의 공용면적에 포함되는 부대·복리시설을 제외한다)은"으로 한다.

[부표] 제8호나목 본문중 "공업단지 및 공업배치법상"을 "공업단지와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으로 하고, 동목(1)중 "유흥음식점"을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으로, "사치성욕장용"을 "특수목욕장용"으로 한다.

[부표] 제10호중 "면허"를 "등록"으로 하고, 동표 제13호 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하며, 동표 제14호를 삭제한다.

[부표] 제18호다목중 "일반음식점 영업"을 "일반음식점 영업(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에 한한다)"로 하고, 동호라목중 "휴게음식점 영업"을 "휴게음식점 영업(연면적 33제곱미터이상에 한한다)"로 한다.

[부표] 제21호중 "목욕탕업"을 "목욕장업"으로 하고, 동호가목중 "독탕(터키탕 및 증기탕을 포함한다)"을 "특수목욕장업"으로 하며, 동호나목중 "공중탕(사우나 포함분에 한한다)"을 "일반목욕장업(가족탕업 및 한증막업에 한한다)"로 한다.

[부표] 제23호가목본문중 "분할등기 하는 경우와 동일소유자 명의로 분필 또는 합필의 등기를 하는 경우는"을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신탁종료에 따라 위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로 한다.

[부표] 제27호를 삭제하고, 동표 제31호중 "주택관리업면허"를 "주택관리업등록"으로 하며, 동표 제32호중 "5억원이상인 경우에 한한다"를 "5억원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설계변경등으로 증액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지정기준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업자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자본금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감리자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④(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2] 지정업자의 지정기준(제11조제2항관련)

1. 지정기준

구 분	지 정 기 준
자 본 금	50억원 이상
기술능력	1. 건축분야기술자 : 4인이상. 다만, 기사 1급이상의 기술자가 1인이상이어야 한다. 2. 토목분야기술자 : 2인이상. 다만, 기사1급이상의 기술자가 1인이상이어야 한다. 3. 전기분야기술자 : 1인이상 4. 기계분야기술자 : 1인이상 5. 안전관리분야기술자 : 1인이상 6. 건축사 또는 건축분야기술사 : 1인이상
주택건설실적	최근 3년간 주택건설실적이 연평균 300호 또는 300세대 이상

비 고

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후 3년이 경과된 경우로서 건설업법상 토목건축공사업면허 또는 건축공사업면허를 가진 자에 한한다.

나. 자본금은 지정신청의 접수마감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을 말한다.

다. 주택건설실적은 지정신청의 접수마감일 현재의 실적으로서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얻었거나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다만, 하도급에 의한 공사실적을 제외한다).

라. 기술능력은 지정신청을 한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로서 건축분야 및 토목분야기술자는 건설업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면허대장에 등재된 기술자를, 전기분야·기계분야 및 안전관리분야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취득자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전기분야기술자격취득자는 전기기사 또는 전기공사기사 2급이상에 한한다)를,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건설업면허기준에 의하여 기술자를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보유부분에 한하여 이를 따로 보유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2 건설부장관은 제1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신청자중에서 당해 신청자의 경영상태·신용도·기술개발·품질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종합평가하여 그중 우수한 자를 지정업자로 지정한다.

1994년 7월분 전국도서신고현황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전년도 7월분 9백3십9만5천5백6십2㎡보다 17.2%(1백6십1만5천6백1십8㎡)증가한 1천1백1만1천1백8십㎡의 실적을 보임.

나. 전년동기비

전년도 7월 누계 6천9백1십6만1천1백3십4㎡보다 22.6%(1천5백6십6만6백5십1㎡)증가한 8천4백8십2만1천7백8십5㎡의 실적을 보임.

다. 전월비

전월 6월분 1천1백4십7만6천5백7십7㎡보다 4.1%(4십6만5천3백9십7㎡)감소한 1천1백1만1천1백8십㎡의 실적을 보임.

全國 圖書申告 概況(地域別 增減狀態)

(연면적기준—전년동월비) (단위/㎡)

구 분		1993년도	1994년도	증·감	비율(%)
증가지역	서 울	1,063,390	1,822,824	759,434	71.4%
	대 구	535,139	849,589	314,450	58.8%
	광 주	96,728	261,722	164,994	170.6%
	경 기	2,227,429	3,198,529	971,100	43.6%
	강 원	283,039	396,137	113,098	40.0%
	충 북	234,353	348,557	114,204	48.7%
	충 남	410,131	513,149	103,018	25.1%
	전 북	467,094	760,121	293,027	62.7%
	경 북	619,318	916,660	297,342	48.0%
감소지역	부 산	866,168	258,717	(607,451)	−70.1%
	인 천	812,098	360,540	(451,558)	−55.6%
	대 전	443,082	310,883	(132,199)	−29.8%
	전 남	389,407	234,624	(154,783)	−39.7%
	경 남	887,955	762,618	(125,337)	−14.1%
	제 주	60,231	16,510	(43,721)	−72.6%
합 계		9,395,562	11,011,180	1,615,618	17.2%

全國圖書申告概況(用途別 增減狀態)

(연면적기준) (단위/㎡)

구 분	6월분	7월분	증·감	비율(%)
단 독 주 택	829,830	680,193	(149,637)	−18.0%
다 세 대 주 택	357,128	304,721	(52,407)	−14.7%
연 립 주 택	137,821	126,130	(11,691)	−8.5%
아 파 트	5,071,092	5,012,324	(58,768)	−1.2%
근린생활시설	1,614,862	1,320,917	(293,945)	−18.2%
종 교 시 설	100,004	81,165	(18,839)	−18.8%
의 료 시 설	88,765	18,415	(70,350)	−79.3%
교육연구시설	367,402	394,407	27,005	7.4%
업 무 시 설	300,221	339,798	39,577	13.2%
숙 박 시 설	285,593	147,687	(137,906)	−48.3%
공 장	1,176,538	1,513,171	336,633	28.6%
기 타	1,147,321	1,072,252	(75,069)	−6.5%
계	11,476,577	11,011,180	(465,397)	−4.1%

市·道別 前年對比 全國圖書申告概況(7月分)

구분 / 건축사회	1993년			1994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 울	1,787	1,822	1,063,390	1,263	1,289	1,822,824	(524)	(533)	(759,434)	71.4%	
부 산	953	1,092	866,168	708	779	258,717	(245)	(313)	(607,451)	−70.1%	
대 구	1,182	1,428	535,139	1,398	1,405	849,589	216	(23)	314,450	58.8%	
인 천	628	658	812,098	441	441	360,540	(187)	(217)	(451,558)	−55.6%	
광 주	246	265	96,728	221	257	261,722	(25)	(8)	164,994	170.6%	
대 전	352	395	443,082	276	285	310,883	(76)	(110)	(132,199)	−29.8%	
경 기	1,695	2,236	2,227,429	1,498	1,997	3,198,529	(197)	(239)	971,100	43.6%	
강 원	671	829	283,039	497	583	396,137	(174)	(246)	113,098	40.0%	
충 북	568	738	234,353	494	560	348,557	(74)	(178)	114,204	48.7%	
충 남	448	480	410,131	410	454	513,149	(38)	(26)	103,018	25.1%	
전 북	354	422	467,094	290	391	760,121	(64)	(31)	293,027	62.7%	
전 남	543	741	389,407	347	437	234,624	(196)	(304)	(154,783)	−39.7%	
경 북	734	1,028	619,318	674	964	916,660	(60)	(64)	297,342	48.0%	
경 남	1,279	1,452	887,955	894	1,053	762,618	(385)	(399)	(125,337)	−14.1%	
제 주	172	184	60,231	37	38	16,510	(135)	(146)	(43,721)	−72.6%	
합 계	11,612	13,770	9,395,562	9,448	10,933	11,011,180	(2,164)	(2,837)	1,615,618	17.2%	()=마이너스

市·道別 前年對比 全國圖書申告概況(1~7月分)

구분 / 건축사회	1993년			1994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 울	22,713	23,301	11,036,373	11,537	11,949	11,159,064	(11,176)	(11,352)	122,691	1.1%	
부 산	6,722	8,614	5,507,675	6,663	7,542	5,849,014	(59)	(1,072)	341,339	6.2%	
대 구	8,736	9,682	4,435,060	9,659	10,341	4,853,665	923	659	418,605	9.4%	
인 천	4,643	4,850	3,957,864	3,338	3,479	4,406,634	(1,305)	(1,371)	448,770	11.3%	
광 주	2,112	2,402	1,834,532	2,742	3,350	3,954,820	630	948	2,120,288	115.6%	
대 전	2,511	2,753	2,384,064	2,968	3,124	1,987,391	457	371	(396,673)	-16.6%	
경 기	13,566	16,936	16,167,288	13,953	16,918	18,927,619	387	(18)	2,760,331	17.1%	
강 원	4,102	4,731	2,017,059	3,821	4,359	2,444,858	(281)	(372)	427,799	21.2%	
충 북	4,642	5,838	3,066,093	4,415	5,252	3,110,129	(227)	(586)	(44,036)	1.4%	
충 남	3,373	3,577	3,058,243	3,702	3,930	8,584,851	329	353	5,526,608	180.7%	
전 북	2,488	3,043	2,571,385	2,552	3,043	3,476,713	64	0	905,328	35.2%	
전 남	3,235	4,352	2,372,165	3,693	4,472	2,359,678	458	120	(12,487)	-0.5%	
경 북	5,245	7,392	4,539,177	5,368	7,082	5,962,457	123	(310)	1,423,280	31.4%	
경 남	7,669	9,412	5,634,879	7,675	9,078	6,782,536	6	(334)	1,147,657	20.4%	
제 주	1,273	1,527	579,277	2,238	2,380	962,356	965	853	383,079	66.1%	
합 계	93,030	108,410	69,161,134	84,324	96,299	84,821,785	(8,706)	(12,111)	15,660,651	22.6%	()=마이너스

用途別 前年對比 全國圖書申告概況(7月分)

구분 / 용 도	1993년			1994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단독주택	3,706	3,831	730,411	3,013	3,064	680,193	(693)	(767)	(50,218)	-6.9%	
다세대주택	460	504	193,469	632	670	304,721	172	166	111,252	57.5%	
연립주택	67	68	70,991	80	87	126,130	13	19	55,139	77.7%	
아 파 트	208	805	3,728,646	197	798	5,012,324	(11)	(7)	1,283,678	34.4%	
근린생활시설	3,690	3,823	1,338,466	3,003	3,111	1,320,917	(687)	(712)	(17,549)	-1.3%	
종 교 시 설	119	133	99,342	102	121	81,165	(17)	(12)	(18,177)	-18.3%	
의 료 시 설	17	19	22,347	22	24	18,415	5	5	(3,932)	-17.6%	
교육연구시설	215	279	599,822	174	204	394,407	(41)	(75)	(205,415)	-34.2%	
업 무 시 설	145	157	258,730	107	117	339,798	(38)	(40)	81,068	31.3%	
숙 박 시 설	97	98	139,860	134	140	147,687	37	42	7,827	5.6%	
공 장	876	1,424	1,125,303	800	1,138	1,513,171	(76)	(286)	387,868	34.5%	
기 타	2,012	2,629	1,068,175	1,184	1,459	1,072,252	(828)	(1,170)	(15,923)	-1.5%	
합 계	11,612	13,770	9,395,562	9,448	10,933	11,011,180	(2,164)	(2,837)	1,615,618	17.2%	()=마이너스

用途別 前年對比 全國圖書申告概況(1~7月分)

구분 / 용 도	1993년			1994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단독주택	37,253	38,156	7,377,502	29,367	29,927	6,883,377	(7,886)	(8,229)	(494,125)	-6.7%	
다세대주택	7,891	8,501	3,985,024	5,029	5,427	2,514,815	(2,862)	(3,074)	(1,470,209)	-36.9%	
연립주택	448	499	674,097	683	880	1,304,774	235	381	630,677	93.6%	
아 파 트	1,274	6,123	26,358,748	1,281	5,377	30,090,602	7	(746)	3,731,854	14.2%	
근린생활시설	26,870	28,288	10,354,037	28,795	29,607	13,254,023	1,925	1,319	2,899,986	28.0%	
종 교 시 설	841	998	698,823	950	1,093	843,266	109	95	144,443	20.7%	
의 료 시 설	109	117	198,125	142	164	328,393	33	47	130,268	65.8%	
교육연구시설	844	1,091	2,350,495	886	1,048	2,457,073	42	(43)	106,578	4.5%	
업 무 시 설	941	1,018	2,653,226	792	851	2,374,187	(149)	(167)	(279,039)	-10.5%	
숙 박 시 설	827	886	1,083,527	1,365	1,432	1,739,582	538	546	656,055	60.5%	
공 장	5,075	8,413	6,393,402	6,164	9,212	9,674,254	1,089	1,069	3,280,852	51.3%	
기 타	10,657	14,590	7,034,128	8,870	11,281	13,357,439	(1,787)	(3,309)	6,323,311	89.9%	
합 계	93,030	108,410	69,161,134	84,324	96,299	84,821,785	(8,706)	(12,111)	15,660,651	22.6%	()=마이너스

이사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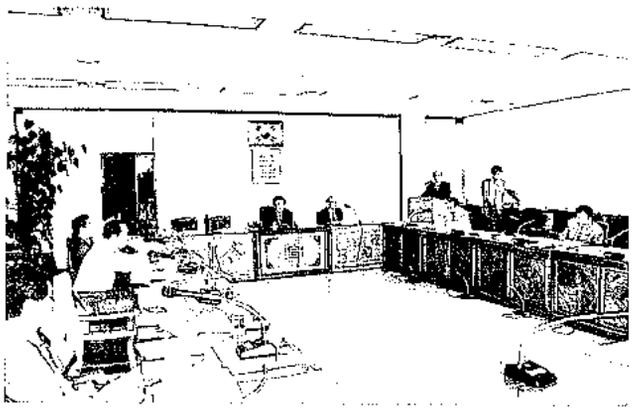

이사회 광경

본 협회의 주요당면 과제들을 협의하기 위한 이사회가 지난 7월12일(제22회)과 7월 15일(제23회), 7월 19일(제24회), 7월 26일(제 25회), 그리고 8월 2일(제26회)에 각각 개최되었다. 각 회별 주요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22회

- 예비비사용 승인의 건
  - 원안대로 1천2백만원을 이사회 회의비로 사용토록 승인하고, 다음 이사회에 세부사용 내역을 보고하기로 함.
- 특별비상대책위원회 규정(안) 승인의 건
  - 긴급 임시총회('94. 6.27)에서 결의된 내용에 준하여 특별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작성하도록 위임함.
- 일반회계, 특별회계 경정예산 조정(안) 승인의 건
  -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9억2천5백2십만9천7백원중 자재시험소분 인건비 5천만원과 임의적립금 9천만원을 감액한 7억8천5백2십만9천7백원을 특별비상대책위원회 특별회계 보조금항으로 신설 반영하여 지원하되, 세부세출 예산항목은 특별비상대책위원회에서 편성하고 집행은 본 협회 회계규정에 의하여 집행키로 함.
- "제10회 경향전기·에너지 대상"수상 후보자 추천에 대한 협의
  - 관련단체(태양에너지학회 등)와 협의하여 본 협회가 수상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본 협회를 추천하기로 협의함.
- '94건축사시험 시험감독관 시험감독수당 조정에 대한 협의
  - 1차시험 감독수당(2만원→3만원)조정을 원안대로 협의함.

제23회

- 행정쇄신위원회 제출자료에 대한 협의
  - 기획단 최찬환교수의 행정쇄신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작성(안)과 김태웅회장의 기본방안 의견내용을 수정하여 기획단에서 검토하기로 협의함.

제24회

- 사무실 조정사용계획에 대한 협의
  - 서울시 건축사회의 의견을 듣고 다시 논의하기로 협의함.
- 위원회 회의비 사용계획에 대한 협의
  - 다음 이사회에 비상대책위원회 및 특별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제시하고 예비비 사용 승인신청을 하기로 협의함.
- 행정쇄신위원회 제출자료에 대한 협의
  - 특별비상대책위원회 기획단 및 이사회에서 협의조정된 최찬환 교수의 용역성과물에 대한 1차보고서가 특별비상대책위원회에 접수되면, 본 협회 회장에게 보고후, 본 협회 명의로 일단 건설부에 제출하고, 건설부와 협의하여 검토된 사항을 추후 2, 3차 보고서를 통하여 보완하는 것으로 협의함.

제25회

- 한해 의연금 모금 및 특별회계 임의적립금 일시차입사용 승인의 건
  - 특별회계 임의적립금에서 4천6백5십8만원('94. 6.30현재 회원수 기준)을 일시차입하여 한해 의연금을 전달하고, 회원 1인당 1만원씩을 시·도건축사회에서 모금하여 본회로 송금하여 특별회계 임의적립금으로 환급하기로 결의하고, 전달처는 회장에게 위임함.
- 예비비사용 승인의 건
  - 94년도 위원회회의비로 예비비 1천3백8십2만7천3백2십원을 사용하기로 원안대로 승인함.
- 인사규정 개정(안)에 대한 협의
  - 현행대로 하기로 협의함
- 법인건축사사무소 협의회 건의문에 대한 협의
  - 연금문제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논의하기로 협의함.

제26회

- 본 협회 경영진단 용역시행 승인의 건
  - 소 위원회(김택성, 이종관, 김규태 이사)에서 경영진단 용역시험 여부를 검토키로 하고, 경영진단 용역을 시행할 경우에는 용역내용을 결정하여 다음 이사회에 보고키로 하고 유보함.
- 전문위원 임시채용 승인의 건
  - 윤동식을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직급, 직책, 보수 등의 결정은 회장과 김규태 이사에게 위임하여 다음 이사회에서 추인하도록 하고 유보함.
- 직원표창 승인의 건
  - 원안대로 대구건축사회 사무국장 김홍업에게 정년퇴직상을 표창하기로 결의함.
- 회관사용 계획(안)승인의 건
  - 회관 1층은 본 협회에서 사용하기로 하고, 지하 2층 식당을 현 임차인에게 계속 임대하기로 의결함.
- 노후 불량주택 진단업무 지침 개정(안)승인의 건
  - 개정(안) 내용을 검토한 후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이사회에서 결의하기로 하고 유보함.
- 축사에 대한 설계, 감리비 인하요청 승인의 건
  - 시·도건축사회에서 의견을 받아 다음 이사회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안을 결정, 통보하기로 하고 유보함.

본 협회, 건설업체의 건축설계 허용요구에 대한 반대 건의서 제출

본 협회는 일부 대형건설업체들의 임의단체인 한국건설업체연합회가 건설시장 개방에 따른 국제 경쟁력 강화라는 미명아래 건축설계 겸업을 목적으로 건축사법 등 관련법 개정을 요구한데 대해 적극 대처하며, 그 일환으로 정부, 국회, 행쇄위 등 관계요로에 반대 건의서를 8월 22일 제출했다. 건의서에서 협회는 한건연의 주장은 대형자본력을 앞세워 건축설계를 시공에 예속시키려는 반 문화적 제안으로서 이는 건축사업무의 기본정신을 무시하고 경제주체인 건설업체가 전혀 비전문 분야인 건축설계와 감리업까지도 장악하여 기업이윤을 극대화시키려는 이기적 발상에 지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설계의 예술적 창의성을 무시하고 단지 자본규모만을 경쟁력 강화의 척도로 삼는 것은 건축문화를 말살하는 위험천만한 일로서 사회적 병폐와 혼란을 유발시키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건설업체의 이같은 설계업 허용요구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함을 강력히 건의하였다.

서울 건축사회, 제2기 시민건축대학 강좌 실시

서울시 건축사회(회장 김영수)는 건축을 알고자 하는 일반 시민들에게 커다란 호응을 얻었던 제1기시민건축대학에 이어 오는 9월 5일부터 12월 6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2시간동안 제2기 강좌를 개설한다. 이번 제2기 강좌는 건축을 잘 알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보다 도움있는 강의가 되고자 강좌내용 및 주제를 다소 수정하였다. 일정은 다음과 같다.

일 시	강 좌	강 좌 내 용
9. 5	1강좌	풍수지리
9.12	2강좌	현대건축
9.26	3강좌	건축물설계
10.10	4강좌	설계도면 읽는법
10.17	5강좌	건축행정
10.24	6강좌	내외장재료 및 설비자료
10.31	7강좌	주택의 에너지절약 지혜
11. 7	8강좌	주방계획 및 시공
11.14	9강좌	한국의 전통건축
11.21	10강좌	주거론
11.28	11강좌	건축물의 시공
12. 5	12강좌	건축허가에서 사용 검사까지의 VTR 시청, 수료식

대전건축사회, 제4회 건축사 회원전 개최

전시회 광경

대전건축사회(회장 임근수)는 지난 8월 24일(수)부터 8월 31(수)까지 대전시민회관 2층 전시실에서 건축사 회원전을 개최하였다. 올해로 네번째인 이번 전시회는 지역회원 작품52점과 디자인캠프 성과물이 함께 전시되어 지역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도시미관에 나름대로의 노력과 관심을 기울인 회원들의 자성과 검토의 장이 되었다.

94년도 건축사 자격시험 1차 합격자 발표

본 협회는 94년도 건축사자격시험 1차 합격자를 지난 8월 3일 발표하였다. 이번 1차 시험 합격자는 총 8,383명이 지원, 7,489명의 응시자중 3,751명으로 50.1%의 높은 합격률을 나타냈다. 한편 2차시험 및 특별전형시험은 오는 11월 6일 실시될 예정이며, 최종 확정발표는 9월 10일 각 시·도건축사회 게시판에 각각 공고될 예정이다.

한해 의연금 전달

본 협회는 지난 7월 27일 몇십년만에 찾아온 가뭄으로 인하여 시련을 겪고있는 농민을 돕기위해 전회원들이 성금을 모아 조선일보에 일금 4천6백5십8만원을 전달하였다.

이와관련, 경기도 건축사회(회장 송인창)에서도 경인일보(경기, 수원, 안산, 안양)와 경기일보(오산) 그리고 시흥시청(시흥)과 의정부시청(의정부)에 총1천 58만원의 의연금을 기탁하였다.

94한국건축기술사강좌

한국문화재 보존기술진흥원과 삼성출판 박물관에서는 오는 9월10일부터 10월29일까지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 삼성출판 박물관 3층 세미나실에서 '94 한국건축기술사강좌를 개최한다.

· 문의 : 문화재보존협회사무국 (☎ : 678-4997~8)

일 자	강 좌 명	강 사	비 고	사 회
9.10	목조건물조영기술(1)	신용수	인간문화재	신영훈
9.24	목조건물조영기술(2)	신용수	인간문화재	신영훈
10.8	단청기법이론	박준주	단청장	유문용
10.15	단청실습	박준주	단청장	신언수
10.15	건축물 실측 설계방법	유문용	문화재전문위원	황의수
10.16	건축물 실측실습	유문용	문화재전문위원	황의수
10.22	건축 현장 견학 및 답사	황의수	문화재보존협회 이사	김영일
10.29	건축 현장 관리	조희환	도편수	김영일
10.29	석조 조영 기술	김부관	석공	정명호

제2회 아카시아 건축상 응모

아시아 건축사협의회(Architects Regional Council Asia, ARCASIA)에서는 아시아 건축사들의 우수한 설계작품을 엄선, 아시아지역의 건축문화발전과 아시아 건축의 우수성을 세계각지에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아카시아 건축상을 응모한다.

• 응모부문
- 주거용 건물(단독, 다세대, 개인, 공동주택)
- 공공건물(오피스빌딩, 협회 및 종교단체 건물, 위락시설, 쇼핑센터, 건강 관리시설)
- 산업시설(공장, 창고 등)
- 보호관리 프로젝트(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건축적 유산을 보존 또는 복구하는 프로젝트)

• 제출자료
- 프로그램 및 시설에 대한 설명서
- 시설의 적합성에 대한 설명서
- 축소된 배치도, 3개 이하의 축소된 평면도 및 2개의 단면도
- 5도 색상 이상의 컬러사진

• 제출 및 문의처
대한건축사협회 기획부
(☎ : 581-5711~4)

제6차 아카시아 건축사대회 (ARA-6)

■기 간 : 1994. 12. 12~16
■장 소 : 필리핀 국제컨벤션 센터
■주 제 : 건축교육을 위한 혁신
■행사내용 : -제15회 아카시아 이사회
-아카시아 건축교육위원회
-제4회 아카시아 건축학생잼버리
-제2회 아카시아 건축상시상식
-아카시아 북 출판기념회
-기타 문화행사

■신청및 문의처
대한건축사협회 기획부(TEL. 581-5711~4)

■세부일정

일 자	시 간	행 사 내 용	장 소
'94. 12. 11(일)	전 일	출발시함	Puerto Azul
12. 12(월)	09 : 00~12 : 00	제15회 아카시아 이사회	Puerto Azull 또는 Caylabne Bay Resort
	12 : 00~13 : 00	중 식	
	13 : 00~17 : 00	제15회 아카시아 이사회	
12. 13(화)	09 : 00~12 : 00	제15회 아카시아 이사회	
	12 : 00~13 : 00	중 식	
	13 : 00~17 : 00	제15회 아카시아 이사회	
12. 14(수)	08 : 00~17 : 00	등 록	필리핀 국제 컨벤션 센터
	08 : 00~12 : 00	전 시	
	12 : 00~14 : 00	중 식	
	14 : 00~18 : 00	제6차 아카시아 건축사대회 개회식 전시회 개막식 아카시아 북 출판기념회 기타행사 개막	
	19 : 00~23 : 00	환영연회	
12. 15(목)	08 : 00~17 : 00	등 록	
	09 : 00~12 : 00	학술토론회	
	12 : 00~13 : 00	중 식	
	13 : 00~17 : 00	학술토론회	
	19 : 00~23 : 00	우정의 밤	
12. 16(금)	08 : 00~17 : 00	등 록	
	09 : 00~12 : 00	학술토론회	
	12 : 00~13 : 00	중 식	
	13 : 00~17 : 00	종합토론회	
	19 : 00~23 : 00	환송연회 아카시아 건축상 시상식 아카시아 학생상 시상식	